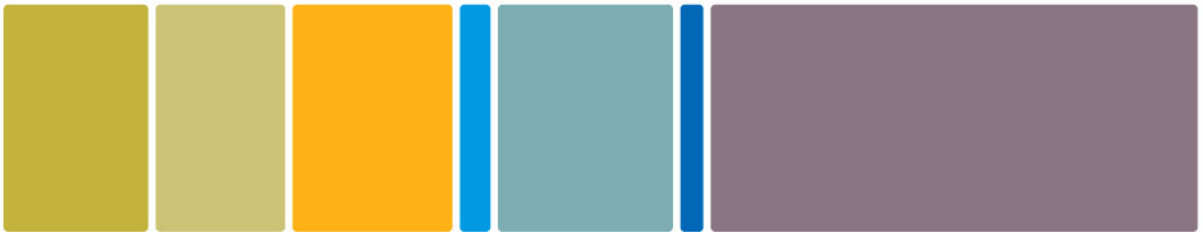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225-0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0. 2. 3(수) 14:00~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건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진행순서

<p>14:00~14:10</p> <p>개회</p>	<p>개회 김형완(인권정책과장)</p> <p>인사말 유남영(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p>
<p>14:10~15:30</p> <p>발표 (사회: 조국 비상임위원)</p>	<p>최종건해 분석 및 평가 (60분)</p> <p>총평 박찬운(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p> <p>권고 주제별 분석 및 평가</p> <p>[여성, 아동청소년] 이숙진(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p> <p>[이주, 외국인]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p> <p>[노동] 김인재(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p> <p>사회보장, 주거, 건강, 교육]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p> <p>인권단체 총평(10분) 명숙(인권운동사랑방)</p>
<p>15:30~17:00</p> <p>토론</p>	<p>휴식 후 전체토론</p>

목 차

* 발 표 *

■ 총평 / 박찬운	1
■ 세부 주제별 분석 및 평가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 / 이숙진	15
이주, 외국인 분야 / 김현미, 최원근	37
노동 분야 / 김인재, 김유선, 김유선	49
사회보장, 건강, 주거, 교육 분야 / 윤홍식, 이상윤, 김남근, 윤성은	65
■ 인권단체 총평 / 명숙	121

* 부 록 *

국가인권위원회 제1차 의견서 국문(2008.11.)	143
국가인권위원회 제1차 의견서 영문(2008.11.)	203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의견서 국문(2009.10)	245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의견서 국문(2009.10)	279
제3차 최종견해 권고항목 주제별 분류 및 요약	313
제1차, 제2차, 제3차 최종견해 비교분석표	329
제3차 최종견해 전문(국문 번역본)	345
제3차 최종견해 전문(영문 원본)	363
인권위 보도자료(2010.2.1)	377

제3차 최종견해 권고항목 세부 주제별 분류표

1. 법제도

[제6항]계약의 국내법적 효력
[제8항]국가인권위원회
[제9항]차별금지법

2. 여성, 아동청소년

[제11항]여성부
[제13항]여성차별관행
[제14항]여성 및 청소년 실업
[제17항]직장내 성희롱
[제24항]가정폭력
[제31항]청소년 성교육

3. 이주, 외국인

[제10항]난민신청 기간
[제12항]F2비자
[제21항]이주노동자 차별
[제25항]E6비자 및 인신매매

4. 노동

[제15항]비정규직
[제16항]최저임금
[제18항]산업재해
[제19항]공무원 노동3권
[제20항]업무방해죄와 파업권

5. 사회보장

[제22항]사회보장일반
[제23항]국민연금
[제26항]빈곤

6. 주거

[제27항]노숙인
[제28항]최저주거기준
[제29항]강제퇴거와 용산사건

7. 건강

[제30항]

8. 교육

[제33항]교육불평등
[제34항]극심한 학업 경쟁

9. 기타

[제7항]공적개발원조(ODA)
[제32항]식수
[제35항]대학의 자율권



〈총평〉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최종견해 분석 및 평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권법); 법학박사; 변호사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최종견해 분석 및 평가

박 찬 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권법); 법학박사; 변호사

1. 서론

2009년 11월 10일과 11일 제네바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권 문제가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 심의 결과는 11월 23일 전 세계에 공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권 분야 인권성적표가 공개된 것이다. 사회권위원회가 공표한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의 사회권 성적에 냉혹한 잣대를 들이 밀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등에 관한 권리보장,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시이주시설 설치 등 20개항 이상을 권고했다. 이러한 발표가 있자 민변을 비롯한 56개 인권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2001년에 이어 이번에도 유엔사회권위원회 심사에 참가해 변명과 불성실한 해명에 급급했다”며 “정부는 유엔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견해는 정반대였다.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사회권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위원회에 강력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한 마디로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보는 입장은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렇다보니 국제인권법의 주요 메커니즘 중의 하나인 이 검토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보고서 심의와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2. 사회권위원회 보고서 심의의 국제인권법적 의의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최종견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갖는 국제인권법적 의의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 보장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그 국가 내의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유엔이 창설되고 난 후 한 가지 특징은 국제사회가 각국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각 국가 내에서 실천하도록 독려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유엔은 현장에 기초하여 유엔인권보장 시스템을 만들었다. 2006년 만들어져 활동에 들어간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바로 현장에 기초한 대표적 인권시스템이다(단, 인권이사회의 현장적 근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음). 또한 유엔은 주요 인권분야의 인권조약을 만들어 회원국들로 하여금 가입케 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국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인권보장장치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까지 8개의 주요 인권조약으로 구성되는데(사회권, 자유권, 인종, 여성, 고문, 아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이들 조약의 특징은 대체로 각 가입국이 준수해야 할 인권의 목록을 확인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감독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인권 조약 중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제외한 7개 인권조약에 가입하였다. 인권조약 가입으로만 보면 인권선진국이 틀림없다. 특정 국가가 이들 인권조약에 가입하면 우선 인권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항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준수상태를 각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감독기구인 위원회(단,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만들어짐)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위원회는 통상 각국의 외교관이 아닌 개인 자격의 입하가로 구성되어 있어 외교관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비해 독립적이다. 각각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이라 함)를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는 NGO의 활동도 보장된다. 통상 인권단체들은 심의과정에서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위원들로 하여금 균형된 인권정보를 갖도록 한다. 나아가 최근에는 각국의

독립적 인권기구(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과정에 참여한다. 인권기구는 정부보고서와는 달리 독자적인 상황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정부보고서를 비판하는 보충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지난 11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제네바에서 심사를 받은 것이 바로 위의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유엔사회권규약에 따라 이번에 3번째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것을 사회권위원회가 검토하고 그 최종견해를 발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56개 인권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반박보고서를 만들었으며 대표단을 구성하고 제네바 현지에서 파견하여 로비활동을 벌였다. 더욱 이번에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독자적 보고서를 만들어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사회권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2009년 11월 정부와 인권위 나아가 인권시민단체는 국제적 장에서 한판 진실 게임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이번에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후 우리 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가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단히 권고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우리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규범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내의 헌법이나 법률과 같이 동일한 법규범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물론 그 지위에 대해서는 이론적 대립이 있다. 그러나 헌법에 버금가는 효력이 있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그리고 이 권고는 바로 사회권규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권고는 국제기구의 다른 권고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것은 국제법인 인권조약에 따른 권고로서 다른 일반적 권고와는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하므로 권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도대체 정부가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그냥 단순 권고로 치부한다면 왜 인권조약에 가입하였는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인권조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것을 어

편 정부가 그냥 간과한다면 인권조약의 의미는 사라진다.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권고 이상의 강력한 성격을 갖는 국제인권기구의 요구이다.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우리 정부는 이 권고를 피할 수가 없다. 국제사회가 이것을 주시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3. 최종견해 개관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보고서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일이었다. 정권 출범 이후 유행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은 결국 우리 사회의 서민 민초의 고단한 삶을 예고한 것이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계층 간 갈등을 부추겼으며, 아직 견고한 토대를 갖추지 못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위협했다. 급기야 재개발 사업 강제철거과정에서 용산참사가 일어났으며 쌍용자동차 사건을 비롯 노사 간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4대강 사업을 위시한 대규모 토목공사의 망치소리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의 감소는 어렵지 않게 예상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독립적 인권기구로 탄생하여 지난 8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위는 어느 날 갑자기 20% 이상 조직이 축소되었고, 지난 정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권위 무시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현실을 과연 사회권위원회는 어떻게 보았는가가 바로 최종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

예상한대로 사회권위원회의 심사는 날카로웠다. 정부의 보고서나 40여명의 정부 대표단의 필사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시민인권단체가 제공한 인권상황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로선 뼈아픈 권고를 하였다. 총 권고 수가 무려 83개에 달하였다. 이는 제2차 최종견해에 비하여 무려 53개나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종전 견해에 비하여 주제 및 내용이 대단히 구체화되었다. 특히 여성, 노동, 이주 노동자에 관련된 부분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이었다. 1차와 2차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주제도 많이 포함되었다. 차별금지법, 공적개발원조, 여성 및 청

소년의 실업, 노숙인, 외국인 배우자 등이 바로 그것로 다. 특별히 직접적으로 참여한 관심사였던 인권위 부분 2관련하여 권한 확대(사회권 진정사건)를 요구하였고 조직 축소 문제를 거론하며 인적 물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최대의 문제였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언급하였다. 비정규직이 총 노동인구의 50%를 넘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준수, 근로기준법의 준수 및 적절한 사회보장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파업의 경우 불법파업이라고 단죄하고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는 업무방해죄의 남용을 우려하고 그 자제를 요청하였다.

<제3차 최종견해 분석 개관>1)

<p>1. 제3차 최종견해의 주요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권고수가 20개(제1차)→30개(제2차)→83개(제3차)로 급증 ▶ 전반적으로 이전 최종견해에 비하여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구체화된 특히, 여성, 노동, 이주 관련 권고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임(당장 정책권고가 가능한 수준) ▶ 이주와 외국인 관련 권고가 대폭 증가 ▶ 제2차 최종견해는 우려사항과 권고를 개별 문항으로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어서 우려사항에 언급된 모든 내용이 권고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최종견해는 우려사항과 권고를 동일한 문항에 배치함으로써 모든 우려사항이 권고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p>2. 제3차 최종견해에 처음으로 언급된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법 ▶ 공적개발원조 ▶ 여성 및 청소년 실업 ▶ 노숙인 문제 ▶ 연예홍행 비자 및 인신매매 ▶ 외국인 배우자 ▶ 빈곤문제 ▶ 대학의 자율권 ▶ 청소년 성교육 및 미혼모 대책
<p>3. 제1차 혹은 제2차 최종견해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제3차 최종견해에서 매우 구체화된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부 ▶ 여성차별 ▶ 성희롱 ▶ 가정폭력 ▶ 최저임금 ▶ 비정규직 차별 ▶ 국민연금 ▶ 난민 신청 기간 ▶ 이주노동자 차별 ▶ 강제철거 시 원주민 보호 ▶ 극심한 학업경쟁 ▶ ‘업무방해죄’를 명시적으로 언급

1) 이 분석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 자료를 인용한 것임

4. 이전 최종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권고 된 주제

- ▶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 과도한 파업노동자 처벌
- ▶ 최저주거기준 ▶ 교육불평등 및 공교육 강화

4. 평가

(1) 최종견해 중 ‘법제도’ 관련 권고에 대한 평가²⁾

사회권위원회가 법제도와 관련하여 권고한 부분은 크게 3가지 주제이다.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국가인권위원회 및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것들이다. 우선 위원회는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헌법상 사회권이 규약보다 협소하며 국내 적용 판례가 부재함을 우려하면서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과 규약의 권리들이 국내법원 등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 그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이 부분은 사회권의 사법심사가능성(justiciability)의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 헌법이 비록 대단히 개방적이어서 여러 규정에서 사회권규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용한다고 해석한다고 해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헌법규정 혹은 사회권규약에 근거하여 위헌판단을 해 본적이 거의 전무하다. 이론적으로 우리의 헌법이 규약의 직접적용을 허용한다고 해석해도 우리 사법현실은 여전히 헌법상의 사회권이나 사회권규약상의 사회권을 프로그램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에 사회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것은 바로 그러한 현상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우리 헌법체계를 잘못 이해하여 사회권규약이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향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법종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연구가들의 사회권에 관한 인식도 국제적 흐

2) 필자의 역할은 특정 분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오늘 토론회의 분야별 평가에서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필자가 이 부분의 평가를 담당한다.

름에 맞추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인권위가 이와 같은 흐름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현재 인권위의 조사권한이 제한적이며 최근 상황이 독립성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업무권한의 강화(조사권의 확대)와 인권위의 기능강화를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배정을 권고하였다. 사회권위원회가 인권위 조사권한에 관심을 가진 것은 현재 인권위법(제30조)이 사회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진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권위 기능의 법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인권의 관심사가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바뀌어 가는 현실에서 사회권 침해에 대한 진정조사 기능을 갖지 못하는 인권기구는 절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우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과 제11조(평등권)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권위법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당분간 사회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권한을 넓혀가는 것이다(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며 인권위법의 무리한 확대해석이라는 비판이 있다). 둘째로는 조속히 인권위법의 개정을 통해 인권위가 사회권 침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진정조사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인권위가 향후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분야가 자유권 영역에서 사회권 영역으로 점점 전환되어 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급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위의 인적 재정적 자원의 배정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 와서 불거진 인권위의 위상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원적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처방 중의 하나로 인권위의 헌법기관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사회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던 차별금지법이 현 정부에 와서 좌절된 것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추진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

려하면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추진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인권위는 이 문제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2) 정부에 대한 평가

우선 정부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이를 제출한 뒤 심의에 이르기까지 인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2006년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민변 이외에는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2009년 사회권 위원회가 요구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인권단체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았다. 나아가 최종견해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의견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사회권규약 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조약의 정부보고서 검토과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원래 인권조약 감독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각 주체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이다. 인권단체와의 접촉과 소통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 명백 정부 들어서서 그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분위기이다. 심히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정부의 문제는 최종견해가 나오고 난 뒤의 태도에 있었다. 사실 사회권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는 대단히 신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할 말이 많았던 모양이다. 즉각적으로 법무부는 반박을 하였는데, 대부분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제도와 현실을 오해했다는 것이다.³⁾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견해는 우리 정부의 답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미세한 부분만을 보면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태도는 크게 실망스럽다. 필자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볼 때 이번 위원회가 우려

3) 이러한 역할은 법무부의 인권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인권국이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인권국은 원래 설립의 취지상 정부 내에서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기능과 감시기능을 해야 하는 부서이다. 이런 부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대응부서 기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를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한 사항은 어느 것도 오류를 범한 것이 없다. 한 가지만 보자.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권위원회가 인권위 독립성에 우려를 표명하여 개선을 권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그 내용인즉,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독립성이 보장되고 파리원칙(인권기구에 대한 유엔원칙임)에 따른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반박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정부의 반박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느낄 것이다. 2009년 인권위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4월의 조직축소 사태, 6월의 인권위원장 임명 사태, 인권위 권고의 수용률의 급격한 감소 등)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정부의 이런 반박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인권위는 사회권위원회의 금번 심의를 위해 많은 일을 진행하였다. 오래 전부터 내부 검토를 진행하면서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나아가 사회권위원회에 인권기구의 독자적 의견서(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제시할 lists of issues, 즉 쟁점목록에 포함해야 할 97개 사항도 함께 제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조약기구에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기도 하다. 사회권위원회는 이러한 인권위의 의견 상당 부분을 채택하여 한국 정부에 쟁점목록을 제시하였고 최종견해에도 반영시켰다. 인권위는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인권위 전문가위원회를 수회 가동하여 외부 전문가의 역량을 통합하는 계기로 삼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도 정부의 보고서나 검토회의에서의 정부 답변 내용에 대하여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부의 의도적인 인권위 폄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는 하였지만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인권위의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인권위 자체의 한계에서도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4) 인권단체에 대한 평가

인권시민단체는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검토에서 귀중한 소득을 얻었다. 이것은 지난 20여 년 간의 국제인권활동의 소산이기도 하다. 무려 56개 단체가 연대하여 반박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권고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었다. 다른 나라의 인권시민단체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최종견해를 국내의 사회권 개선에 이용해야 한다. 정부, 인권위, 국회 등에 최종견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인권활동이 국내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은 또 다른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향후 유엔인권이사회의 NGO 활동이나 다른 인권조약에 따른 인권회의에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들 인권기구의 또 다른 권고를 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번 권고를 활용할 때 이번에 인권시민단체가 거둔 소중한 성과가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다.

5. 최종견해 이행의 전망과 제언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국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고려해야 할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최종견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조약의 감독기구에 의한 국제법적 권고이므로 이 견해가 사회권 분야의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규범적 전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과 국회의 의정활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와 인권단체는 끊임없이 정부와 의회를 감시해 나가야 한다.

둘째,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국내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보고서의 작성과정에 인권위나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방법이나 조약기구에 의한 최종견해가 나왔을 때 이것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메커니즘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제껏 이러한 절차가 모두 관행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그 한계에 봉착하였다. 정부 내의 역학관계에서 볼 때 법무부가 이러한 메커니즘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적어도 국정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 소관으로 조정역할은 넘겨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조약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조약기구 모니터링 활동의 국내 촉진자 및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위는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사회권위원회 등의 최종견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분야에 관해 전문성을 더욱 축적하고 그에 기해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인권위일 수 밖에 없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넷째, 인권단체들도 최종견해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조약기구로부터 최종견해를 받아내는 데 크나 큰 역할을 한 인권단체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조직적 연대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정부와 인권위 그리고 국회를 견인해 나가야 한다.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준비해야 하며 다른 인권조약 모니터링 활동에서 이 최종견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세부 주제별 분석 및 평가〉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

이 숙 진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

이 속 진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1. 사회권 논의의 중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시장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양극화 심화로 특징지어진다.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의 위기, 노동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성장 중심의 정책과 제도는 분배의 위기를 동반하여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사회적 배제 집단,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외된 개인들의 삶이 보다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권은 인권의 관점에서 인간으로서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준과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기에 대한 우선적 대응의 권리라고 보여진다.

사회권과 자유권의 구분에 대한 논란이나 사회권의 국가적 이행의무나 고용자원의 분배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은 시장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하거나 불완전한 개인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의무와 정책들을 요구하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일자리 위기의 상황에서 사회권 논의는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구체적 정책들이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은 전통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회집단임에 틀림없다. 이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여성과 여자아이들이 실업, 직장이나 집에서의 책임 증가, 소득 감소, 사회와 가정에서의 폭력 증가 등으로

교육, 건강, 안전과 생계 등에 가장 심각히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빈곤과 노동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여성, 아동·청소년의 사회권은 그 권리의 보장과 확대를 언급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최종견해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 내 사회권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배제되어 있는 집단과 개인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의무를 환기시키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주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의는 여성, 아동·청소년 분야의 최종견해를 분석하고자 하며, 우선적으로 1966년 채택된 사회권 규약에서 채택된 주요 권리 가운데 특별히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3차 최종견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권 규약의 여성, 아동·청소년

여성, 아동·청소년의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주요 국제 문서로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이하 CEDAW)이 있으며, 1989년의 아동권리협약이 있다. 1966년에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사회권규약’)에서 영역별로 적용되어야 할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권규약에서 영역별로 적용되는 권리의 내용
 - 자결권(제1조)
 - 남녀평등 의무(제3조)
 - 노동권과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제6,7조)
 -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권리(제8조)
 - 사회보장권(제9조)
 - 가족, 임신부, 아동의 보호(제10조)
 - 적절한 의식주와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제11조)

- 건강권(제12조)
- 무상의무 초등교육의 권리(제14조)
- 문화권, 과학적 진보 향유권,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창작성 그리고 그 저자를 보호함으로써 이익을 향유할 권리(제15조)

이러한 사회권규약 총 31조 가운데 대상별로 특히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별도로 적시하여 규정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제7조 (a)(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 제10조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협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 2.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사회권규약에서 언급하는 권리의 모든 내용들이 여성과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것은 물론 적시한 내용들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별도로 언급되고 증진되어야 할 권리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별조항들과 더불어 함께 해석될 필요가 있는 공동원칙이 차별금지원칙(제2조2항)과 남녀 평등원칙(제3조)이다. 특히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이번 최종견해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문	우려사항 및 권고
차별금지법 제9항	<우려사항> 차별금지법 입법화 좌절, 당시 정부안의 차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 <권고> 일반논평 제20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일치하도록 규약 제2조2항에 설치된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명확히 적시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령을 즉각적으로 입법화할 것

○ **차별금지법**

- 제17대 국회에 접수된 차별금지법(안)은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장애나 연령 그리고 성별(남녀차별금지법 폐지 이후 성평등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있으나 미미) 등에 근거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갈수록 다양해지는 각 차별사유에 근거하여 차별금지법을 모두 제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기 제정된 차별금지 관련 법률들에서 발견되는 부정합성(이숙진, 2009)과 차별관련 법률적 정의들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그리고 차별피해구제의 효율성 등을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현 정부는 2008년 5월 유엔인권이사회 6번째 회의에서 “차별금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최근 입법적 발전 즉 차별금지법이 국회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음을 언급했지만 그 이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가시적인 노력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유엔사회

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제9항의 권고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령을 즉각적으로 입법화할 것’은 법무부에서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부분이다.

3. 여성, 아동·청소년 분야의 최종견해와 평가

이하에서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분야의 최종견해와 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문	우려사항 및 권고
여성부 제11항	<p><우려사항> 여성무 업무권한 변경</p> <p><권고> ①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입법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인지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것 ②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사실상의(de jure and de facto) 남녀간 성평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것 ③ 이들 진전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할 것</p>
여성차별관행 제13항	<p><우려사항> 여전한 여성차별(남녀임금격차, 낮은 고위직 여성 비율, 직업상 성별분리, 여성의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율) 및 출산율 하락은 여성이 직업과 가족생활 간에 조화시키고자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p> <p><권고> ① 새로운 가족등록제도가 프라이버시 뿐만 아니라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 ② 감세와 사회보장 유인책과 같이 남녀로 하여금 직업과 가족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것 ③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적 유인책을 통하여 남성이 가족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 ④ 남녀 모두 유급노동과 가족책임을 결합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를 시행할 것 ⑤학교급식이나 공공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p>
여성 및 청소년 실업 제14항	<p><우려사항> 여성과 청년층의 열악한 고용률 및 청년층 고용정책 관련 정보 부족</p> <p><권고> ① 노동력이 과소대표된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을 더욱 증진시킬 것 ② 2010년까지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참가율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재훈련을 제공할 것 ③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p>

부문	우려사항 및 권고
직장내성희롱 제17항	<p><우려사항>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부족, 직장내 성희롱이 형사범죄화 되지 않은 점, 구제신청 부족, 조사과정에서 유아무야 되는 점</p> <p><권고> ① 작업장내에서의 성희롱을 형사범죄화하는 법령을 입법 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것 ② 작업장내 성희롱을 다루는 공적기관이 벌칙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 ③ 지속적으로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증진시킬 것</p>
가정폭력 제24항	<p><우려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미흡, 매우 낮은 가정폭력 의무보고 비율, 가해자 처벌 부족</p> <p><권고> ①가정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입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②가정폭력이 형사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가해를 재판과 확정판결까지 이르게 하며 상담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 ③ 피해자 보호시설과 사회심리학적 지원 서비스를 늘릴 것</p>
청소년성교육 제31항	<p><우려사항> 성건강과 생식건강 교육 부족, 임신 청소년의 인공임신중절</p> <p><권고> ① 학교 내 의무 성교육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것, 성건강 및 생식건강과 피임법에 대한 정보를 이 교육에 포함시킬 것 ②미혼모들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미혼모에 대한 깊은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캠페인을 펼칠 것</p>

○ 여성부

- 여성부 업무 권한과 관련하여 조직 및 예산구조의 변화는 CEDAW의 평가 및 여성 지위 향상 및 남녀평등을 위한 국가적 목표 실현에 당혹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했다. 북경여성행동 이후 모든 입법조치와 예산상에서의 성주류화는 남녀평등 실현의 주요 기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여성부의 독립적 행정부서로서의 역할 강화와 각 행정부처에서의 여성정책담당관을 통한 성주류화 전략은 미흡하나마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었다. 보육, 가족, 청소년 업무의 보건복지가족부로의 통합 이후 최근에 다시 가족과 청소년업무의 여성부로의 이관으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조직 및 예산규모상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주목할 점은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주요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최근 여성정책 및 여성지위의 backlash와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EDAW의 국가적 이행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차별 관행

1) 성별 임금격차

-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2차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로 자리매김 된다. 이미 분절된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는 여성들의 지위는 일하면서도 빈곤한 계층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기도 하다. 이중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임금과 복지의 교환’과 ‘사회적 노동시장체제의 형성’ 등이 언급되며, ‘임금과 복지의 교환’은 중소기업 부문의 국가 복지 확대를, ‘사회적 노동시장체제 모델’은 기업의 이윤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를 최소화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이 주된 내용(전병유, 2010:11-12)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하여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이번 3차 최종견해에서 권고하였고, 여성차별관행과 관련하여서는 1,2차 최종견해를 통해 남녀 평균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을 우려사항으로 표명한 바 있다. 즉 1,2차를 통해 우려사항으로 표명되던 성별 임금 차이는 여성차별의 관행으로 우려되었으며 3차 최종견해를 통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감세와 사회보장 유인책의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도록 권고되었다.
- 성별간 임금 격차는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이 OECD 평균 81%(2005년)인데 우리의 경우 61% 였다. 이를 남녀임금격차와 교육수준 그리고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특히 55-64세 인구층의 경우 여성의 임금비는 37% 밖에 되지 않는 등 영미형이나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남녀 임금 격차가 현저히 큰 국가에 해당한다(이주희, 2009:130). 이와 같은 현상은 중장년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즉 경력 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매우 낮은 저지위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남녀의 임금격차는 꾸준히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별임금 격차 축소의 과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데 최근 김영미(2009)는 경제위기 이후 고임금층(전문직)에서의 남녀 임금격차는 강화되는 반면에 저임금층(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의 남녀 임금의 이질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즉 경제위기 이후 남녀 임금 격차의 지속적인 축소는 고임금 여성들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저임금 남성들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저임금층에서의 젠더불평등 약화는 시장경쟁의 합리성이 작동했다기 보다는 시장경쟁의 강화가 비정규직 고용과 생산의 외주화 등 저임금층의 증가를 가져와서 가장 취약한 계급에서의 동질화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최근 노동시간의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여성과 노인층을 대상집단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가 고임금층에서 확대되기 보다는 저임금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성별 임금 격차의 축소는 고용형태의 변화와 성별 구성, 성별직종분리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성별직종분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 적은 없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역시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공기업과 50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데 산업별로 여성고용을 및 여성관리자 고용율을 비교하고 산업별 평균의 60% 수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업들은 개선계획을 만들고 1년 후에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년 평가에 따르면 이 제도의 도입 후 여성 고용율과 여성 관리자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전명숙,김향아; 2008).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여성고용의 형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고용율의 증가가 비정규직 여성의 증가임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성을 내기위한 그야말로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이행실적이 미미한 기업에 대한 페널티 적용이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고용형태별 남녀현황에 대한 보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일·가정 양립

- 유엔사회권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의 여성차별관행과 관련한 특징은 1,2차 최종 견해는 불평등한 여성지위에 대한 우려와 직접차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추상적 권고나 우려사항을 표명한 반면, 제3차 최종견해는 여성차별관행에 대한 권고를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우려사항을 구체적인 권고로 표명한 것이다. 일·가정 양립의 관점을 명백히 한 점은 사회권의 핵심인 노동권 문제, 즉 사회권규약 제6조 1.의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의 실현이 여성에게 적용되어지는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점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번 3차 최종견해에서 표명된 일·가정 양립의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되어질 수 있는데 첫째, 여성의 사회적 존재조건에 대한 인식으로 일/남성, 가족/여성의 전통적 성별분업이 정도를 달리하는 형태로 작동되고 있는 일상세계에서 여성의 근로할 권리가 가족생활과의 병행을 위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샬의 사회권으로부터 시작한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 논의가 젠더적 관점을 결여했다는 여성주의적 비판은 특히 여성의 노동권, 즉 노동자로서 충분히(?) 상품화되지 않았거나 불안정하게 상품화된 여성들의 탈상품화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오코너(O'Conner), 올로프(Orloff), 그리고 라이라(Leira) 등이 지적하는 탈가족화, 탈성별화 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시사 받는 바는 상품화 못지 않게 가족과 결혼에 근거한 여성의 권리자격에 관한 언급들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사회보장의 수준이 낮은 경우 상품화를 통해 탈상품화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의 경우 상품화, 탈상품화, 탈가족화, 재가족화에 대한 논의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이며 그런 점에서 노동권에 기반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치들은 우선적인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3차 최종건의의 여성차별관행에 대한 권고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권의 성별화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녀로 하여금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세나 사회보장 유인책’을 고려할 것이나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적 유인책을 통하여 남성이 가족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 그리고 ‘남녀 모두 유급노동과 가족 책임을 결합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점이다. 이 모든 일·가정 양립의 조치들이 여성만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런 점에서 일·가정의 조치가 성별화되는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사회권 보장의 영역으로 일·가정 양립이 추구되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3) 보육·육아휴직 등

- 보육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 약 3조4천억 규모로 GDP의 0.33%를 차지했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 서비스 이용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도 높은 편인데 한국의 경우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이며 스웨덴,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편이다.

<표 1> 주요 국가들의 보육율

(단위:%)

구분	스웨덴	프랑스	일본	영국	한국	멕시코	OECD
0-2세 보육율	39.5	28.0	15.2	25.8	19.5	3.0	22.9
3-5세 보육교육율	86.6	101.9	86.4	80.5	60.9	64.9	74.0

자료: OECD(2007), Babies and Bosses:Policies toward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 특히 0-2세 아동의 경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가를 통해 보장되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3-5세 아동의 공적 보육시설 이용율은 국가와 사회에서 제공되는 돌봄의 수준과 이를 통한 일·가정 양립의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CEDAW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서 지적된 것처럼 2008년 우리나라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5.5%,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비율은 10.8%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가 낮은 국고보조, 민간보육시설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보육시설과 이를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의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모델로서 국공립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육아휴직의 남성 사용을 권장하여 남성도 가족돌봄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출산을 전후하여 사용하는 산전후휴가와 이를 포함한 육아휴가로 나누어 살펴보자. 출산을 전후하여 총9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산전후휴가의 경우 2007년 출생아수가 약49만3천명이었는데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5만8천여명이었다. 출산여성 가운데 취업여성에 대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대략 추정해보면, 출산여성을 20-39세로 가정하면 2007년 20-39세 여성취업자수가 4,329천명으로 고용율은 44.1%에 해당한다. 2007년 출생아의 모의 연령이 20-39세인 경우가 거의 98%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해당년도 출생아수의 40% 이상이 취업모라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여성취업모는 최소 20만 정도에 해당하지만 실제 사용자는 20-2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2007년 36.2%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남성의 육아휴가 사용 비율은 1.4%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수치들은 제도적 장치들과는 별도로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모성보호는 물론 육아휴가 사용이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실정에서 남성들의 가족돌

봄 참여를 위한 육아휴가 권장은 바람직한 목표이기는 하나 참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한국적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가 사용현황

(단위:명, 백만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산전후휴가	금액	33522	41610	46041	90886	132412
	연인원	32133	38541	41104	48972	58368
육아휴가	금액	10576	20803	28242	34521	60989
	연인원	6816	9303	10700	13670	21185
	(남성)	(104)	(181)	(208)	(230)	(310)
(육아휴가/산전후휴가) *100		21.2	24.1	26.0	27.9	36.2

자료: 심상용(2009), p.39의 표 재구성.

- 낮은 출산휴가 사용과 낮은 육아휴가 사용 그리고 남성들의 낮은 육아휴가 사용율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출산 및 육아휴가의 임금대체율이 낮다는 점인데 출산휴가의 경우 최대 135만원까지, 육아휴가의 경우 50만원으로 임금대체율이 17% 밖에 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80%, 덴마크는 90%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육아휴가의 경우 해당년도의 최저임금⁴⁾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출산 및 육아휴가에 대한 기업의 부담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장려금이 월20-30만원 수준으로는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대한 기업의 부정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나 채용인력임금의 50% 이상 지원 등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각종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논의가 있으나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사용시 관련 비용을

4) 2010년의 최저임금은 시급4,110원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고용장려금⁵⁾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넷째,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부모휴가의 성격으로 남성이 육아휴직 1년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사용실적은 저조한 편이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시 실질적인 임금대체가 가능한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여성 및 청소년 실업:

1) 노동권에 대한 문제

- 여성에 대한 backlash 현상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은 과거 7,80년대 발생하였던 임신차별 등과 같은 직접적인 성차별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고, 퇴직 등이 발생(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조사결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도 경제위기 이후 여성 일자리는 남성 일자리에 비해 평균 12배 이상 줄었다는 지적이 있다(은수미, 2009: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여성가족 패널조사 2차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결혼한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 견줘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차 조사를 했던 여성 임금노동자들을 1년 뒤 다시 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 1251명 가운데 27.7%인 347명이 일을 그만뒀다. 반면 미혼 여성은 391명 가운데 81명(20.7%)이 일을 그만뒀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통계는 1차 패널 조사를 했던 9997명의 여성들을 추적해, 2차 조사에 응한 8364명을 2008년 10월부터 아홉 달 동안 조사한 결과다(한겨레 1.28일자. 이완).

- 여성 사회권의 핵심적 문제는 유급노동에의 기회이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OECD평균 61.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2006년도 50.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49.2%로 떨어졌다. 여성 고용율⁶⁾ 역시 2007년 48.8%를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여 2009년은 47.7% 수준이다.

5) 현재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과 일명 엄마채용장려금이라고 하는 출산여성신규채용장려금 등의 제도가 있다. 사용자에게 기간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한다.

6) 고용율은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을 말함

-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2010년까지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참가율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NGO 보고서에서 언급한 수치로 2006년 4월 여성가족부가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55%까지 높이겠다는 발표에 근거한 것이었다. 2009년 현재 49.2%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올해인 2010년에 55%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대변혁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현 정부가 발표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은 2014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6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유연근무제이다. 퍼플잡 혹은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만들기가 여성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이러한 현상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자리만들기가 비정규직 시간제 여성의 확대이며 이러한 일자리가 차별과 저임금, 저지위를 결과한다면 이는 보다 심각한 여성차별의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부문별한 여성 일자리 확대가 여성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등치되지 않아야 한다. 관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설계 하에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일자리에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표 3>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단위:%)

성별	항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경제활동참가율(%)	61.5	62.1	62	61.9	61.8	61.5	60.8
	고용률(%)	59.3	59.8	59.7	59.7	59.8	59.5	58.6
남자	경제활동참가율(%)	74.7	75	74.6	74.1	74	73.5	73.1
	고용률(%)	71.9	72	71.6	71.3	71.3	70.9	70.1
여자	경제활동참가율(%)	49	49.9	50.1	50.3	50.2	50	49.2
	고용률(%)	47.4	48.3	48.4	48.8	48.9	48.7	4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구직기간 4주기준

- 최근 제공되는 청년실업 대책은 인턴제,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 학습보조 인턴교사 등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청년 실업은 실제 수치보다

과소대표되어 있다. 정부투자기관들의 청년고용의무를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시켜야 하며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진작을 위한 클러스터 활성화 등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직업훈련 관련

- 직업훈련은 실업정책일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정책이기도 하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해는 특별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여성부와 노동부에서 각기 시행하고 있는데 2007년 여성부 프로그램에는 4,852명이 참가했고 노동부 프로그램에는 63,829명(재직자 훈련 미포함)이 참여했다. 그러나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8.4% 밖에 되지 않았다.
- 스웨덴 국가 노동시장 행정체계(Arbetsmarknadsverket:AMV)는 구인과 구직의 연결과 노동시장 정보, 배치, 상담 등의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고 성별간 평등이 보장된 유연하고 안전한 노동생활’을 노동시장정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동시에 AMV 종사인력의 63%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구직자들의 고용훈련은 AMV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데 고용훈련에 참여한 성별 참여자수를 보여주는 <표4>는 ‘성별간 평등’의 실재를 짐작하게 한다(한승희, 2009).

<표 4> 연간 월평균 참여자수와 경비

년도	참여자수	남	여	전체경비(SEK,백만)
1995/1996	45,624(100.0)	23,241	22,383	12,414
1997	36,932(100.0)	18,901	18,031	6,178
1998	41,899(100.0)	22,147	19,752	7,234
1999	44,955(100.0)	22,406	22,549	8,296
2000	30,599(100.0)	15,251	15,308	5,546
2001	28,377(100.0)	14,340	14,037	5,761

자료: 한승희(2009), p. 63

- 나영선(2008)의 지적처럼 경력단절여성과 재직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데 노동부의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생애적 특징을 고려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한부모 여성가구주 등의 경우 직업훈련의 기간 중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생계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에 따른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직장내 성희롱

- 현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사업주의 예방의무와 관련 당사자들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성희롱을 형사범죄화하는 법령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성희롱이 차별행위이며 이는 범죄적 행위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식은 비교적 확대되고 있으나 직장내 성희롱을 형사범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이 형사범죄화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성희롱은 언어적 성희롱,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구성요건상 보다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일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현재 사업주의 예방의무와 교육을 통한 사전방지에 보다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예방적 차원의 규정들이 실효성있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업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이버 교육이나 교재 회람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 또한 부실하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교육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영세사업장의 경우 개별 기업에 자율적 시행을 맡겨 놓기 보다는 지역별로 노동부 차원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가정폭력

- 여성관련 폭력에 관한 법률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쉼터 제공, 상담, 치료 등이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여성단체 등을 비롯한 NGOs Alternative Report에서 언급하고 있는 친고죄에 대한 폐지 부분이다. CEDAW는 이의 폐지를 권고하였지만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없으며 ‘당사국이 입법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되어 있다. 친고죄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이해 부족이 낳은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NGO 차원의 노력과 인권위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고 본다.

○ 청소년 성교육

- NGO 보고서는 2000년의 경우 임신한 10대들의 70-80%는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고 혼전 임신은 학교와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10대들의 70% 이상이 피임을 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대한민국은 20-2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수술률이 높다는 정부차원의 공식 통계정보가 없으며 이는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는 2005년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근거로 연간 약35만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고 이 가운데 미혼여성의 비율이 약42%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갤럽 조사 등은 1년 150만건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한다. 통계적 수치의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하더라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은 혼전 임신을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도록 하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세 가지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건강권의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고 둘째, 여성의 재생산권 차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여성의 결혼유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대책이 미혼모에 대한 재정적, 심리적 지원이라는 점은 매우 적절한 권고이다. 셋째, 교육적 차원에서 특히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체계적인 실행이며 이를 위해 예산배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 아동빈곤

- 아동빈곤율은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 중 빈곤아동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가구 단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가구 중에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아동 빈곤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아동의 절대빈곤율은 2000년에 7.68%에서 2004년 8.79%로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상대빈곤율은 2000년에 10.97%, 2004년에 14.57%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 2008:256) 그러나 실제로 빈곤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어렵다. 이는 빈곤실태조사가 가구단위의 소비실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내 아동의 소비는 가족내 아동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와 밀접하고 실제로 가족내 아동의 소비 실태를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고 2008년 상대적 빈곤율(가처분기준 전국가구) 15.1%를 18세 미만 아동인구 10,902,000명에 적용해보면 164만명 정도가 빈곤상태에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빈곤아동의 현주소는 2009년 현재 약 45만명의 아동이 점심을 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부처와 보건복지부처를 통해 끼니를 거르는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100% 지원되어야 한다.

4. 제언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 3차 최종권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새로운 주제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려사항 표명과 더불어 권고를 통해 당사국의 이행의무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 분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주목할 점은 산업사회 이후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논의되었던 위험들과 달리 새롭게 출현된 위험들에 대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이행방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돌봄 부재 등의 사회적 현상들이 모든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적 차원의 사회권 강화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실업의 문제에 대한 목표치 달성을 권고한 점과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향을 분명히 한 점 등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권고가 항상적으로 적실성을 갖추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가 국가적 상황에서의 차이를 얼마나 고려하는지의 문제일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시의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10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의 권고는 3차 최종견해가 표명된 것이 2009년 말이라는 점에서 정부 이행계획의 비현실성을 담보해주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성의 내용이 보다 실현가능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악되지 않는 실태의 파악(예를 들어 한부모가구 실태, 인공임신중절 실태)과 이를 통한 사회권 수준의 강화 등이다.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 한국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이번 최종견해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가정폭력 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친고죄 폐지 등)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인식 확대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인권위 그리고 NGOs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종견해의 우려사항과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노력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작금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2008),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 김영미(2009), “분포적 접근으로 본 한국 성별임금격차 변화, 1982~2004년”, 경제와 사회 제84호
- 나영선(2008), “여성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과제” AA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심상용(2009),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정책의 발달과 전망:근대화관점, 계급동원관점, 신제도주의관점의 적용”, 사회복지정책 Vol.36, No.4, pp27-54.
- 은수미(2009), “신자유주의와 여성정책- 한·독 여성비정규직 대책을 중심으로”의 토론문, 한국여성노동자회.
- 이숙진(2009),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겨울호, 제84호, pp.230-255
- 이주희(2009), “경제위기와 여성의 사회권”, 2009 사회권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비판사회학회.
- 전명숙·김향아(200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 3년간의 여성고용 현황분석” 노동리뷰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2010), “사회통합을 위한 고용-빈곤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인권재단
- 한승희(2009), “위기사회와 학습권:사회권으로서의 학습의 조건과 교육정책에 대한 함의”, 한국인권재단

〈세부 주제별 분석 및 평가〉



이주, 외국인 분야

김 현 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최 원 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이주, 외국인 분야

F2비자, 이주노동자, E6비자

김 현 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개 괄

이주자와 외국인의 인권과 사회권은 국제적이고 초국적인 사안이며 따라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통해 한국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주자와 외국인을 다루는데 있어서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법적, 방법론적 내쇼널리즘(nationalism)을 적용하고 있다. 이주자들은 ‘원치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 국가의 필요성(needs)에 의해 ‘유도된’ 이주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주 방식, 체류 절차, 체류 시 사회권 보장, 통합 또는 귀환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권리와 인격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주는 한 개인의 삶에서, 끝나지 않은 지속되는(on-going)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주자가 한국사회가 맺는 관계, 한국 사회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한국 정부의 긴급하고 다각적인 노력 없이는 한국 내에서 또는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이주/외국인 정책의 영향력에 의해 파생된 많은 수의 “dis-placed person”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제적, 초국적, 장기적 관점으로 이주/외국인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1. [제12항] F2 비자

<우려사항> 외국인의 체류자격(F2) 획득시 배우자 의존

<권고>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남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차별

을 해소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

분석 :

- 한국 내 법적 성원권 획득의 전 과정에서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에 관한 의사법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당사자의 동반 없이) 혼인등록을 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 비자연장 시 동행, 국적신청, 이혼증명서 발급 등 전 영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F-2 비자를 가진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내 법적, 사회적 지위의 획득이나 파기는 한국인 배우자의 관할, ‘의지’나 ‘배려’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중개업에 의한 결혼인 경우는 한국 남성에게만 일방적인 배우자 선택권이 주어지고 남편의 주요한 정보(직업이나 사는 곳, 가족관계 등)가 과장, 왜곡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 여성의 배우자 선택의 결정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체류의 전 과정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배우자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행사됨으로써 ‘노예제’ 결혼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F-2 여성의 남편 동반도 법적조항이라기 보다는 관습적으로 요구되거나 지침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이지만 출입국관리 직원(대부분이 남성)의 인식이나 지침의 변화 없이는 바뀌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여성들의 여권이나 관련서류 등을 중개업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서류대행’이란 이름으로 여성들의 체류권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낳고 있다.
-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체류에 관련된 결정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못하고 ‘지침’의 형식으로 사례별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 심각한 문제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사이의 통합성이나 연계가 없고, 이 두 법 모두 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의 결정이 ‘지침’으로만 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이 없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출입국관리 직원의 전문성 부족과 직권 남용이 심각하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춘석 의원 발의, 2009년 12월 14일)이 상정된 상황

- ‘체류자격 심사과정과 방법에 대한 명문화 필요성’ 강조)
- 최근 법무부가 ‘국적법’을 정비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역차별 논의 등을 상쇄한다는 명목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반 정주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 여성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대 정부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법제정을 위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춘진 의원 인신매매처벌법안 발의 준비 중).
-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복잡한 서류를 독립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이주 여성의 경우 남편의 동반을 절실히 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남편의 나쁜 의도, 게으름이나 무지 때문에 피해를 입는 여성의 경우도 생겨난다. 또한 여성들은 체류 자격을 보장 받기 위해 남편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이거나 사회적 성원권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제공, 통번역서비스, 다국적 신청서 형식 등을 마련하여 체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에 근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야 한다 (법부무 출입국관리소 다언어 홈페이지 제작 등).

2. [제21항] 이주노동자 차별

<우려사항> 이주노동자 착취 및 차별

<권고>① 이주노동자가 노동법 상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 근로자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재검토할 것

② 사업장 변경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

<분석> 2004년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노무인력(E-9)으로 도입한 단기방문노동자제도(guestworker)이다. 한국 정부와 송출국들은 노동이주 관련 협정(MOU)을 체결하고 송출국은 대한민국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공식적인 모집, 선발, 계약, 출발 전 교육을 관리한다.

-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외국인력도입제도이지만 ‘초국적’ 영향력을 가진 제도로

제도의 운영이 현지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제도의 제고가 필요하다. 한 해 송출규모를 넘어선 과다한 대기인원 선발(3배수이상)에 따른 현지에서의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PS 시스템에 대한 현지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가 시급하다.

-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이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총 3회의 사업장 변경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시 구직등록기간 1개월, 구직기간 2개월을 초과할 시 미등록자로 처리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미등록자’로 전락시키는 현재의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양하다.

(1) 단순노무인력: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업종도 한국어 시험 점수에 따라 배치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체결한 계약과 한국에서의 일 경험의 괴리가 심하다는 점이다. 또한 단순노무인력의 노동 시장은 매우 유연하며 특정 업종의 전문 기술 인력을 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이동의 폭이 매우 넓다. 특히 경기 침체와 불황을 인력 조절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해고에 의한 강제적 이동의 사례도 많다.

(2) 사업주에게 ‘고용허가’를 발급해주는 점: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고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미흡함. 이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주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

(3) 성별 불균형성: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노동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남성노동자를 선호하고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외국 인력의 ‘성별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7년 10월말 기준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88,720이고 남성이 78,535명, 여성이 10,185명으로 남성이 88.5%를 차지한다. 구직등록기간 및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미등록처리 비율이 총 2,795명중 남성 581명, 여성 2,214명으로 미등록처리자의 79.2%가 여성이다(노동부 정부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접수번호 416636호). 한국에 입국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이주지원단체에 접수된 사례들 중 성희롱, 성폭행, 임신 등의 사례가 있음), 구직 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여성 노동자들은 한국 체류를 위해 결혼, 성관련 사업 등으로 유도되면서 브로커에 의한 사기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007년 국가인권위 (김현미, 김기돈, 김민정, 김정선, 김철효)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실태조사>)

3. [제25항] E6비자 및 인신매매

<우려사항> E6비자 여성 근로자 성착취 문제 및 인신매매

<권고>①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의 전쟁 노력을 강화하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래와 같이 할 것

- ②E6 사증 발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③인신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
- ④법집행 공무원, 검사, 판사들에게 인신매매 방지 입법에 대한 의무교육을 제공할 것
- ⑤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법적 지원을 늘릴 것
- ⑥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민원 접수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⑦인신매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정의를 실현시킬 것

<분석> 현재의 E-6(예술홍행비자)로 국내에 유입된 여성들은 공연법에 의거해 사증

을 취득하지만 실제로는 공연자가 아닌 유흥접객원으로 외국인 전용유흥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강요받는다. 특히 호텔유흥사증으로 입국하는 여성들의 경우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연(가수, 무희 등)을 기대하고 온 여성들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바파인의 할당량을 채우고 2차 등의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함으로써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주여성들의 자기 정체성과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을 규정하는 정체성(성매매여성) 사이의 심각한 괴리가 있지만 한국에서 E-6여성을 기지촌의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하여 치외법권적인 장소에 놓인 여성으로 취급하여 피해자 구제나 가해자 처벌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피해자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귀환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연추천의 권한을 갖고, 노동부가 공연기획사 허가에 관한 업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사증발급을 하고, 보건복지부가 여성들의 건강문제를 관할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업무가 분산되고, 기관들 간의 업무 공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과 관련한 폭력이나 인신매매 등에 대처하기 어렵다. 외국인 연예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특별 부서를 마련하거나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E-6 비자로 입국한 여성들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법에 따라 근로자로 관리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최저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변경 등과 관련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의 근로 감독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 여성들의 상황은 전형적인 ‘인신매매’의 경우이며 강제된 성매매이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한 처벌과 성매매방지 특별법에 외국인 보호 조항을 강화하여 해결해야 한다.
- 문화관광부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을 통해 사증을 발급하는 현행 공연추천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사증발급을 실제 공연인 대상으로 제한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두레방, 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이주, 외국인 분야 난민 신청 기간

최 원 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1. [제10항] 난민신청 기간

<우려사항> 난민이나 망명자 지위 신청기간의 장기화

- <권고> ① 출입국관리 담당 인력 증진을 포함하여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을 집행하는데 적절한 자원을 지원할 것
- ② 망명 절차를 표준화 할 것
- ③ 난민과 망명신청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 ④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난민과 망명자 자격을 부여한 통계를 포함하여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1. 난민신청기간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총평

- 위원회에 제출된 NGO 반박보고서에는 난민신청 및 심사 기간의 장기화 추세가 최근 많이 해소되고 있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54. 2009년 이후 한국 정부는 난민인정절차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신속성을 강조한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난민인정심사 건수는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난민신청자들 역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다수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 사례를 심사하는 난민인정협의회는 별도의 인터뷰나 조사과정 없이 법무부가 제출한 요약자료만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는데, 이 또한 2시간의 회의 시간 동안 평균 140여 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불성실한 심사로 인해 많은 수의 난민신청자들이 행정법원에 난민인정불허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난민신청자의 평균적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의 통계만이 존재하다. (표는 NGO 반박 보고서 내용 참조)

-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Comments of NGOs on the Replies b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o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ovember 2009

-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는 이러한 최근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난민인정 심사가 2009년 하반기 이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최근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권고 내용은 최근 한국의 난민인정 절차의 문제점(지나치게 신속한 진행을 인한 심사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저하)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권고 (a) 출입국관리 담당 인력 증원 등 지원 문제에 관하여

- 담당 인력의 증원과 적절한 자원의 지원은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의 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인력의 증원뿐만 아니라 인력의 전문성의 강화를 비롯해, 적절한 자원의 구체적 형태와 같은 표현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3. 권고 (b) 망명 절차의 표준화에 관하여

- 망명 절차의 표준화에 대한 지적은 난민신청 및 인정절차 전반의 매우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 우선 한국에서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의 부족, 공·항만에서의 인정절차의 마련과 같은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외에도 난민신청 후 심사 절차, 특히 출입국공무원과의 면담 과정의 표준화를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행 공무원 면담은 면담 시간, 질의 내용, 통역 제공 여부, 면담 태도 및 언행 등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의 개선과 표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인다.
- 또한 난민신청 절차 전반에 있어서 적절한 통역의 제공과 법적 대리인의 동행 또한 망명 절차 표준화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행 난민신청 절차에서는 전문적인 통역이 제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대리인 또는 전문가의 모니터링과 개입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 그리고 NGO 보고서에도 언급된 것과 같이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난민인정협의회 의회의 줄속 운영 역시 이러한 표준화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평균 2시간 내에 100건 이상의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형태는 분명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가 정상적 절차에 의해 일관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권고 (c) 난민과 망명신청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에 관하여

- 이는 정부 보고서나 NGO 보고서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통계자료의 내용과 질이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과 분석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한국 정부의 난민관련 통계는 신청자 및 인정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자료와 주요 국적별 현황을 각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현상 분석과 정책마련 및 학술적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난민신청자 뿐만 아니라 인정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세부 주제별 분석 및 평가〉



노동 분야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국가인권위 노동권 전문위원

김 인 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 분야 비정규직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국가인권위 노동권 전문위원

15. 위원회는 34.9%의 노동력이 비정규직이고 여성근로자의 44.1%가 비정규직, 그리고 특별경제구역 내 근로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을 우려한다.
- (a) 비정규직 근로자 월수입이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한 점
 - (b) 비정규직과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이 부적절한 점
 - (c)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들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2년의 근로계약이 종결되기 전에 즉각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음으로 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기가 불가능한 점
 - (d) 비정규직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점(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비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즉각적으로 결론지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아래 권리들을 부여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 (a)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한 임금
- (b) 적절한 사회보험 적용
- (c) 실직수당, 휴가 및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노동법 보호
- (d)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 검토의견 (김유선)

-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09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임금노동자 1,648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55만 명(51.9%)으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임. 남자 비정규직은 398만명(41.8%)이고 여자 비정규직은 457만명(65.6%)으로, 여자는 3명중 2명꼴로 비정규직임.

-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55만원이고 비정규직이 120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7.2%임.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이 1만3,730원이고 비정규직이 6,650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8.4%임.
 -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2~99%인데, 비정규직은 34~38%임.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3~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6~27%만 적용받음.
 -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44.1%이고 비정규직이 18.4%임. 교육훈련 시간은 정규직이 18.0시간인데 비정규직은 5.3시간임.
 -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00만명(12.2%)이며, 정규직은 183만명(23.1%), 비정규직은 17만명(2.0%)임. 비정규직 조합원 가운데 기간제근로는 11만명(3.9%)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권위원회가 (1)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고, (2)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며, (3)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사회보험이 부적절하고, (4)비정규직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 한국 정부를 상대로 (a)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b)적절한 사회보험 적용 (c)실직수당, 휴가 및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노동법 보호 (d)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등의 권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도록 강하게 권고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그렇지만 비정규직 비율 51.9% 여성 비정규직 비율 65.6%인데도, 사회권위원회가 이를 각각 34.9%와 44.1%로 축소 발표한 것은, 정부쪽 통계를 일방적으로 인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며,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에 대한 천착과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권고가 빠진 것은 아쉬운 일임.

-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이 구조화된 것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규제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큼.
- 따라서 정부는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a)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b)사회보험 적용확대 (c)실업수당, 휴가, 연장근로수당 등 노동법 보호 (d)부당해고 방지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임.

노동 분야 최저임금, 산업재해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국가인권위 노동권 전문위원

16. 위원회는 점점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법적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사회권규약 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최저임금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규약 제7조 제(a)항 제(ii)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게 최저임금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까지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할 것과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금 등 여타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적 최저임금이 시행되도록 더한층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바,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변경이 이주노동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법·제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것으로 평가됨.
 - 문제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그나마 정해진 최저임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임.
 - 법·제도 측면에서도 장애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습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감액 적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2009년 한길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액은 적정한가?’라고 질문하자, ‘너무 적다’는 응답이 72.4%이고, ‘적정하다’가 24.6%, ‘너무 많다’가 1.2%였음.

- OECD 국가 중 한국의 최저임금(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
- 노동부의 2009년 3사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서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은 1만4,929원[월평균임금 264만1천원 ÷ 월근로시간 176.9시간]이며, 시간당임금 대비 최저임금(4천원) 비율은 26.8%임.
- 2009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법정 최저임금(4천원) 미달 자는 210만명(전체 노동자의 12.8%)으로 추정됨.
 -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명(9.4%), 2007년 8월 189만명(11.9%), 2008년 8월 175만명(10.8%), 2009년 8월 210만명(12.8%)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줌.
 - 2009년 8월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는 9만8천명(8.3%)임. 이는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줌.
- 최근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1)고령자 감액적용, (2)수습근로자 감액적용 기간연장(3개월→6개월), (3)최저임금에서 숙식비 차감지급 등 기존의 제도마저 후퇴시키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태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가 (1)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것, (2)최저임금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최저임금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까지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할 것, (4)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 (5)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계산방식 변경이 이주노동자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권고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다음 조치를 통해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 (1)평균임금의 50%처럼 최저임금의 적정 목표를 정한 뒤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함.
 - (2)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 그럼에도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가 210만명이나 되는 것은, 벌칙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없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임.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최저임금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벌금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많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 (3)장애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을 100% 전액 지급해야 함. 고령자 감액적용,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기간연장, 최저임금에서 숙식비 차감지급 등 기존의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여권 일각의 논의는 철회되어야 함.

18. 위원회는 당사국의 높은 수치의 산업재해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이나 근로조건보다는 근로자의 체류자격 조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사회권규약 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이들 및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 안전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2007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자는 9만147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406명임.
 - 산재사망률(경제활동인구 10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은 10.0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경제적 손실액은 16조2,114억원(산재보상금 3조2,423억원 포함)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393만4천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 53만6천일의 119.3배에 이릅니다.

- 2008년 산업재해자는 9만5,806명이고 사망자는 2,422명으로, 2007년보다 증가했음.
-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높은 산업재해(특히 중대재해) 발생에 우려를 표하면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과 노사 쌍방에게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근로감독관 증원,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는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렇지만 유엔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관 증원과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만으로, 산업재해 발생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임.
 - 한국에서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은, 열악한 작업환경, 낡은 설비투자, 중소기업체에 유해위험 작업 하도급, 산업안전 감독행정 미흡, 범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미한 처벌,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권 경시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임.
- 정부는 유엔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관 증원과 적절한 교육훈련 제공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노동 분야 노동3권, 업무방해죄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 위원회는 헌법(제33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일부 공무원의 경우만 노동조합권을 향유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노동조합이 법에 의해 금지되고 2001년 설립된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규약 제8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제8조).

위원회는 결사의 권리 및 집회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가 2001년에 제출한 협약(제87호)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과 파업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무원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성과)

최종견해 제19항은 사회권규약 제8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관계법령을 ILO협약 제87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2001년 5월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단결권과 파업권에 대해서는 두 차례 연속 권고를 행하였다.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수의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은 ILO 협약 제87호에 위반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최종견해에서는 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이 법에 의해 금지되고 전국교

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사회권규약 제8조 위반임을 확인하고 있다. 2001년 11월에 설립된 전국교수노조가 수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고,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는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다소 미흡한 문제에 대한 비판

-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3권 보장이 후퇴하는 현상”, 대표적으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시정명령, 노조설립신고의 사실상 허가제로의 운용 등 정부가 노사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오히려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노동정책(2009.9.24.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8항, 제37항 참조)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비록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이명박 정부 이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하지만, 국가보고서 심사 시점에 있어서 한국의 노동인권 침해상황이 빠져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결사의 자유) 제한. 특히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등 이미 설립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마저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의 태도.
- 외주용역근로자의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인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
- 공공부문 단체행동권의 과도한 제한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필수유지 업무제도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제도의 존치 등
- 공공부문의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 및 일방적 해지

3. 국내이행을 위한 구체화 방안(정부의 역할)

최종견해 제19항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관계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밝혔듯이 그 방향은 ILO 협약 제87호에 부합하도록,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성격을 가지는 관리직 공무원과 경찰/군대를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가입범위 제한규정(시행령 포함)을 삭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과 교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서비스와 학습권과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쟁의행위가 허용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 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가입범위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교원을 포함하거나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 위원회는 형법 제341조 ‘업무방해죄’에 기대어 근로자에 대한 빈번한 기소 사례 및 파업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force) 사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조합의 권리들(trade union rights)을 적절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제8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공공질서유지에 절대적으로(absolutely) 필요한 수준을 넘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체제적인 수단으로서의 ‘업무방해죄’ 조항의 적용을 억제함으로써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결성의 자유 보장 협약’(1948)과 제98호 ‘집회와 단체협상의 권리 협약’(1949)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1.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성과)

최종견해 제20항의 내용은 사회권규약위원회가 계속 지적하였던 사항이다. 위원회는 2001년 5월 제2차 국가보고서 심사에 대한 최종견해 제20항에서도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

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의 수는 대체로 매년 약 200여명으로서, 이들 중 구속사유의 50%정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속뿐만 아니라 벌금 등이 적용된 예는 더욱 광범위하다. 한국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하며, 단순한 노무제공거부 형태의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파업권을 제약하고 있다.

최종견해 제20항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41조의 업무방해죄 적용을 억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나아가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를 비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것이다.

2. 다소 미흡한 문제에 대한 비판

최종견해 제20항에서는 ‘업무방해죄’ 조항의 적용 억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가 24개에 이르고 있고, 처벌의 정도 역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 쟁의행위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국가에 의한 형벌권을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종견해에서 이와 같은 노조법상 과도한 쟁의행위 금지조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의 사회권 규약 위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어야 한다. 노동관계법 자체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입법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법개정시마다 처벌규정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였어야 했다.

3. 국내이행을 위한 구체화 방안(정부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자료를 통해서 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형법 제341조에서 ‘위력’ 업무방해죄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방안
-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해선 형법 제341조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
- 노조법상 쟁의행위 제한금지 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즉 노조법 제8장 벌칙규정 중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방안
- 업무방해죄는 그대로 존치시키되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노조법 제4조의 해석을 개선하는 방안

〈세부 주제별 분석 및 평가〉



사회보장, 주거, 건강, 교육

윤 홍 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김 남 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 상 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윤 성 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회보장 분야

윤 홍 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

가.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을 1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아시아에서는 선례가 없는 급속한 경제발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취약·소외 계층(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groups)의 권리 향상을 성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불균형을 우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8.2%, 특히 일부 취약·소외계층이 사회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가장 취약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원칙적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불충분한 사회보장지출, 의료·교육·수도·전기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서비스의 높은 민간비율로 인해 취약·소외계층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 의무 기준과 소득수준, 그리고 보편적 접근 등과 관련하여 검토 중이라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검토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노숙인, 비닐하우스 생활자, 보호시설 생활자를 포함한 ‘안정적 생활’의 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의 의미

1997년 경제위기와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의 기본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된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생활수준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가구(4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제도시작 시점인 1999년에는 40.8%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8년에는 30.9%로 지난 10년동 무려 24.2%(9.9%포인트)나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삶의 수준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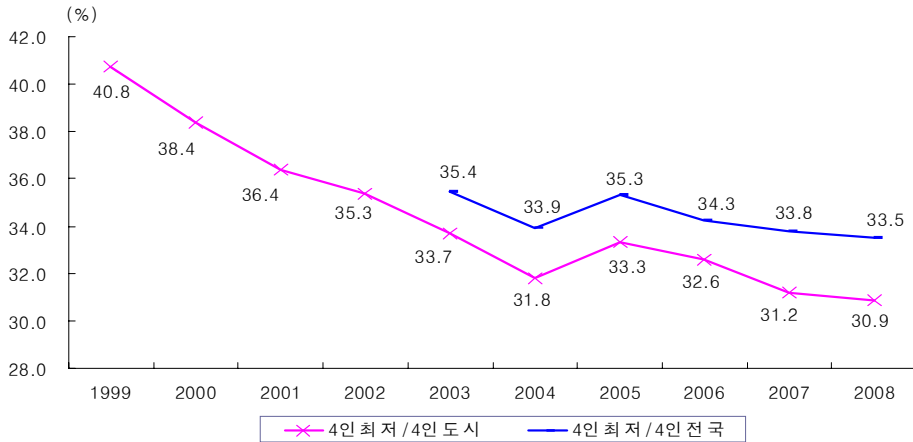


그림 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저하

이러한 현실에 기반 했을 때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할 최소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국민 모두에게 기초생활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 권고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여, 욕구가 있는 모든 국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포괄해야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첫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 기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해야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하게 수급자격을 박탈당해 사각지대에 방

치되고 있는 약 60만 가구(100만 명)의 수급권을 즉각적으로 보장해야한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의 안정적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지난 2007년 8월 제2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사항(차기 최저생계비 계측시 까지 상대적 방식 도입 등 계측방식 변경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과 같이 전물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이 아닌 상대적 계층방식(수준유지방식)을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민등록상 문제(말소, 특히 무적자나 주민등록번호를 잇는 자의 경우)를 가진 자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판별하는 최소거주기간(1개월)을 즉각 폐지해야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노숙인 시설(특히 거리노숙인이용시설인 상담보호센터)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야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홈리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 등의 실무자를 통해 수급자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토록하고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넷째, 한국정부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급여수준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는 빈곤 규모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땀질식 한시대책이 아닌 새로운 양상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국민연금

가.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분적으로만 혜택을 받는 노인들의 규모가 큰 데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 이러한 우려는 당사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7%에서 14%로 두 배로 증가하는데 겨우 22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제9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인들이 일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최저보증연금(universal minimum pension) 혹은 사회부조급여(social assistance benefits)와 같은 제도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혹은 보완으로 구상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의 의미

노인집단의 3분의 1이 빈곤상태인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수급에 배제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급여 수준 역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아래 표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수는 2006년 현재 전체노인 인구의 19%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급격한 연금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축소시켰다.

표 1.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율 추이

(단위: 명, %)

년도	합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율
2002	353,623	321,839	2,015	29,769	9.4
2003	427,606	385,285	2,261	40,060	10.8
2004	550,954	496,287	2,999	51,668	13.2
2005	704,187	635,190	3,904	65,093	16.1
2006	870,497	783,832	5,021	81,644	19.0

자료: 통계청, 2007년 고령자 통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후생활보장과제에 대한 적합한 권고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최저연금보증제도 또는 사회부조급여는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필요한 정책과제일 것이다.

다. 권고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최소한 다음의 정책과제를 실행해야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자영업 종사자를 위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보편주의적 기초연금 또는 노령수당)를 마련해야한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시급히 시행해야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조세 혹은 공적재원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해야한다.

둘째, 지급되는 연금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현실적으로 연금수급자가 안정적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금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제26항 빈곤분야

가.. 빈곤퇴치 전략을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것

1) 권고의 의미와 평가

유엔 위원회는 빈곤퇴치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각종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을 통해 보호하는 빈곤층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엔 위원회가 한국의 최저생계비를 빈곤선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점을 전제하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집단의 비율은 예산의 충분성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느 나라도 빈곤층의 100%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예산>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보장받는 빈곤층의 규모와 보장금액의 수준 측면에서 접근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빈곤층의 몇 %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제도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제도가 결합하여 빈곤층을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참고로 보충급여 원칙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8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3.2% 규모이다. 이는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이 2008년 현재 13.3%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적은 규모이다. 하지만 최근 기초노령연금이나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2008년 빈곤수준별 절대빈곤율

	빈곤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합계
가구	17.8	21.8	78.2	100.0
개인	13.3	17.0	83.0	100.0

주: 수치는 전체 가구 및 인구의 %

자료: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2008년 원자료

또 다른 문제점은 보장수준에 관한 것이다. 전체 빈곤층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지원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점은 많은 빈곤층이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이 소액의 지원이기 때문이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 위원회의 권고안은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에 대한 예산확충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것은 현 복지제도의 실태를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권고안 자체는 매우 추상성이 높아 구체적인 함의를 갖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2) 이행전략에 대한 의견

유엔 위원회의 권고안이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더 길게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권고안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 한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라는 표현을 보다 구체적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 중 많은 지원이 직접, 간접으로 빈곤퇴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제도를 지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적절한 권고는 빈곤층 중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축소 및 보장수준 상향 조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를 보호하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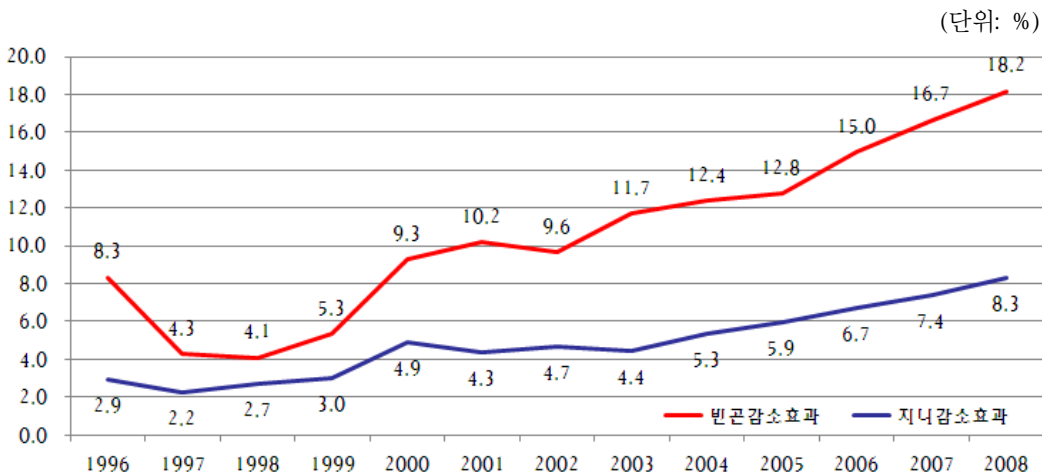
나. 취약 · 소외계층에 대한 빈곤퇴치 전략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1) 권고의 의미와 평가

빈곤퇴치 전략(정책)의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조직은 유럽 많은 국가가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국들은 <빈곤과 소외에 대한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정책을 평가하고, 정부 관련 기관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센터 등 관련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빈곤과 소외 문제에 대한 주요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정

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 점에서 빈곤퇴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빈곤퇴치 정책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지금도 빈곤퇴치를 위한 주요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우리사회의 조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종합적인 정책효과이지, 빈곤퇴치 정책의 효과라고 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점은 <빈곤퇴치 정책>의 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단순히 빈곤율의 감소효과 외에도 생활여건의 개선, 가족관계의 복원 등 다양한 효과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통계청, KOSIS의 자료를 가공

<그림 1> 조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빈곤감소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2) 이행전략에 대한 의견

빈곤퇴치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미 발표되고 있는 수준의 포괄적인 효과성 그것은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의 포괄적인보존인구체성을 높여 포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빈곤퇴치 전략(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예를 권고들면, 안을 예로 곤은 이미 발표되고 있지만곤퇴당장표되러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후 추진계획을 요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동 전략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

1) 권고의 의미와 평가

빈곤퇴치 전략과 관련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통합시킨다는 표현은 매우추상적이다. 따라서 이 권고가 갖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료화하는 방식을 권고하고자 한다.

빈곤퇴치전략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즉 사회권을 완전히 통합시키라는 제안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극적인 생계보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리들을 함께 보장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빈곤퇴치전략이 소극적인 생계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되는 셈이다. 둘째,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권으로 인식된 각종 권리를 ‘권리답게’ 온전하게 보장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안되는 제도, 실질적인 주거보장이나 교육보장이 되지 않는 지원들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사회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장과 권리로서의 보장 개념에 충실한 계획을 제시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2) 이행전략에 대한 의견

빈곤퇴치 전략이 주요 사회권과 관련해서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인지, 이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사회권 보장수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라. 성, 연령, 가구당 아동 수, 편모·편부 가구수, 도·농 인구 및 인종집단 별로 세분된 빈곤생활자 인구비율에 대한 최신의 연간 통계를 포함하여 동 전략 하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1) 권고의 의미와 평가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인구집단 및 지역특성별로 빈곤실태를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추진 결과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대부분의 기초분석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현재 국가통계를 통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지역별 빈곤율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빈곤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실태를 정부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2) 이행전략에 대한 의견

우리사회 빈곤층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지역별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지역별 빈곤율 추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현재 이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로 당장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진단과 관련해서 정부가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첨부하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주거 분야

김 남 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I. 노숙인 부분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숙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

1. 노숙인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노숙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채택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주거없음(homelessness)”의 범위를 분류한 통계정보와 노숙자를 위한 국영쉼터(state-run shelters)의 수와 그 수용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정부보고서는 “홈리스”의 정의를 “정규적인 적절한 주거지가 없고 길거리, 역사, 공원 같은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등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거나 일시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그 수를 2008년 말 기준으로 12,328명으로 보고하고 있고, 국영쉼터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운영·지원하고 있는 홈리스를 위한 보호시설은 2008년 말 기준으로 112개소, 총 수용능력은 13,180명이라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보고서의 홈리스는 거리와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시설에 수용된 인원까지를 포함한 숫자로 보이는데, 2005년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이외에도 요양시설, 미인가시설, 무허가기도원, 쪽방, 고시원거주자

등을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9만 7천여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노숙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이 노숙인을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임시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가장의 실업·파산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가족 등 돌봐줄 수 있는 연고가 없는 경우 등 노숙으로 나아가게 된 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임시수용 이후의 장기적인 거주·직업·의료 대책 등이 부재한 것도 문제이다. 이에 따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노숙인의 원인과 범위를 점검하고 이러한 노숙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계획,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노숙인 문제에 대하여는 2단계의 접근이 밀접히 결합되어 궁극적으로는 임시적인 관리가 아니라 노숙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먼저, 가정해체 등으로 노숙생활로 내몰리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행정 차원에서 노숙인 쉼터 등의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그 다음단계로 국토해양행정 차원에서 이들이 노숙인 쉼터를 떠나야 하는 6개월의 기간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거주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후자의 행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숙인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하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위 긴급주거지원 계층에는 광의의 노숙인 즉, 협의의 노숙인 외에 2005년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광의의 노숙인의 범위에 포함시킨 요양시설, 미인가시설, 무허가기도원, 쪽방, 고시원거주자 등도 임시거처에 주거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공통되므로 안정적인 장기주택을 제공한다는 복지행정의 측면에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주거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노숙인 등 임시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까지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도 있으나, 주거수당은 이러한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를 마련한 경우에 그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수당의 수준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하도록 한 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마련할 만큼의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하게 주거수당을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주거수당은 쪽방과 같은 비정상적인 주거에 거주할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데, 쪽방이라는 것은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임시적인 주거에 불과한데, 최소한의 주거수당을 지급하니 그 주거수당으로 가족을 데리고 쪽방 등의 임시주거에 입주하라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정부가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하여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나마 시작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법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법적근거와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노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성, 연령, 도·농 인구별로 세분된 자료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위 정부보고서는 홈리스의 규모만을 집계하여 파악한 것으로 홈리스의 대책마련에 필요한 성, 연령, 도·농 인구별의 세분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위 권고는 이러한 정부보고서의 내용이 도시의 거리나 노숙인 쉼터와 같은 노숙인 보호시설 내지 부랑인시설에 수용된 인원만을 집계하고 있어 농촌의 노숙인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고, 노숙인 문제 해결전략에 필요한 직업·주거·의료 등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남·여 별 파악이나 연령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먼저,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미인가 보호시설, 무허가기도원, 요양시설 등은 정규적인 주거가 아니라 단지 임시적인 거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시설에 거처를 둔

사람들은 홈리스의 범주에 포함시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임시거처 내지 부적절 주거에 있는 사람은 홈리스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주거의 형태로 부적절한 주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홈리스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렇게, 주거가 아예 없거나 부적절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장기적이고 정상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홈리스에 대한 대책이 단지, 임시적인 시설수용이 아니라 대안적인 주거마련과 직업.의료 대책 등 다양한 측면의 사회보장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대책마련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등 세분된 자료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II. 최저주거기준 부분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백 6만 가구(조사대상 가구의 13%)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과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하여 우려한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

1. 주택문제와 관련한 진정이나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정부내에 설립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주거문제와 관련한 주택의 건축,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민원인들이 주택건축이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주체인 건축주나 건설회사, 주택조합 등과 관련한 민원을 관할관청에 제기하면 관할관청은 사업주체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적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팔짱행정, 장님행정을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

쟁조정위원회, 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 등 주택공급·관리 내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많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회의조차 열리지 않거나 분쟁조정 실적이 거의 없어 무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토해양부는 주로 정책수립·결정이 역할을 담당할 뿐 직접적인 분쟁조정의 역할을 담당쟁조정위원회이고, 대한주택공사나 이 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은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분쟁의 당사자이지 진정이나 민원 등의 분쟁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행정기관과 민원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옴브즈만 기관으로는 한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주거권 등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처리 등의 역할을 할 수 위원회 오로지 정책 권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¹⁾ 주택과 주거개발 사업과 관련한 진정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과 주거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진정이나 민원해결기관이 아니어서 주택이나 주거문제에 집중하여 진정·민원처리를 하거나 정책권고를 하고 있지 않고,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행정기관과 민원인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옴브즈만기관의 권고를 행정기관이 잘 수용하지 않은 경향이어서 주택과 주거문제의 진정·민원처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사실상 공백상태라 해야 할 것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이 부분 권고는 이러한 주택·주거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진정·민원처리 기관이 부재하고 주택·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인·허가권을 가진 감독관청의 분쟁해결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취지라 보여진다.

1) 하지만, 강제퇴거(철거)의 문제의 경우는 주거권이라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문제이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행정권한(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행정기관이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퇴거(철거)문제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처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자유권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강제철거(강제퇴거)의 문제는 국가공권력의 행사(행정권한을 위임받아 행정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재개발조합 등 공무수탁사인의 행정권한 행사를 포함하여)에 따른 자유권적기본권의 침해문제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진다.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해소방안을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모니터링과 정책권고도 정책권고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진다. 기타 주택·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진정은 개발사업주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감독권이 있는 시·군·구청장의 관할관청이 민원·진정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책임행정이 중요하다. 사실상 인.허가권 내지 감독권이 없는 다른 분쟁조정기구의 중재를 사업주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분쟁조정기구도 법적인 강제조정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진정과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민원인 사이에서 사적분쟁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팔짱행정을 지양하고 감독관청이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는 책임행정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재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도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나 이를 대행하는 정비시행대행사나 시공사 등에 맡겨 부실한 정보제공에 의한 부실한 사업착수를 막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이 호수밀도, 용적율, 공급가능 세대수, 기반시설 비용 등을 감안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진행단계에서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크게 상승하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이 조합원 75% 내지 3분의2의 특별다수 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 무효라고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특별다수의 결의 없는 조합원 비용부담 상승을 가져오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관할관청이 아예 인가를 보류하고 조합원 동의를 받아올 것을 행정지도 하는 등으로 관할관청이 책임행정으로 진정·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나 국토해양부 등의 상급행정기관은 관할행정관청이 이러한 책임행정을 통하여 진정·민원을 잘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지방자치법 제159조 등에 따라 위법·부당한 관할관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시정취소나 직무이행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시·군·구의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2. 취약·소외 계층의 주택소유를 보장하고 이들에게 적정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유엔 주거기구에서 적절한 주택가격으로 권고하고 있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 즉, PIR은 3-4배 정도인데, 한국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7.6, 서울지역의 경우는 10.5 정도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도시가구 근로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연봉 4,000만원 정도의 소득자도 연소득을 한푼도 더 사용하지 않고 집장만에 투여해도 10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이어서 평균소득자도 실제로는 일정정도 부채를 얻어 집을 장만한다 해도 내집마련에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2년 기준 PIR이 전국 5.5, 서울 6.4로 매년 내집마련 꿈의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봉 4,000만원 정도의 도시가구 근로자들도 내집마련이 매우 곤란할 정도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이러한 평균 소득이하의 중산층 내지 저소득층은 사실상 내집마련의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평균소득 이하의 중산층 내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내집마련이 아니라 민간전세주택이나 정부 보유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소득분위 1-4분위의 저소득층의 연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비율은 2001년 21.7에서 2005년 29.4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하갈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나친 과속개발로 인한 주택멸실을 급증으로 개발지역 주변 전세보증금 등 임대료가 2배까지 상승하는 현상을 겪고 있어 중하층 내지 저소득층 소득자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택멸실이 3만1천가구 정도이었는데, 2010년에는 48,000가구 정도의 주택멸실이 예상되어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사실상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밀려나가야 하

는 실정이다. 민간임대의 임대료 상승뿐만 아니라 정부 보유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건설원가의 20%로 획일적으로 정하다 보니 급상승한 토지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종전의 영구임대주택에 비하여 전세보증금이 4·5배 이상 높고 월세도 2·3배 높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되는데도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후 퇴거하는 세대도 늘어나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이 부분 권고는 이렇게 부동산가격의 전반적 상승으로 중산층의 내집마련이나 중하층 내지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어 전반적인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취지로 보인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먼저, 주택가격을 하향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려 함으로써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DTI 규제(소득대비 대출규모 규제)와 같은 금융정책이나 집값상승을 노린 재테크적 목적의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정책,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이 주변시세 보다 높아 주변시세를 끌어 올리는 것을 막고 생애 최초 내집을 마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정책, 무주택세대주 우선분양자격 부여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전세시장에서의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주택멸실을 가져오는 과속개발을 지양하고 지구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승인-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승인 등의 재개발·재건축의 각 이행단계마다 철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착공승인시점까지의 시기를 조절하여 철거가 어느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행정을 해야 한다. 또한, 임대료 폭등시기에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에게 4년 등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때에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을 5%의 범위내에서 제한하는 등 임대료 인상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보유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지조건·규모,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일본식의 응능응의형의 임대료 차등 부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현재는 경기 시흥지역의 2개 단지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이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식의 국토해양 부령으로 임대사업자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임대료 차등부과제 적용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노숙인과 심각한 수준이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이 요건 이외에 소득요건만이 정해져 있고, 현재의 주거상태가 임시·비정상 주거형태인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격의 요건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민간전세주택 등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득능력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이 안정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필요성이 있는 세대에 비하여 좁은 의미의 홈리스나 고시원, 여관·여인숙, 임시수용시설 등의 임시거처나 쪽방,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부적절 주거에 거주하는 세대의 정상주거로의 이전 필요성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정상.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쪽방은 196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3-6㎡ 정도의 1인 가구용 주거로서 대부분 별도의 취사공간이 없고 화장실과 수도로 세대별이 아닌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매우 좁고 습기, 채광, 통풍, 난방, 단열 등 주거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한(unhabitable) 주거형태에 속한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정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지붕, 벽체, 기둥 등의 주거의 기본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주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실태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는데, 전기공급, 상·하수도 시설설비가 부재하고 화장실 등 기본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거주하기에 부적절하고 화재에도 취약하다. 유엔사회권 위원회의 이러한 권고는 현재의 주거상태가 임시적·비정상적인지 여부 등의 고려없

이 소득분위 등을 기준으로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기준을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내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법령체계에 대하여 현재의 주거상태를 고려하여 노숙인 등 심각한 수준이하의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세대부터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라는 취지로 보여진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위 I.의 1.항의 이행전략과 같이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거상황, 즉 비정상 내지 임시주거 여부 등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순위의 중요 기준으로 산정하여 비정상 내지 임시주거상태에 있는 협의의 홈리스와 광의의 홈리스의 범주에 속하는 임시 내지 비정상 주거상태에 있는 비닐하우스, 쪽방, 여관·여인숙, 움막, 임시 보호시설에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임대료를 감당할 소득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거수당의 지원이나 소득수준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제 등으로 통하여 임대료 보조·지원을 하여 장기거주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성, 연령 및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한국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4호 등에서 주거권의 실현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적절한 주거”의 판단지표 내지 정책지표로 법정화되어 있는 것은 최저주거기준이다. 정부에서는 2004년 최저주거기준의 지표내용을 발표하고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2006년 현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규모를 2005년 위조사시점 기준으로 206만 2천명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은 1) 최소 주거면적 및 방의 개수, 2) 필수적인 설비기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3)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환기, 채광, 난방, 방음 등)으로 되어 있으나,

필수적인 설비기준과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어, 결국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면적기준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이어서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절한 주거”의 구체적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조사에서는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 등에 거주하는 가구(2만1,630가구)나 임시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가구 등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 주거지원정책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비정상·임시거처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는 아예 빠져 있기도 하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관련 조사가 매년 실시되지 않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이 부분 권고의 취지는 주거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면적과 가구원수만을 기준으로 한 단순한 지표조사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지적한 성·연령·가구 등과 임시주거나 비정상주거 여부 등 및 시설과 환경 등의 정부정책 대안제시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요소들과 “적절한 주거”의 개념요소에 포함될 다양한 지표에 대한 조사를 하여 보고하도록 한 취지로 보여진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전면적인 인구주택총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번 실시한다.) 적어도 2005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분류된 세대들에 대하여 이를 각 기초단체별로 세분화하여 각 기초단체별로 그 행정구역내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변화추이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해소방안을 기초 내지 광역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각 기초자치단체별 실태파악에서는 전국적인 인구주택총조사와 달리 좀 더 세분화하여 성·연령·가구 등의 조사와 전국단위의 개괄적인 조사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웠던 필수시설 기준이나 일조·소음 등 생활환경 기준 실태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여 최저주거기준이 그야말로 “적절한 주거”의 판단기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닐하우스,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임시 보호시설 등 비정상적 주거 내지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매년 공공임대

주택 등의 정상주거로의 이전 실태를 조사하여 유엔사회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III. 강제퇴거 권고부분

강제퇴거될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상이나 효과적인 협의가 결여되어 있고, 이미 퇴거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적절한 재정착지 제공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고, 또한 당사국 국가보고서에는 특히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결과와 관련하여 강제퇴거가 이루어진 범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강제퇴거는 단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용산사건과 같이 폭력동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퇴거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와 임시주거를 보장함이 없이는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전제로 강제퇴거와 관련된 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에 부합하도록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권고하였다.

1.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퇴거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정착지 제공을 보장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의 필요적 대상에서 세입자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제외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서는 주거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무허가건물소유자의 경우에도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개발사업에서는 주거세입자와 무허가건물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이 법령으로 필요적으로 부여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는 대규모 강제철거가 이루어지는 뉴타운

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차 아무런 이주대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금전보상은 개발지구로 지정된 시점에서 그 뒤 개발에 대한 기대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반영하지 않는데, 개발지구 지정 시점과 관리(환지)처분계획 등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후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2-8기대정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여 그 사이 개발지역 주변까지 주택·토지가격이 2,3배 상승하여 그 보상금으로는 도저히 주변지역에 주택을 얻거나 생활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금전보상 보다는 이주대책 중심의 생활보상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 무허가건물 거주자나 세입자, 상가임차인 등은 주택재개발사업하여 그제외하고는 생활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상가임차인 경우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권리금이나 시설투자금 그투자하고 있는데, 이생활수투자금 그전혀 회수할 기회나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이주상가 등의 이주대책 없이 전면철거를 강행하는 것이어서 개발사업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심했던 것이다. 용산참사는 바로 이러한 상가중심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벌이는 지역에서 상가임차인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이 부분 권고는 이와 같이 현실적인 금전보상이나 이주대책 없이 전면철거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철거민이 양산되고 강제철거로 인한 철거민들의 저항이 빈발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무허가건물 거주자나 주거세입자, 상가임차인들도 원칙적인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 주택재개발사업 등 특정개발사업 이외의 개발사업에서도 이주대책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주거세입자의 비중이 전체 거주자의 70-80%가 넘는 뉴타운지구²⁾에 있어서는 거주하는 세입자의 과반수 이상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뉴타운 지구에서는 재개발지구와 달리 오히려 중대형의 고급주택을 40%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 40-60평형대의 중대형 주

2) 장위뉴타운의 경우 전체 거주자 중 세입자의 비율이 85%가 넘고, 천호.신림.영등포 뉴타운 등의 경우에도 세입자 비율이 80%를 넘는다. 다른 뉴타운지역도 평균 세입자 비율이 70%를 넘고 있다.

택의 경우 12-15평형의 임대주택 4개를 차지하고, 18-20평형대의 소형주택 3개를 차지하므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영세가옥주를 위한 소형주택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뉴타운지구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대형 주택의 건설비용을 전체 주택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소형저가주택과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도, 재래시장을 포함한 뉴타운지구의 경우 대부분 재래시장을 전면철거하고 주택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경우 입점상인의 대부분이 상가임차인이고 상가임차인의 경우 4개월의 영업손실 보상 외에 시설투자금이나 권리금 등을 회수할 기회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상가임차인들의 저항을 심하게 불러올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상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나 그 안에 10여개 이상의 소재개발구역과 재래시장을 포함하는 뉴타운 지구의 경우 재래시장을 존속하거나 일부 상가지역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세워 입점상인들의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이주대책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동종·동일규모의 영업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일본의 퇴거비 보상⁴⁾제도와 같은 것을 도입하거나, 최소한 직접 투자한 시설이나 전임차인으로부터 승계한 시설부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한 현재의 시설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주거세입자나 상가임차인에 대한 보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강제퇴거를 하고 나중에 주거세입자나 상가임차인이 보상청구 소송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상이 끝나야만 비로서 강제퇴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⁵⁾

- 3) 재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중대형 고급주택을 전체 주거의 20%이상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4) 일본의 판례는 개발이익의 쫓아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30-50% 범위내에서 상가임차인이 다른 지역에서 동일·동종의 영업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퇴거료를 보상해야만 상가를 비워달라는 명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 5) 종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된 이후에는 세입자의 건물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명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고, 2009년 법개정으로 보상이 종료되어야만 명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도 빨리빨리의 과속개발방식을 고집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보상 후 명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른 법개정으로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나중에 보상금을 임대인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어 임대인들이 구체적인 철거논의도 나오기 전에 임차인들이 퇴거시키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기도 하다.

2.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주자들과의 공개토론과 유의미한 협의를 보증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지정 전에 공람절차 이외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필요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하는 공람절차로만 두고 있을 뿐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조합설립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개발사업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비용부담의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잇달아 주민들에게 비용부담에 관한 정보제공 없는 재개발동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구체적인 사업추진단계에서도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10-20% 이상 인상되는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 인상, 부담금 인상 등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는 최초의 재개발과 그 동일성이 달라진 것이어서 최초의 재개발처럼 75%의 조합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인상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과반수(그 것도 대부분 서면동의)의 동의만 받았는데 관할관청에서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취소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주거세입자 등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을 받지 않은채 퇴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강제퇴거를 구하는 명도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퇴거 과정에서 판결문 송달이나 계고장 통보만이 이루어지고 언제, 강제퇴거와 강제철거가 실시된다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새벽시간 등에서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유엔사회권위원회가 강제퇴거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동절기 강제철거도 빈발하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러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와 강제퇴거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전면철거가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최종단계에서는 영세가옥주, 세입자, 상가임차인

등 주민들 대부분이 개발사업의 추가진행을 반대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토론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책임행정의 확립이 급선무이다. 먼저, 재개발사업 등의 초기 동의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신이 부담할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에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하면 관할관청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하여 호수밀도,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비용, 용적율, 정비계획 등을 참작하여 전문감정을 하거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비용부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⁶⁾ 다음으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추진단계에서는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을 10-20% 이상 가져오는 설계변경, 공사비나 조합원 부담금 인상으로 사실상 최초의 재개발 동의와는 그 동일성을 달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원판례에 따라 조합원 75% 이상의 동의나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의 결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보류하여 시공사들의 무리한 공사비 인상시도를 행정관청에서 견제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주민들의 호민관 역할을 하는 책임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주거세입자나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도 강제퇴거를 구할 수 없으므로 무리하게 먼저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켰다가 이주비 금융비용 상승으로 개발사업의 비용을 크게 상승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세입자나 상가임차인, 영세가옥주 등과의 보상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한달 정도의 기간안에 주민의 전체적인 이주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착공되도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이주비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공영재개발의 경우 사실상 대한주

6)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과를 신설하고 재개발동의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시예산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단계에서도 대략적인 공사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에게 투명행정, 책임행정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다만, 여저히 몇 개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다는 정도이고 막상 관할관청인 구청장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회의적이어서 전면적인 실시는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택공사 등이 선정하는 주민대표자들로만 구성되는 대표성이 취약한 주민대표자협의회의 협의만으로는 주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참여가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고 매 사업단계마다 주민들 대표와의 충분한 협의와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공영재개발의 경우에는 주거세입자들도 세입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주택 건설비용, 세입자 이주시기, 주거이전비보상 등 세입자와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세입자들도 대표기구를 통하여 개발사업주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새 거주지에는 먹는물, 전기, 세탁 및 위생 시설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설비를 갖추고 학교, 의료시설 및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재개발사업의 결과 영세가옥주의 주거형태인 60m² 이하의 소형주택이 63%였다가 이후에는 30%로 줄어들고 세입자 주거형태인 전세보증금 4천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이 83%였다가 이후에는 한 채도 남지 않게 되고 재개발이전의 주민 평균소득수준은 207만원이었으나 이후에는 663만원이 되는 것처럼 재개발사업 이전 원주민의 재정착이 거의 불가능한 고가의 개발이 되다 보니 재정착율이 20%가 되지 않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시외곽의 먼 지역으로 사실상 이주당하게 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을 재정착시키는 정책목표를 사실상 포기하고 도시외곽의 그린벨트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민들 전용의 보금자리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지역은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고 보금자리단지나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도시의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며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타운형의 주거지만 건설하는 것이어서 학교·의료시설·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되게 된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이 부분 권고는 이와 같이 재개발사업 등 도시재정비 사업 이후 사실상 원주민들이 개발사업 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이 도시

의 종합적인 기능이 갖추어지지 않아 주거지에 밀접히 연관되어 설치되어야 할 학교·의료·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일부 원주민들의 경우 수도권 외곽의 수도권 기·위생 등의 기본 주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또다른 영세민 거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 권고로 보여진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먼저, 재개발·뉴타운 사업은 자기소득수준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공공의 지원을 통하여 개선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언제부턴가 강남을 대체하는 강북의 고급도시개발사업, 중산층의 중대형 고급주택 공급사업이 되었는데, 개발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영세민인데 공급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이고 개발되는 도시가 고급도시의 컨셉으로 개발되니 원주민들의 재정착이라는 본질이 망각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개발 구역안에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려는 도시재정비 사업전략을 확립해야 한다. 임대주택과 소형저가주택 건설비율을 늘리고, 원주민 분양가의 경우 서울지역 철거민들의 이주단지로 공영개발한 장지·발산지구의 분양가책정 방식을 참조하여⁷⁾ 분양원가에 일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도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원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맞는 평형·가격의 적정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경기침체로 경매물건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슬럼화되고 있는 도심의 다세대주택, 다

7) 서울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지·발산지구의 분양가를 건축비는 건축비 원가에 5%의 이윤을 더하고 택지비는 30평 미만은 조성원가로 30평 이상은 감정평가로 정하여 분양가를 책정하였다. 그 결과 장지지구는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65% 정도, 발산지구는 주변시세의 75%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장지·발산지구는 도로건설 등 서울지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주거가 철거되는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영개발사업이었는데,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그 개발지역안의 주거를 전면철거하고 새로운 대안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사업이니 만큼 같은 원리에 의하여 주택가격을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분양원가를 분석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였는데도 장지지구의 경우 5,000여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남아(30평형 이상은 택지비를 감정평가하여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임대주택건설비용이나 학교용지비용 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였다.

가구주택 등을 정부가 싼값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한후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기성시가지의 재개발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대안적인 저렴한 임대주택이 기능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외곽의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여 서민들용의 보금자리주택단지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근린생활시설용지나 학교용지 등을 확보하여 병원, 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도 갖추고 간선도로까지의 도로망도 확보하여 자기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성, 연령,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는 강제퇴거 관련 정보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한국의 도시재정비 사업방식은 영국 런던이나 일본 동경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도로,공원,학교 등의 필요한 기반시설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주변지역에 용적율을 증가하여 중층개발을 하게 하고 기존주택의 현지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여 강제철거되는 주택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한국의 도시재정비 방식은 재개발지구 전체의 주택을 전면철거하고 새로이 주로 아파트 위주의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어서 수많은 강제철거 대상 주택을 양산하게 된다. 특히, 뉴타운사업(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그 안에 10-15개의 소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위 II.항의 내용과 같이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번 실시되는데, 2010년 10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노숙인, 최저주거기준, 강제퇴거 등 각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정보제공의 부실 문제를 참작하여 미리 좀 더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증설해야 할 것이다. 2005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통계

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 상황실을 꾸리게 되는데, 주거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도 사전에 연락하여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지적한 주거인권 문제와 관련한 정보제공, 보고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항목 수정·보강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 분야¹⁾

이 상 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1.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건강권 관련 최종견해 및 권고의 내용과 의미

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건강권 관련 최종견해 및 권고의 내용

위원회는 의료급여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90%를 구성하는 민영 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취약·소외계층의 충분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의 65%정도만을 보장하고, 그 결과 개인의 직접지출 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우려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의료비 지출을 증대시킬 것과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할 것과,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4호(2000)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나. 우리나라의 건강권 보장 실태

1) 시설, 재화, 서비스의 가용성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보건의료 시설, 재화, 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투자가 이루어져 현재 가용성 측면에서는 그리 낮다고 볼 수 없다. 병상수, 의료기기 수 등의 지

1) 이 글은 저자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복지동향> 2010년 1월호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표에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의사 수, 활동간호사 수 등 의료 인력 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다. 2006년 한국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OECD 회원국 활동의사 수 3.1명보다 적다. 2006년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터키(1.6명)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준이다²⁾. 2006년 우리나라의 활동 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4.0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간호사 수 9.7명보다 적다. 이러한 통계 지표를 볼 때 한국의 의료인의 가용성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력 수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기관과 보건 의료 부분에서 공공재원의 가용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한국의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은 병원 수 기준으로는 6.5%에 불과하고, 병상 수 기준으로는 11% 정도에 불과하여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의 민간병원들은 중소 규모로 운영되는 개업사업자 병원을 제외하면 모두 외형적으로는 비영리법인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 1>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2007년)

구분	계		공공		민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기관수	56,399	100	3,646	6.5	52,735	93.5
병상수	450,592	100	49,585	11.0	401,007	89.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7. 2008년 발간

한편, 2006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5.1%를 차지했으나,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의 평균 지출 비율은 73.0%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의 가용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한국은 국민의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 2006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

2) 보건복지부(2008), 우리나라 보건 의료 실태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부문에서의 지출 비율은 36.9%로 OECD 수준인 19.0% 보다 높다³⁾.

<표 2>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지출 수준

구분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 비율(2006년)	국민의료비 지출 중 가계지출 비율(2006년)
한국	55.1%	36.9%
OECD 평균	73.0%	19.0%

※ 자료 :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2008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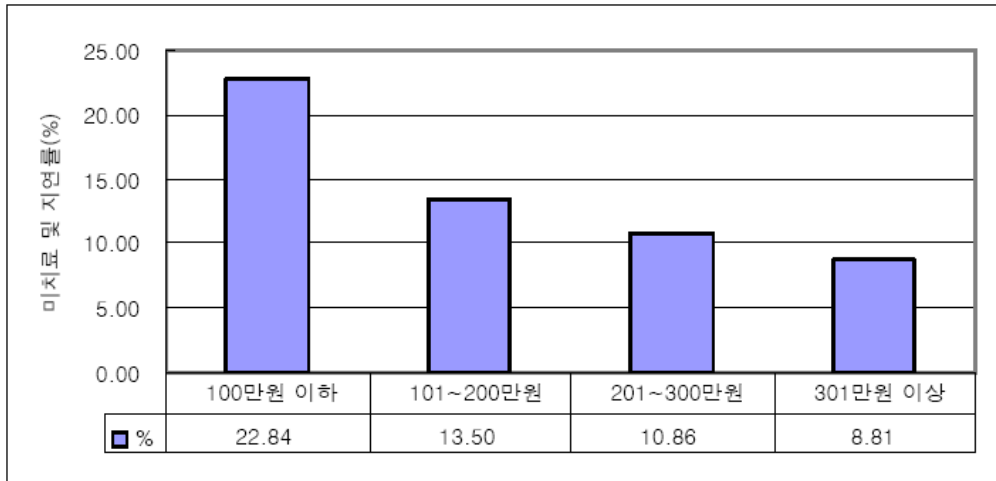
2) 시설, 재화, 서비스의 접근성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접근성이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시설, 재화,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접근성의 한 사회의 의료보장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의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경제적 차이에 따른 접근성 제약이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에 62.2%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인구의 13.7%가 지난 1년간 미치료나 치료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이 낮을수록, 월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보장에서는 미가입, 의료급여, 지역 그리고 직장 순서로 미치료·치료 지연율이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⁴⁾.

3) 상동.

4) 보건복지부(2006),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처리 및 통계분석 총괄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처리 및 통계분석 총괄결과보고서, 2006.

<그림 1> 미치료, 치료지연율 : 월평균 가구소득별

하위계층의 의료이용량은 상위계층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같은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최근 들어 한층 심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소득의 2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가계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하위 10% 소득계층은 월소득의 2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비율이 2001년 10.4%에서 2005년 22.3%로 급증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에 의료비 부담이 불균등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파국적 의료비 지출 가구’에 해당하는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가구’ 비율 역시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⁵⁾.

물리적 접근성도 문제가 있다. 1999년 암발생자들의 의료이용 양상을 2005년까지 추적관찰해보면, 부산, 대구·경북, 경남·울산을 제외하고는 전체 암환자 입원 의료이용량의 20% 이상이 서울 지역의 병원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자원의 평등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평등한 구조이다⁶⁾.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

5) 이진석(2008), 건강보험과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건강정책포럼 정책토론회.

치료시 애로사항을 물어보았을 때, ‘의료기관이 멀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농산 어촌(24.3%)이 도시지역(4.2%) 보다 월등히 높아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기관에의 물리적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⁷⁾.

3) 시설, 재화, 서비스의 수용성과 질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용성과 질은 그리 높지 않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는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의료 인력의 수이다. 의료서비스는 그 특성상 인력 수준에 따라 질이 결정된다. 그런데 OECD 보건통계(OECD, 2008)에 따르면, 급성기 병상당 간호사수는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이 0.33명으로, 프랑스 0.58명, 독일 0.77명, 미국 1.56명, 노르웨이 1.75명에 비해 매우 낮다.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에서도 한국은 4.0명으로, 일본의 9.3명, 미국 10.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노르웨이 31.6명에 비해서는 약 1/8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4)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계층의 건강권

저소득층,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은 특히 건강할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계층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은 의료급여 제도로 의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의 제약이 존재한다. 2007년 통계상 의료급여 1종의 보장률은 94.1%, 의료급여 2종(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보장률은 87.0% 수준이어서 의료급여 대상자도 본인부담 수준이 적지 않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상 의료급여 대상자의 미치료 및 치료지연율이 27.3%에 달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실제로 미충족 의료 서비스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체납계층의 문제도 심각하다. 2008년 10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건강보험 세대는 205만 3천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도 6만 2천개소에 이른다.

6) 이상이 등(2006). 소득계층에 따른 암 환자의 암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7) 통계청(2008),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표 3>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연 도		2006	2007	2008.10월
지역	체납가구수	209만3천	205만5천	205만3천
	체납금액(원)	1조3873억	1조5547억	1조5018억
직장	체납사업장수	4만6천	5만3천	6만2천
	체납금액(원)	1457억	1670억	2175억

* 2008년 7월, 지역 체납 가구 중 약 70만 가구(약 4천억 원)에 대해 체납 보험료를 탕감 조치함(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건강권 관련 최종견해 및 권고의 의미와 평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건강권 관련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취약·소외계층이 의료급여 제도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기관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우려, 둘째, 보편적 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률이 6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 셋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음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직접 지출 부담이 높은 것에 대한 우려 등이 표명되었다. 이는 한국이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의료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소외계층뿐 아니라 국민 전반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경제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다. 한국은 국민의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이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객관적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정책 목표는 의료비 지출에 있어 가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정부 시절 그나마 꾸준히 상승되어 오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 정부 집권과 더불어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중요하다. 사회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특정 목표 달성 여부와 더불어, 해당 국가 정부가 특정 사회권 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 정부의 건강권 보장 노력에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종전해에 경제적 접근성 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자원,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질의 측면에서 평가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 보장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주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총체적, 포괄적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자원, 프로그램, 서비스의 가용성, 수용성, 질 측면에 대한 평가와 권고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와 같이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며, 첫째, 의료비 지출을 증대시킬 것, 둘째,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할 것, 셋째,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 14호(2000)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적절한 권고이다. 더불어 일반논평 제14호에 대한 주의 환기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에 대한 적절한 권고이다.

2. 권고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가. 국민의료비 지출 중 정부 지출 비중 증가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5.1%를 차지했으나,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의 평균 지출 비율은 73.0%이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이

증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담배부담금 등 건강증진기금을 늘리거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소득세 증가나 사회보장세 신설 등 직접세 증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나. 건강보험 제도 개혁 과제⁸⁾

1)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항목 급여화

의학적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검사, 진료임에도 급여화되어 있지 않으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MRI, 초음파 검사, 선택진료료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한다.

2) 중증질환자, 취약계층 보호기능 강화

보장성강화를 위한 전문가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중증화상, 결핵을 중증환자등록제에 포함시켜 본인부담률을 5% 또는 10%로 경감한다. 중증질환자 중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09년 12월에 10%에서 5%로 인하된 바 있다. 중증질환대상자 중 '09년 조치에서 제외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암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한다.

3) 과중한 질병치료비 경감으로 사회안전망기능 강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내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6개월간 본인부담액 300만원 초과자에 대해 상한제를 적용해 왔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상한액을 2007년 6월부터 2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하였다. 2009년 1월부터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 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한제는 유럽 국가는 물론, 대만에 비해서도 기준금액이 높아 고액 의료비 보호기능이 취약하다. 따라서 현재의 상한

8) 이는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 2009>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기준액을 더욱 낮추어 고액환자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입원환자는 외래 환자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크다. 유럽 국가들은 입원진료 시 일부 호텔비용(일당 13~19유로)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거의 무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급여진료비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 수준이 크다. 따라서 법정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4) 의료서비스 질향상과 간병부담 완화, 의료산업 일자리 창출

병원내 간호사 수를 늘려 간호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거동이 불편하고 반드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어 병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한편, 입원환자의 42.5%가 상급병실 이용하고 있으며 상급병실 이용환자의 72.8%는 기준병상 부족, 의사의 권유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병실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용인구가 전체 인구의 9% 수준이었던 건강보험제도 초창기에 설정된 기준병실 확보율(50%)이 전국민으로 대상자가 확대된 이후에도 적용되고 있어 기준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준병상을 7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5)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으로 본인부담 경감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 각종 치료 재료에 대한 급여를 확대한다.

6) 치과부문 급여 적용으로 구강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노인틀니, 치석 제거 등을 급여화한다.

7) 저출산 지원

산전진찰비용 70만원 중 초음파 등 산전진찰·검사비용으로 56만원을 산모가 부담하고 있어 정부지원액 2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30만원 이상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어 출산진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한다.

다. 의료급여 제도 개혁 과제⁹⁾

1) 대상자 선정 기준 개혁, 대상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활용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의료급여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어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⁹⁾이 2007년 발표한 상대적 빈곤층인 16.5% (중위소득 50%의 이하)는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2) 본인일부부담금제 폐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다.

3)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비에 대해 급여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까지 본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급여항목을 원칙적으로 전액 급여화한다.

4) 의료급여 종별 차별 폐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종별 차이를 두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모두 같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통일한다.

라. 일반논평 제14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의로서비스 제공이라는 좁은 틀에서 건강 관련 정책을 해석하고 집행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건강을 ‘권리’로 인식하여

9) 이는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경제위기시대, 의료급여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2009>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 이익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다보니 늘 재정 안정성이 정책의 최고 목표가 되어 왔고, 그 와중에 국민의 건강권은 공중 분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에 대한 관심 제고 요청은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요청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건강권, 사회적 ‘공리’로서가 아닌 ‘천부인권’으로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권 관점에서 건강 관련 통계가 재가공되거나 생산될 필요가 있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사회적 논의 증가를 위한 노력이 의식적으로 요청된다.

교육 분야

윤성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I. 긍정적 측면

- (vi) 2004년부터 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 대상으로 확장한 것
- (vii) 학교에서 처벌을 대신할 제도로서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1) 2004년부터 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 대상으로 확장한 것

2차 최종견해에서 2차 권고한 중등교육의 무상교육의무화가 실현된 것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2004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한 것을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받았다. 평등한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무상교육실시의 확대는 필수요소이다. 의무교육에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이론이 ‘취학필수비무상설’이다. 이 학설은 수업료·입학금·교과서 대금뿐만 아니라 교재비·학용품비·기숙사비·교통비·급식비 등 수업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금품을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무상의무교육을 표방하여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은 ‘취학필수비무상설’의 시각을 가지고 완전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업료·입학금·교과서 대금만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무상교육으로서 그 외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현재 시작된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의무교육이 그 의미에 부합되도록 완전한 무상교육이 되도록 국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중등교육이라 함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이다. 교육제도에 서 초등은 초등학교, 중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교육은 대학교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는 개인의 선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중등무상교육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의 평균에 못 미치는 공교육비(표1)를 투자하고 있으므로 공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높여 실질적인 중등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1> OECD 국가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 비교

(단위 : 미국 달러의 PPP환산액)

구분	유아교육 (3세이상)	초등교육	중등교육			중등후 비고등교육	고등교육(연구개발활동 포함)			연구개발 활동을 제한 전고등교육 단계	초등교육 에서 고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전체 중등교육		전체 고등교육	B유형 고등교육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		
	(1)	(2)	(3)	(4)	(5)	(6)	(7)	(8)	(9)	(10)	(11)
호주	4252	6,311	8,319	9,315	8,700	8,113	8,828	16,070	15,016	9,982	8,678
오스트리아	6,783	8,516	10,011	11,205	10,577	x(4)	13,006	15,284	15,148	10,541	10,895
프랑스	4,995	5,482	8,265	10,655	9,303	m	9,714	12,180	11,568	8,016	8,428
독일	5,683	5,362	6,632	9,163	7,548	8,559	7,352	13,926	13,016	7,996	7,925
이탈리아1)	7,083	7,716	8,527	8,474	8,495	m	6,920	8,738	8,725	5,628	8,263
일본	4,389	6,989	8,004	8,589	8,305	x(4,9)	8,634	15,022	13,418	m	8,872
한국	3,393	4,935	5,719	9,060	7,261	a	4,653	10,844	8,564	7,517	6,811
스위스1)	4,611	8,793	10,121	16,540	13,268	10,129	4,101	23,593	22,230	12,783	12,667
영국	7,335	7,732	8868	8693	8,763	x(4)	x(9)	x(9)	15,447	9,714	9,309
미국	8,867	9,709	10,369	11,334	10,821	m	x(9)	x(9)	25,109	22,384	13,447
OECD 평균	5,260	6,437	7,544	8,486	8,006	4,592	-	-	12,336	8,455	7,840

주 : 1) 국·공립학교만 포함됨.

2) x는 다른범주 또는 항목에 포함된 자료임.

3) a는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료가 없음을 의미함.

자료 :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 학교에서 처벌을 대신할 제도로서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

교육현장에서 오랜 동안 문제가 제기된 것이 체벌의 문제였다.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의 요소였고 일방적인 관계를 가진 힘의 문제였다. 교실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교사가 교육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벌이 폭력적이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해 왔기 때문이다. 체벌을 받은 아동의 심리적·육체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와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체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체벌금지법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나온 제도 체벌을 대체하는 제도로 나온 것이 그린마일리지 제도이다. 상벌점수시스템으로서 체벌 대신 벌점을 주고 처벌을 하는 것이다. 벌점제 대한 보완으로 상점제도를 포함하여 온라인상에서 점수가 합산되어 열람이 가능한 제도이다. 체벌금지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린마일리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체벌에 대한 좋은 대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그린마일리지의 경우 상점보다 벌점 부과 수가 훨씬 많고 벌점 부과에 있어 비일관성, 자의적 해석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탈락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부작용도 있다.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시되고 내신에 얽매어 있는 상황에서 상벌제는 오히려 좋은 통제의 수단으로서 학생인권침해의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시작된 그린마일리지제도가 잘 운영되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그 논의의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중등교육 무상의무교육 실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취학필수비무상설’의 관점에서 무상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급식비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낙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

는 아동의 경우 점심식사를 굶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의무교육은 강제성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들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야겠지만 일차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지원의 확대가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 무상급식이 아동들에게 선별과 낙인이 되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린마일리지제도가 체벌제의 문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적용에 있어서 아동권의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비일관성, 자의적 해석, 과다 적용, 학생 통제적 사용 등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린마일리지 제도와 함께 체벌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체벌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안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체벌금지법이 제정되어 학교 내에서 체벌이 사라져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찾아가는 구체적인 대안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33항(교육불평등 부분)

위원회는 부모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용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교육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정보와 우수 대학(top universities) 진학 기회가 종종 부모의 방과 후 교육이나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교육이 금전이 아닌 능력을 기초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가능하며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가계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중산층의 삶의 질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당사국에게 교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보조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제13조).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현재 한국교육을 대변하는 말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학생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진학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비 부담을 보면 공교육비가 GDP의 3.5%에 비해 사교육비는 GDP의 4%로 공교육비를 앞서고 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는 20조 9천억으로 추정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원이다(표2).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아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46만원8000원을 지출했고,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5만3000원으로 8.8배의 차이가 난다. 매달 7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경우 10가구 중 8.63가구 꼴로 사교육에 참여한 반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59가구만이 사교육을 받아 3.3배 차이가 나고 있다. 성적이 높을 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은 1인당 월평균 3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았다. 이에 반해 하위 20% 이내는 12만원 수준이다.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의 성적이 높은 것이다. 학생의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지배하는 구조는 교육불평등을 불러오게 되고 이에 대한 권고로서 교육이 금전이 아닌 능력을 기초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가능하며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과 교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보조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형식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실제적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부족을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교육권의 사회적 성격을 표명하는 것이다.

표 2. 사교육비 규모 및 참여율

	총 사교육비 (억원,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p)		
	2007년	2008년	증감률	2007년	2008년	증감률	2007년	2008년	증 감
전 체	200,400	209,095	4.3	22.2	23.3	5.0	77.0	75.1	-1.9
초등학교	102,098	104,307	2.2	22.7	24.2	6.6	88.8	87.9	-0.9
중학교	56,120	58,135	3.6	23.4	24.1	3.0	74.6	72.5	-2.1
고등학교	42,181	46,652	10.6	19.7	20.6	4.6	55.0	53.4	-1.6
일반고	38,655	42,973	11.2	24.0	24.9	3.7	62.0	60.5	-1.5
전문고	3,526	3,679	4.3	6.7	6.9	3.0	33.7	30.3	-3.4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1) 교육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노력

- 초·중등무상의무교육의 실질적인 확대: 현재 높은 사교육비의 부담과 공교육현장에서 부모에게 전가되어지는 교육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선 초·중등무상의무교육의 실질적인 확대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어서 진정한 무상의무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담비율이 높은 급식의 문제이다. 현재 진행되는 무상급식의 경우 빈곤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됨으로서 낙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아무리 학교가 공짜라도 밥도 먹을 수 없고 학교까지 갈 교통비도 없고 교복도 살 수 없고, 교재도 살 수 없다면 학교를 다닐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무상급식과 교재비등의 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 대학선발과정의 다양화와 상위 우수대학 집중의 문제 : 현재 한국의 대학진학율은 83.3%이다. 모든 사람이 대학 졸업을 한다는 말은 결국 대학의 서열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른 사교육실시의 이유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이다.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상위대학을 가야한다. 서울지역의

몇 개의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간의 서열화와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적인 관행이 없애 학력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또한 대학선발과정이 내신과 수능점수로만 결정되어지는 현재의 입시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내신으로 학생선발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학들은 본고사의 부활을 꾀함으로써 더 많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높지만 취업률은 낮고 학생수에 비해 대학정원이 많아지는 시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을 위해 유치원때부터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 교육비용의 재정보조 : 부모의 경제력은 사교육비 부담을 결정하고 이는 자녀의 성적을 결정한다. 이에 저소득층에게 재정보조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교육방송 서비스, 교육바우처 사업의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 수혜대상자도 적다. 또한 재정보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는 현재의 프로그램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태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교육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강화와 교육복지 서비스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Ⅲ. 34항(극심한 학업경쟁 부분)

위원회는 극심한 경쟁과 학업 중압감으로 인해 학생들 중에 임상적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제12조, 제13조) -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a) 주입식 교육을 하는 사설 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할 것
- (b) 시범적인 대안 학습 모델을 수립할 것
- (c) 아동의 과도한 학습 부담이 초래할 효과에 대하여 부모와 일반대중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 (d) 사설 야간 학원과 주입식 교육학원 운영을 억제할 것
- (e) 불필요한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의 중등교육에서의 학업 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제도를 재검토할 것

가. 권고의 의미와 평가

세계적인 이목을 끌만큼 한국의 교육열과 경쟁은 높은 학력성취와 함께 학생들의 건강을 침해하고 있다. 이 부분은 건강권과 교육권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할 것이다. 교육권의 측면에서 위원회는 극심한 경쟁을 약화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내용은 사설학원 운영에 대한 제한과 대안 학습모델의 수립과 과도한 학습의 부작용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부모 교육과 교육제도의 문제이다.

사설 학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시장 경쟁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늦은 시간, 이른 새벽 상관없이 학원을 운영하며 최고의 효과를 위한 주입식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유아교육시기부터 시작되는 사설학원의 교육경험을 통해 높은 학업성취와 함께 의존적인 학습태도와 스트레스, 학업부적응, 우울증의 문제들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설학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규제가 필요한것이다. 수요가 공급을 낡기 마련이다. 학원의 증가는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욕구에 따라 나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일반대중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이 초래할 효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것은 적절하다. 많은 이들이 부모교육이라는 것에 회의적이지만 교육은 단기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며 지금의 결정이 10년뒤 교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진행되는 부모교육의 내용이 공부 잘하는법, 시간관리, 인터넷중독, 용돈관리등의 단편적이고 부모의 욕구에

적합하게 진행되는데 이런 내용이 아닌 아동의 인권과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교육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극심한 학업경쟁은 상위대학의 진학을 위한 목적에 몰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고사처럼 전국의 학생들을 하나로 줄을 세워 등수를 매기는 교육이 불러온 결과이다. 우리는 100점을 맞는 것보다 1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식을 아는 것보다 1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교육시스템의 탈피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처럼 대안학습모델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대안교육운동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과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대안교육은 공교육 밖에 있어 모든 교육비의 부담이 부모에게 있고 공교육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정부의 국제중,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의 교육정책은 이런 위원회의 권고의 대책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중 설립으로 인해 많은 초등학생들이 영어학원에 매어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국제중, 특목고, 민사고 가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2009.5.9시사IN)이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이다. 또한 이를 위해 부모가 헌신적으로 학원비를 대는 것이다. 그 결과는 아동들의 학업스트레스와 높은 자살률, 정신건강의 문제라는 현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나. 이행전략에 관한 의견

1) 극심한 학업경쟁의 완화를 위한 노력

- 학원규제 : 사설학원의 규제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학원은 영시간 제한에 대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학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학원의 수강시간의 제한과 학원비 상한선 제한 정책이다. 특히 새벽과 야간에 진행되는 학원 수업은 학생들에게 쉼 시간을 주지 않는 아동학대의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들의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쉼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이는 아동권리협약국으로서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방학이 되면 진행되는 학원의 집중적인 교육수강 시

간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 어린 학생들이 하루에 8시간이상 학원에서 주입식 공부를 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정부는 학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

- 대안교육 및 모델수립 : 현재 교육당국은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 위원회의 권고처럼 대안학교 설립보다는 공교육내의 대안교육과정이나 현재 진행되는 대안학교 모델의 일부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대안학교는 공교육 밖에 존재함으로써 높은 교육비와 교육과정의 동떨어짐이 문제가 된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일한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는 현재의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모델을 공교육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방법의 선택을 높이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일제고사의 폐지와 대안 : 2009년부터 실시된 일제고사는 전국의 동일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 일시에 시행되는 객관식 시험제도이다. 국가경쟁력을 위해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시도 단위 석차, 전교 석차까지 제공되는 현재의 시험제도는 지역간·학교간·학급간·학생간의 서열화를 통한 경쟁의 심화만을 불러 오고 있다. 2009년도에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과 학교에서는 2010년 평가를 앞두고 보충수업과 문제집 풀기 위주의 수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취지대로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가 목적이라면 현재의 일제고사와는 다른 형태의 평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PISA 평가¹⁾에서 항상 상위에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별도의 시험이 없다. 개인별 발달에 포트폴리오를 부모와 교사가 작성하여 만6세 유아 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누적시켜 감으로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교육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면 시험 제도에 대한 대안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험시기의 자율적 선택제나 암기식 교육을 하게 하는 5지선다형 문제에서 주관식이나 논술식이 평가방식 등 선택의 가능한 다양한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에서 만 15세 학생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3년 주기의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이다

〈인간단체 총평〉



존엄한 시민들의 공화국과
사회권규약위원회 3차 심의

명 속
(인권운동사랑방)

존엄한 시민들의 공화국과 사회권규약위원회 3차 심의

명 속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품위 있는 사회는 정당한 이유로 모욕감을 느낄 그런 조건들과 싸우는 사회다”

- 마갈릿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사회란 인간답게 살 삶의 조건, 생활의 조건을 보장해주는 사회이다. 단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비루하고 처참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성원들의 존엄성(인권)을 제도를 통해 존중하는 사회다. 하루 두 끼도 먹을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야 하거나 마땅히 잘 곳이 없어서 질병의 위험이 넘치는 거리에서 자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사회, 그러한 것들이 개인에게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사회는 마갈릿의 표현대로 품위도 없을뿐더러 시민들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다.¹⁾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존엄성을 보호하려는 열망을 기본적 인권의 목록에 부족하지만 담았고 그 권리목록이 지배적 규범이 되기를 소망하였다. 하지만 선언은 선언으로만 인정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1945년 세계인권선언을 만들고 선언에 나온 권리내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국가가 인권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제인권규약을 만들어졌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과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이 선언이 만들어진 후 1967이후 논의되어 1976년 발효된 까닭은 여기 있다. 한국정부는 1990년에 규약에 가입해 현재까지 꾸준히 보고서를 제출하고

1) 마갈릿에 따르면 ‘품위 있는 사회’는 모든 성원에게 그가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다(생존에서 존엄으로, 장은주, 2007, 재인용)

위원회에서 규약사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심의를 받고 있다.

0. 정부가 이렇게 해도 돼?

: 사상초유의 일이 많았던 3차 정부 심의과정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나라들 대부분이 심의과정에서 자국의 인권상황을 부풀리거나 가리려고 하는 일은 많다. 형식적으로 사회권 규약은 국제규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가입국 정부는 그에 따른 규약 이행의무가 있으며, 명분상으로도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유엔가입국들은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인권의 목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열악한 인권상황을 인정하게 되면 그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정책 및 제도개선과 재정투입-이 필요한 일이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인 현실(독재국가가 아니더라도), 국가권력을 기득권세력이 쥐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스스로 인권보장을 위해 애쓰리라는 기대를 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가입국들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심의제도는 최소한의 개입장치일 뿐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2009년 11월에 열린 한국 사회권심의과정과 사후에 보인 한국정부의 대응은 사상초유의 것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참가한 한국 참가단은 40명이 넘는 최대 규모였으며, 한국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가로막는 과감함을 보였으며,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해 수용여부를 전달하는 초유의 일을 하였다.

정부가 규약위원회 심사에 40여명의 참가단을 보내는 것은 그만큼 규약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심의결과 나온 최종견해 이행에 대해 이렇다 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시민사회가 이행관련 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나오지 않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 40여명이나 제네바에 보낸 것은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사회권규

약과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으며 단지 한국사회권 침해상황을 적절한 변명으로 숨기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더구나 이는 최종견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며 용산참사,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같이 국내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구체적 개별사건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원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일을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엔인권메카니즘을 혼드는 일이다.

1. 심의는 왜 하는데라고 묻고 싶은 현실

: 2차 최종견해와 달라진 게 없는 한국의 사회권 상황

최종견해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사회권 보장 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우려인 동시에, 규약 가입국으로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2001년 한국정부는 사회권 상황에 대해 두 번째 심의를 받고 최종권고를 받았다. 그 후 8년이 흐른 2009년 다시 한국의 사회권 심의를 위해 현지 활동을 준비하는 인권활동가들은 당혹스러움에 처했다. 2001년 사회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던 것들이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더욱 많아지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비롯한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 현실, 강제퇴거는 아직도 아무 때나 이루어지고 심지어, 강제퇴거 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이 죽는 상황. 이 때문에 단지 한국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기본적인 절망감을 넘어서서 ‘도대체 인권증진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는 게 무슨 효력이 있냐?’ 라는 자조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사회권 심의가 단지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잘 못했어’라는 평가만을 위한, 이른바 점수주기 외에 다른 실천적 조치 가능성이 없다면 사회권 심의에 많은 힘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현실에 벌어지는 인권침해상황이 많아 대응하기에도 바쁜 일상이니.

정부정책이 자본을 가진 사람이나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회권 권고가 바뀌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있기에 정부정책이 인권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못하거나 침해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순화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한국정부의 기본정책이 재벌 등의 대기업이나 건설재벌, 투기를 조장하는 기조가 그대로인 한 개선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는 다음의 2차 최종권고의 이행상황을 보아도 분명하다.

2001년 최종 권고 및 견해	실제
35. 국가인권위를 파리원칙에 부합하게 설립할 것	설립했으나 2008년부터 파리원칙의 독립성을 훼손. 인권위조직 21% 축소와 조직개편
36. 한국정부가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근거로 직접 인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	국제규약이 직접 재판규범으로 인용되는 판결은 거의 없음. 국보법처럼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자유권 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반하는 판결이 많으며 법적 지위를 부인하고 있음
37.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평등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	현 정부 출범초기 여성부 폐지하려 하였으며, 보육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장애여성, 성매매여성 등 여성취약층에 대한 지원비 삭감. 여성부와 노동부가 제시하는 소득보전정책 및 일자리 정책은 저임금 정책임
38.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再考)하고 규약 상의 권리들을 보장	비정규 규모 축소, 2009년 1월~3월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23.7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임금 253만원의 48.9% 수준. 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82%~99%인데, 비정규직은 35%~38%. 비정규보호법은 이름과 다르게 비정규직의 상시화, 장기화를 유도함.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 필요
39.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인정, 형사소추 중지 권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 중지.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도 보장	-형사소추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구속자 증가. 쌍용차에서 과도한 경찰폭력 사용.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 기소와 파면 해임. 전공노 불법화 -이주노조 간부 3차례 표적 단속하여 추방
40. 아동 성 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	-여러 대책은 있으나 친고죄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는 어려운 실정임. 또 가출 청소년의 소득이나 주거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근본적 대책은 아님. -청소년 노동은 최저임금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함

2001년 최종 권고 및 견해	실제
41. 주거 문제 진정 전담부서를 설치.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가 제공. 취약집단 혹은 한계계층 적절한 주거를	-2009년말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관과 공공주택 건설 추진단의 주거지원 정책은 미비하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개발을 주 업무 -민간업자에 의한 개발 보상 미비 -취약집단이 갈수 있는 저렴한 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은 축소 되고 있음
42.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 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	-초·중등교육단계에서의 정부부담은 OECD평균과 비슷하나 민간부담은 0.9%로 OECD평균 및 G8국가보다 높음 고등교육단계는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이 0.6%와 1.8%로 민간부담이 더 높음 -일제고사 추진으로 입시경쟁교육 강화되어 사교육비 증가 됨
43. 한국정부는 일반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인권위 인원을 축소했을 뿐 아니라 정책분야와 인권교육분야를 합쳐 인권교육기능을 축소
44. 국가인권행동계획에 대한 정보	-법무부는 NAP 이행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책자로 제작할 뿐 이행점검과 정책 변화 없음

2. 조금은 사회권 전체가 보이는군~

: 연대의 과정이었던 한국 사회권 민간단체 대안보고서 작성과정

1) 한국사회권상황 실태의 총괄

유엔 사회권 3차 민간단체 대안보고서(이하 민간단체 보고서)는 56개 단체들이 햇수로 4년, 만 2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여 만들어졌다. 2차 보고서 때보다 많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사람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사회권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내용이였다. 그렇다보니 유엔사회권위원들은 한국의 민간단체 보고서를 보고 ‘포괄내용과 참여단위, 실태의 보고수준’ 등을 보며 놀라워하였을 뿐 아니라 높이 평가하였다. 사실 사회권이 포괄하고 있는 영역,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적이어서 해당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영역의 단체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 있는 사회권 분야의 연대활동이었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분야별 참여가 불균등하였지만 전체 회의, 사전 간담회, 사전 워크숍 등은 자기 의제가 아닌 다른 영역의 의제를 이해하고 사회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 인권의 영역을 국가의 인권침해를 제어하는 ‘소극적 국가의 의무’로만 상정하려는 현실에서 인권의 영역을 최소한 국제인권기준에 맞추고, 유엔 인권 메카니즘으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추동하는 기본 활동이기도 했다.

2007년 말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여 사회권사전심의회 제출할 질의목록(또는 약식 보고서, list of issues) 작성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여 2008년 사전질의목록 작성과 제네바 회의 참가, 2009년 본보고서 작성과 제네바 회의 참가 등을 하였다. 그 외에 사회권위원들과 사전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이해시키기위한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활동도 하였다.

분야별로 모인 단체들은 한국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서 왜곡하거나 은폐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검토하고, 정부가 3차 보고서에는 다루지 않았으나 현실에서 중요한 인권 사안인 경우에는 민간단체 보고서에서 다루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유권분야만이 아니라 사회권 분야도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정부 보고서가 2006년까지 상황만을 다루고 있어서 보고서에서 누락되었지만 주요한 사회권 현안인 경우가 매우 많았다.

분야별로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전체사회권 분야를 담은 보고서 내용 뿐아니라 작성과정에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기에 과정자체는 사회권 운동에도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권 분야 전문단체들 간의 연대과정

현실에서 인권은 권리영역별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국제적 인권담론에서

도, 현실에서도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것이라는 말을 자주한다.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노동자가 전세값이 상승하여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없거나 길거리나 고시원같은 비주택 거주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거권의 침해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회를 열어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해도 자유권이 제약되어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권 실현을 위해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권 분야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은 인권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 실천에서 중요한 일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사회권 분야들이 전문적이어서 해당분야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어려운 인권현안들-제도와 실태-을 사회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는 작업을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 현안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의 경우 빈곤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 하는 용어들이 많다. ‘급여’, ‘전물량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이라는 말조차도 익숙치 않은 말이며, 이러한 용어로 설명되는 제도가 현실에서 최저생계비를 턱없이 낮게 책정할 뿐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받아야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작동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사회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전통적인 인권단체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유엔 인권규범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한국사회권상황을 보고서에 담는 과정부터 시작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작성과정 자체가 분야별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넘어 인권적 접근을 확산하고 ‘권리에 대한 인권적 접근’으로 인권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균등한 참여와 시간 부족으로 사실 흡족할 만큼의 작성내용과 연대과정이라 할 수 은 없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권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몇 년간 논의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 사회권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 활동 일지

- 2007년 11월 20일 1차 모임(간담회)
- 12월 11일 2차 모임
- (1) 사회권 3차 정부 보고서와 사회권위원회의 1·2차 최종견해 및 2차 민간 반박보고서 분야별 검토
- (2) 모임의 의의 공유
 - 단순히 집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넘어서 안정적인 UN기구 활용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단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국제기구 활용을 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3) 이후 준비 방향과 반박보고서 일정 공유
- (4) 보고서 틀거리 논의와 사회권 일반 논평 공부 계획
최종 견해 전의 일반적 유권해석. 관련 일반논평은 반드시 참고해야. 맥락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 주목하고 어떤 입장인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그 근거. 규약 자체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위원회에 제안.

- 2008년 3월 사회권위원회 한국 담당 위원 마리아 버지니아 고메즈와 NGO 간담회

- 10월 질의목록(list of issues) 한글본 작성, 11월 영문본 사회권위원회 제출
- 11월 제네바 사회권 사전심의 현지 참가
- 2009년 5월 사회권위원회의 질의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견해 준비
- 6월 사회권위원회의 Ms. Gomes(한국담당 국가보고관), Ms. Dandan 위원 한국 방문 NGO와의 간담회
- 7월 사회권보고서 초안 전체모임
- 8월 초안 전체워크숍
- 9월 한글본 초안(제출본, 축약본) 완성
-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영문본 제출
- 11월 제네바 현지 심의 참가

3. 의무주체인걸 아시나요?

: 정부와 인권위의 준비과정의 문제점

인권 메카니즘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 행위자로 ‘정부, 국가인권기구, 인권시민단체’를 들 수 있다. 특히 인권의 실현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예산이 필요하므로 인권의 증진 의무를 이행할

주체로서 정부와 국가인권기구는 매우 중요하다.

○ 의무주체인 정부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많은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권 규약의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림버그 원칙이 만들어졌다.²⁾ 또한 사회권 실현, 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매우 보충적인 것으로 보려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10년 후에 유엔 인권원칙으로 제시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³⁾로 제시했다. 그리고 세 가지 이행의무 중 어느 것이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들 권리의 침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단지 규약에 의거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을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넘어서 규약위원회가 쌓아놓은 인권원칙, 담론을 무시하였다.

첫째,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부정하는 태도를 정부는 고수하였다. 이

-
- 2) 림버그원칙은 국제사법위원회가 소집한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와 유엔인권센터(the United 림버그원칙은 국제사법위원회가 소집한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와 유엔인권센터(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1986년 6월 2~6일에 걸쳐 네덜란드의 Maastricht에 모여 사회권 조약 가입당사국의 의무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가 새롭게 구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여 만들었다. 1) 가입당사국의 의무의 성격과 범위, 2) 국가의 보고서와 조약 4조하의 국제적 협력에 관한 고려를 담고 있다. 제시된 원칙들은 사회권조약의 추상성과 자의적 해석을 극복하고 가입당사국의 보고의무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3)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6. 시민·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국가에 세 가지 형태의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그것은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이다. 세 가지 이행의무 중 어느 것이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들 권리의 침해를 구성한다.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데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의 의무**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국가가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업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일할 권리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노동권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실현의 의무**는 국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행정·예산·사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

러한 태도는 한편으로는 사회권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결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자인 심의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약심사 내용을 한정하는 방식을 보자. 한 예로 심의과정에서 사회권위원들이 MBC <PD 수첩>건을 질의하였을 때 법무부 관련자가 “그것은 자유권 영역에 속하니까 심의내용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질의를 막았다. 물론 사회권위원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 사안을 심의하려 하였다 기보다는 문화권의 영역, 즉 문화창작권과 문화향유권이라는 측면에서 PD, 작가 등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였다. (심지어 문화권의 측면에서 질의할 거라고 사회권위원이 말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정부는 MBC <PD 수첩>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니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며 질의를 막았다.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불가분의 것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하나의 사안이 하나의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2001년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자유권 규약의 심사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권 심사 대상이기도 하였다. 2001년 최종결해의 주요 우려사안에는 “32.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작품이 검열, 몰수, 혹은 파괴될 뿐 아니라 지식인과 예술인들 자신이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2차 심의 이후인 2007년도 이시우 사진작가(다행히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가 국가보안법으로 형사처벌될 뻔한 현실이 있다.

현실적인 인권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도화과정 중 하나인 ‘국제인권규약’⁴⁾이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인권의 제도화과정, 인권의 규범화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일 뿐이다. 다시 말해 규약 심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규약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는 자유

4) 냉전시기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자유권과 사회권을 분리하는 경향은 드러난다.

권과 사회권으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예로 용산에서 벌어진 강제퇴거, 그로 인한 철거민들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였을 때 법무부는 “자기가 살던 건물에서 저항하다가 생긴 일이 아니므로 주거권이 아니다. 강제퇴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여 사회권위원이 강제퇴거와 관련한 유엔 일반논평을 참고하라는 충고를 하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후자인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권고의 권위를 부인하는 방식을 보자. 최종견해가 나온 다음날 법무부는 ‘수용, 불수용’을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듯한 입장 발표를 하였다.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기초하여 질의하거나 단편적인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표단은 국제기구의 건설적 대화를 통한 합리적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들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2009년 11월 23일 최종견해 초안에 대하여 정정의견을 제출하였음”이라고 써 있다. 이는 국제규약에 가입하여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규약에 대해 가입당사국이 이러한 태도를 지니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며, 규약이행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선포라고 볼 수 있다. 사회권 규약에서 탈퇴하는 사상초유의 일을 또 저지르겠다는 것인가?

사회권 규약 심의는 인권이사회에서 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약칭 UPR)’와 다르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인권상황정기검토는 규약의 권위는 없지만 인권상황이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 현실과 규약에 가입하지 않는 유엔가입국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인권점검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인권의 기준으로 명시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인권이행의 내용을 권고하고 있고, 심사도 인권 관련한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가입한 정부가 한다.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권고를 강제할 틀이 확고하지 않아 이행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런

데 오히려 한국정부는 규약을 UPR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몰이해, 몰상식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처음 시작된 UPR이기에 심사 때 나온 질의와 권고에 대해 각국 정부가 '수용, 불수용'의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규약의 최종권고와 동일하게 바라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유엔 인권권메카니즘'을 흔들고, 규약의 권위와 기능을 하향평준화하는 일이다.

둘째, 보고서 작성과정이나 사회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없었다. 정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정부가 내는 보고서가 자국의 인권상황을 이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이외에도 인권증진이 정부정책만으로 되지 않기에 인권현안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이 2009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듯이 정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은 거의 없었으며, 질의목록에 대한 NGO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심의가 끝나고 최종전해가 나왔지만 이행과 관련한 NGO와의 협력 계획조차 없다.

○ 유엔인권기구로서 준국제기구인 인권위

국가인권위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사회권규약심의에 참가하지만 인권위의 준비는 형식적인 준비를 하였을 뿐이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를 작성할 때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이는 2008년 UPR 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이다. 당시에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며 독립성을 흔들어서 인권위 직원들이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더구나 무자격자 인권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국제인권규약 이행에 힘을 보태는 기본 임무를 할 때마저도 눈치 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도 한 몫 하였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사회권 심의 때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지점이다.

사회권위원회 심사 첫날 인권위를 21%나 조직축소하고 부적절한 인권위원장 임명은 파리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는 질타로 가득찼다. 현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위원장 자격 미달일뿐 아니라 국가인권위법상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인물이다. 현병철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 2항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스스로도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인권문외한이다. 이에 대한 비판성 질의가 여러 사회권위원들에게 나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조직축소는 30%가 아니라 21%이다, 축소는 독립성과 관련 없는 일이다, 임명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 라는 변명과 동문서답식의 답변만을 하였다. 이는 인권위가 인권위법에 맞는 인물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정부가 시행해야한다는 촉구일 뿐 아니라 인권위 스스로도 독립성을 수호하는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질의와 권고와 관련해 인권위가 어떠한 이행 계획도 새우지 않는 것은 인권위가 해야 할 기본 역할조차 방기하는 행위이다.

4. 부족하지만 첫걸음

: 최종견해의 특징과 아쉬운 점

“사회권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관용의 수준은 너무 높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권의 침해를 체념하고 받아들이거나 유감의 표현으로 침묵했다... 사회권의 침해가 일정정도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하다는 듯이 사회권의 대규모적 침해를 다루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Philip Alston, 1993년 세계인권대회 연설 중)

○ 특징

사회권 3차 권고의 특징은 먼저 매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점이다. (법무부도 지적하였듯이) 이는 사회권위원회 2차 최종견해와 달라진 상황이 없는 한국 상황과 맞닿아있다. 구체적 사안으로 드러나는 2차 권고의 불이행에 대해서 사회권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특히 용산 철거민 사망처럼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주거권을 심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 사안으로 용산이 언급되었지만 내용상으로 주거권 침해자-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쉽다. 주거권 침해를 강요한 경찰을 비롯한 용산구청 등 정부, 건설 회사, 용역 깡패들에 대한 처벌내용이 없다. 5)

두 번째로 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당사국에서 본 규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중대한 요소나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한국정부의 높은 경제력 수준에서 사회권 실현을 위한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시행을 주저할 어떠한 장애요소도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권고사항을 이행해야한다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틀간에 걸친 한국사회권 심의에서 OECD가입국이자 경제12대국이라는 점이 강조된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친(親)기업정책이 지닌 사회권 후퇴가능성을 위원회가 주목하지 못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NGO 들이 작성한 사회권 질의목록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친(親)기업정책에 대한 우려를 잘 짚어냈으나 본보고서에서는 2008년 말에 벌어진 금융위기를 주목하면서 정부 출범 초부터 꾸준하게 이어지는 친(親)기업정책이 지닌 사회권 후퇴를 강조하지 못한 점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은 노동부, 법무부의 정책으로 버젓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이러한 정부기조에 맞춰 노동자의 노동3권을 모두 불법시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최종 견해에서 경제우선주의적 정책을 우려한 것과 매우 대조된다.6)

5) 자유권적 권리침해에서도 인권침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불처벌은 매우 중요하다. 거의 완전한 불처벌을 누리고 있는 인권침해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할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권 선택의정서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

세 번째로 자유권과 연관된 사회권 관련 정부 정책이나 집행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창작권과 문화향유권과 관련한 MBC <PD수첩> 관련 사건, 국방부의 불온서적 가이드라인, 집시법의 남용으로 인한 광장 사용 제한 등 문화권 제한, 이시우 사진작가의 기소 등 국보법의 남용이 여전한 현실인데도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말한 정부의 공격적인 답변태도가 미친 영향이라고도 해석한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유엔 인권규약기구의 하나인 사회권위원회가 인권보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가 일반화된다면 규약의 심의효과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법률형식주의의가 국제인권규약에 침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1993년의 비엔나인권선언에서 밝힌 “모든 인권은 보편이며, 불가분이며, 상호의존하며, 상호 연관돼 있다”고 확인한 것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 아쉬운 점

최종 견해에서 아쉬운 점은 한국의 사회권 현실이 구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한국에서 인권운동가들이 우려하는 사안이 ‘정부정책 포장하기’에 의해 긍정적인 면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사회권 위원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거론한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교내 체벌의 대안’으로 정부가 포장하지만 실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마일리지는 오히려 이중차별로 악용

6)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8. 위원회는 한국이 주요한 사회경제적 과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정부가 규약 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9.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강제되고 있는 ‘요새 심리(fortress mentality)’의 만연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에 반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핵심분야들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불균형적 현실에 주목한다.
10. 위원회는 깊이 자리잡은 전통적·문화적 편견이 이주노동자와 여성 등 특정 집단을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11.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되고 있다. 차별금지 법조항을 만들지 않으면서 그린마일리지로 차별을 대체한다는 발상부터가 차별로 학생들은 관리하겠다는 통제수단의 의미가 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사회권 일반논평 등 유엔 인권 담론에서는 국가의 의무로 “행위의 의무”와 “결과의 의무”를 모두 포함한다. 단지 법을 제정하여 권리를 보장하려했다는 ‘행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그 권리가 보장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사회권 심의 때 답변에서 ‘그럴싸한 이러저러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의 의무에 대한 평가 없는 권고는 무색하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차별당하는 상황에서 그린마일리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결과의 의무를 보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쉬운 것은 시행될 예정인 정부정책이 한국 심의과정(위원회가 제출한 질의목록이나 제네바 현지심의에서 질문한 내용들)에서는 사회권 침해가능성을 우려하는 사안으로 다루어졌으나 최종견해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향유되고 있는 권리의 고의적인 후퇴나 향유되고 있지 못한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드는 일은 사회권에 반하는 전형적인 작위 행위이다. 또한 보호적 법률의 개악,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적 명령, 사회권에 해로운 정책의 강요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번 최종 견해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예를 들어, 4대강 정비사업(대운하사업에서 이름만 바뀐 개발정책)으로 벌어질 복지예산 축소나 주거권, 환경권 침해 등이 예상되지만 이를 최종견해에 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책이름을 교묘하게 바꾼 데다 복지예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쓴 게 아니라는 답변을 하는 강경한 정부에게 예상되는 인권침해를 최종견해에 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권위원회가 의료민영화도 같은 경우이다. 위원회가 질의목록을 통해 의료민영화가 끼칠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침해가능성을 질의하였으나 의료민영화와 건강보장성이나 의료시설 접근권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한 상태이고, 아직 의료민영화가 현실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견

해에 담기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미 벌어진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인권침해가 벌어지기 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사회권 위원회는 고의적으로 인권상황을 역행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역행하는 조치를 할 경우 “규약과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문 맥속에 제시하는 권리들의 총체성을 참고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법률의 제정추진이나 예산 책정으로 드러날 인권후퇴가능성에 대해 ‘우려사항’으로라도 언급되지 않았다.

○ 과제

한국사회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좋은 권고를 받아내는 과정이 보고서 작성 과정이었다면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나온 지금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할 일은 정부가 더 이상 사회권 증진을 립서비스나 제도명칭을 그럴듯하게 붙이는 것으로 생색내기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이다. 물론 현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행의 내용을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은 사회권 이행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을 알리고 그를 통해 정부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의무이행을 촉구하는데 한 몫을 할 것이다. 알리고 깨닫고 행동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이다.



부 록

- 국가인권위원회 제1차 의견서 국문(2008.11.)
- 국가인권위원회 제1차 의견서 영문(2008.11.)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의견서 국문(2009.10)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의견서 국문(2009.10)
- 제3차 최종견해 권고항목 주제별 분류 및 요약
- 제1차, 제2차, 제3차 최종견해 비교분석표
- 제3차 최종견해 전문(국문 번역본)
- 제3차 최종견해 전문(영문 원본)
- 인권위 보도자료(2010.2.1)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 보고서**
- 회기 전 실무그룹 제출 용 -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 A. 서론
- B.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 I. 일반구조
 - 1.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 2.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II. 제2조 차별금지
 - 1. 차별금지법 제정
 - 2. 장애인차별금지법
 - 3.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 III. 제3조 남녀평등
 - 1. 노동부, 법원의 성희롱 예방 및 시정업무의 실효성 문제
 - 2. 고용상 여성차별
 - 3. 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침해
- C. 개별 실체적 권리
 - I. 제6조 근로의 권리
 - 1. 장애인의 고용
 - II. 제7조 근로조건
 - 1.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상 차별
 - 2. 최저임금 현실화
 - 3.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 4. 산업재해로 인한 높은 근로자 사망률
 - 5.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불비
 - III. 제8조 노동3권
 - 1.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의 침해
 - 2. 공무원·교원 등의 노동3권 제한
 - 3. 공공부문의 단체행동권 제약
 - 4. 노동사건에 대한 과도한 형벌적용
 - 5.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침해

IV. 제9조 사회보장권

1. 기초생활수급기준의 완화 및 빈곤층 배제
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3.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미비
4. 엄격한 난민지위인정기준

V. 제10조 가정, 모성 및 아동보호

1. 아동학대
2. 입양
3. 성범죄
4. 성매매

VI. 제11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1. 최저주거기준의 미흡한 적용
2. 강제철거, 강제퇴거과정에서의 인권보호미흡
3. 빈곤층 노인등 주거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공간 제공미흡
4. 공공임대아파트 거주민에 대한 주거권보장미흡
5. 노숙인의주거기본권 보장미흡
6. 안전한 식품에 대한 권리

VII. 제12조 건강권

1.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화 정책추진
2.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의 의료사각지대 발생
3.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의료시설 이용불가

VIII. 제13조 교육권

1.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
2. 정규 교육과정내 인권교육 반영과 교원 인권교육지도 역량 제고
3.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사회권보호관련 직업인의 인권교육
4. 이주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미흡

IX. 제15조 문화, 과학에 대한 권리

1. 국가보안법과 예술인의 활동

※ 각 조항 앞 표는 제2차 사회권규약 심의 후 사회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최종 견해임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 보고서 - 회기 전 실무그룹 제출 용 -

A. 서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ICESCR)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3차 국가보고서에 심의에 앞서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을 위한 사회권규약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에 본 보고서를 제출한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A지위를 인정받은 대한민국 내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번 쟁점목록 작성에 사회권위원회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여, 서론 및 일반 이행조치, 개별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하여 현황 및 이행상황, 문제점 및 대한민국 정부에 제기해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회권규약 이행 상황은 지난 2차 심의 이후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사회권 위원회가 권고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권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인식 및 태도, 정치적 의지가 여전하다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사회권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높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대한민국의 사회권 현황에 대한 거듭된 지적은 무엇보다 경제력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비해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권의 향유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는 한국의 사회권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수년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전개해 온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

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그 같은 개선 의지의 지속 여부에 대해 의문을 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자유경쟁 지상주의, 노동의 유연화, 사회복지의 축소 등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사회권 보장에 불리한 구조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2월 출범한 신정부의 성장 우선주의적 정책은 이 같은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의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산업, 교육, 물과 전기 등 적절한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공재의 민영화 추진 등은 경제·사회적 권리의 향유에 심각한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회권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주민과 관련된 차별과 노동권,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 등으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 사회통합적 가치가 뿌리내리지 못하였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 집단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시도,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이들이 적정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보고서가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주요 질의〉

1. 국제규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한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시오.
2.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사회권에 대한 고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위한 사회권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는가. 특히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사법부의 판결 사례와 관련해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제시하시오.

3. 국가인권기구에 사회권과 관련한 조사권은 얼마나, 어떻게 보장돼 있으며, 사회권에 전문성을 갖춘 인권위원은 선임돼 있는가. 또 사회권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와 정부 간에 협의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
4. 사회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행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수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해 보시오.
5. 사회적 양극화, 빈곤율의 상승 등으로 정부의 사회정책 투자 증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최근 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 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매우 낮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장애요인을 제시하시오.
6.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의 제·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들로 인해 제대로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데다 최근 이의 개정 방침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7.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 단속을 피하려는 외국인 노동자의 잇단 사망 등으로 미뤄볼 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아직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8.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일부 차별 사유 조항의 삭제 등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음. 삭제된 차별 사유를 복원하고 차별금지법을 재추진할 계획,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는가.
9. 1,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에서 거듭 지적된 주거대책 없는 철거 등을 개선

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 위원회의 권고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밝혀 달라.

11. 2차 보고서에서 지적된 보건 분야 예산 비율이 낮은 문제와 관련 새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은 매우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제적 여건에 따른 건강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예측 평가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와 통계를 제시하시오.
12. 교육권-1,2차 보고서에서 언급된 취약한 계층의 교육에 대한 접근권 보장, 열악한 공교육 및 사교육 부담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가.

〈정부 보고서, 위원회 질의에서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 2007년에 마련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사회권과 관련한 사항들의 중간 이행 상황을 평가한 자료를 제시하시오. 2008년 9월 NAP 수정안에서 사회권과 관련해 변경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며, 변경한 이유가 각각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3차 정부보고서는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시 지적했던 통계의 신뢰성 부족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람.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차별받는 집단의 특성과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있는지, 없다면 그 같은 통계를 개발할 의사와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오.
- 인종차별 철폐와 관련된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하시오.
- 장애인 관련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있어서 사회권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평가한 적이 있는가. 있으면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시오.

B.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I. 일반 구조(General Framework)

1.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1) 이행상황

-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법은 국내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경우 국제인권규약을 직접 인용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인권법이 국내법원에 의하여 직접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이후, 국제인권법의 확산을 위하여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및 학계와 지속적으로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연구를 지속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의 업무가 장기적으로는 국제인권법이 헌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지위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국내법원이 국제인권법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고 인용하는 사례가 증가되어야 하지만 사법부의 보수적 문화와 국제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사회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또한 규약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3) 질의사항

- 사법부가 국제인권규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2.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1) 이행상황

- 2001년 11월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었고,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A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사회권규약의 이행 및 각종 법률, 정책 등이 사회권규약에 부합하도록 하는 정책자문기능 및 인권교육의 기능은 사회권규약의 내용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의 진정사건에 있어서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으로 포섭될 수 있는 권리 외의 사회권 위반은 다룰 수 없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기존의 사회권관련 정책권고에 있어 정부는 비용의 한계 및 사회권에 대한 인식 부족(노동권을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장관의 사례)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개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침해에 대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그에 대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점

3) 질의사항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을 확대하여 사회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 이행상황

- 2006. 1.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에 따라 2007. 5. 정부의NAP가 수립·발표되었으나, 주요 내용이 빠져있고, 구체적 이행계획이 불분명하다. 또한 현 정부는 2008. 8.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 NAP를 발표

하고 모든 행정부처에 이를 배포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규약위원회의 권고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 이행계획 미흡하거나 사회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행정 각부가 NAP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지니고 있지 못하거나,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정부 NAP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비정규직 노동자·이주노동자 및 난민·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분야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추상적이거나 본질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 외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3) 질의사항

-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사회복지예산 중 법정지출 부분을 제외한 재량지출부분을 일부 삭감하여 빈곤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가?

II. 제2조 차별금지

1. 차별금지법 제정

1) 이행상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초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는 2007년 정부입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마련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따라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 사유가 20개로 열거되어 있고, 입증

책임의 전환, 다양한 차별구제수단 등을 규정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이 모든 사항이 대폭 축소, 전환되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자동 폐기된 상태로, 지난 법안에서 법무부는 특히 기독교 단체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구체적인 차별금지 사유를 축소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절차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해집단의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질의사항

- 정부는 다시 차별금지법을 제정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있다면 비록 예시조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더 열거할 계획은 없는가
- 어떻게 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2.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이행상황

- 대한민국은 2008. 4. 11. 사회적 약자이며 대부분 빈곤층인 중증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 그리고 이증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하게 됨으로써 획기적인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아직 사회전반에서 장애종류와 장애정도가 다양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차별인 경우와 차별이 아닌 경우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교육, 이동 및 교통,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환경 및 사회 인프라 준비가 부족하다.

-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모든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차별과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과 상충되는 법령조항이 많이 있고, 법의 제·개정에 대한 권한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고 있으나, 제1차적 권리구제를 위한 차별 판단과 구제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제2차적인 시정명령의 권한은 법무부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권리구제권한이 이원화되어 있다.

3) 질의사항

- 장애인차별금지 이행과 효과적인 차별시정을 위하여 법, 명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정부는 제1차 차별 판단 및 권리구제 권고 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제2차 권고불이행시 시행명령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와의 협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3.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

1) 이행상황

-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월 현재 국내 체류 이주민은 1,066,291명이고 이 중 이주노동자는 502,082명(47.1%), 결혼이민자는 110,362(10.4%), 외국인유학생을 포함한 기타가 453,847(42.5%)를 차지하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의 전체 결혼 중 11쌍 이상(총 결혼건수 345,592건 중 38,491건으로 11.1%)이 국제결혼을 했으며 그 중 75% 이상(29,140건으로 75.7%)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다.

- 이와 같이 한국사회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이 중 이주여성노동자는 약 15만명(약30%), 결혼이주여성은 약 10만명(약88%)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노부모 봉양, 육아, 경제적 기여라는 다중의 역할 속에 기본적으로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간의 갈등(가정폭력, 고부갈등 등), 자녀교육문제, 지원체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 국적관련 법제 측면에서도 국내 주소 2년 이상인 자가 귀화 신청 후 그 처리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되어 위 복합적 요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더한다.
 - 더구나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서는 국적 취득이 최선의 방법인데,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조력이 필수적인바, 배우자와의 평등한 지위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 이에 법무부에서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
 - 중개인을 통한 국제결혼 시 고가의 중개료를 요구하고 결혼 대상을 일방적으로 선별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되어 중개인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여 상담과 사전정보제공,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 활동 강화 등을 모색한다고 하였으나, 이주여성의 권리 및 양육서비스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어,이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필요하다.
-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경험하는 문제, 즉 열악한 노동

환경, 임금체불, 욕설과 폭행 등 비인도적 처우, 불평등한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 및 건강권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합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는 섬유, 봉제, 수산물 가공업 등 단순 장시간 노동을 요하는 산업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일 평균 16시간 및 휴일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들은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으나 의사소통의 문제와 구제절차에 대한 무지, 불평등한 고용관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적절한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모성보호 및 건강권과 관련하여,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특히 미등록상태인 경우 공적 의료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또 임신의 경우는 회사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하며, 출산이나 중절수술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이다. 그러나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미비하다.

3) 질의사항

○ 결혼이주여성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국적취득을 통한 안정적 체류지위를 얻는 것이 필수적인데,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이 결정적이다. 또한 국적취득 신청에서 결정까지 1-2년 소요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지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위하여 국적 취득 외 다른 제도 및 절차가 검토되고
-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중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국적 취득 연계가 일단 보류되었으나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될 계획인가
- 결혼이주여성이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는(empowerment)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 이주여성노동자

- 이주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임신과 출산 시 권리,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대비와 교육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가, 또한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업장 점검 및 관리되고 있는가
- 미등록여성노동자의 경우 임신과 출산, 성희롱과 성폭행 관련 등 최소한 긴급한 상황에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가

III. 제3조 남녀평등

1. 노동부, 법원의 성희롱 예방 및 시정업무의 실효성 문제

1) 이행상황

- 현재 성희롱구제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법원 등이 맡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의 시정현황 및 처리결과가 공표되거나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은 노동부와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 판단기준, 구제의 효과성, 실제 처벌의 비율 등을 거의 알지 못한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으로 결정한 사건을 행정소송에서 뒤집은 바 있고, 노동부의 경우는 성희롱을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노동부와 각급 법원의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관련 사건의 처리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판단기준이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못하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일반의 통념을 반영하고 있어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되기 어렵다.

3) 질의사항

- 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노동부의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희롱 처리현황, 처리결과, 당사자 현황, 처리결과,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노동부가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및 예방업무 실태는 어떠한가?

2. 고용 상 여성차별

1) 이행상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구 「남녀고용평등법」)이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3.9%로 성별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동 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어떤 것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남녀를 불문하고 비정규직은 동일가치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다는 점,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여성노동자들이 임금에 대한 문제 삼기 어려운 분위기 등이 있다.
- 근로감독은 주로 상시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의 「사업체실태현황통계」에 따르면 여성임금근로자의 43%가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보호 법규의 적용을 사실상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3월 현재 여성의 41.4%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성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고용형태 차별로 비가시화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많은 여성집중 직종과 여성직무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임금, 낮은 사회보장 등 정규직과 차별적인 처우가 빈번하다.

3) 질의사항

- 모든 임금체제와 임금결정 기준에서의 남녀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 여성이 유통이나 판매 서비스직 등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고 있으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성별직종분리 현황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반 비정규직 차별문제와 별도로 여성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정책이나 대책은 무엇인가?
- 노동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대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이 제출하는 통계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규모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성비정규직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8%인데 이는 OECD 평균인 60.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정부투자기관 1.5%, 정부산하기관 6.9%, 민간기업은 12.1%에 불과한데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3. 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침해(혹은 10조)

1) 이행상황

- 현재 모성보호정책의 주된 대상은 근로여성이며 이에 따라 일반여성의 모성보호와 건강권, 생명권에 관한 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현행법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경우만을 예외로 하여 여성의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고 있으나 낙태범죄의 기소건수는 매년 10여건에 불과하다. 연간 낙태건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실제로 1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또한 근로여성의 경우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사실

상의 해고(계약해지)를 당하게 되고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제도가 있지만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계속 고용이 결정된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일반 여성의 모성보호와 건강권에 관한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외국과 달리 낙태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과 현실의 큰 괴리가 온존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여성고용구조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다. 결혼·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퇴직률은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다. 결혼·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고용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저소득가구에 속하는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거나 혹은 조기복직으로 인해서 출산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3) 질의사항

- 일반 여성의 모성보호와 건강권에 관한 정책은 무엇인가
- 근로여성의 41.4%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건강권을 위한 계획과 정책은 무엇인가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기 어렵고 고용이 지속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C. 개별 실체적 권리

I. 제6조 근로의 권리

1. 장애인의 고용

1) 이행상황

-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있지만 정부(의무고용 3%)조차도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체(의무고용 2%)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율이 낮다.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은 많으나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고 실제 장애인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경증의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고 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등과 중증의 장애인은 고용시장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고용상의 배제 또는 제한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3~5년 이후에는 각 사업장은 규모별로 과도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로 간주되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내야한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사업장 규모별로 정당한 편의에 대한 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 제도가 모두 있어서 강력한 장애인 고용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에게만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강제하게 될 때에 경영 악화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더욱 장애인 고용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특히 시청각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등의 고용 확대 및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학령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개별 장애종류와 장애정도에 적합한 기초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통합교육과 직업교육 수요에 비하여 전문가 양성 및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3) 질의사항

-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 단계적으로 유보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기피하는 사유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향후 3~5년 이내 30명 이상의 고용하는 기업체까지 장애차별금지법에 의하여 개별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하여야 하지만 아직 기업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등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체 지원계획 및 예산조달에 구체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청각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등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학령기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할 수 있는 기초교육과 직업교육을 장애 종류와 장애정도에 맞도록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인 바,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술과학부와 노동부등의 협력적 체계와 지원조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II. 제7조 근로조건

1.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상 차별

1) 이행상황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부당한 해고의 금지 및 1일 8시간근로원칙·연장근로수당 등 주요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

- 2007년 6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298만명으로, 1인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1,100만 2천명의 27.1%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 4명 중 한명이상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약 135만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241만원에 비해 약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5인미만 사업장에는 1일 8시간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저임금과 장시간근로의 위험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3) 질의사항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있는지? 확대적용의 시기와 범위는?

2. 최저임금 현실화

1) 이행상황

- 현행 2008년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일급 30,160원, 월급(40시간기준) 787,930원)으로 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전가구) 대비 24.6%, 2007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36.5% 수준으로서 ‘저임금계층 축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면서 저임금근로자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의 실질적 생계보장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OECD고용전망보고서(2008)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 중 저임금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보고되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은 20년간 꾸준히 상승해왔으나 여전히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저임금’ 또는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 혹은 탈법행위를 예방하고, 법위반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해선 근로감독행정능력을 강화해서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3) 질의사항

-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지(예를 들어,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집행 제고와 근로감독행정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근로감독관 한 명당 몇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는지?

3.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1) 이행상황

-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0만 개로, 전체 사업장의 97.6%에 이릅니다. 2007년 전체 산업재해의 10건 중 8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 2004년은 10건 중 7건이었으나 최근 4년 동안 약 10%가 증가했다.
- 이는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할수록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인 것이 그 이유임. 특히 소규모 사업장수는 대기업의 외

주화·분사화 경영방침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산업재해율은 사업장 규모와 반비례하고 있음. 2007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2만6천876명으로 5~9인 사업장(1만3천829명)의 2배에 육박한다. 규모별 재해율은 △5인 미만 1.51% △5~9인 1.09% △10~29인 0.89% △30~49인 0.69% △50~99인 0.51% △100~299인 0.37% △300~499인 0.23% △500~999인 0.23% △1천인 이상 0.30% 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율은 1천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5배가 넘고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수는 2007년 139만5천576개로 99년에 비해 6배 증가했으나 이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수는 거의 그대로이며, 2008년 5월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303명으로 감독관 1인당 3천780개 사업장 3만4천178명의 근로자를 담당해야 한다. 한국의 감독관이 돌아봐야 할 사업장은 미국의 4배, 영국의 9배에 달한다.
-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불과 1천903개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감독이 실시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절반은 추락·전도·협착 같은 재래형 사고로 나타난다.
- 현재 한국정부의 정책은 산재율 감소에만 급급할 뿐(결국 이는 산재은폐로 이어지고 있음) 정작 사업장이 산재감소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은 미흡하다.

3) 질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감독행정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노동부 안전보건점검대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 50인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의무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법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원인은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범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 사례는 어느 정도나 되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법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것 아닌가?

4. 산업재해로 인한 높은 근로자 사망률

1) 이행상황

- ILO에서 경제활동인구 10만명당 산재사망률을 추정한 결과(2006년)에 따르면, 한국은 경찰인구 10만명당 15.7명으로 선진국의 4배 이상임(영국 0.8명, 프랑스 3.0명, 일본 3.2명, 미국 5.2명).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2007년 한 해에만 2,406명의 근로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으며, 하루 평균 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최근 한국타이어에서의 사례(2006년 5월부터 2007년까지 기간동안 15명의 근로자가 사망)처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2007년 특별근로감독 결과,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183건의 산재은폐가 드러남) 및 법준수의식의 미약은 높은 산재사망률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행정 미흡 및 범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미한 처벌 관행도 지적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권 경시 경향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3) 질의사항

-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방향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한국 경총이 정부에 건의한 규제완화에 관한 전체 97건 중 23건이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완화 과제였다. 기업의 이윤 보장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5. 비정규직 남용(외주용역의 증가) 및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1) 이행상황

-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약 858만명 (53.6%), 2008년 3월 통계청)이 비정규직으로서, 우리 사회는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 2007. 7. 1.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본래 취지는 '2년 고용 후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있으나, 비정규직법 시행 후 현실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주용역이 증가했다.
- 또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차별로 인정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철도공사 사건 포함 2건).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현행 비정규직법은 직접고용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고용 및 차별시정에 관한 내용만 규율하고 있을 뿐 외주용역 근로자의 차별시정에 관해선 규율하고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외주용역을 선호한다.
- 특히 이와 같은 외주용역화 현상은 이랜드·홈에버·기륭전자·KTX 사례와 같이 소외계층인 여성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계약해지와 같은 사용자의 보복조치를 무릅쓰고 근로자 개인이 차별시정을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차별판단 비교대상근로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실질적으로 차별판단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3) 질의사항

-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주용역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해 최근 한국의 대법원은 직접고용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의 처리방식은?

-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별시정기능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노동조합이나 제3자로 확대하고, 차별판단 비교대상을 외국의 사례와 같이 초기업적 비교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불비

1) 이행상황

- 국내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취업자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각국의 법률체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중심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방식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같은 회색지대(grey area)의 등장과 함께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들 그룹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노동부 약90만명, 노동계 약 200만명)하여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오늘날 종속근로와 자영업의 중간지대를 점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는 외주용역과 같은 간접고용문제와 함께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관한 보호방안으로 17대 국회에 4개의 법안이 상정되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3) 질의사항

-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입법론적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III. 제8조 노동3권

1.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의 침해

1) 이행상황

- 비정규직근로자도 법적으로는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현실에선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경우 사용자는 여하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실질적으로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외주용역의 경우엔 더욱 심각한데, 원청업체가 노조결성 등을 이유로(물론 외형적으론 업무차질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음)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외주용역근로자들이 집단 해고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노동법이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수형태근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그 '경제적 종속성'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여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외주용역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사업장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이들의 근로조건은 실질적으로 원청업체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원청업체는 외주용역근로자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계속여부(해고)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인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3) 질의사항

- 한국의 대법원이 최근 판결(현대중공업, 코스콤)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각지대의 해소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이들에 대하여 단결권(결사의 자유)을 보장하자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2. 공무원·교원 등의 노동3권 제한

1) 이행상황

- 공무원의 경우, 현행법이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안직군, 인사·예산 기타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교섭권을 형식적으로 부여하고는 있으나 임금과 인사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핵심적 사항을 교섭금지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단체행동권의 경우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 교원노조법은 가입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및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이 금지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공공복리와의 비교형량을 위해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파업예고제, 업무복귀명령제 등 규범 조화적으로 맞출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단체행동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
- 대학교수에 대해선 교원노조법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결과 출범한지 6년이 되는 전국교수노조는 법외노조로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 질의사항

- 지난 2001. 5.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3권이 법과 실제에서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법이

2005. 1. 제정된 것은 성과라 볼 수 있겠으나, 가입범위 제한 등 한계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가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선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의 모범적 사례에 쫓아 법익 조화적으로 쟁의행위를 허용해야 하지 않은가?

3. 공공부문의 단체행동권 제약

1) 이행상황

- 대표적 독소조항이었던 직권중재가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제도의 존치 등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을 중층적으로 두고 있어 공공부문의 단체행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ILO 기준보다 광범위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적 통제장치인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사후적 통제장치인 긴급조정 제도를 동시에 두고 있다. 이는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목적을 넘어, 쟁의권에 대한 중복규제이고 과잉제한이기 때문이다.
-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도, 필수서비스 관련 쟁의와 긴박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ILO 원칙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3) 질의사항

- 쟁의행위권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공공부문에서의 쟁의행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노사교섭에서 사측은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원활한 교섭의 진행을 못하게 하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현행법이 노사 자율교섭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4. 노동사건에 대한 과도한 형벌적용(업무방해죄의 남용문제)

1) 현황 및 이행방해요소

- 노동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의 수는 대체로 매년 약 200여명으로서, 이들 중 구속사유 50%정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속뿐만 아니라 벌금 등이 적용된 예는 더욱 광범위하며, 이와 같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ILO등으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 문제점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가 24개에 이르고 있고, 처벌의 정도 역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 쟁의행위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국가에 의한 형벌권을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
-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선 위 노조법상 각종 처벌조항 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을 받아 처벌된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사법부 또한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형량 역시 대부분 높기 때문에 주로 업무방해죄만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3) 질의사항

- 노동관계법 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입법례는 거의 없다. 한국의 과도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규약위원회의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시마다 처벌규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하며, 단순한 노무제공거부 형태의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개선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개선방향은 어떠한지?

5.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침해

1) 이행현황

- 한국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Migrants' Trade Union) 결성되고 난 이후 정부는 해당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단속과 구금, 강제퇴거의 일련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 간부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 주거의 자유 침해, 강제퇴거명령 집행행위의 위헌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상 노동3권의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송이 접수된 상태이다.
-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91명은 2005. 4. 24.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노동청장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노조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바, 위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구금과 강제퇴거의 일련의 과정에서도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인권침해가 없어야 하나, 지속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를 발표하는 당일날 정식으로 문서를 전달받기 전에 진정인들을 강제출국시키는 사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항의한 바도 있다.
- 또한 이주노동자 간부들에 대한 표적단속이 결국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재판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주노동자는 주장하고 있다.

3) 질의사항

- 이주노동자 조합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구금과 강제퇴거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 법원이 일관되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결성권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IV. 제9조 사회보장권

1. 기초생활수급기준의 완화 및 빈곤층 배제

1) 이행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2000년 10.8%에서 2007년 15.6%로 악화되었고, 지니계수 역시 0.286에서 0.324로 증가하였고, 소득 5분위 배율도 4.58에서 6.12로 증가하여 양극화의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0년 141만명에서 2007년 146만명으로 7년 동안 불과 3.5%, 단 5만여 명이 증가하였다.
-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소득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위험계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기준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빈곤층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급여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 부적합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기준으로 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는 소득·재산의 크기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과도하게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 낮게 설정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별기준,

높은 재산 소득환산율,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기준과 산정 방식 등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급여가 삭감되었다.

- 최저생계비 산정시 가구별·지역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가구와 대도시 거주 저소득층 가구의 적절한 생계지원이 어렵다.

3) 질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공공부조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하여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의 도입에 대한 향후 계획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주거·의료·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 탈출을 유도할 방안은?

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1) 이행현황

- 1998년 전 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했으나 아직도 전체 연금가입 대상자의 1/3에 해당하는 약 600만 명 정도가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 계층은 장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차 연금을 받지 못하고,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처럼 광범위한 사각지대 때문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급격한 연금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축소시켰다.
-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수준 인하를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전체 노인의 60%에게 약 8만 5천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출발하

였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공공부조로 인식하면서 대상범위를 현재보다 더 낮추고 금액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기초연금의 재원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GDP의 1%~2% 수준에 해당되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5%~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투여되는 재원의 양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에서의 자발적 기여회피, 노령연금의 수급대상 배제, 과도하게 엄격한 장애연금의 급여 수급자격 요건, 부적절한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정지 또는 감액결정,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불합리한 병급조정 등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 연금의 협소한 적용범위, 낮은 연금 급여수준, 연금재정의 불안, 보험료 부과 불공평성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및 생계 보장이 제한된다

3) 질의사항

- 사회보험의 확대, 급여수준의 적정화, 연금재정의 안정화 등의 방안은?
-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규정 개선 등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책은?
-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 방안과 연금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은?

3.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미비(이주인권)

1) 현황 및 이행장애요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2)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중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2) 문제점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의 결혼이주 여성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3) 질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주 여성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4. 엄격한 난민지위인정기준과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미흡

1) 이행현황

- 2008. 5.말 현재 1,9451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하여 이중 76명이 난민으로 인정된 바 있다. 73.1% 이상의 난민신청인이 1년 이상 대기하였으며 4-5년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17.9%에 이르고, 최근에는 최초 난민신청 후 8년 이후에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다.
-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구금이 해제되지 않아 장기간 구금되어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최근에는 외부에서 난민신청을 한 신청자를 불법취업혐의로 단속하여 구금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 난민인정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다. 그러나 이 외의 어떠한 사회보장 제도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다.
- 난민신청자 및 인도주의적 체류허가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불허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체류허가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난민지위 인정률이 저조하며 난민인정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장기구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이외의 어떠한 사회복지 혜택도 없어 사회보장이 부족한 상황이다.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난민인정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허되고 있어 생계의 유지조차도 어렵다.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체류자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어 생존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다.

3) 질의사항

- 난민인정기간 장기화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 난민신청자가 구금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며, 난민신청자 구금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난민신청자와 인도주의적 체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취업허가 등을 포함한 정책이 있는가
- 난민인정자에게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V. 제10조 가정, 모성 및 아동 보호

1. 아동학대

1) 이행현황

-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가정파괴로 인한 아동학대 증가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
- 2001~2007년까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현황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신고된 경우도 약 1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신고접수 건수		
	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
2000. 10~12	1,678	603	1,075
2001	4,133	2,606	1,527
2002	4,111	2,946	1,165
2003	4,983	3,536	1,447
2004	6,998	4,880	2,118
2005	8,000	5,761	2,239
2006	8,903	6,452	2,451
2007	9,478	7,083	2,395
계	48284	33867	14417

*출처 : 보건복지부(2007), 전국아동학대현황 자료집

<재신고 아동>

(단위 : 건)

연 도	계
2001	20
2002	103
2003	136
2004	533
2005	573
2006	693
2007	957
계	3,015

*출처 : 보건복지부(2007), 전국아동학대현황 자료집

- 또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약 83%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후 빈곤에 의한 아동 방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 문제점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조치의 미비, 적절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의 부족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의 미흡으로 인하여, 학대에 노출된 피해아동은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있어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된다.
- 아동학대의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법적 조치들은 아동학대의 예방·보호에 미흡한 수준이다. 가령, 현행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이 없고(신고교육 등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율이 외국에 비해 저조한 편임), 친권제한 등의 사법적·행정적 조치가 실효성이 없거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가령,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는 이에 대응하는 법적 조치의 미흡함과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음(가령, 상당한 신체적 폭력이 가한 경우에만 ‘학대’로 인식함)에 기인한다.

3) 질의사항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법적 조치 포함)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방임을 포함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가

2. 입양

1) 현황 및 이행 장애 요소

- 한국은 민법 개정을 통하여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일반 입양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존재하고 있어 전면적인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여전히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항에 대하여 유보하고 있으며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

- 국외 입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국내입양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아래의 표 참조).
- 이는 국내입양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정부 또한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입양현황>

(단위 :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입양	1,564	1,641	1,461	1,332	1,388
국내입양비율	40.6	12.0	41.0	41.2	52.3
국제입양	2,287	2,258	2,101	1,899	1,264
전체	3,851	3,899	3,562	3,231	2,652

*자료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국외입양은 성장과정에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어렵게 하는데, 현재와 같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개입이나 정책으로는 국외입양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3) 질의사항

-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항의 유보를 철회하고 「국외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을 계속 검토한다는 의사를 국내외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양허가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 장애요소는 무엇인가
- 국외입양을 최소화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별도의 실질적 정책이 있는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가족제도의 차별적 법령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3. 성범죄

1) 이행현황

-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 또한 신고율은 10% 미만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가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2차 피해이다.
- 최근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 등 아동이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등 아동 성폭력의 확산을 막고 재범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아동 성폭력은 피해 아동의 삶과 인격을 파괴시키고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인 장애로 작용한다.

3) 질의사항

- 아동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성범죄 피해아동의 2차 피해자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정책의 효과는 어떠한가. 그리고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가
- 아동 성범죄 관련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 아동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당국과 교육기관 등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

- 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가
- 현재 실시되는 아동 대상 성교육의 효과는 어떠한가.
 -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4. 아동성매매

1) 이행현황

-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종 아동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은 부재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은 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도서 국가에서 아동인권 가해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다.

<아동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현황>

연도별	검거검수	검거인원	검거대상별			조치	
			행위자	업주등관련자	대상청소년	구속	불구속
2001	1,255	2,034	1,690	314	30	803	1,231
2002	1,270	2,014	1,510	477	27	591	1,323
2003	1,349	2,099	1,703	359	37	579	1,520
2004	1,593	2,680	2,202	425	53	712	1,968
2005	1,139	1,946	1,611	305	30	295	1,651
2006	744	1,745	1,502	183	60	149	1,596

* 자료 : 경찰청

<아동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연도별	계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면	기타
2001	1,255	845	136	46	102	126
2002	1,270	916	44	61	106	143
2003	1,349	1,120	18	47	72	92
2004	1,593	1,368	21	7	88	109
2005	1,139	924	23	7	62	123
2006	744	590	1	5	50	98

* 자료 : 경찰청

2) 질의사항

- 인터넷 등 신종 아동 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 지금까지 실시한 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정책의 효과는 어떠한가. 피해아동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아동성매매 가해자 교육과 관련한 특별한 대응방안이 있는가
- 해외원정 아동성매매를 방지하고 감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5. 성매매여성의 자활지원체계 미흡

1) 이행상황

-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한 정책개입방향과 개입영역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에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상담소, 지원시설 등 설치 운영, 의료, 법률, 직업훈련지원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신용회복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성매매방지법에는 성매매 피해여성지원에 '자활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원의 내용은 취업 및 직업훈련, 진학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 탈 성매매이후의 자활에 대한 지원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자활지원은 사회복지지원체계와 연계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활사업 기관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해부족 및 성매매 여성 자신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

문에 그들간의 연계가 매우 어렵다

- 또 성매매 경험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강한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은 빈곤과 성매매 피해의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소외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활정책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다.

3) 질의사항

-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세부 계획은 무엇인가
-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직접적 취업지원이나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에 실질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empowerment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이행현황 및 실행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VI. 제11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1. 최저주거기준의 미흡한 적용

1) 이행현황

- 2005년 현재 206만 가구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에서 34만가구가 아직까지도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중 두개 이상의 기준에 미달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세 개의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2만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 또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주지역으로부터 축출된 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쪽방·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여 화재와 범죄 등의 위험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구원수나 가구구성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임대료 부담 및 전세자금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이동을 통한 적절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질의사항

- 적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인권개선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그 자체의 준비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무엇인가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 및 전세자금 지원 강화, 주택개량사업 지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없는가?

2. 강제철거·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미흡

1) 이행현황

-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강제 철거와 강제퇴거 등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철거는 생활터전을 파괴하여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다. 또한 각종 재개발 계획에 있어 관련 거주민과의 사전협의와 동의절차가 미흡하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강제철거 및 강제퇴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개발과정에서 거주민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3) 질의사항

- 민간개발에 인한 철거와 퇴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철거·퇴거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등을 의무화 할 계획이 있는지?

3. 빈곤층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공간 제공 미흡

1) 이행현황

- 65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5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노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한 주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주거공간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노인가구 및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적절한 주거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3) 질의사항

- 주거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4. 공공임대아파트 거주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 미흡

1) 이행현황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나 개인파산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고 임대보증금이 압류되어 임대사업자에 의하여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공공임대주택에서 개인파산 등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강제퇴거 되면 가정이 해체되고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행한다.

3) 질의사항

- 개인파산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강제퇴거 당할 처지에 있는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무엇인가?

5. 노숙인의 주거기본권 보장 미흡

1) 이행현황

- 현재 노숙인 지원체계는 시설입소 위주의 정책으로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확보 대책이 미흡한 상태이다.
- 노숙인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처는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활의 집 이후의 영구적인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설을 순회하거나 거리노숙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노숙인에 대한 적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과 노동을 통한 자활의 기반을 조성할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3) 질의사항

- 노숙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무엇인가?

6. 안전한 식품에 대한 권리

1) 이행현황

- 최근 우리 사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타결로 인해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쇠

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가 대규모의 촛불집회로 발전한 바 있고, 중국산 멜라민 함유 식품의 수입과 유통으로 먹거리 선택에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특히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

- 수입식품과 관련하여 올 한해 발생한 사건만 해도 생쥐머리가 포함된 중국산 새우깡 유통,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 함유 이탈리아산 모짜렐라치즈 유통, 미국산 수입 쇠고기 수입의 광우병 우려, 유전자 조작 옥수수 5만여 톤의 울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한 유전자조작 농산물(GMO) 수입 본격화, 중국산 멜라민 함유 식품, 살모넬라균 감염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 유통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에서 여러 차례 위해성 논란이 있었다.
-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면서 전체 사회구성원의 안전하고 해가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일상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특히 위해논란이 있는 수입식품은 대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의해 소비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건강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우려도 있다.
- 건강불평등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교육, 직업, 소득과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와 건강수준의 상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의 수입에 신중을 기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정부는 발병 통계와 확률을 이유로 들어 광우병에 대한 일반시민의 공포를 존중하지 않고 수입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멜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수입식품 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된 바 있다.

- 따라서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에 관련된 정부의 대외관계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식품관련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질의사항

- 식량권 특히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대한민국 내에서 어느 정도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는지, 식량권의 의미와 내용을 확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무엇인지
- 식품수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호, 존중, 실행을 위한 국가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법, 제도 등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와 관련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갖고 있는지

VII. 제12조 건강권

1. 보건의료정책 :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화 정책 추진

1) 이행현황

- 정부의 낮은 보건 예산 비율과 민간의료기관의 압도적 비율은 우리 사회의 건강권 보호에 있어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정부는 보편적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당연지정제,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유지 등의 법, 제도를 통하여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 또한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사회적 공공재로 인정하고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환자를 보건의료기관에 모집, 유인, 알선하여 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간 환자를 유치할 위한 경쟁을 방지하고 환자의 질병상태와 필요에 따라 병원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체제를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동력화 하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제도,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정 등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한 관련법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 6.부터 외국인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할 경우,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의료서비스 공급의 공정성 훼손, 의료의 질 저하, 환자의 부담 증가,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왜곡 등 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 이를 접근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이 낮은 우리의 상황에서 본 개정조항이 모든 국민에 대한 차별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을 제약할 우려가 매우 큰 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책무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정부는 의료 산업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병원 중심의 제공체계와 공공성이 낮은 재정체계라는 보건의료체제 하에서 의료취약계층은 물론 중증질환에 직면한 국민들이 의료비 과중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해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추진 정책이 건강권에 역행적 조치가 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권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등을 면밀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질의사항

-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법, 제도 등 정책방향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구성원의 건강권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구체적 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가

2.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의 의료사각지대 발생

1) 이행현황

-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자격이 정지되고 보험급여 혜택이 정지된다.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한 보험급여비는 가입자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된다.
- 건강보험 체납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에게서 발생하는데 2007. 8. 현재,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이 되고 있는 세대는 약 209만 세대이다. 세대 당 가구원수를 2-3명으로 할 경우, 약 400만 내지 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04. 129만 세대였던 것과 비교할 때 급여 제한 세대수가 약 80만 증가한 것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 범위 확대 등의 국가 보호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소득이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지역가입자의 25%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형성하여 체납자가 질병 시에도 의료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특히 여러 연구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제한 조치는 건강수준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 국가의 전반적 경제성장 둔화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소액 장기 체납세대의 감소방안과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는 의료비와 관련한 공공재정 지출 비용이 낮은 것과 연동된 문제로, 국가정책과 예산 집행 등이 건강권 보장의 관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3) 질의사항

- 건강보험 사각지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계획과 정책은 무엇인가

3.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의료시설 이용 불가

1) 이행현황

- 미등록이주노동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수술비 지원을 50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자는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이용이 어렵다.

2) 장애요소와 문제점

- 미등록 이주자와 일상적 지속적 의료조치가 필요한 미등록 이주자의 미성년 자녀의 일상적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

3) 질의사항

- 미등록 이주자와 그 자녀의 기본적 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VIII. 제13조 교육권

1.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학교교육팀)

1) 이행현황

- 교육예산은 2003년도 24조 9천억에서 2008년도에는 35조 4천억원으로 42% 증가 하였음에도 일반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3년도 기준 사교육비

는 13조6천억으로 2003년도 교육예산의 절반을 넘어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에 경쟁과 효율의 시장원리 도입을 위하여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고 교육 자율화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자율화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 및 국제고 등 특목고의 증가에 따른 학생간의 학력 격차 증가 및 학생인권의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아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경우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사교육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1인당 공교육비	
	'03년	07년	'03년	07년	'03년	07년
초등학교	209	256	83.1	88.8	270	341
중학교	270	314	75.3	74.6	339	371
고등학교	298	388	56.4	62	422	494

※출처 : 교육통계연보, 1인당 공사교육비는 월간비용을 의미함

3) 질의사항

-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의 증가는 학생간의 학력편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킬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2. 정규 교육과정내 인권교육 반영과 교원에 인권교육지도역량 제고(학교교육팀)

1) 이행현황

-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은 주로 시민, 사회단체에 있었고 학

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입시 위주의 경쟁적 학습 구조를 강조하는 학교 분위기 속에서 실천적인 인권교육은 불가능했고 학교와 교사 스스로도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인식 또한 부족하다.

- 국가인권위는 초중등학교 정규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2002년부터 기 초여건 및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7년 고시된 제7차 초중등 교육과정에 국어, 도덕, 사회 등 각 과목에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내용이 대폭 보장 되는 인권교육이 도입되었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2005년 인권위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일반시민 92%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 학교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필요성을 91.8%가 인정하였다.
- 인권교육은 유·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야 함에도 2007년 개정 고시된 제7차 초중등 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의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이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은 인권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상의 교과목(도덕, 사회 등)에 인권관련 내용을 수록함에 따라 유치원, 초등 1, 2학년은 인권교육에서 사실상 배제됨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학교 내에서의 인권교육은 하나의 체계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고 교과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교육에서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목표와 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범주와 계열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내용구성에서도 인권 교육 자체에 초점을 두고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타 교과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재로 언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인권내용 반영 현황

교 과		반영 방안		반영 학교급 또는 학년					반영 정도	
		교육 과정	교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	보통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인권 교육 (외국인 근로자 포함)	국 어		○			○	○	○		○
	도 덕	○	○			○	○		○	
	사 회	○	○			○	○	○	○	
	과 학									
	실 과 <기술·가정>									
	체 육									
	음 악									
	미 술									
	영 어	○	○		○	○	○	○		○
장애인 이해 교육	국 어		○			○				○
	도 덕	○	○			○	○		○	
	사 회		○				○	○		○
	과 학									
	실 과 <기술·가정>		○			○	○	○	○	
	체 육									
	음 악									
	미 술		○			○	○			○
	영 어	○	○		○	○	○	○		○
양성평 등교육	국 어		○		○	○	○			○
	도 덕	○	○				○		○	
	사 회		○		○					○
	과 학									
	실 과 <기술·가정>	○	○			○	○	○	○	
	체 육		○				○	○		○
	음 악									
	미 술		○				○	○		○
	영 어	○	○				○	○		○

3) 질의사항

- 인권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권교육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 학교 내에서의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목표와 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범주와 계열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은?
-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효과는 교사의 인권교육의 질에 의해서 좌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교육시키는 교원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인권관련 강좌가 특강형태수준으로서 인권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3. 인권교육에 관한 권리(13조) : 사회권보호관련 직업인의 인권교육(공공교육)

1) 이행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노인장기양보험제도 시행 등과 같은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보수교육 규정, 사회복지사 전문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도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실천에서의 인권관점의 인식의 필요성 확인하였고, 2007년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을 주제로 토론회 및 2008년 “국가인권기구 및 정부의 역할과 과제 : RBA 도입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해외전문가(Virginia Bras Gomes)를 초빙하여 국제워크숍 개최하였다.
- 또한 2006년도, 2007년도 정신요양시설,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2007년도 노인 및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교재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권보호관련 전문직업인을 위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전개하였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생활시설내의 인권침해,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실태는 날로 심각해지나 서비스제공 과정상의 인권친화적 관점이나 이용자 및 시설종사자의 인권교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권보호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 투입 이전 및 이후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지 못한 취약점이 있다.

3) 질의사항

- 사회적 약자 집단에게 있어 자신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하며 사회권보호의 일선종사자이며 실천자인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업인이 인권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법제도적 정책적 보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 이주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미흡(이주인권팀)

1) 이행현황

- 미등록 이주자 등 이주자 자녀가 한국 공립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2001년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입학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실제 학교의 입학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학할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월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요구하여 입학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3) 질의사항

- 미등록 이주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및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IX. 제15조 문화, 과학에 대한 권리

1. 국가보안법과 예술인의 활동(정책총괄팀)

1) 이행현황

- 지식인과 예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에 대한 규약위원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최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지식인과 예술인에 대한 구속과 기소를 자행하고 있다. 검찰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지식인과 예술인을 포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73명을 기소하였으나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명에 불과하다.
- 구체적으로 2008. 1. 30. 법원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던 ‘사진작가 이시우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검찰은 여전히 지식인과 예술인에 대해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자행하고 있다.
- 제17대 국회(2004. 5. ~ 2008. 5.)가 임기만료로 폐회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개정법안이 모두 폐기되었으며, 2008. 10. 10. 현재까지 제18대 국회(2008. 5. ~ 2012. 5.)에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정부의 입법적 노력은 보다 절실한 상태이다.

2) 장애요소 및 문제점

- 법원의 국가보안법에 있어 엄격한 법해석과 적용 판결이나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규약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식인과 예술인의 학문적, 예술적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구속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법 집행 관행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종전 정부와 달리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지난 제17대 국회의 입법적 노력이

있었던 것과 달리, 국회의원과 동일한 입법적 제안권(법률안 제출권)을 지니고 있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 질의사항

-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검찰과 경찰)과 정보기관(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을 계속하여 넓게 해석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무리한 법적용으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1) 검찰은 사진작가 이시우의 ‘민통선 평화기행’이라는 사진집 출판과 활동을 두고 “수년간 전국의 미군부대, 비무장지대 등 군사보호 시설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메모지에 기록하고,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신이 기자로 일하던 통일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군사시설 현황, 작전 계획 등 군사사항을 공개하였고, 북핵문제·전시작전통제권·주한미군 등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한 글과 자료를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 5조 1항(사진지원 금품수수)·8조 1항(회합 통신)·7조 1항과 5항(찬양 고무 등) 위반, 군용항공기지법·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 위반 등의 6개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2008. 1. 30. 제1심 법원은 기본권 제한 우려가 심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작가의 이러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Submission to the Preessional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the Republic of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ovember 13, 200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able of Contents

A. Introduction -----	1
B. General Provisions -----	4
I. Article 2: General Framework-----	4
1. Legal Status of Covenant under the Domestic Law-----	4
2. Establishment of the NHRCK-----	4
3.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5
II. Article 2: Anti-Discrimination Efforts-----	5
1. Anti-Discrimination Act Bill-----	5
2.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6
3.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men-----	7
III. Article 3: Gender Equality-----	9
1. On Effectiveness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and Rectification Measures-----	9
2.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9
C. Substantive Rights of Individuals -----	11
I. Article 6: Right to Work-----	11
1. Right to work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1
II. Article 7: Working Conditions-----	12
1. Discrimination and Enforcement of Labor Standards Act-----	12
2. Realization of Practical Minimum Wage-----	12
3. Measures to Resolve Safety Concerns in Small Workplaces-----	13
4. High Mortality of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14
5. Abuse of Non-Regular Workers and Validity of Relevant Regulations-----	15
6. Lack of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16
III. Article 8: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16
1. Violation of Right to Associate including Trade Unions-----	16
2. Limitation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Servants and Teachers-----	17
3. Restriction in Exercising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n Public Sector-----	18
4. Excessive Punitive Measures on Labor Dispute Cases-----	18
5. Human Rights Violation of Migrant Workers Union-----	19
IV. Article 9: Right to Social Security -----	20
1. National Security for Basic Livelihood System and Poverty-----	20
2. Resolving Blind-Spots in National Pension Fund-----	20
3. Insufficient Guarantee of Basic Livelihood to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21
4. Strict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and Insufficient Social Welfare for Refugees-----	22

V. Article 10: Family, Motherhood, and Child Protection	23
1. Right to Safe Motherhood and Health	23
2. Child Abuse.....	23
3. Adoption.....	25
4.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26
5. Child Sex Trade.....	27
6. Lack of Rehabilitation Support for Female Sex Workers.....	28
VI. Article 11: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29
1. Application of Minimum Housing Standards.....	29
2. Human Rights Protection from Forced Removal and Eviction	29
3. Providing Adequate Housing for the Vulnerable Groups Including the Elderly.....	30
4. Guarantee of Right to Housing to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30
5. Guarantee of Basic Right to Housing to the Homeless.....	30
6. Right to Safe Food.....	31
VII. Article 12: Right to Health	32
1. Industrialization of Healthcare as Business Opportunity	32
2. Marginalized Zon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33
3.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Denial of Access to Medical Facilities	33
VIII. Article 13: Right to Education	34
1. Excessive Private Expenditures on Education.....	34
2.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 Curriculum and to Teachers	35
3. Education in Public Sector for Social Workers	37
4. Lack of Commitment to the Right to Education for Children of Migrant Workers	38
IX. Article 15: The Right to Participation in Scientific and Cultural Activities	38
1. National Security Act and Works of Artists	3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 Introduction

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NHRCK”) hereby submits information to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where the “List of Issues” will be drafted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Third Periodic Report examination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cheduled next year. In this submission, NHRCK makes proposition to the Committee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CESCR, as NHRCK has been monitoring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SCR”) situations in the capacity of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with “A status” accredited from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2. Following report is written in line with the ESCR general guidelines and outlines introduction, general implementation measures taken, and substantive provision. It also includes implementation status and constraints for each thematic issue, and propositions made to the government.
3. Since the examination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domestic implementation efforts have proven successful in some areas, however, much of the recommendations are yet to be realized to a satisfactory level. As it can be traced back to the Korean government’s reluctant stance and attitude towards recognizing the ESCR in Korean society, the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raise awareness on the ESCR in Korean society is reaffirmed.
4. Repeated concerns expressed on the ESCR status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disparity between the degree of economic growth and the support provided accordingly to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which enables them to enjoy their ESCR. There needs continuous and proactive efforts to overcome this problem. In this regard,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strenuous effort to resolve the problem, which deserves appraisal. However, there has been shift in policy agenda that question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continue its effort, which raise grave concerns.
5. The widespread neo-liberalist approach on national policies supported by free competition and labor flexibility creates unfavorable ground for guarantee of the ESCR. The new administration departed on February 2008 raise concerns for its economy-first approach that are going against the social demand for measures be taken to alleviate the adverse outcome of the widespread of neo-liberalism. The government’s lead on privatization of necessity public goods such as healthcare system, education, water supply and electricity seriously challenge the full realization of the ESCR and cast doubt on whether the ESCR was considered during the policy making process.
6.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stant issues around the discriminations against the migrant workers and their labor rights, excessive regulation on illegal migrants that suggest the difficulty of taking firm hold of the value of social integration in society.

7. Also, there had been policies and governmental support to improve the poor conditions of women and children, elderly, and disabled, which resulted in positive outcome. However, it would be a hasty conclusion to say women and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enjoy their integral rights to the full extent.
8. The NHRCK ask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o closely examine the above mentioned situation in Korea
9. The following questions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pertinent issues in the course of the examination of the third periodic report:
- a. Please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any substantial changes made in response to the committee's repeated recommendation that th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s before the domestic law.
 - b. Please explain if there is a guideline prepared for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ry to promote implementation of the ESCR during the legislation and execution process. In particular, please describe the progress made in the domestic Courts in making use of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 c. Please explain the extent of the investigation power granted to national institution on the ESCR related issues and how it is guaranteed, and whether any commissioners with the ESCR background are currently in position. Also, describe the cooperation mechanis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HRCK with regards to issues related to the ESCR.
 - d. Please provide us with detailed examples that showing proactiv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measures taken in compli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issued by the NHRCK.
 - e. While deepened social polarization and rising poverty rate call for increased allocation of government budget on social welfare, there are concerns that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ed to social welfare is extremely low considering the rising economic growth rate. Please explain the government's plan to narrow the disproportionate allocation of its budget.
 - f. In order to improve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the non-regular workers, some of the relevant laws were established and revised. However, due to employer's abuse of the newly established and revised law, the non-regular workers do not enjoy the full protection by the law.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further revision to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direction it is headed to raise concerns. Please explain the measures and plans to be taken in respond to it.
 - g. Despite the improvements in some areas of migrant worker related policy, it is suspected from the incidents of fire in *Yeosu* detention center and rising incidents of the death from crackdow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at there still exists coercive regulation and excessive crackdown of undocumented workers. Does the government have any comments on this matter?
 - h.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Bill*, some of the grounds of discrimination had been excluded. It was heavily criticized by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Please explain if the government has any plans scheduled to restore the dele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continue the legislation process.

i. As the Committee on the ESCR repeatedly pointed out in their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rst and second periodic report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there are insufficient measures taken to provide alternatives to the victims of force eviction, and guarantee their rights to housing. Please explain the way in which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had been implemented.

j. As it was pointed out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government, the insufficient budget allocated for public health policy assumed serious setbacks, for it discriminates access to healthcare according to one's economic power. Please provide analytic report on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possible influence the current public healthcare system would have on the public health.

k. Please provide information to prove that the vulnerable groups are guaranteed equal access to education as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on ESCR, and that excessive financial burden on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has lessened.

l. Supplement Questions to the state-party report

l-1. Please provide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NAP, 2007) in the fields related to the ESCR. Also, please explain the changes made in NAP (August, 2008) with regard to issues related to the ESCR, and the reasons why.

l-2. The third state party report does not provide any explanations on the question of statistical reliability mentioned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Please explain the reason for not addressing such matter, and provide statistic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confronted by the vulnerable groups or those who receive discrimination. If unavailable, please clarify whether the government would be willing to develop such statistical data. Furthermore, please inform the plans for development of indicators and benchmark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CESCR.

l-3. Please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to eradicate racial discrimination in line with implementation of action plans derived from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l-4. Please explain if the government had assessed the expected improvement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in the fields of the ESCR after the enactment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B. General Provisions

I. Article2: General Framework

1. Legal Status of Covenant under the Domestic Law

- Implementation Status

10. In pursuant to the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international law is generally recognized to have same force and effect as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ncreasingl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e incorporated in policies and statutes by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branches, however, direct invocation of the Covenant rights in national courts are very rare.

11. Since its establishment, the NHRCK played significant roles in promo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omestically. It coordinated series of symposiums and conferences in cooperation with the judiciary,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the academia. It also strived to seek concrete measures and means for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The NHRCK believes that in a long run, such efforts will greatly contribute in guarantee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gal status in the Constitution.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2. The conservative judiciary culture and unfamiliarity with international law makes it more difficult for domestic court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international laws, and to invoke the Covenant in its court rulings.

13. In addition, the judiciary's recognition of the broad discretionary power of the executive when handling the ESCR related issues became problematic in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 Questionnaire

14. Does the government have any measures planned to allow the judiciary to directly invoke the clauses and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s?

2. Establishment of the NHRCK

- Implementation Status

15. The NHRCK, established in November 2001, is an independent, A-status National Institution accredited by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CC). The NHRCK has its capacity to advice on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wheth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re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ing the ICESCR. However, with regard to the complaints filed by individuals, the NHRCK's investigation power is limited to human rights viola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reby leaving alleged human rights violation complaints related to the ESCR untouched.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6. There had been differing views between the NHRCK and the government on the ESCR related recommendations. The government claimed that limited budget and lacking awareness on the ESCR among the government officials, evidenced by an example of a Minister who

refused to recognize the labor rights as a part of integral human rights, mad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issued by the NHRCK.

17. Another challenge is that the NHRCK is not mandated to investigate cases involving violation of the ESCR, which makes it impossible to redress or to take preventive measures accordingly.

- Questionnaire

18. Does the government have any plans to extend the scope of investigation power of the NHRCK so that the individual may file a complaint on violations on the ESCR directly against the government?

3.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 Implementation Status

19. Following the NHRCK's recommendation made on January 2006,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ed and announced NAP the next year. It was uncertain as to the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left many of the major recommendations from the NHRCK excluded. On August 2008,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nounced and distributed a modified NAP to all ministries of the executive branch, which included plans to partially reduce budgets for the social welfare projects. This represents a significant retrogression in the role of the State when increased support for socially marginalized group is required.

20. We note that the current NAP lacks substantial timeline of implementation, and it brings about retrogression of social welfare policies. We see it as the lack in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positive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r retrenchment of social welfare expenses due to economy-first policy.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1. The government NAP lays out insufficient details on the plan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of socially marginalized people and minority groups including the disabled, non-regular workers, migrant workers, refugee, women, and children. It also neglects the areas in need of fundamental improvements.

- Questionnaire

22. The current administration plans to cut the discretionary expenditures allocated to social welfare for 2009. Does this mean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duce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vulnerable group?

II. Article 2: Anti-Discrimination Efforts

1. Anti-Discrimination Act Bill

- Implementation Status

23. In 2006, the NHRCK drafted and subsequently passed recommendation proposal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Bill* to the Prime Minister. The following year, the government

drafted the *Anti-Discrimination Act Bill* only to be disposed as the term of 17th Assembly expired.

24. The original draft bill of *Anti-Discrimination Act* by the NHRCK included 20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provisions for shift of burden of proof, and manifold anti-discrimination measures, however, a great portion of the original draft bill were dropped and revised in the process by the government.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5. There were strong oppositions from some Christian groups and business sector at the time when the *Anti-Discrimination Act Bill* was presented, which consequently pressured the Ministry of Justice to drop some of the grounds for discrimination. Thus, even if the NHRCK push to reenact the initial *Anti-Discrimination Act Bill*, strong opposition will still remain.

- Questionnaire

26.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take initiative in enactment proc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Bill*? If yes, will the government include extended yet non-exhaustive lists of grounds of discrimination?

27. How would the government secure the valid implement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Bill*, and how would the government cooperate with the NHRCK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2.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 Implementation Status

28.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hereaft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r “The Act”) took effect on April 11, 2008.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designed to redress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persons with severe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wom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multiple discriminations, and to help protect their human rights. This act provided a firm basis for rectification of prevailing discriminatory practices in society and basis for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framework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9. By and large, there are differing degrees and kinds of disabilities that are yet to be fully recognized and understood by the society. Also, the public sentiment lacks understanding of ‘what are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the reasoning behind providing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ith assistance in employment opportunities,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social consensus should be reached, and related infra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fo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o be enjoyed to the full extent.

30.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tipulates provisions on the wide range of possible discriminatory practices a disabled individual may confront in daily lives, and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On that account, many of the provisions on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are in conflict with the other ministerial laws and ordinances. Furthermore, it is notable that while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has the capacity to enact or revise the relevant laws, the NHRCK has the capacity to initiate the

primary investigation and issue recommendations whereas the authority to execute the recommendation lies within the realm of the Ministry of Justice.

● Questionnaire

31.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rectify discriminatory practices, how would the government address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at odds with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32. How would the government incorporate the cooperation mechanism between the NHRCK, a primary institution to investigate, redress, and recommend,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 secondary institution to enforce execution in case of failure to comply.

3.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men

● Implementation Status

33.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report, as of December 2007, the number of residing migrants totals up to 1,066,291. Among them, there were reportedly 502,082 (47.1%) migrant workers, 110,362 (10.4%) internationally married migrant women, and 453,847 others including international students.

34. According to the Statistics Bureau of Korea report, in the year of 2007, of all the married couples in Korea, over 11 couples were internationally married (38,491 out of total 345,592 marriages : 11.1%), and over 75%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s (29,140 cases : 75.7%) were between Korean male and foreign spouse.

35.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exceeded 1 million, and estimated number of female migrant worker and internationally married migrant women totals up to 150,000 (30%) and 100,000 (88%), respectively. The statistics show that the number is increasing each year.

● Challenges and Constraints

36. In case of internationally married migrant women, with racism and sexism intertwined, the problem is more complicated. These women suffer not only from language barrier, cultural differences, economic hardship, family problems (domestic violence and conflicts with mother-in-law), child education, and lack of support system but also from heavy household chores. Furthermore they are expected to support aged parents, raise children, and make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family.

37. The problem deepens as internationally married migrant women who resided in Korea for more than two years are eligible for Korean citizenship application, which takes about a year or two to finally become Korean citizen.

38. To secure stable residency in Korea, it is for their best interest to acquire Korean citizenship, which requires cooperation of her spouse. However, it is noted that Korean husbands are reluctant to place his foreign spouses on an equal footing.

39. In response to the hardship the internationally married migrant women are confronted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operate the *Mandatory Participation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 from 2009. Only those who had completed the program will be eligible

to apply for Korean citizenship. This seriously threatens the already weakened status of foreign spouses.

40. Whe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are involved, there are problems of high brokerage fee, and the brides' deprivation of her choice to choose her own husband. Recently,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had been enacted.

41.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nounced that it will dispatch officials to Vietnam and the Philippines to offer counseling service and information session to consolidate cooperation from the residing countries. However, in reality, the services and information offered to the interested female individuals are insufficient, particularly the rights of the foreign spouses and child care services. The comprehensive reevaluation on the dispatch program is needed.

42. Female migrant workers suffer from poor working environment, overdue wages, inhumane treatment from verbal and physical abus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like any other migrant workers do, and additionally from violation of rights to safe motherhood and health. Female migrant workers typically work 16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at workplaces that require no skills such as textile mill, sewing factory, marine production process factories and so forth.

43. Further they are exposed to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buse in the workplace but are not adequately redressed because of their lack of communication skills, ignorance of the available legal aid, and fear of unemployment as a result of speaking out. In the context of rights to safe motherhood and health, female migrant workers are hardly provided with any regular medical check-ups, and if she is an undocumented migrant worker then she is denied access to public healthcare services. Pregnant women are often sent back to her country of origin or forced to undergo an abortion with no guarantee of maternity leave from work by employers.

44. However, the current administration's immigration policy only focuses on control and regul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ith no policies set to improve the human rights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 Questionnaire

45. I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internationally married migrant workers, it is crucial to achieve stable status of sojourn through naturalization. In order to do so, the husband's cooperation is definite, however, the naturalization process takes about a year or two, which in turn may weaken the status of the internationally married migrant workers. Does the government plan to offer other systematic or procedural sources of safety net to secure their status?

46. The link between the naturalization and the *Mandatory Participation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 planned to take effect in 2009 had been withheld. What are the plans to resume this program?

47. Does the government have any policies designed to empower the internationally married migrant workers so that they may be able to self-support on the equal footing with her husband?

48. On Female Migrant Workers:

- Does the government have any plans to develop a policy related to the health and motherhood of female migrant workers?
- Does the government provide education programs to inform pregnancy, childbirth, and to protect from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in the workplace? If so, does the workplaces supervised and inspected regularly?
- Does the government reviewing any means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o access medical facilities, at least in the cases of pregnancy, childbirth,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III. Article 3: Gender Equality

1. On Effectiveness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and Rectification Measures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Court.

- Implementation Status

49. Currently sexual harassment claims and remedies are handled by the NHRCK,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Court, nonetheless, only the NHRCK published or announced reports in regards to handling and processing of sexual harassment claims. Thus, the general public is not aware of how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Court process, evaluate the case, nor the effectiveness of remedial measures as well as the actual rate of punishment of sexual harassment or sexual harassment, sexual assault, and rape. The administrative court previously overruled the case, which the NHRCK's concluded as sexual harassment.

- Challenges and Constraints

50.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Court provide no record or report on handling of sexual harassment, sexual abuse, and sexual assault claims taking place in the workplace. It is difficult to provide the victims with effective relief measures because the standard of judgment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Court adopted reflects the stereotypical references and views rather than giving a thorough examination of each case.

- Questionnaire

51. Please provide us with the reason why the Ministry of Labor refuses to disclose handling process or statistics on sexual harassment cases in the workplace?

52. Please explain the standard of judgment adopted by the Ministry of Labor in handling, deliberation, evaluating victim's status when deciding the validity of the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53. The Ministry of Labor is in charge of supervising preventive education on sexual harassment in the private workplaces. Please describe how the preventive education is delivered and the status of it.

2.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Implementation Status

54. Currently,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Act* remains effective, however, according to the wage structure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Labor in 2006, there are

wage gap between the two genders that female workers earn 63.9% of male workers. Yet, there have been no precedents of punitive actions taken against the employers who were in viol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nor were there efforts to make amendments to the existing act. Absence of clear guidelines to weight the labor value attributed to differing labor markets, tacit consent of wage gap between the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regardless of the gender, low social awareness on 'equal labor, equal wage,' and job insecurity all together make female workers to raise their voices on wage issues.

55. Usually workplace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are regularly inspected. According to the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by the Ministry of Labor, around 43% of the female workers are employed in a small workplace with less than 10 employees. Thus these female workers may not benefit from the *Employment Security Act*.

- Challenges and Constraints

56. According to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s of March 2008, 41.4% of the non-regular workers are females, and the gender discrimination is now masqueraded by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between the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Since the 1990s many of the female regular workers who engaged in female concentrated labor market became non-regular workers, and they often suffer from low wages and lack of social welfare benefits.

- Questionnaire

57.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wage system and wage, what are the government policies to implement the 'equal labor, equal wage' rule regardless of the gender?

58. The female workers are densely engaged in the distribution or sales industry and experience employment insecurity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non-regular workers. What are the government proposals in response to the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59. The Ministry of Labor enforced affirmative action programs for business with employees exceeding certain amount. Currently, there are no requirements to include the statistical data of female non-regular workers in the employee statistics data prepared by corporations.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include the status of female migrant workers in the corporate statistics data?

60. According to the Statistics Bureau'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s of 2007, the percentage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ecorded 54.8%, which is remarkably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60.8%.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encourage women's labor participation?

61. As of 2007,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working at the government-invested enterprises is 1.5%, at quasi-governmental agencies 6.9%, and private firms 12.1%.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bolster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to the level of the developed countries?

C. Substantive Rights of Individuals

I. Article 6: Right to Work

1. Right to Work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Implementation Status

62. Currently there is obligatory quota system designed to promot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y. In reality, however, despite the quota system, the employment rate of persons with disability in several sectors of society is below the recommended percentage. For example, the current employment rate in government departments are below 3%, public institutions and commercial firms are below recommended 2% of the total employees. Above mentioned agencies claim the difficulty of finding suitable position for disabled applicants, and applicants with minor disability were favored over severely disabled persons. It is notable that continuous discrimination against severely disabled persons including visually impaired and hearing impaired is prevailing. As a result, employment opportunity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is in decline.

63. As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ook effect in 2008, in the next 3 to 5 year span, any workplaces fail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y will be fined up to 3000 million won.

● Challenges and Constraints

64. There are concerns that the high cost and lengthy preparation period for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y may affect the employers to become reluctant to comply with the quota system.

65. While enforcement of both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the quota system may be favorable to persons with disability, there are concerns that it may become a burdensome regulation on employer's end.

66. In order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it is crucial for visually impaired, hearing impaired, or mentally disabled persons to receive adequate primary and vocational education throughout their childhood and adulthood. This education must be tailored according to the differing degrees and kinds of impairment, and should involve local communities. However, the number of professional instructors and institutions are low in supply.

● Questionnaire

67. There is incremental reservation of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the field of employment, however, it should not be abused in shirking one's responsibility to comply with the mandatory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y. Does the government have any measures to it?

68. In the next three to five year spa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ill be effected to business with more than thirty employees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inclu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upport to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y and females with disability. Nonetheless, accommodations and assistive devices for the disabled in the corporation are still insufficient. How does the government plan to support and fund?

69. In order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adequate primary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volving local communities, is crucial. In this regard, what are the plan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he Ministry of Labor to collaborate to address the tailored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I. Article 7: Working Conditions

1. Discrimination and Enforcement of Labor Standards Act

- Implementation Status

70. Currently the full implementation of *Labor Standards Act* prohibiting wrongful dismissal and stipulating provisions on overtime pay, standard working hours (8 hours per day) has limitations for it is not applicable to workplac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71.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bor Employment and Labor statistics, as of June 2007, total of 298 million people are working at the workplace with less than 5 employees, and they make up 27.1% of the total employees working at the workplace (11,002,000) with more than 1 employee. One fourth of employees fall into this category, and their average monthly wages are 1,350,000 won, which is about the half of what employees of workplace with more than 5 employees receive (2,410,000 won)

- Challenges and Constraints

72. In the workplac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most of the workers are working poor class and they are confronted with low wage and overtime problems. Nevertheless workers employed in the workplac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remain marginalized from the minim legal protection.

- Questionnaire

73.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expand the scope of implementation of *Labor Standards Act* to workplaces with less than five employee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t? Is so, when, and how will it be realized?

2. Realization of Practical Minimum Wage

- Implementation Status

74. The minimum wage for 2008 is 3,770 won per hour (30,160 won per day, 787,930 won a month by a standard of 40 hours). The reported wage constitutes 24.6% of all urban workers monthly average household expenditure combined, and 36.5% of average income total in 2007. With this rate, it seems difficult to decrease the size of low income class, to narrow the wage gap and to improve structure of income distribution.

75. With the widened income gap and emergence of the working poor class, there has been growing concern and emphasis on realization of minimum wage system. So far, it is thought to be the only effective means to provide legal safety net to the livelihood of low wage workers. According to the *2008 OECD Employment Outlook*, the Republic of Korea was reported to have the highest rate of low income class among the members of OECD.

● Challenges and Constraints

76. Since 1988 when the minimum wage system first took effect, the minimum wage gradually increased yet below the 'minimum wage' or 'poverty line' set forth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foreign governments. In order to prevent the employers from possible violation or evasion of the law, and to redress for the victims, the enhanced power should be allowed to labor inspectors, thereby proving effectiveness of the minimum wage system.

● Questionnaire

77. Does the government have alternative plans to avoid unnecessary conflicts in the minimum wage setting process and to work o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For example, the use of relative measurement method that gives elasticity in fixing the minimum wage proportionate to the overall average wage)

78. What are the measures taken to strictly enforce the regulation on workplaces in violation of the minimum wage requirement, and to enhance the labor inspection system?

3. Measures to Resolve Safety Concerns in Small Workplaces

● Implementation Status

79. Currently there are 1,400,000 small business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which make up 97.6% of the total number of businesses in Korea. In 2007, eight out of ten industrial accidents occurred at such workplaces. Since 2004, over four years, the number of accidents increased by 10%.

80. It is because the government tends to pay less attention in management and inspection of workplaces that are small and inferior, thereby endangering the employee's life and health. Furthermore, the numbers of small and inferior workplaces are rising from increased demand of contract-outs and outsourcings from corporations.

81.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i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size of the workplace. In 2007, 26,876 were injured at the workplace with less than 5 employees, which doubles the number of accidents occurred at the workplace with employees between 5 and 9 (13,829 injures). The industrial accident frequency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workplace is as follows: △ less than 5 employees 1.51% △ 5~9 employees 1.09% △ 10~29 employees 0.89% △ 30~49 employees 0.69% △ 50~99 employees 0.51% △ 100~299 employees 0.37% △ 300~499 employees 0.23% △ 500~999 employees 0.23% △ 1000 and above 0.30%. The accident rate in workplac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are five times higher than that of 1000 employees or more.

● Challenges and Constraints

82. Proper safety inspection of small workplaces is practically neglected. The reported number of small workplaces in 2007 is 1,395,576, a six fold increase from 1999. However, during the same period there has been no subsequ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inspectors. As of May 2008, there are 303 industrial inspectors, meaning that each inspector has to inspect the safety conditions of 3,780 workplaces and 34,178 workers. The allocated size of the workplace for each inspector is 4 and 9 times greater than that of U.S. and The Great Britain, respectively.

83. As of 2007, only 1,903 workplaces were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and most of the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at the workplace with less than 50 employees. The most common cause for accident were simple and preventable accidents such as fall, overturn accidents and strangulation.

84. The measures taken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focused to reduce the visible accident rates, which often leads to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Meanwhile, there is little economic incentive offered to employers that will result in voluntary improvements in safety conditions in the workplace.

● Questionnaires

85. Please explain the detailed information on enhancement of industrial inspection, and the ratio of the workplaces with less than fifty employees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by the Ministry of Labor.

86. What is the government's stance on making revision to the current law so to enforce the safety requirements to the workplaces with less than fifty employees?

87. One of the major causes for industrial accidents occurring in the small workplaces is because of the poor working condition and working environment. Please explain the actual punishments of the employers in the accidents caused by failure to comply with the safety regula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in question with demand of more strict enforcement and punishment. Please provide comments on this.

4. High Mortality of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 Implementation Status

88.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report on mortality rate from industrial accidents (2006), the Republic of Korea ranked the highest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with 15.7 deaths per 100,000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hich shows 4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Great Britain 0.8, France 3.0, Japan 3.2, U.S. 5.2).

89.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data from the Ministry of Labor in 2007, total of 2,460 workers and on average 7 workers per day lose their lives as a result of industrial accidents.

● Challenges and Constraints

90. As shown in the example of Hankook Tire (reported 15 deaths between May 2006 and 2007), 1,394 cases of violation of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and 183 cases of alleged concealment had been disclosed. The NHRCK points out an underlying cause for high industrial accident rate as employer's low awareness in law observing.

91. In addition, the NHRCK also points out the absence of thorough safety inspection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light punishment for such offenses may seriously undermine the importance of worker's right to health and life.

● Questionnaire

92. The current administration's 'business-friendly policy' raise concerns since the government has the fundamental duty to protect the life and health of the people, no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ions. Recently,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made 97

recommendations asking for a deregulation, of which 23 out of 97 recommendations were related to deregulation of safety requirements. Please provide comprehensive position of the government on this matter.

5. Abuse of Non-Regular Workers (increase of subcontract workers) and Validity of Relevant Regulations

● Implementation Status

93. With more than half of the workers being non-regular workers as reported by the Statistics Bureau (estimated 8,580,000 workers, 53.6%) in March 2008, Korean labor market is comprised of more non-regular workers than regular workers. Moreover, 41.4% of female workers are non-regular workers, earning only 45% of the wage of male regular workers. The povertization of women is big challenge that we are facing.

94. The 2007 *Non-Regular Employment Act* is originally designed to allow ‘contract workers of two or more years to shift to a regular position’ and ‘rectify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but in reality, increased number of subcontract workers were employed only to be dismissed before the expected shift after two years of work.

95.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in 2007, only one case of the Korea Railroad was adjudicated discriminatory by the Discrimination Rectification Commission und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Challenges and Constraints

96. The current *Non-Regular Employment Act* only stipulates employment and anti-discrimination clauses applicable to directly employed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excluding the subcontract workers. For this reason, the employers prefer hiring subcontract workers of whom they bear less responsibility. The subcontract workers are mostly females who are socially marginalized and it is shown in the case of E-Land, Homever, Kiryung Electronics, and KTX.

97. Since the *Non-Regular Employment Act* limits the qualifications for filing discrimination charges against, and rectification request to the employers,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employees to file a case at the risk of being bought out of the contract. Also, during the investigation, there are only few other workers in range to compare claims, which makes it harder to adjudicate whether the claim is discriminatory.

● Questionnaire

98. The employers hire more subcontract workers to avoid the responsibilities prescribed in the *Non-Regular Employment Act*. What measures can be taken to resolve this problem?

99.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illegally dispatched employee is considered regular employee, if worked more than two years. How does the Ministry of Labor handle cases of illegal dispatch?

100. Please provide detailed explanation of how the government would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enhance the discrimination rectification system outlined in the *Non-Regular Employment Act*? The qualification for applying discrimination rectification should be expanded to the trade unions or the third party, and the standard of discrimination should be

compared with those outside the corporate boundary. Does the government have any comments?

6. Lack of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 Implementation Status

101.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are considered to have both characteristics as an employee and an employer. Various legal systems distinguish employee and employer according to the labor law, however, such dualistic view in employment types cannot address the emersion of gray area in the labor market, i.e.,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and eventually interferes with the equal application of the labor law.

102. The number of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is gradually increasing (The Ministry of Labor reports 900,000 and labor groups report 2,000,000) and legal, systematic protection is needed.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03. Along with subcontract workers,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fall into gray area where no legal protection by labor law is reached. As protection measures for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four related bills were presented to the 17th Assembly but were disposed.

● Questionnaire

104. A legislative measure is needed to provide firm protection to the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Does the government have detailed plan to table a bill providing for legal protection for them?

III. Article 8: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1. Violation of Right to Associate including Trade Unions

● Implementation Status

105. Non-regular workers are lawfully guaranteed the full enjoyment of the three fundamental labor rights but in reality, it is unattainable to organize a union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poor working conditions at the risk of losing their jobs. Thus the three fundamental labor rights are not at all ensured.

106. The situation is worse in case of subcontract workers. Often there are cases of mass dismissal of subcontract workers on the ground of dissatisfactory performance when organizing a union is really an issue. We believe it is because the current labor law does not specify vicarious liability clause applicable to the primary contractor.

107. As to the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considering that in terms of ‘economic dependence’ they do not differ from regular workers, right to organize must be ensured so that any conflicts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are resolved through independent bargaining.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08. Practically the primary employers of subcontract workers are responsible for their working conditions for they are the labor service providers. A clear provision on vicarious liability clause must be recognized because of their extensive influence upon subcontract worker's wage, working condition, and even contract renewals.

● Questionnaire

109. In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case of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Koscom), the vicarious liability of the primary employers was recognized.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revise the existing law accordingly?

110. Please express the government's view on guaranteeing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of the right to organize so that they are extricated from the marginalized zone and settle labor disputes autonomously?

2. Limitation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Servants and Teachers

● Implementation Status

111. The current law excludes public servants with rank five or higher, secret service agents, and administrative staffs of human resource division and finance division from exercising their rights to form or join trade union. The public servants and teachers can exercise the partial right for collective bargaining for wages yet human resource related bargaining is prohibited. Further,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prohibited.

112. *The Teachers Union Act* limits its membership to teachers who qualify the criteria set out in the *Primary & Secondary Education Law and the Regulation*, thereby excluding college professors and administrative staffs. Likewise, teachers are prohibited to act upon labor disputes.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13. Even though there is understanding that the limitation upon the right to take action in labor dispute by public officials is necessary to ensure public order, it is an undue and excessive measure to uniformly deprive public officials of the right to take collective action when alternative schemes such as strike notice, order to return to work could be arranged as in other countries.

114. College professors are not eligible for memberships in the teachers union. As a result,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are not guaranteed to the Korea Professor Union, a subsidiary union, which has been active for past six years.

● Questionnaire

115. In May 2001,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public servants and teachers should be guaranteed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in law and practice. *The Teachers Union Act* was enacted in January 2005 with restriction on the membership qualification. It is believed to lift the restriction of the membership qualification if the rights to organize are to be effective. How will the government respond to it?

116. The public servants and teachers are restricted from participating in any form of labor disputes. However, they should be allowed to act upon labor disputes so that they may enjoy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as many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prove it.

3. Restriction in Exercising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n Public Sector

- Implementation Status

117. Despite the abolishment of the renowned poison pill, *ex officio* arbitration,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n public sector is still in excessive restriction because of the increased demand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emergence of essential service maintenance and substitute labor system, and emergency mediation.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18. There are excessive restriction and double regulation on right to strike. It is evidenced by Korea's increased demand for essential public service that is higher than ILO standards and retention of both essential service maintenance (preventing control) and emergency mediation (post-action control). It will challenge the government's effort to bring about balance between the right to strike and the public interest.

119. The full exercise of substitute labor system is a setback from ILO standards of exceptional use of the system in the situation of immanent national crisis related to the labor dispute.

- Questionnaire

120.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to place employees and employers in an equal footing in deciding on working conditions. The excessive regulation of collective action in public sector in turn impedes voluntary bargaining by limiting the employees from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bargaining process.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to improve this situation?

4. Excessive Punitive Measures on Labor Dispute Cases

- Implementation Status

121. There are around 200 workers arrested each year for labor related disputes, and 50% of them are charged with business interference, which constitutes the most common ground for prosecution. In addition, there are vast examples of labor disputes resulted in arrest or fine, which ILO pointed out problematic.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22. The curren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 stipulates twenty-four actions subject to criminal procedures, which includes sentencing imprisonment up to five years and fine not exceeding 5000million won. The State may exercise power to directly intervene on the ground of violation of due process, thereby making legitimate labor actions unattainable.

123. Workers prosecuted for engaging in any illegal labor actions face double punishment for violating labor union act and business interference stipulated in the *Criminal Law*. Often the workers are charged only with alleged violation of business interference because the wide range of general interpretation of the business interference clause that enables harsh punishment of accused workers.

● Questionnaire

124. It is difficult to find penal provisions in labor relations legislation worldwide. Please explain the reason why the penal provisions are increasing each time the revision is made to the labor relations statute, despite the Committee's repeated concern on this matter?

125. There are no countries with business interference clause codified in the criminal law. Further, business interference clause is applied to criminalize even the peaceful strikes. Does the Korean government have plans to improve such situation? If so, in what direction the government makes improvements?

5. Human Rights Violation of Migrant Workers Union

● Implementation Status

126. Since its establishment of the Migrants' Trade Union, the government violated the due process when regulating, arresting, and executing forced eviction of the Union's executives. Currently,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is filed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alleged violation of migrant workers union executives' personal liberty, freedom of residence, and constitutionality of the execution of forced eviction.

127. In 2005, ninety-one migrant workers in the Seoul-Gyeonggi-Incheon region filed the application report for forming a regional union to the Ministry of Labor, but the Ministry rejected their application for accepting illegal migrant workers as their member. The lower Court later sided with the workers, but the Ministry has appealed and the case is awaiting a final decision from the Supreme Court.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28. The human rights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must be ensured even in the process of forced crackdown, detention or eviction as it should be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However, 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 reports still remain. Furthermore, on the day the NHRCK announced the findings and deliber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 complaint filed by the Union's executives, the complainants were forcefully deported before they were delivered the official document from the NHRCK. The NHRCK publicized an official protest accordingly.

129. In addition, the Migrant Workers Union claims that their executives are targeted in the crackdowns, which inevitably influence the outcome of the lawsuit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 Questionnaire

130. Does the government plan to continue excessive regulation of the migrant worker's union executives, and their detention, and forced eviction?

131. In the Court rulings, it constantly recognizes th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entitled to the labor rights. Will the government recognize the undocumented workers' right to organize union accordingly?

IV. Article 9: Right to Social Security

1. National Security for Basic Livelihood System (NBLSS) and Poverty

● Implementation Status

132. Since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for Basic Livelihood Act* in 2000, between 2000 and 2007 the relative poverty rate worsened from 10.8% to 15.6%, the Gini coefficients increased from 0.286 to 0.324, and the country's wealth distribution increased from 4.58 to 6.12, resulting in serious income polarization. Nevertheless, the NBLSS recipients have increased by only about 50,000 persons (3.5%) for seven years, growing to 1.46 million persons in 2007 from 1.41 million persons in 2000.

133. The urgent need is to expand support and assistance to those who are right above the cutoff line, those who are in low income bracket with household income not exceeding 12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those who are denied of the benefit because they are dependent.

134. Since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for Basic Livelihood Act*, there have been efforts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system, however, the scope and capacity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trap many of the poor families in a blind spot.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35. Strict rules applied to the eligibility of the NBLSS recipients, problem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highly set income exchange rate, impractical setting of minimum cost of living, all together leaves the population at poverty excluded and unjustly deprived of their benefits.

136. In setting the cost of minimum living, consideration of differing household type or region was absent, thereby making it difficult to assist household with disabled, urban low-income households.

● Questionnaire

137. What are the ways to ease the criteria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and to adjust the minimum cost of living to a realistic level?

138. How does the government consider the fundamental reform of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from integrated assistance to personalized assistance?

139. Does the government agree with the idea of differentiating the need by housing, healthcare, education and so forth in providing assistance to the recipients of the NBLSS?

2. Resolving Blind-Spots in National Pension Fund

● Implementation Status

140. As the national pension plan became effective as of 1998, around one-third (6 million) of the expected total beneficiaries of the pension plan can not afford to pay the bill. These people are excluded from the pension benefits and may become the constituents of the elderly poverty. With already marginalized beneficiaries and unstable elderly income security

combined, in 2007 the government executed a drastic pension reform by reducing the payment rate to 40% from 60%, thereby putting the elderly income security at risk.

141. In 2008 *The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was introduced to supplement the sharp drop in the pension payment with payment of 85,000 won to 60% of the elders. However,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Basic Old Age Pension System* as a part of public assistance so to narrow down the range of recipients and cut the payment.

142. The maximum funding for the national pension consists only 1%~2% of the total GDP when the Republic of Korea is expected to have 35%~40% of aged population by 2050. In this regard,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funding is estimated to be insufficient.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43. Avoidance of voluntary payment of the pension and employment insurance to low-wage non-regular workers, exclusion of basic old-age pension recipients, excessively strict qualifications for disability pension, inappropriate standards to suspend or reduce survival pension payments, unreasonable adjustment in receiving survival pension and old-age pension puts more people in the marginalized zone. Korea's pension system in particular, has extremely unstable structural system in terms of elderly income security.

144. The narrow application of pension payments, low payments, insecure funding for pension and unfair imposition of insurance premium restricts the enjoyment of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right to livelihood.

- Questionnaire

145. Does the government plan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adjust the pension payment, and to stabilize the funding for national pension program?

146. Does the government plan to make non-regular workers eligible for the national pension plan by shifting them to a regular worker and make improvements in unreasonable suspension of the survival pension payments?

3. Insufficient Guarantee of Basic Livelihood to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 Implementation Status

147. Article 5(2)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limits the beneficiaries to Korean citizens and foreign nationals who have been married to Korean and raising minors.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48. Any internationally married migrant women with no underage children or children with foreign national are excluded from the benefits.

- Questionnaire

149. What are the policies for poverty of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who are not protected b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4. Strict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and Insufficient Social Welfare for Refugees

- Implementation Status

150. As of May 2008, 19,451 people applied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nd 76 have been received recognition. 73.1% of the refugee recognition cases have been pending for more than one year, 17.9% were pending for four to five years, and recently, one of them received recognition after an eight-year-long lawsuit.

151. It is reported that during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applicants detained in protective facility for foreigners must remain detained until they receive the final result, and recently an asylum seeker was detained charged with seeking illegal employment.

152. Those who are granted refugee statu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become beneficiaries. However, benefits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are the only social security provided to them. Refugee status applicants and those granted humanitarian stay are prohibited from employment. In case of those granted humanitarian stay has no legal basis for their stay, therefore they cannot benefit from any kind of social security system.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53.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is prolonged, and the refugee status recognition rate is low. Also, long-term detention of refugee applicants is seen problematic.

154. There are insufficient social welfare protections for refugees since they are only assisted with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case of refugee applicant, any kind of employment is prohibited regardless of the long pending refugee recognition process that their basic survival is in threat. As in case of those granted humanitarian stay, they are also prohibited from employment, and furthermore, the absent legal ground for stay leads to a disqualification of any social welfare benefits, thereby violating their right to livelihood.

- Questionnaire

155. Does the government have measures for elongated pending period of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156. What are the cases when the refugee applicant is detained, and what are the preventive measures the government could take to prevent the wrongful detention from happening?

157. Please explain if any policies are made in consideration of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such as right to live by allowing those who are granted with humanitarian stay to work?

158. Does the government plan to expand various social welfare programs to those who are granted refugee status in Korea?

V. Article 10: Family, Motherhood, and Child Protection

1. Right to Safe Motherhood and Health

● Implementation Status

159. The maternity assistance policy is designed to help assist the needs of working women but in doing so it excludes non-working women's right to safe motherhood, health, and life from adequate legal protection. The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provides for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and exception clause, yet only around 10 cases per year are prosecuted for abortion. However in reality, the estimated number of abortion operations totals up to 100 million cases.

160. Particularly, for female non-regular worker, pregnancy or child birth could be a *de facto* basis for dismissal from work, and in many cases paid maternity leave will be denied. The Employment Maintenance Subsidiary is designed to support working mothers after giving birth, however, she may be dismissed upon the employer's discretion.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61. Insufficient measures to ensure the rights to safe motherhood and health of women, coupled with persistently low social awareness and lack of open discussion around abortion-related issue makes it even more difficult to protect the rights to safe motherhood and health of women.

162. One of the notable employment practices in Korea is the discontinuation of career among female workers after marriage or child birth. Although the marriage and child birth related retirement rate is decreasing, the overall rate is still high. All of these negatively affect the course of structure of female employment and the management outcome as well. In addition, female workers in a lower income bracket can not afford to use her maternity leave because of the financial burden, thereby putting the health of mother and children in danger.

● Questionnaire

163. What are the general policies regarding the right to safe motherhood and the right to health?

164. Does the government have plans and policies to help protect the right to safe motherhood and the right to health of female non-regular workers who consist 41.4% of the total working women?

165. Does the Ministry of Labor have measures to help assist female non-regular workers to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or maternity leave?

2. Child Abuse

● Implementation Status and Constraints

166.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 of the Second State Party Report the Committee expressed concerns on increase of child abuse resulting from family breakdown and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victims. From 2001 to 2007 there has been a gradual increase in child abuse reports filed through child protection services, and repeated child abuse reports consist 10% of the total.

<Child Abuse Reports>

(units : number of cases)

Year	Number of Child Abuse Report		
	Total	Suspected Child Abuse	General Counseling
2000. 10~12	1,678	603	1,075
2001	4,133	2,606	1,527
2002	4,111	2,946	1,165
2003	4,983	3,536	1,447
2004	6,998	4,880	2,118
2005	8,000	5,761	2,239
2006	8,903	6,452	2,451
2007	9,478	7,083	2,395
Total	48,284	33,867	14,417

*sourc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7), National Child Abuse Incidence Report

<Repeated Child Abuse Reports>

(units : number of cases)

Year	Total
2001	20
2002	103
2003	136
2004	533
2005	573
2006	693
2007	957
Total	3,015

*sourc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7), National Child Abuse Incidence Report

167. Also, the report shows around 83% of the perpetrator-victim of child abuse relationship revealed to be parent-child relation.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rate of child neglect from poverty is in rise.

168. Despite the serious nature of child abuse, the existing legal measures are insufficient to prevent and protect the victims. For example, punishment clause for neglecting the mandatory report obligation by the responsible persons is not provided, thereby the rate of mandatory reporting is relatively low. Moreover, administrative and judiciary measures such as limitation of the parental rights are inefficient and insufficient to prevent repeated child abuses.

169. Another obstacle is that there is low social awareness on child abuse, as the public considers serious physical violence, not neglect or psychological and verbal abuse, as child abuse.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70. Due to low social awareness and insufficient legal measures, lack of adequate social protection and support, and lack of substantial policies to prevent child abuse, healthy and sound development and growth of a victim is often threatened.

● Questionnaire

171. As child abuse is more frequently reported to the nationwide child protection agencies, what are the government's policies, including legal measures, to lower the child abuse reports?

172. Please explain the possible measures be taken on th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173. What are the government's plans to raise social awareness and prevent child abuse including child neglect?

3. Adoption

● Implementation Status

174.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made revision to the Civil Code to introduce and the *Full Adoption System*, however, it does not guarantee the full realization of the system for it coexists with general adoption and adoption 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s of Adoption (ASCCPPA)*. Thus, the Article 21(a)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permitting the system of adoption is still reserved, and *The 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is yet to be ratified.

175. Although inter-country adoptions are decreasing, it is still the most common means than domestic adoption. It is because of the prevailing negative social stigma and passive governmental stance on adop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option Status>

(units : persons, %)

	2003	2004	2005	2006	2007
Domestic Adoption	1,564	1,641	1,461	1,332	1,388
Domestic Adoption Rate	40.6	42.0	41.0	41.2	52.3
International Adoption	2,287	2,258	2,101	1,899	1,264
Total	3,851	3,899	3,562	3,231	2,652

*source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internal data, 2008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76. Internationally adopted children often experience difficulties in development from identity crisis. The current policies and passive attitude of the government will be of little help in reducing international adoptions.

● Questionnaire

177. The government publically announced home and abroad that it will consider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made to the article 21(a)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o ratify *The 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owever, the *Full Adoption System*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thoroughly. What keeps the government from moving forward with the adoption system?

178. Does the government prepare any support system to promote domestic adoption and minimize the international adoption?

179. Can the government provide substantial support to unmarried mothers who decide to adopt their child out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child rearing? Also, does the government have any policies that will help lift the social stigma imposed in unmarried mothers and improve discriminatory statutes and practices in family system?

4.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 Implementation Status

180. In spite of government efforts to reduce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by taking stronger legal action including the public disclosure of child molesters, the crime rate has yet reduced.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re under-reported with only 10% rate and it is a result of concerns of secondary damage to the victim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181. In the recent group sexual assault case in *Daegu* region, it called public attention because the perpetrators were children. As a follow-up, government and education authorities expressed passive attitude in efforts to prevent spreading of child sexual abuse and second offense.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82. Child sexual abuse is a traumatic experience for the victim to the extent that it may greatly disturb victim's life and personality not to mention possible impediment in child development.

● Questionnaire

183. The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re increasing regardless of the enforcement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Does the government plan to develop stronger measures to deter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184. What are the policies adopted by the government to prevent the secondary damages of the victims of sex crimes and please explain whether the current policies are effective. Does the government plan to further improve the relevant policies?

185. Does the government offer human rights education to the responsible officials and professionals who deal with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186. As seen in the *Daegu* group sexual assault case where the perpetrators were children, the government's response was negative. Does the government plan to prepare follow-up measures to improve the situation?

187. Please explain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ex education offered to children?

188. What are the measures to promote social awareness on sexual abuse?

5. Child Sex Trade

● Implementation Status

189. Child sex trade through internet is prevalent these days but government has not yet introduced any strategic action plans or policies.

190. Some of the South Pacific countries such as Kiribati accuse Korea for being typical example of a country that violates rights of the chil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yet taken proper action against it.

<Occurrence and Arrest of Child Sex Trade>

Year	Arrest and Inspection	Number of the Arrested	Types of related persons			Measures Taken	
			Perpetrators	Employers	Victims	Detained	Not-Detained
2001	1,255	2,034	1,690	314	30	803	1,231
2002	1,270	2,014	1,510	477	27	591	1,323
2003	1,349	2,099	1,703	359	37	579	1,520
2004	1,593	2,680	2,202	425	53	712	1,968
2005	1,139	1,946	1,611	305	30	295	1,651
2006	744	1,745	1,502	183	60	149	1,596

* source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itial Contact Location of Child Sex Trade>

Year	Total	Internet	Land line	Cell Phone	In Person	Etc.,
2001	1,255	845	136	46	102	126
2002	1,270	916	44	61	106	143
2003	1,349	1,120	18	47	72	92
2004	1,593	1,368	21	7	88	109
2005	1,139	924	23	7	62	123
2006	744	590	1	5	50	98

* source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Questionnaire

191. What are the measures for new forms of sex trade of children through internet?

192. Please explain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upport policies for victims of sex trade of children? Explain the most effective policy for supporting rehabilitation of the victims, and explain if there will be any further developments in relevant policies.

193. Please describe the government's measures targeted to educating perpetrators of sex trade of children.

194. What are the measures to reduce the sex trade of children taking place abroad?

6. Lack of Rehabilitation Support for Female Sex Workers

● Implementation Status

195. The enactment of *The Anti-Prostitution Act* stipulated women engaged in sex industry not as criminals engaged in prostitution but as 'victim of sex trade,' thereby redirecting policies and its scope. In article 3 of *Act on the Prevention of Sex Trade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states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nd take necessar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fo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prevent sex trade and support the protection and independence of the victims of sex trade and those who sell sex."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s responsible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exual victim relief project such as counseling facilities, vocational training, medical and legal assistance, treatment and recovery program, rehabilitation assistance in brothel, credit recovery support, and enterprise support.

● Challenges and Constraints

196. The victim support projects stipulated in *The Anti-Prostitution Act* include 'self-support' program limited to employment, vocation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It contains insufficient contents on developing professionals for self-support projects and infra structure at large.

197. The legitimacy of social support program for victims of sex trade is constantly questioned because of the social stigma imposed to sex workers. Economic self-support should be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he overall social welfare system, but it has practical limits because self-support institutions lack understanding of victims of sex trade, and victims themselves has fear of social stigma.

198. Once women had engaged in sex trade it becomes a social stigma difficult to remove. Victims of sexual trade not only suffer from social stigma and poverty but also from exclusion from existing self-support programs.

● Questionnaire

199. What are the detailed policy and plans to improve the rehabilitation system offered to sex workers?

200. Not only direct support for the sex workers such as provision of employment opportunity or vocation training, the empowerment for sex workers are needed. In doing so, the sex workers will be better prepared to the social integration by healing their trauma and raising self-esteem. Please explain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habilitation efforts and development of related infra structures.

VI. Article 11: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1. Application of Minimum Housing Standards

- Implication Status

201. As of 2005, there are 2.06 million households residing in living condition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340,000 households among them still reside in living condition of at least two of three standards: facility standard; bedroom standard; and floor space standard are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nd 20,000 household reside in condition entirely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202. After being evicted in the course of urban development, the vulnerable groups currently reside in single room occupant hotels and vinyl houses whose living condition is way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in great risk of fire and crimes. Lack of objectiv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living conditions of vulnerable groups makes it difficult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licy to improve their right to adequate housing.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03. To improv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of households below the minimum standards of living, public rental houses are provided but without any consideration given to the numbers of household, organization of household, or household characteristics. In addition, rental costs and lease deposits together become great obstacles in moving out to a better condition of living.

- Questionnaire

204. What are the comprehensive and substantial measures to guarantee the adequate housing to the poor, which includes the fundamental residential improvements?

205. What are the measures to improve housing conditions of households of substandard housing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such as lowering the rent of public rental housing, increased financial support on housing, and housing relocation?

2. Human Rights Protection from Forced Removal and Eviction

- Implantation Status

206. The right to housing is not recognized as human right, and it brings about frequent violation reports occurred by forced removal or forced eviction. Any forced removal accompanied by violence destroys livelihood thereby inflicting property damage with emotional suffering. The redevelopment projects need prior consultation and agreement procedure with the residents.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07. There are no legal protections for victims of forced removal or forced evic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creased interac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current residents must be guaranteed.

- Questionnaire

208. Are there any preventive legal measures against the forced eviction and forced removal by the private development?

209. Will the government provide means of prior consultation before the residential redevelopment initiates, and make alternative housing policy mandatory?

3. Providing Adequate Housing for the Vulnerable Groups Including the Elderly

- Implementation Status

210. It is noted that 50% of the elderly over age of 65 are dwelling in the living space below the minimum standards of living. No housings are provided to the elder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elderly households and providing adequate living space for disability households is also problematic.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11. The elderly households and the disability households have not been guaranteed an adequate housing, which as a result hinders the realization of their inherent rights to live decently.

- Questionnaire

212. What are the policies to guarantee the adequate housing conditions to the vulnerable groups?

4. Guarantee of Right to Housing to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 Implementation Status

213. There are cases of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threatened of forced removal after filing a bankruptcy and become an insolvent debtor.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14. When the household face forced removal from the inexpensive housing as a result of bankruptcy, the family breaks down and degenerates into homeless people.

- Questionnaire

215. Does the government provide any legal and systematic supports to those who face forced removal from the public rental housing due to personal bankruptcy?

5. Guarantee of Basic Right to Housing to the Homeless

- Implementation Status

216. The current support system for the homeless is built around institutionalization of homeless people that it does not provide sustainable and stable support for those who live a street life or living in shelters.

217. The temporary shelters provided to the homeless people need much improvement in assisting self-support programs since the insufficient support program redirects many of the homeless people to street life after being released from the shelter or end up moving to another shelter.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18. Failure to provide adequate living space to the homeless people can be interpreted as failure to protect their right to health, and it deprived them of the opportunity to self-support through labor.

● Questionnaire

219. What are the legal and systematic measures to provide the homeless with stable and permanent residence?

6. Right to Safe Food

● Implementation Status

220. Recently, series of food safety crisis hi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re is widespread fear for food safety, in particular, imported products. There were nation wide candlelit vigils against Korea-US FTA on lifting the ban of possibly mad cow disease infected U.S. beef imports. Following the U.S. beef protest was melamine tainted snacks and food imported from China.

221. This year alone reported uncountable cases related to food safety—finding of rat head in shrimp cracker imported from China, dioxin tainted Italian Mozzarella cheese, concerns on potential mad cow disease infection from U.S. beef imports, first import of 50,000 tons of U.S. genetically modified corn for food use, Chinese melamine tainted food scandal, Salmonella infected pork import from Europe—that may well threaten the right to safe food.

222. As the imported food and product safety has been in constant doubt, the right to safe food in general is being threatened.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by the government.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23. Inexpensive imported food products in question will probably be consumed by vulnerable groups with low income, thereby worsening the inequality in health among social classes.

224. With regard to the inequality in health, there are number of research published expla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one's life expectancy and his/her socio-economic status index including education, profession, and income levels. Thus, the government must give careful considerations in food imports, strengthen food safety inspection, and establish an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possible food safety crisis.

225. The government failed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on prevailing fear of mad cow disease and neglected the people's concern on the right to safe food, and forcefully promoted the Korea-U.S. FTA on the ground of low outbreak possibilities and statistics. In addition, during the melamine scandal the government showed uncoordinated inefficient management in dealing with food safety crisis.

226. Thus,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to safe food,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a democratic crisis control mechanism that defines boundary in exercising state power in domestic and foreign relations. Also,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an evaluation system on monitoring human rights impact.

● Questionnaire

227. How are rights to safe food recognized as a part of integral right in Korean society? What does the government prepare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of the right to safe food?

228. Please explain the legal and systematic assistance the government is providing to respect, protect, promote and fulfill the right to safe food in the course of food import.

VII. Article 12: Right to Health

1. Industrialization of Healthcare as Business Opportunity

● Implementation Status

229. Insufficient budget on healthcare and overwhelming takeover of private health care providers are major concerns in protection of right to health.

230. The government has been managing health care system with rules and regulations that health care corporations are obliged to provide medical servic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confine themselves non-profit making corporations. Also, the current *Medical Service Law* recognizes the healthcare service as a part of social goods and restrains medical institutions from excessive profit seeking. In principle, the law strictly prohibits recruitment, entice, and provision of patients to the medical institutions, preventing unnecessary competition and allow patients to exercise their free will in choosing medical institutions.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31. Recently, the government shifted its view and started to recognize the healthcare system as medical service industry, a business opportunity. In early 2008,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new policy outlining profit medical corporation system, activation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and revision of *Medical Service Law* including the removal of mandatory designation of healthcare corporations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232. Since June 2008,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ccordingly, is seeking medical law revision to allow recruitment, entice, and provision of foreign patients. However, the NHRCK views the following revision will result in more negative outcome than expected economic growth. The expected negative outcomes are: damaged fairness of medical service provision; lowering of medical service quality, increased burden on patients' end; interference with private insurance company's interest.

233. The revised healthcare system will limit the access of socially,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from high quality medical care, and possibly bring discrimination against the public as a whole. Thus, the government should first improve the problem of excessive medical expenses and inequality in medical service distribution, which most directly affect the vulnerable groups as well as patients with severe illness. Then the government should conduct a thorough evaluation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n the right to health.

● Questionnaire

234. What are the legal and systematic measures the government is promoting in relation to the public health service, and its direction? Has the government conducted an impact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the healthcare policy on the people's right to health?

2. Marginalized Zon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 Implementation Status

235. According to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ree times of nonpayment will disqualify the insurance holder. Any medical expenses occurred during the suspended period, and covered by insurance will be regarded as 'unjust enrichment' and will be redeem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36. The defaulters are usually the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in the local area. As of August 2008, among the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in the local area, estimated number of 2.09 million households are restricted from insurance payments due to nonpayment for more than three times. Assuming that there are about two or three members per family, around 4 to 6 million people are restricted from the insurance coverage. Compared to 1.29 million defaulter households in 2004, there was an increase of 0.8 million in three years.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 must adjust the qualification of medical payment recipients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37. About 25% of the defaulters are in destitute poverty because they do not make enough earnings to pay monthly insurance bill. The defaulters in destitute poverty have almost no access to medical facilities in case of illness but various studies show that low income class are usually less healthier than others. Excessive restriction on their access to medical service may worsen the overall quality of their health.

238. Due to nation wide economic slowdown the number of destitute defaulters increased but there are no measures taken to relief those households with long-term, petty-sum debt. It is linked with low budget allocated to public funding for medical expense, which needs adjustment in consideration of ensuring the right to health.

● Questionnaire

239. In regards to the defaulters in destitute poverty, what are the relief measures to allow their access to healthcare service and so on?

3.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Denial of Access to Medical Facilities

● Implement status

240. In principle, in case of illness requiring medical operations,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their children may receive monetary assistance in case of illness up to 5,000,000won. Nevertheless, it is very difficult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o receive medical service because they are not entitled to national healthcare benefits.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41.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their children who are in need of regular medical care are marginalized.

● Questionnaires

242. What are the government policies to guarantee the undocumented workers and their children of the access to basic healthcare?

VIII. Article 13: Right to Education

1. Excessive Private Expenditures on Education

● Implement status

243. Although the budget allocated to education increased by 42% from 2.49 billion won in 2003 to 3.54 billion won in 2008 private expenditures are increasing each year, thereby imposing heavy burden on parents. As of 2003, the total 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was 1.36 billion won, which is more than 50% of annual budget for education in the same year.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44.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promoting liberalization of education system by allowing competition and adoption of free market principle. However, there are concerns on setbacks in pursuing such liberalistic approach. By the sharp increase of ‘independent high school,’ ‘international high school,’ an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education gap had widened and worsened human rights situation of students. If this trend continues, it may negatively influence the students by fostering the sense of incongruity.

<Private Expenditure on Education>

(Units: won, (%))

Classification	Private Expenditure/person (monthly)		Participation Rate in Private Education		Public Expenditure/person (monthly)	
	2003	2007	2003	2007	2003	2007
Elementary School	209	256	83.1%	88.8%	270	341
Middle School	270	314	75.3%	74.6%	339	371
High School	298	388	56.4	62	422	494

* sourc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 Questionnaire

245. What are the government’s plans to reduce the private expenditure on education?

246. The increase of the 'independent high school' and 'international high school' will deepen the education level gap as well as the polarization of social class. What is the government's reaction to this problem?

2.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 Curriculum and to Teachers

● Implement status

247. The key players in human rights education in Korea so far wer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ut it was very challenging. In the entrance-exam-focused competitive environment with the school and teacher's low awareness on human rights, it was impossible to educate the students with practical human rights issues.

248. In 2002, the NHRCK took initiative to promote the incorporation of human rights related cont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a. In 2007, the new curriculum was incorporated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in subjects such as the Korean Language, Ethics, Social Studies and so forth.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49. According to the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NHRCK, 92% of the citizens felt the need to the human rights education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250. The 7th National Curriculum focuses on human rights education on upper grade elementary students while the NHRCK believes kindergarteners and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lso need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related contents are introduced in subjects (Ethics, Social Studies) for upper grade students, thereby excluding low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nd kindergarteners. Further education on human rights is needed for those in exclusion.

251. Also, human rights education conducted in school does not have its own system but it is sporadically incorporated with various subjects.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set a specified education goals, content, scope, and order. Further, the human rights related content is organized in a way that it serves as an example in explaining various subject matters.

<How Human Rights Related Contents are Incorporated>

Subject	Method		School Types/Grade					Degree of Incorporation		
	Curriculum	Textbook	Elementary			Middle	High	strong	moderate	
			1,2	3,4	5,6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migrant workers)	Korean		○			○	○	○		○
	Ethics	○	○			○	○		○	
	Social Studies	○	○			○	○	○	○	
	Science									
	Home Keeping and Mechanics									
	P.E									
	Music									
	Art									
	English	○	○		○	○	○	○		○
Understanding the disabled	Korean		○			○				○
	Ethics	○	○			○	○		○	
	Social Studies		○				○	○		○
	Science									
	Home Keeping and Mechanics		○			○	○	○	○	
	P.E									
	Music									
	Art		○			○	○			○
	English	○	○		○	○	○	○		○
Gender Equality	Korean		○		○	○	○			○
	Ethics	○	○				○		○	
	Social Studies		○		○					○
	Science									
	Home Keeping and Mechanics	○	○			○	○	○	○	
	P.E		○				○	○		○
	Music									
	Art		○				○	○		○
	English	○	○				○	○		○

● Questionnaire

252. Please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whether there are any alternatives to offer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kindergartners, low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253. What are the measures to promote systematic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and effectively incorporate the detailed education goals and the education content into the school education system?

254.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is deeply related to the qual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the instructors receive. Nevertheless, the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is insignificant. How would the government improve the situation so that the teachers may receive quality human rights education, thereby enabling better human rights education for students?

3. Education in Public Sector for Social workers

● Implement status

255.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adop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establishment of systematic infra structure, there are no mandatory human rights related education incorporated in social worker certification exam, in-service education requirement and professional education for social workers.

256. In 2006, the NHRCK, in response, organized a workshop on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service to introduce human rights focused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system and hosted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 changing world: actual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ights-Based Approach in Korea' in 2007.

257. In both 2006 and 2007, the NHRCK conducted human rights education to welfare institutions for mental disorder, elderly, disabled, and social welfare administrative officials, developed teaching materials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orked to develop and distribute human rights education contents for professionals engaged in protection of the ESCR through developing human rights education materials for elderly and mentally challenged.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58. Human rights violation in facilities,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mentally- ill are worsening. Human rights friendly persp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for facility worker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pre and post dispatch of social workers to the field are to be improved.

● Questionnaire

259.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it is very important for them to know their rights and receive human rights education. In that sense, adequate human rights education offered to social workers who work in the frontline to promote and protect the ESCR has its significance. Does the government plan to legally and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human rights education within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4. Lack of Commitment to the Right to Education for Children of Migrant Workers

- Implement status

260. In 2001, a system for children of migrant workers, including unregistered migrants, to attend public schools was arranged. However, admission decision is left to a headmaster's discretion.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61. Because actual admissions are given by headmasters, there are cases where they reject their foreign applicants. Also,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 students could not meet the schools' request of relevant documents of residence and previous education and failed to enroll.

- Questionnaire

262. What are the government's policies to protect the right to education of the children of migrant workers?

IX. Article 15: The Right to Participation in Scientific and Cultural Activities

1. National Security Act and Works of Artists

- Implement Status

263. Despite the concerns expressed by the Committee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on intellectuals and artists, intellectuals and artists are still at the risk of prosecution for alleged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From June 2005 to June 2008, of the seventy-three intellectuals and artists indicted in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nine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264. Charged with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photographer Lee Si Woo¹ was tried and acquitted on the first trial on January 30, 2008. As seen in the case of photographer Lee Si Woo, the prosecution still remains to force the *National Security Act* on intellectuals and artists.

265. With the expiration of term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5.2004 ~ 5.2008), both of the amendment and abolishment bill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were repealed. Whereas neither of these bills are currently re-propos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5.2008 ~ 5.2012), the urgent call for government's legislative effort is crucial.

¹ Lee Si-Woo was arrested on 23 April 2007 under the NSL and is accused of violating articles 4, 7 and 8 of the NSL by "disclosing national/military secrets", and propagating the ideology of "an enemy state". He had published information in a report for the Korean Campaign to Ban Landmines on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His report was based on information obtained legally from the government through Freedom of Information laws. His investigation was reportedly given the go-ahea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report was published in 2003.

● Challenges and Constraints

266. Even though the NHRCK and the Committee have recommended the government to abolish or revise the Act, still works of intellectuals and artists are subject to arrest and prosecution. Unlike the form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reluctant to discuss the revision or abolish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267. Furthermore, the current administration seems as if it has no intention to fulfill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whereas there were strenuous efforts during the late Assembly to abolish or revise the Act. The executive branch has the capacity to exercise the right of proposing and submitting bills, which is equivalent to that of an Assemblymen but no further action has been taken thereafter.

● Questionnaire

268. It seems that the crime investigation institutions such as the prosecutor's office, the police, and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end to interpret the *National Security Act* widely, whereas the Court asks of stri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t. Does the government have measures to redress human rights violations resulting from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269. Please explain the government initiated efforts to revise or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possible plans to continue the efforts.

**제43차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회기 제출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2009. 9. 24.

국가인권위원회

- 차례 -

A. 서론

I. 총평

II. 영역별 평가

1. 사회보장과 교육
2. 노동
3. 양성평등
4. 건강
5. 주거
6. 이주

B. 핵심 개별 이슈

I. 사회보장

1. 낮은 복지예산 비율(정부답변 187-188)
2. 빈곤층의 확대(정부답변 194 및 196)

II. 교육과 아동

1. 공교육의 질 저하(정부답변 50-54 및 285-289)
2. 가정폭력 및 아동인권(정부답변 198-202)

III. 노동조건과 차별 1 : 일반

1. 노동권을 저해하는 기업친화정책(정부답변 170-171)
2. 파업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 적용 및 공권력 남용(정부답변 176-177)
3. 건설노조 및 운수노조의 단결권 제한
4. 최저임금 결정에서의 소모적 논쟁 및 낮은 최저임금(정부 답변 127~129)
5.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정부 답변 130)

IV. 노동조건과 차별 2 : 비정규직 차별

1.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제한(정부답변 111-114)
2.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 제한(정부답변 116-117)
3.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지의 약화(정부답변 119-120)
4.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의 결여(정부답변 124-125)

V. 노동조건과 차별 3 : 여성차별

1. 성역할 고정관념(정부답변 105-110)
2. 남녀간 임금격차(정부답변 131-137)
4. 직장내 성희롱(정부답변 138-153)

VI. 주거권

1. 주거권 보장 미흡(정부답변 218-225)
2.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권 침해(정부답변 226-231)
3. 강제퇴거와 강제철거(정부답변 235-238)
4. 홈리스 실태 파악 미진(정부답변 232-234)

VII. 건강

1. 보건의료체제 공공성 약화 의도(정부답변 242-249)
2. HIV/AIDS 예방대책 및 치료제 지원 부실(정부답변 256-264)
3. 인공임신중절 문제해결 방안 부족(정부답변 268-272)

VIII. 이주와 난민

1. 재한외국인의 인권(정부답변 91-92)
2.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및 열악한 수용시설(정부답변 183-186 및 239-241)
3. 미흡한 난민인정비율 및 난민보호장치(정부답변 160-161)

[별첨] 비정규직 관련 통계

A. 서론

I. 일반 총평

1. 최근 정부 정책은 자유경쟁 지상주의, 노동 유연화, 사회복지의 축소, 개발위주 예산 배정 등에 치중되어 있어 사회권의 전반적인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의료, 교육, 수도, 전기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인 공공재까지 민영화하려해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2. 2006. 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2007. 5. 마련한 NAP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이 상당수 누락되어 있어 인권보장 수준이 매우 미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 8.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으로 NAP를 재차 수정하였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에 역행하는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차별금지법」 초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였다. 정부는 2007년 위 초안의 인권보장 수준을 상당부분 축소한 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따라 위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18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사회 각계의 입법촉구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고 있다.
4. 2009. 3.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일방적으로 21.2% 축소하였다. 제1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정부정책과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맞물려 사회권 보장이 후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확대되어야 마땅하나 오히려 조직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줄임으로써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핵심 기능인 인권옹호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I. 영역별 총평

1. 사회보장과 교육

5. 한국사회는 외형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의 골격을 갖추었으나,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요구액을 삭감했고, 최저생계비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75%를 인상하는 것에 그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6. 자유 경쟁을 기조로 한 현재 한국의 교육정책은 입시경쟁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학벌주의를 공고화하고 계층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취약아동의 교육을 위한 정부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에서 매우 미미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2. 노동

7.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보호 및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지원 및 보완대책은 매우 미흡하며, 정부는 오히려 노동법상 근로자보호규정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노동기본권은 전반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심지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동3권 보장이 후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정부가 단체협약에 대해 과도한 시정명령을 내리며, 파업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나친 민·형사적 제재 관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사갈등 상황을 유발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양성평등

9. 여성의 학력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여성들이 각종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출산·육아 등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한국 가임여성의 합계 출산율(2008년 1.2명)이 OECD 회원국 중 최저인 점에서도 확인된다. 여성노동자의 약70%는 비정규직이며, 파견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약 55%, 여성노동자 중 38%는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노동자로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심각하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이 해고 1순위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어 여성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으며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만 여성에게 제공되고 있어 여성들의 노동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10. 새 정부 들어서 여성정책의 사령탑인 여성부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여성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부처별로 설치되었던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거의 사라져 정부 각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이 매우 약화되었다. 성차별 관련 법률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폐지되었으나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최근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별로 진전이 없다.

4. 주거

11.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주거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거주하는 주거 빈곤층은 약 68만 가구, 160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거주공간에 따라 세분하면 지하(반지하) 58만 6천여 가구(142만 명), 옥탑방 5만여 가구(8만 명), 판잣집·비닐하우스·옴막·동굴 4만 5천여 가구(11만 명) 등이다.

12. 최근 주거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임대료마저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5년 조사결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의 경우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50.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3. 재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한 강제퇴거 조치, 불충분한 보상 등으로 인해 세입자를 비롯한 해당 지역 거주민의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뉴타운사업 등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체 주택에서 접하는 소형주택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동시에 주변 지역의 주거비용이 올라가면서 저소득 주거 빈곤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5. 건강

1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계층이 상당히 존재한다. 비급여 영역이 폭넓어 의료보장체계가 건강 안전망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공급에 계층간 지역간 편차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 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권 보장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병상의 확충, 국민의료비에서의 공공지출 비율의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등 현행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화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이윤창출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권 보장은 점차 취약해지고 현행의 의료보장체계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6. 이주

16. 정부는 작년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나 표적단속, 야간단속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계속하여 야기하

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제한받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조합 간부들이 정부에 의해 표적 단속되어 강제 출국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7. 2006년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이 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최저빈곤층이다. 2008년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건수는 11,255건으로 국제결혼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빈곤, 부당한 이혼, 언어 소통 곤란으로 인한 차별과 문화적 고립으로 고통 받는 등 국내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제한, 공공 교육 과정에서의 적응실패, 학력저하, 학업중도탈락, 미취학, 학교 내 차별, 부모의 강제출국으로 등으로 인한 학습중단 및 보호문제 등을 겪고 있다.
18. 최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이 꾸준히 수립되고 있지만, 단순히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정책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대상이나 지역간에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 등 국민의 범주에 드는 이주민과 합법적 이주민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도 동화정책이나 일회성 행사 등에 치중되어 있어 이주민 전반의 사회권 보호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B. 핵심 개별 이슈

I. 사회보장

1. 낮은 복지예산 비율(정부답변 187-188)

19. 우리나라의 사회권 관련 예산은 지난 18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복지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권 보장 수준이 낮다. 노동자의 임금을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으로 구분할 때, 실업수당,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적으로 얻는 급여인 사회임금은 대략 총가계운영비의 7.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1.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즉 한국노동자는 가계를 거의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삶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권 보장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재원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빈곤층의 확대(정부답변 194 및 196)

20.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침체 및 제도미비로 인한 각종 사각지대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160만 세대에 이르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에 외자가 지역가입자의 50%에 이르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취업자의 약 40%만이 가입하고 있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지원 등 기초생계비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로 높아졌다. 정부는 2009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3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신빈곤층이나 기존의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3차 안 전망의 대책들은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II. 교육과 아동

1. 공교육의 질 저하(정부답변 50-54 및 285-289)

21. 정부가 추진중인 경쟁과 자율, 효율성을 기조로 한 교육정책은 교육을 시장에 맡겨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학교간 경쟁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보고서 제52항에서 공교육 질 향상 조치라고 기술한 자율형 사립학교를 비롯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는 오히려 성적 우수 학생의 소위 “일류대학” 입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입시경쟁 및 학벌주의 공고화, 사교육비 팽창과 계층간 교육격차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 정부는 초중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달해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지만, 2005년도의 경우 중학교 중도 탈락자가 15,669명(0.8%), 고등학교 탈락자가 23,567명(1.3%)에 이른다. 매해 3만 명이 넘는 학교 중도탈락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3.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5%로 OECD 평균(4.9%)보다 낮은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OECD 평균(0.8%)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1990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약 67만원 중 2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였으나, 2008년에는 약 283만원의 소비지출 중 34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은 100만원 미만 계층보다 8.8배를 더 지출하여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상당한데, 이는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에 있어서도 계층간 격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보고서 제288항은

교육 분야에서의 정부 재정부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나 공교육의 질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 및 아동인권(정부답변 198-202)

24. 가정폭력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다수이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기소율이 낮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재판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소율이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보다는 높지만, 형의 선고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가정폭력의 재발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처리기간이 4-5개월에 달하는데, 가해자의 추가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2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처분 보다 빠른 사건처리가 장점이나 이는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재발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상담 외의 다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건은 가정보호처분을 받도록 해야 하며, 심각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다.
26. 가정폭력은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상파악, 증거확보 등 사건처리가 어렵다. 2006년 『UN 사무총장 아동폭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폭력과 관련된 법은 효과적인 적용 및 집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법의 이행은 법 집행관, 검사 및 판사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훈련, 법의 적절한 적용에 대한 지침을 통해 강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 가정폭력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7. 18세 미만 아동인구 10,490,534명(2008년 통계청)에 비해 상담원은 전국 44개

전문기관에서 300여명의 상담원이 사후대응, 재활 및 예방, 기소활동까지 담당하고 있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8.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는 오래 걸리고,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하여 아동보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해부모 재활과 교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조직도 없으며 교육·홍보 또한 매우 소극적이다.
29.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학생을 징계할 경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허용할 여지가 있으며, 비폭력적인 훈육방안에 대한 교사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보호자가 가해자일 경우 체벌을 훈육차원으로 인정하여 법집행에서 관대한 경향이 있으며, 체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부모교육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정부보고서 제210항에 기술된 것과 달리 절반 이상의 학교가 체벌금지 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30. 따라서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가해부모의 교정을 위한 법원시스템의 정비 및 상담, 재활전문기관의 지정, 적극적인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으로 체벌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교사, 부모, 사회복지 종사자, 법률종사자 대상의 비폭력적 훈육 교육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II. 노동조건과 차별 1 : 일반

1. 노동권을 저해하는 기업친화정책(정부답변 170-171)

31. 정부의 노동유연성 강화 정책기조는 기업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각종 노동법상 근로자보호규정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나타난다.
32. 이런 정책으로는 우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 및 일방적 해지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자율 원칙에 기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산업평화적 기능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33. 한편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도리어 확산시키는 정책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인력을 감축하도록 하면서 감축된 인원에 대해선 한시적 고용을 도입하는 것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하여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34. 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파견근로의 확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강제,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해고제한법제의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 파업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 적용 및 공권력 남용(정부답변 176-177)

35.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는 「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36.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77일간의 파업 끝에 극적으로 노사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정부와 사업주는 약 60명의 근로자를 구속하고 개별 근로자에 대해 약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파업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의 관행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08. 11. 13. 회기전 실무그룹에 제출한 의견서 제121항 내지 제125항에서 그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3. 건설노조 및 운수노조의 단결권 제한

37.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07년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받았으나, 2009년 노동부는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레미

콘, 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법외노조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사실상 타인에게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노동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위장자영인’(disguised self-employed)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는 일반적인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나 자유직업 종사자(those who practise liberal professions)와 같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4. 최저임금 결정에서의 소모적 논쟁 및 낮은 최저임금(정부 답변 127~129)

38. 경제위기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확보해주는 최저임금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39. 노사간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노사간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40. 또한 현행 최저임금(시급 4,000원, 월급 836,000원)은 2009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2인가구 223만원, 3인가구 289만원, 4인가구 350만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금액으로서, 사회권 규약 제7조 (a)항 (ii)호에 따른 적절한 생활의 제공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5.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정부 답변 130)

41.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11. 18. 의원 발의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 숙식제공비용

의 임금공제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중 특히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규약 제7조(차별금지)에 반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대한민국과 같이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있고 지역간 노동인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다.

IV. 노동조건과 차별 2 : 비정규직 차별

1.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제한(정부답변 111-114)

4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 3)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임금 근로자의 52.3%인 8,411,000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이며(별첨 <표1> 참조),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124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임금 253만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별첨 <표2> 참조). 또한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및 퇴직금, 휴가, 시간외수당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 비율은 10~30% 정도로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별첨 <표3> 참조).
43. 정부가 114항에서 예를 들고 있는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다. 비정규직 축소를 목적으로 한 교육훈련의 효과성 논의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률이 35.7%에 불과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 제한(정부답변 116-117)

44.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만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개별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

실상 받게 될 불이익(갱신 거절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들이 차별시정 신청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에게도 차별시정 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45. 2년 고용 후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주요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이라 한다)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도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현실에서 남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 사업장내에서 소속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규정 및 차별시정신청권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3.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지의 약화(정부답변 119-120)

46.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시점을 앞두고 많은 기업에서 비정규직 채용 후 2년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실직대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현행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 유도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47. 노동부의 실직대란 우려와는 달리, 노동부가 올해 7.16.~8.12.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국 5인 이상 약 11,000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 중 정규직 전환 등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비율이 오히려 60%이상으로 나타났다(별첨 <표4> 참조). 이는 기업주도 비정규직을 교체하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48.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의 본래 입법취지인 상시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유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행 비정규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의 결여(정부답변 124-125)

4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2009년 3월)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중 64.9%가 비정규직이다.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 기업은 고용 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감축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직의 위험에 가장 노출되기 쉽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5.7%에 불과하여 64.3%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직 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조차 없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신할 경우 실직(통상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산전후휴가급여(최종 30일분)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노동조건과 차별 3 : 여성차별

1. 성역할 고정관념(정부답변 105-110)

50.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국민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기에 크게 미흡하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사와 육아, 환자 및 노인 수발 등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보육시설의 10% 미만인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늘리고, 여성의 돌봄 노동에 의존하는 병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서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

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공익광고 등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서는 여성에게 대부분 질 낮은 단시간 일자리만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주요역할이 가사와 육아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여성고용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2. 남녀간 임금격차(정부답변 131-137)

51. 2008. 3. 노동부가 발표한 「2007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월급여액은 158만원으로 남성(238만원)의 66.4%수준에 그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 남녀 임금차별과 관련한 구제기관을 통한 진정이나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여성근로자 수는 매우 적다.
52. 우리 위원회가 2009. 8. 말까지 접수한 임금지급 관련 성차별 진정사건은 15건에 불과하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노동부 신고 건수도 54건으로 전체(1,149건)의 4.8%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그 비율이 극히 낮다.
53. 위와 같이 공식적인 차별시정제도를 통하여 임금차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은 것은 문제제기를 할 경우 고용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문제제기 해도 시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직장내 성희롱(정부답변 138-153)

54. 우리 위원회의 성희롱 피해 구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중간관리자 및 사용자에 의한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이 많은 반면 피해자들은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성희롱에 계속 노출되거나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후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악순환 속에서

-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의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5.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후 구제 업무만 할 수 있으며 예방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공공부문을, 노동부가 민간사업장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장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의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부는 사각지대인 영세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점검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56. 또한 성희롱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다.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한 이후 더 큰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피해자들로 하여금 문제제기를 꺼리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리고 구제기관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받더라도 2차 피해로 인해 직장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부와 노동부는 그간의 성희롱 예방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VI. 주거권

1. 주거권 보장 미흡(정부답변 218-225)

57.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6만으로 총 조사가구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보고서 제218항은 최저주거기준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설명하면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에서 ‘적절한 주거’와 관련하여 언급된 요소 중 ‘서비스, 물자, 시설 및 기반시설의 이용가능성’, ‘거주적합성’, ‘위치’, ‘문화적 적절성’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중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설비기준과 구조·

성능·환경기준을 포함하여 적용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숫자는 대폭 증가된다.

58. 현재 주택법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주택종합계획(2003년~2012년)은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위 주택법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9. 지하(반지하),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많은 주거취약계층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가구는 가구원수 대비 방의 개수 및 사용면적 기준 미달, 부엌·화장실·세면실 등 필수적 설비 기준 미달, 화재나 수해 등 재해에 대한 취약성과 불량한 방음·환기·채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식적인 주소지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은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60. 2005년 현재 206만 가구 정도가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 주거권 보장의 낮은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거환경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종합계획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1.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최저주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취약계층의 객관적인 주거실태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2.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권 침해(정부답변 226-231)

62. 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오히려 민간 개발업자의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이 되어 왔다. 정부는 보고서 제226항에서 임대주택 등의 건설을 의무화하고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 주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사업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약 17%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조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배경에는 재개발 사업방식의 한계와 보상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재개발 과정이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이고 중대형 규모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주택분양가격, 주택면적률, 전세자금 등이 상승하여 해당지역 거주민들이 적절한 수준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재개발 지역 거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도적, 법적으로 마련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재개발 과정에서 영세가옥주나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은 경제적 여건에 맞는 저렴한 주택을 찾아서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63. 정부는 최근 개발사업과정을 통해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후퇴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보고서 제231항에서 정부는 이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위장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해오던 주거이전비 적용대상을 더욱 제한하였다. 뉴타운사업지구의 세입자 비율이 70% 이상인 현실에서 향후 해당지역 세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64. 200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발과정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보호를 후퇴시킬 소지가 큰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거이전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세입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정부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지 않고 2009년 8월 애초의 개정안 그대로 최종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3. 강제퇴거와 강제철거(정부답변 235-238)

65. 여전히 재개발과정에서 거주민과 피해보상을 위한 협의와 보상 정도가 부족하고, 예고 없이 강제철거가 시작되어 그 주택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강제로 내쫓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경비업체 직원이 재개발 현장에 투입되어 강제퇴거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비업법」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계절적·시간적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겨울철,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에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66. 2009년 1월에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리한 강제퇴거 조치, 충분하지 못한 사전 협의와 보상수준 등 현재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개발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상가세입자 철거민 일부가 개발 이후 지속적인 영업보장 등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신나, 휘발유 등 위험한 인화물질을 쌓아놓고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진압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국민이 사망했음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 대책 및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9월 14일 현재까지도 유가족들은 5명의 시신에 대한 장례식을 치루지 않고 정부의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중 2,400여 페이지의 자료를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서 관련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67. 재개발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제철거가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되도록 강제철거의 사전조치를 관련법령에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고지, 임시이주대책 제공 등의 사전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재개발사업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와 겨울철 및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재개발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는 재개발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거집행 또는 강제 철거 현장에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입회하여 그 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해야 하고 경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강제퇴거 및 강제 철거 과정에서 거주민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68.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2월에 강제철거로 인한 거주민의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강제퇴거가 시행되더라도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과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4. 홈리스 실태 파악 미진(정부답변 232-234)

69. 홈리스(Homelessness)에는 거리,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자(장애인, 모자시설, 요양시설 등), 무허가시설, 기도원, 쪽방과 고시원, 여관, 여인숙에 거처를 둔 사람들이 포함된다. 홈리스의 규모는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되고 있다. 가장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거리노숙인과 노숙인 쉼터 입소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숫자는 약 5천여 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여기에 부랑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포함할 경우 홈리스 숫자는 1만 2천여 명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2005년도 청와대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처럼 홈리스의 범주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거리,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요양시설, 미인가시설, 무허가기도원, 쪽방, 고시원거주자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약 9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홈리스 규모의 집계방식은 그 규모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 특성이나 변화양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70. 현재 홈리스 지원체제는 시설입소위주의 정책으로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홈리스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확보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생활의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홈리스들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처는 실제로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자활의 집 이후의 영구적인 주택이 확보되지 못해 다시 시설을 순회하거나 거리를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VII. 건강

1. 보건의료체제 공공성 약화 의도(정부답변 242-249)

71.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중심의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 없이 의료산업화를 통해 영리성을 확대할 경우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의 효용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72. 한국의 보건의료체제는 보편적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비영리의료법인화 정책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 및 접근성을 확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병원의 90%가 민간병원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국민의료비에서 건강보험 보장율이 64.6%에 불과한 낮은 공공지출 비율, 5%~13%에 달하는 1,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등의 조건은 취약계층은 물론 중증질환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높은 의료비 지출 부담을 부과했고 이로 인해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 재정 체계의 국가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73. 정부는 2008년 추진하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최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특구지역에 한정되어 추진 중지만 점차 확대되고 다른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특히 정부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적 활동은 물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일부 재력있는 환자들에 집중되는 것은 물론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허약화, 병력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74. 정부는 의료산업화정책이 의료의 공공성에 미칠 영향을 전혀 예측하지 않고 있으면서 의료서비스 접근에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는 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수립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책 추진시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2. HIV/AIDS 예방대책 및 치료제 지원 부실(정부답변 256-264)

75. 정부는 HIV/AIDS 확산 억제와 감염인에 대한 차별해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홍보 활동이 일부 "취약 집단"에만 집중됨으로써 에이즈를 특정 취약 집단의 질병으로 오도하는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76.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차별 금지 및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익명검진 이후 보고과정이나 치료비 및 생계비지원 과정에서 AIDS 감염인의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77. 한국정부는 AIDS 감염인의 입국을 막는 것은 물론, 감염 사실이 보고될 경우 해당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등 외국인 감염인의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이 배우자인 외국인, 난민인정자, 귀화신청자가 아닌 많은 체류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78. 정부는 HIV/AIDS 확산 억제와 감염인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대상과 내용을 재점검하는 하는 한편, 내·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치료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79. 정부는 보고서 263항과 264항에서 현재 국내에 공급 중인 에이즈치료제의 공급 현황 중 제약회사의 공급거부로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진료비 지원예산의 부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80. 다국적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신약 가격이 비싸거나 국내에 공급되지 않아

HIV/AIDS 환자의 신약에 대한 접근권이 매우 제한적이다. 신약이 보험에 등재되어야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시스템 안에서 제약사가 약가 협상 과정에서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등재를 포기하거나 공급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81. 특히 기존의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꼭 필요한 AIDS 치료약 푸제온의 경우 해당 제약사인 로슈가 정부와 약가 협상 중 가격 불만을 이유로 4년 이상 국내에 약을 공급하지 않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강제실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특허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현재 로슈사는 푸제온을 무상공급하고 있지만 HIV/AIDS 환자의 신약에 대한 접근권은 매우 불안정하다.
82. 따라서 정부는 약가를 이유로 장기간 국내에 공급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 등 적극적 공급정책과 함께 약가 협상 결렬 기간 동안 필수약품인 경우 임시적으로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인공임신중절 문제해결 방안 부족(정부답변 268-272)

83. 한국은 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보고서에 의하면 1년에 약 35만 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고, 이중 미혼여성비율이 약 42%로 나타난다. 실제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갤럽조사 등에서는 1년에 150만 건으로 추정한다.
84. 이중 20-2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문제는, 한국의 2008년 여성의 평균결혼연령이 28.3세(통계청)임을 고려해 볼 때, 주로 혼전 임신 때문이다. 특히 이 연령기의 인공임신중절은 혼전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부재, 피임 등 예방서비스의 미흡, 혼전임신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실제로 미혼모 발생율(보건복지부, 1년에 약 2000-3500명)과 미혼여성들의 높은 인공임신중절율,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20대 전반기 여성에 대한 성·생식 관련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하다.

85. 정부가 수행하는 ‘생식건강 실태조사 및 교육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보급 추진’ 정책은 중·고교생이나 기혼 여성이 주 대상이다. 반면 20대의 대학생 혹은 노동시장 내 여성들의 경우 성·생식 관련 공적 서비스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청소년 성교육의 경우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중·고교 성교육 시수 제도화 등 일정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20대 여성층은 청소년 성교육 정책에서도 제외된 사각지대이다.
86. 현재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홍보 캠페인은 여성의 재생산권(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양육의 권리) 보다는 주로 종교단체 등의 주도하에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들의 죄의식을 가중시키는 역효과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홍보캠페인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된다.

VIII. 이주와 난민

1. 재한외국인의 인권(정부답변 91-92)

8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국내의 외국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정부의 외국인 정책 수립 등에 대한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한외국인’의 정의에는 용어의 일반적인 뜻과 달리 미등록체류자는 제외되어 있는 등 “국민이 아닌 자”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향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의 답변서는 ‘국민이 아닌 자’의 권리가 개별 법률이나 제도에서 어떻게 보호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2.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및 열악한 수용시설(정부답변 183-186 및 239-241)

88.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사범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미등록외국인의 임금체불 문제해결 등의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3. 2. 10 ‘외국인노동자 권리 구제 담당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완화하고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구제 절차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이후 몇 차례 유사한 권고를 한 바 있다.
89. 노동부는 그간 ‘외국인 근로자 민원처리 지침’을 수립하여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 문제가 해결되어 권리구제가 이뤄진 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하는 ‘선 구제제도 후 통보원칙’을 취하여 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지침을 2008년 6월 폐지하여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
90. 2007. 12. 13.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단체 간부 3명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07. 11. 27. 진정을 접수하여 강제퇴거 당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위원회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단체의 간부 3명을 동시에 강제퇴거 시켰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위원회에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제 출국시켜 조사를 방해한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91. 이주노동자의 단결권과 관련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외국인노동자 91명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서울지방노동청장이 관계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6. 6. 3.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상기 노동조합이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상기 노동조합은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반해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상태이다.

92. 정부의 답변은 외국인 보호시설에서의 ‘급식 및 위생 관리’, ‘과밀 수용’, ‘시설의 소방안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구금시설 내 조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보호시설 내에서의 신체의 자유 제한 수준(질의문에서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협의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현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93. 현재 보호시설은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부에 따로 쇠창살이 쳐진 “방실”을 두고 피보호외국인의 생활을 “방실” 내로 제한하고 있다.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 발생(사망 10명) 시에 강제퇴거 대기 시설(processing center)로 운영되어야 할 보호시설이 구금시설(detention center)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이후 시설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와 같이 보호시설을 구금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후 이러한 시설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94.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보호시설 현황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중 운동장 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의 현황, 보호시설 내 담당의사의 배치 현황, 보호소 내 각 “방실”의 1인당 수용 면적 기준 등의 구체적인 시설 기준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미흡한 난민인정비율 및 난민보호장치(정부답변 160-161)

95. 2006. 6. 12.자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는 ①난민신청인들이 난민인정절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것 ②적정 수의 난민담당 공무원을 확충하여 급증하는 난민인정신청의 심사 등의 업무를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할 것 ③난민인정기관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두되, 1차 심사기관과 2차 심사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신청인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것 ④난민인정신청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난민신청인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6. 위원회가 동 권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민인정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 및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비정규직 관련 통계

<표 1>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임금노동자	15,731	15,882	15,994	16,104	16,076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946	7,268	7,414	7,707	7,665	44.2	45.8	46.4	47.9	47.7	
비정규직	8,785	8,614	8,580	8,397	8,411	55.8	54.2	53.6	52.1	52.3	
고용 계약	임시근로	8,623	8,431	8,338	8,225	8,279	54.8	53.1	52.1	51.1	51.5
	장기임시근로	5,071	4,983	4,941	4,868	4,726	32.2	31.4	30.9	30.2	29.4
	한시근로	3,552	3,448	3,396	3,357	3,552	22.6	21.7	21.2	20.8	22.1
근로 시간	시간제근로	1,231	1,202	1,301	1,229	1,317	7.8	7.6	8.1	7.6	8.2
	호출근로	914	846	940	818	854	5.8	5.3	5.9	5.1	5.3
근로 제공 방식	특수고용	643	635	602	595	632	4.1	4.0	3.8	3.7	3.9
	파견근로	175	175	172	139	131	1.1	1.1	1.1	0.9	0.8
	용역근로	584	592	617	641	575	3.7	3.7	3.9	4.0	3.6
	가내근로	154	125	151	65	69	1.0	0.8	0.9	0.4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김유선,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표 2>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만원)					격차(%)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임금노동자	172	175	181	185	185	72.4	72.9	73.4	73.9	73.2
정규직	238	239	247	250	253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20	120	124	125	124	50.5	50.1	50.3	49.9	48.9
임시근로	120	119	123	124	123	50.4	49.9	50.0	49.7	48.7
장기임시근로	112	112	114	117	113	46.9	46.8	46.3	46.7	44.7
한시근로	132	130	137	135	136	55.2	54.4	55.3	54.0	53.9
시간제근로	54	56	56	57	56	22.7	23.4	22.6	23.0	22.0
호출근로	89	89	90	98	87	37.5	37.3	36.5	39.4	34.3
특수고용	136	142	162	155	146	57.2	59.4	65.7	62.2	57.5
파견근로	133	134	148	147	143	55.6	56.1	60.0	59.0	56.6
용역근로	101	102	114	108	108	42.5	42.8	46.3	43.3	42.7
가내근로	60	57	73	49	55	25.0	23.8	29.6	19.5	2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김유선,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표 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근로조건 적용률

(2009년 3월, 단위: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노동자	64.9	66.6	57.9	62.2	57.8	43.1	54.1	48.3	48.1
정규직	98.1	98.7	82.2	99.3	97.4	75.0	90.1	68.3	61.2
비정규직	34.7	37.5	35.7	28.4	21.7	14.1	21.3	30.2	36.1
임시근로	33.8	36.5	34.8	27.2	20.6	13.2	20.3	29.7	35.5
장기임시근로	20.2	21.4	20.9	12.4	8.6	3.4	6.8	18.2	17.6
한시근로	51.8	56.5	53.2	47.0	36.5	26.4	38.2	45.1	59.3
(기간제근로)	64.6	69.7	66.2	60.4	47.3	34.7	50.2	55.2	74.7
시간제근로	6.7	6.9	7.3	4.2	3.9	2.4	2.8	18.6	20.2
호출근로	0.4	0.5	3.0	0.1	0.3	1.3	0.0	1.0	3.8
특수고용	6.7	7.6	7.8	4.2	3.5	1.5	3.1	46.7	36.7
파견근로	72.5	75.0	74.1	71.8	52.4	43.8	59.8	57.8	74.1
용역근로	60.2	79.5	68.6	69.5	39.9	27.9	42.7	38.6	77.3
가내근로	5.3	6.4	4.4	5.3	4.8	1.6	3.8	2.4	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김유선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표 4>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내용('09.6월~7월)

(단위 : 명, %)

구분 ¹⁾	계약기간 만료자							
	정규직전환 ²⁾		계약종료 ³⁾		기타 ⁴⁾			
'09.7월	19,760	(100.0)	7,276	(36.8)	7,320	(37.0)	5,164	(26.1)
'09.6월	53,500	(100.0)	20,735	(38.8)	16,331	(30.5)	16,434	(30.7)

(자료 : '09. 7.~ 8. 노동부 실태조사)

- 1) '09. 6월은 근속 2년 이상자로서 6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이며
'09. 7월은 법 시행 이후 근속 2년 이상자로서 7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임
- 2) ①무기계약체결과 함께 처우수준·승진기회 등이 함께 개선된 정규직전환과
②처우수준 등 개선 없이 고용안정만 보장된 무기계약전환 조치자를 포함
- 3) 기간제 근로계약종료
- 4) '기간제계약을 다시 체결',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 '방침을 정하지 않음'
으로 응답한 경우이나, 현행법상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됨.

**Submission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forty third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thir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1 October 200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ABLE OF CONTENTS

A. INTRODUCTION

I. Assessment in Overall Situation	1
II. Assessment in Specific Areas	2
1.Social Security and Education.....	2
2.Labour.....	2
3.Gender Equality.....	2
4.Housing	3
5.Health.....	4
6.Migration	4

A. INTRODUCTION

I. Social Security	6
1.Low Budget Rate for Social Security (187-188).....	6
2.Increase of People in Poverty (194 and 196)	6
II. Education and Children	7
1.Degradation of Public Education (50-54 and 285-289).....	7
2.Domestic Violence and the Rights of Child (198-202).....	8
III. Working Condition and Discrimination 1: General Issues	9
1.Labour Rights Threatened by Business Friendly Policies (170-171).....	10
2.Excessive Appl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Striking Workers (176-177) ..	10
3.Limitation on the Rights to Assembly for the Construction Trade Union and Transportation Trade Union.....	11
4.Low Minimum Wage and Unproductive Dispute over Its Determination (127-129)	11
5.Introducing Different Minimum Wages by Region (130)	12
IV. Working Condition and Discrimination 2: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12

1.Limitations on Non-regular Workers Job Training (111-114)	12
2.Limitations on Non-regular Workers' Complaint Rights to Discrimination Remedy (116-117)	13
3.Non-regular Worker Protection Weaken (119-120)	13
4.Non-regular Female Workers Maternity Protection Deficiency (124-125)	14
V. Working Condition and Discrimination 3: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4
1.Gender-Role Stereotypes (105-110)	14
2.Gender-based Wage Inequality (131-137)	15
3.Sexual Harassment at Work (138-153).....	15
VI. Housing and Standard Living	16
1.Insufficient Securing of the Rights to Housing (218-225)	17
2.Violation of the Rights to Housing during Gentrification (226-231)	18
3.Forced Evictions and Forced Removal (235-238)	19
4.Lack of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the Homeless (232-234).....	20
VII. Health.....	21
1.The Publicity of the Healthcare System Weaken (242-249).....	21
2.Insufficient Measures for HIV/AIDS Prevention and Medical Assistance (256-264)....	23
3.Lack of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Artificial Abortion (268-272)	24
VIII. Migrants and Refugees	25
1.Human Rights of the Foreigners Living in Korea (91-92)	25
2.Deportation of Migrant Workers and Poor Conditions in Detention Centres (183-186 and 239-241).....	26
3.Low Rate of Refugee Recognition and Lack of Protections for Refugees (160-161).....	28
[Appendix]	29

A. INTRODUCTION

I. Assessment in Overall Situation

1. Recent policies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characterized by free competition, labour flexibility, retrenchment of social welfare spending, and increased budget allocation to massive development projects has caused the general retrogression in the field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SCR). The Governments privatization of necessity public goods such as healthcare, education, water supply and electricity has become a concern as it challenges the full realization of the ESCR.
2. Based on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HRCK) in January 2006, the Government developed a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NAP) in the following year. NAP not only omitted many of the core recommendations by NHRCK upon its adoption but also partially reduced budgets allocated to the social welfare projects on its August 2008 revision. This contradicts the recommendation from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mmittee) demanding states to strengthen support for socially marginalized groups.
3. In 2006, NHRCK recommended a draft bill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which was subsequent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a government draft bill in the following year. However, the bill was automatically disposed as the term of the Seventeenth National Assembly expired and the possibility of re-submission seems to be scant regardless to increasing social demand.
4. On March 2009, the Government unilaterally downsized the staff and structure of NHRCK by 21.2%. In an era of above-mentioned retrenchment of social welfare spending and contrary to a growing demand for NHRCK to promote and protect ESCR, the government has been severely undermining the essential function of NHRCK as a human rights defender.

II. Assessment in Specific Areas

1. Social Security and Education

5. Despite the existence of basic social safety-net framework, there are multiple blind-spots of social welfare throughout the Korean society. However, the Government has cut the 2010 fiscal year budget for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increased the minimum cost of living by 2.75%, below inflation rate, without making fundamental efforts needed to improve the social safety-net that secures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for disadvantaged people.

6. There is concern expressed over the current education policy focusing on freedom and competition that will possibly make entrance exams harshly competitive, perpetuate academic elitism, and widen education level gaps among social classes. Additionally, only a very small portion of the education budget is allocated for disadvantaged children.

2. Labour

7.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has severely effected temporary employees, women, and low income homes. There is a dire need of protection and welfare policy from the nation. The Government's current basic support and protection policy is very insufficient, and rather is focusing on labour laws and the alleviation of labourer protection policy. As a result, citizens' basic labour rights are being threatened. It is being proposed that labour rights are actually in retrogression

8. With the retrogression of the guarantee of the 3 labour rights, that was created through a group labour relations, the Government's excessive municipal order and criminal and civil sanction practices in the group agreement is seen as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e induction of labour conflict is placing a hindrance in the stability and unity of the Korean society.

3. Gender Equality

9. Despite the fact that women have been increasing achieving a higher level of education, less than 50% were not able to participate in the economy. Only 64% of

women who have received higher education are economically active,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averag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member countries. The cause of this low employment of women can be placed on various exposures to unemployment concerns and a lack of a welfare system for child birth and child care. This is confirmed when looking at when the total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is the far lowest (1.2 in 2008) amidst the OECD member countries. It is apparent that poverty among women is increasing as almost 70% of female workers are under a non-regular contract, 55% of women are in dispatch work, and 38% of female workers are employed in low-wage sectors earning less than 1 million Korean Won (KRW) per month. Womenization of poverty as well as povertization of women are becoming a serious issue. As the working condition for women is increasingly deteriorating as along with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female workers are usually the first choice to be terminated and new job opportunities are primarily replaced by non-regular positions.

10. Since the drastic downsize in structur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hich is the main coordinating body for women policy,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women policy has been hampered. With the shut down of many ministries and its respective women policy divisions during the last few years, increasingly weakened gender equality policies. The Gender Discrimination Prohibition and Relief Act that was abrogated in 2005 was not replaced by any alternative act. Recent efforts to expand the current, Basic Law on Women's Development into the Basic Law on Gender Equality are making little progress.

4. Housing

11. According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5, there are 1.6 million people live in poor housing conditions below the minimum standards. In detail, out of 680,000 households in South Korea, 586,000 households (1.42 million people) are living in basements (semi-basements), 50,000 households (80,000 people) are living on rooftops, and 45,000 households (11,000 people) are living in shacks, vinyl hothouses and caves.

12. The polarization of housing conditions resulted from the augmentation of rent as well as the rise in housing price which increased the burden of housing cost for low-income families.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census, the rent to income rate of the lowest-income class reached 50.7%.

13. Due to inappropriate forced evictions and inadequate compensation during the gentrification project the residents' rights to housing were not being properly protected. The increase of gentrification projects such as the New Town Project is augmenting the housing instability of low-income people living in poor housing condition due to the reduction of small houses and the increase of housing costs in the adjacent areas.

5. Health

14. Despite the liability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ere still exists a wide range of marginalized people in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A regional and class deviation also exists in the supply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gap in the medical services among social class has been widening.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standard of the right to health and the expansion of public disease conditions the following reforms will be needed: expansion of the public disbursement level of medical services, improvement in health care insurance guarantee, increased protection of marginalized people with the dissolution of blind spots in NHI, and the reform of the present medical supply system. It is also important to strengthen the governmental responsibility of the health care system.

15. Nevertheless, the Government has adopted policies to industrialize healthcare service in order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and promote it as a growth engine. Exploiting medical service resources as a profit-making tool in a weak public healthcare environment may undermine the right to health and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6. Migration

16. Since last year,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apprehens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apprehension process has been accompanied by excessive physical force, and has resulted in issue raising human rights violations.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currently being denied the right to organize a labour union. In addition, the current executives of the Migrant's Trade Union have become a target of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and have resulted in repeated deportation.

17. In 2006, more than 50% of marriage immigrant family's yearly income falls below the lowest cost of living standard. In 2008, it was found that 11,255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or 1 out of 3 couples, ended their marriage in divorce. There are many foreign women who marry into Korean families that endure domestic violence, poverty, unjust divorce, language barrier difficulty which cause discrimination and cultural isolation as a result leads to severe suffering and difficulty in the settlement to Korean society. The children of these migrant workers and foreign women are being reared in the most unfavourable environment due to the parent's low economic status and differences in learning language and culture.

18. Interest in a cultural diversity is on the rise and policy relating to the issue is continuously being developed. However, due to Korea's each governmental department being in competition to improve policy it is difficult say that an appropriat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and regional support is occurring. Foreign marriage women and their families, migrants categorized as nationals, legal aliens are usually the main point of subject in these policy's. However due to the details of the assimilation policy and the onetime events that is placed with a lot of weigh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efforts is gearing the protection of right to society and improvements.

B. CORE ISSUES

I. Social Security

1. Low Budget Rate for Social Security (187-188)¹

19. Even though governmental budget for ESCR has steadily increased during the last eighteen years, the level of protection of ESCR in the Republic of Korea 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developed welfare states. Dividing average income into market income and social income, the latter, comprising unemployment allowances, childcare subsidy, basic old-age pension, health insurance etc., constitutes only 7.9% in Korea compared to the 31.9% average of OECD countries. Diminishing job opportunities due to economics crisis poses a serious threat to Korean wageworkers as they rely mostly on market income for their liveliho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vigorous effort to expand social welfare resources for enhancing social security level.

2. Increase of People in Poverty (194 and 196)

20. In regard to social welfare budgeting, there is an urgent need to solve the problem of blind-spots resulting from economic downturn and institutional loopholes. An estimated 1.6 million households are placed on health insurance suspension for not being able to pay the fees and almost half of local subscriber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re exempt from the duty to subscribe. Only 40% of employed workers are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as low wage and non-regular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system. Seventeen percent (1 million) of the total population that is in poverty have been excluded from basic benefits such as livelihood subsidies, medical subsidies, and rehabilitation subsidies as a result of the stricter criteria to be eligible for benefits. The Government estimates that the population situated in various blind-spots to be around 3.4 million. The safety-nets established in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are not sufficient for people who newly fell into the poverty and quasi poor class from experiencing further suffering.

¹ The numbers in the brackets hereafter refer to the paragraphs in the Replies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of issues (E/C.12/KOR/Q/3).

II. Education and Children

1. Degradation of Public Education (50-54 and 285-289)

21. Through the free market the Government aims to improve the quality and reduce the cost of education by widening customer's choice and strengthen competition among schools emphasizing competition, liberalization and efficiency in its education policy. Paragraph 52 of the Government written replies states that Diverse High Schools project such as incorporating independent private schools intend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However, the project unilaterally allows privileged students with high performance in their admission to the so-called "*Illyu Daehak* (privileged universities)" and therefore there is concern for the perpetuation of entrance exam competition and academic elitism, as well as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spending and education gap among classes.

22. The Government states that "[t]he near-100 percent retention rate of elementary or middle schools indicates that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is provided in Korea." However, in 2005, the number of drop out reached 15,669 (0.8%)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23,567 (1.3%) among high school students. More detailed researches as well as concrete countermeasures need to be developed for the 30,000 or more children that annually drop out of school.

23. According the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9*, the level of private spending was the highest among member states. While the Government's expenditure for public education of 4.5% was lower than OECD average (4.9%), the private burden rate for public education spending of 2.9% was three times higher than OECD average (0.8%). High proportion of private spending reflects the lack of government support for education welfar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², the total spending for private educ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was estimated to reach 20.9 trillion KRW. In 1990 an average household spending for private education was 20,000 KRW for a monthly consumer spending of 670,000 KRW. However, by 2008 spending for private education steeply increased to 340,000 KRW for an average consumer spending of 2,830,000 KRW. Moreover, private education spending gaps among social classes are

² The Statistics Korea is a new name of the former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uge as households with incomes higher than 7 million KRW spend 8.8 times more than households with incomes lower than 1 million KRW causing not only difference in immediate education opportunity but also social gap in eventual job opportunity. Paragraph 288 of the Government's replies notes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e policy and national financial capacity to lessen education expenses borne by families from mid- and long-term perspectives."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 immediate review of the public education policy is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2. Domestic Violence and the Rights of Child (198-202)

24. Domestic violence incidences are either handled as a criminal case or a family protection case. However, most of them are reviewed as a family protection case even in the case it is handled as a criminal case the prosecution rate is low and usually the offenders receive a suspension from prosecution on the condition that the offender receives counselling or endure a summary trial. Even though the prosecution rate is higher than total criminal case's average rate, it fail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Majority of the prosecuted cases are even settled through fines. In 2008, 4,833 cases were sent to family court.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family protections cases take 4 to 5 months to proce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rotection of victims from further violence from offenders can be effective.

25. Suspension of prosecution on the condition of counselling has the advantage of a speedier proceeding than protection order procedures, but it should be limited to relatively light offences or cases where counselling is deemed to be effective. Family protection order should be adjudicated to cases that necessitate protection measures other than counselling. Serious and repeated domestic violence should be sanctioned through criminal punishment which in reality is relatively rare.

26. Fact-finding and securing evidence are difficult for cases of domestic violence as offences are usually covertly commit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2006 *UN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notes that laws established to fight violence against women are useless unless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law is granted, and can be enhanced by gender sensitiv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prosecutors and judges, as well as guidelines for adequate application of the

law. Domestic violence is characterized by the special environment of family and can be a serious criminal action that can threaten lives, therefore law enforcement officers should be educated to understand its nature.

27. Child abuse preventing mechanisms as well as human resources are insufficient as 300 counsellors from 44 specialised institutions are in charge of follow up, rehabilitation, prevention, and indictment process for 10,490,534 (Statistic Korea 2008) children.

28. 80% of child abuse take place inside family environment but legal protection mechanism for children are slow and prosecution is possible only in case of serious after-effects. Moreover, there is neither a legal basis nor a professional organization for the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 of offending parents, and awareness building efforts are limited.

29. Presidential Decree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tipulates that "... alternative measures of discipline and admonition should be used, and no physical pain should be inflicted on students unless inevitable for educational purposes," leaving the possibility of corporal punishment and providing no systemic training for non-violent discipline methods. There is no institutionalized parents' education to change perception about corporal punishment, and courts leniently punish guardians in case of corporal punishment by tacitly recognizing its disciplinary value. More than half of the schools have not adopted any measure to oust corporal punishment.

30.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mprehensive measures to improve current court system, designate professional institutions for counselling and rehabilitation, and revigorate education and awareness building in order to promptly protect child victims and correct perpetrating parents. Additionally,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need to be stipulated in legal terms and policies institutionalizing non-violent disciplinary measures training for teachers, parents, social workers and legal officials should be established.

III. Working Condition and Discrimination 1:

General Issues

1. Labour Rights Threatened by Business Friendly Policies (170-171)

31.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to increase labour flexibility and hence create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takes the form of policies alleviating Labor Law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32. The revision of the Non-regular Workers' Act that enables the extension of the employment period of non-regular workers is a good example of such policy. Government's correction order or unilateral termination of previous collective agreement in the public sector is threatening the business-specific role of collective agreements concluded through the principle of labour-management self-regulation and is causing unnecessary conflicts.

33. On the other hand, in the name of a rise in employment proliferating policy that promotes unstable jobs is on the contrary becoming a concerning issue. The public sectors advancement plan linked to the public sector summed up a fixed reduction of man power. This instatement of this reduction introduced temporary employment, however it switched good quality regular employment jobs into low income non regular employment jobs and has caused a greater gap in polarity in the labour market.

34. Additionally, the readjustment of minimum wage assessment standard, the increase of temporary agency workers, the enforcement of prohibition of allowances to full-time trade union officials, the enforcement of unification of negotiation party in case of multiple trade unions, and the alleviation of laws limiting dismissal are further expected.

2. Excessive Appl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Against Striking Workers (176-177)

35. Labour actions during trade disputes such as strike is in reality limited by the Criminal Cod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or the Punishment of Violence Act, even though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guaranteed under th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36. The Ssanyong Cars trade union and management reached a dramatic agreement after

77 days of strike. However, the company and the Government detained 60 workers and filed a criminal lawsuit demanding reparation for injury and provisional seizure of a total of 5 billion KRW.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pointed out repeatedly the excessive legal measures targeting workers participating in strikes. The NHRCK explained in detail such practice in paragraph 121 and 125 of the report submitted to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 in November 2008.

3. Limitation on the Rights to Assembly for the Construction Trade Union and Transportation Trade Union

37. The National Construction Trade Union and the National Transportation Trade Union received the Trade Union Registry Certificate from the Ministry of Labour in 2007. However, in 2009, the Ministry delivered a correction order to exclude cement-mixer drivers and dump truck drivers from the trade union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hat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were not employees according to the Labour Law. The Ministry informed that the trade union would be illegalized if it did not follow the order. However,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are ‘disguised self-employed’ and *de-facto* dependent to third parties in providing labour, therefore need the protection of Labour Law. ILO indicated that also people with no employment relation, such as 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 and those who practice liberal professions, had the right to enjoy freedom of association as much as other employed workers. The Government needs to explain its position toward the basic labour rights of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and its future prospects

4. Low Minimum Wage and Unproductive Dispute over Its Determination (127-129)

38. Th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minimum wage as legal protection mechanisms for the minimum living standard of low-income workers is ever growing as the net income of workers is decreasing due to the economic crisis and low income class are expected to suffer more.

39. The current minimum wage system that is determined through labour-management agreement has the potential of prolonging exhausting conflict among parties until consensus is reached. Alternative systems such as setting minimum wage in proportion

to the average wage of workers are being suggested.

40. Current minimum wage (4,000 KRW per hour, 836,000 KRW per month) is far below the average monthly living cost per household members (2 person household: 2,223,000 KRW, 3 person household: 2,890,000 KRW, 4 person household: 3,500,000) and insufficient to diminish income gap and achieve the goal of income redistribution for a decent living of all workers as provided in Article 7 (a) (ii) of the Covenant.

5. Introducing Different Minimum Wages by Region (130)

41. NHRCK commented that the draft amendments to the Minimum Wage Act proposed on 18 November 2008 introducing different minimum wages by region, expanding reduced minimum wage, and deducting lodging expenses from minimum wage calculation should be reconsidered as they contradict the purpose of minimum wage. The differentiation of minimum wages by region can violate Article 7 (non-discrimination) of the Covenant, undermine equality among workers in different regions, be irrelevant to a geographically small country like Korea, and cause concentration of labour force in areas with high minimum wage and create doughnut phenomenon in low minimum wage regions and hence aggravate disparity among regions.

IV. Working Condition and Discrimination 2: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1. Limitations on Non-regular Workers Job Training (111-114)

42.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s Economic Active Population supplemental essay conducted in March of 2009, 8,411,000 of South Korea's wage earners or 52.3% are non regular workers (See [Table 1] in the Annex). It was found that their monthly earning was 124,000 KRW; this clearly presented a large gap between non-regular and regular workers whom earn a monthly salary of about 253,000 KRW a month (see [Table 2] in the Annex). In addition, employment insurance, social insurance, retirement allowance, vacation, overtime pay benefit only applied to 10-30% of non-regular workers, which is very low compared to regular employed workers (See [Table 3] in the Annex).

43. Several systems supporti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for non-regular workers listed in Paragraphs 111 to 113 of the Government replies are based o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systems cannot be applied to the workplaces and companies that are not joined the employment insurance. In reality that non-regular workers subscribing the employment insurance is merely 35.7%, the opportunity to receive training is very limited.

2. Limitations on Non-regular Workers' Complaint Rights to Discrimination Remedy (116-117)

44. Presently the remedy system for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allows individuals only to file complaints.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complainants as individuals could be additionally victimized by some possible disadvantages (revoke renewal of license), it is very difficult for victims themselves to file. It is thus necessary to allow the labour unions to file.

45.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s (Non-regular Employment Law hereafter) that place a time of 2 year employment of non-regular employment to be changed to regular employment which protected detached workers and temporary contract workers is in reality being abused. Following an industry that changes the affiliation to provide workers it is necessary to regulate such actions.

3. Non-regular Worker Protection Weaken (119-120)

46. Government that is fast approaching the 2 year mark of the Non-regular Employment Law, is concerned that many corporations will rather terminate non-regular employment workers before the term. In response they are getting ready to submit a proposal to the National Assembly to extend the 2 year term to 4 years. However, this extension does not coincide with the legislation that is to prevent non-regular employment abuse and regular employment instatement. It actually escalates the concern of an increasing non regular employment.

47. Asides from the Ministry of Labor's concern over unemployment disturbance, the Ministry this year 7.16-8.12 implemented on its own a nationwide surveyed 11,000 businesses that employed 5 people. The survey indicated that more than 60% during

their time of employment, their employment was not terminated or contract terminated. This indicates that corporations prefer the switch from non regular worker to a regular change in order to maximize the skill that has already been acquired which eventually will elevate production.

48. Public sectors that are in the position of leading the private sectors in finding a solution with the non regular employment situation is rather going into the direction of terminating non regular employed worker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go back to the original meaning of the legislation of requiring non regular employment to change into regular employees encourage and aggressively instate a solution that will provide corporation support in implementing this law.

4. Non-regular Female Workers Maternity Protection Deficiency (124-125)

49.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Survey to the Survey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March 2009), 64.9% of women are non-regular employed. Due to the economical crisis the operation of corporations has weakened and usually non-regular employees are the most at risk of unemployment during these times. It was found that non-regular workers employment insurance enrolment was a mere 35.7%. 64.3% of those non-regular employed workers due to the un-enrolment to employment insurance are not eligible to receive benefits. Especially, women in pregnancy who are not enrolled in employment insurance are usually exposed to possible job termination. They are not eligible to receive maternity leave (30 days) benefits. There is a dire need to fi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V. Working Condition and Discrimination 3: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 Gender-Role Stereotypes (105-110)

50. At the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is operating various gender equality education. However, it is not sufficient to improve the deeply rooted notion of gender roles in the society. Even when fundamentally women are economically active there are gender-role stereotypes that it is the woman's duty to rear

child, maintain housework, and take care of the sick and elders. The Government should also abruptly increase public child caring centres, which cover less than 10% of all centres.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places effort in implementing policy that will change the deeply rooted notion of gender roles. Along with this, it is necessary to promote awareness with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education through media, and awareness education to the nation.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presently providing women employment training, in this training only low end jobs are being offered. This only instigates that the role of women is child rearing and housework.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basics of women employment policy.

2. Gender-based Wage Inequality (131-137)

51. The 2007 Basic Survey on Wage Structure released by the Ministry of Labor in March 2008 reveals that women's monthly pay averages 1.58 million KRW, which is merely 66.4% of men's monthly pay (2.38 million KRW), indicating a broad gender-based wage gap. Still, very few women workers file a complaint or lawsuit on gender-based wage discrimin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Labor, NHRCK and Courts, to seek remedies.

52. Until end-August of 2009, only 15 complaints were brought to the NHRCK in relation to gender-based wage discrimination. Similarly, there were only 54 complaints brought before the Ministry of Labor to claim the breach of the Equal Employment Act, which is a mere 4.8% of the entire complaints brought to the Ministry (1,149 cases).

53. The possible reason why only a few complaints have been fil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discrimination remedies is that the affected workers are afraid that they might be victimized at work for having made such complaint and they are not confident that filing a complaint would resolve the wage discrimination.

3. Sexual Harassment at Work (138-153)

54. An analysis of the cases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that were brought to NHRCK for remedies shows that sexual harassment at work is more frequent in smaller workplaces; many cases involve physical or verbal harassment by middle managers and employers; and in general the victims continue to be exposed to the harassment, being at a loss what to do to stop such harassment, or are forced to leave the workplace after

having raised the problem. In this light, it is much more important to take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t work, than to provide reactive remedies for the victims.

55.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NHRCK is confined to the function of providing reactive remedies with regard to the cases of sexual harassment at work, whil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the Ministry of Labor are responsible for preventive and proactive actions, respectively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The Ministry of Labor requires private companies to give regular employee education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t work and report the outcomes of the education to the Ministry, but it seems that in many cases such education simply ends up in a formality. Therefore, the Ministry should direct more of its resources toward the activity of inspecting the company-based education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t work.

56. Another important issue involved in sexual harassment at work is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against the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Indeed, many victims complain that they faced a harsher suffering and damage after having made an official allegation that they had been sexually harassed at work. This discourages other victims from making any allegation: when a victim knows that many other victims suffered disadvantages just because they had filed a complaint on sexual harassment or made public their case, he/she would give up raising his/her problem. Furthermore, in reality, even when it is determined that a person has been sexually harassed at work by a competent authority, he/she would be victimized and be forced to leave the workplace.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need to review the existing system of supervision and control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t work and streamline the system.

VI. Housing and Standard Living

1. Insufficient Securing of the Rights to Housing (218-225)

57. According to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5, 2.06 million households (13% of the households surveyed) were living below minimum housing standards. The Government, in No. 218 of its Replies, outlining the meaning and elements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mentions that such housing standards can be considered a significant reflection of ‘the 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habitability’, ‘location’ and ‘cultural adequacy’, among the elements mentioned in General Comment No.4 (on ‘adequate housing’) of the Committee. However, the number of the substandard households would be much larger if some of the facility criteria and the housing structure, performance and environment criteria, which were excluded from application in the Census on the ground that they were difficult to measure in an objective manner, are included.

58. The Housing Act in force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may give preferential benefits to substandard households, for example, by providing houses or offering loans from the National Housing Fund. However, the ongoing Comprehensive Housing Plan (2003–2010) does not contain specific measures to minimize substandard households, as it was drawn up before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set up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work to reduce substandard households was written in law.

59. Almost all of the residentially disadvantaged households living in underground (semi-underground) houses, vinyl houses or single room occupancy hotels are below minimum housing standards. They suffer from: a substandard number of room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 substandard space available; poor requisite facilities including a separated stand-up kitchen, a flushing toilet and a bathing facility; and substandard conditions of housing structure, performance and environment, including susceptibility to disasters such as fires and floods and poor sound-resistance, ventilation and lighting. What is worse, those living in vinyl houses are usually denied an official address by their local governments and, accordingly, their right to basic livelihood and their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are not properly protected.

60. The fact that, as of 2005, approximately 2.06 million households were living in a residence which fails to meet the space criteria and the facility criteria included in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illustrates a low level of rights to housing protection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take positive action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substandard households, by introducing new concrete measures into the Comprehensive Housing Plan to fulfil its minimum core obligation to guarantee their right to live a decent life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minimum standards.

61. The Government should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substandard households, with a view to securing the right to adequate living.

2. Violation of the Rights to Housing during Gentrification (226-231)

62. Until now, the urban renewal projects, a gentrification, whose proper purpose is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expand the infrastructure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in antiquated urban areas, have served as a means of maximizing profits of the private developers. The Government, in No. 226 of its Replies, mentions that 'it is making every effort to ensure that citizens have housing security by making it mandatory by law to build rental housing units, pay compensation for any business losses and cover residence relocation costs'. However, as is indicated in the fact that after the New Town Development projects are completed only 17% of the former residents would come back to the new apartments, the Government's actions have not brought substantial achievements. This poor performance is attributable to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he urban renewal mechanism and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compensation system. First of all, the urban renewal projects were almost simultaneously carried out and were focused on building mid- and large-sized apartment houses, which pushed up the sales prices of the new houses, the housing destruction and loss rate and lease deposits, making it difficult for the residents in the neighbourhood to enjoy their right to adequate housing. Furthermore, eve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originally intended to protect the rights to housing of those living in the affected areas have not been implemented properly. The consequence is that, in the course of urban renewal, the housing poor including small house owners and tenants are forced to leave their neighbourhood to find a cheaper house but with poorer conditions.

63. The Government has recently taken an action which is to the detriment of their protection. The Government mentions in No.231 of its Replies that it is required to provide "compensation for residence relocation costs under Article 5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However, the Government revised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in order to narrow the eligibility scope of the compensation for relocation costs available to tenants, citing an objective of preventing incidence of moral hazards, including fraudulent tenancy registration. This could make a large number of tenants ineligible to such compensation. Considering that more than 70% of the residents in the New Town Development areas are tenants, it is feared that the tenants might be relocated without being fully compensated.

64. NHRCK recommended in June 2009 that the Government, noting that the compensation for relocation costs was intended for social security purpose, should ensure tha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enants are fully guaranteed with regard to the compensation for relocation costs, in revising the Enforcement Rul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did not accommodate the NHRCK' submission and published the original version with no modifications as final in August 2009.

3. Forced Evictions and Forced Removal (235-238)

65. Forced removal and forced evictions in the course of urban renewal may take diverse forms: insufficient prior measures, forced demolition of a house where people are still living, physical clashes in the process of forced removal or forced removal at an inappropriate time. There occur physical clashes among the residents who are for and against the urban renewal project. It has been criticized that, with regard to these clashes,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is responsible for preventing and restricting such violence is not active enough to perform its responsibilities. Meanwhile, the employees of security service providers are sometimes dispatched to the site of urban renewal to conduct forced evictions themselves, and this act might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as it is beyond the permitted business scope of security service providers defined in the Private Security Act. Some forced evictions and removal were carried out in the wintertime or at nighttime, increasing the likelihood that the human rights of the residents would be violated because of the untimeliness.

66. The Yongsan Tragedy of January 2009 is a good example of the ongoing problems involved in urban renewal in this country, including reckless actions for forced evictions and insufficient prior consultation and compensation. The tenants of store buildings in Yongsan who were subject to eviction staged a demonstration in protest against the forced eviction and removal, claiming that they should be given a guarantee a right of business after the renewal project is completed. There were a pile of inflammable

materials, including the containers of thinner and petroleum, at the site of demonstration, and the use of police force resulted in a big fire, leaving 5 tenants and 1 policeman dead. The Government has not taken any official measure so far to deal with this tragic accident, although some citizens were killed while the police force was in use. As of September 14, 2009, the bereft families have not held a funeral rite for the 5 dead people as yet and continued to demand apology and proper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In the meantime, as the Government keeps refusing to publish the 2,400-page records of investigation, the court proceedings have not been in normal progress.

67. In order to ensure that human rights violation is minimized in the course of urban renewal,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provide for stricter requirements of advance actions for forced removal so that forced removal is used only as a last resort. For this purpose, it should be prescribed in law that no project of urban renewal is allowed unless advance actions, such as sufficient prior notification and temporary housing, are implemented in good fait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o prohibit forced removal in cases there are still residents living in the houses concerned or at an inappropriate time, such as wintertime or nighttime. Furthermore, with a view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residents in the course of urban renewal,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are sent to the site of forced eviction or forced removal to have a strict control over what happens there and that the police take proactive intervening actions to prevent the employees of private security service providers from violating the related law provisions by giving threats and exercising violence to the residents in the process of forced eviction or removal.

68. NHRCK, in a bid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 residents subject to forced removal, made a recommendation to the Government in February 2009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should be complied with when a forced eviction is conducted for an avoidable reason, and on how the principles could be incorporated in the laws and institutions. However, the Government has not implemented this recommendation as yet.

4. Lack of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the Homeless (232-234)

69. The definition of homelessness includes the persons living in the streets, the shelters for the homeless, the facilities for vagabonds, unauthorized accommodating facilities,

prayer houses, single room occupancy hotels, boarding places for examinees, and inns and motels and those with no known family members or friends living in othe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cluding thos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omen's refuge, nursing facilities).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depends on which definition is used. In the narrowest definition, the homeless merely include those living in the streets and the shelters for the homeless and are estimated to be about 5,000. If a broader definition is used to include those living in the facilities for vagabonds, the number of the homeless would increase to 12,000. Furthermore, in case the broadest definition is applied as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ocial Inclusion" did in 2005, the homeless people refer to the persons living in the streets, the shelters for the homeless, the facilities for vagabonds, unauthorized accommodating facilities, prayer houses, single room occupancy hotels, boarding places for examinees, and inns and motels and those with no known family members or friends living in othe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the estimated number of the homeless is as many as 97,000. However, the research of the homeless in this country is simply confined to measuring the size of this group and there have been no significant research and studies to identify the features and the changing trends of the group.

70. At present,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 homeless is focused on the institutionalized people, and there exist almost no measures to secure constant and stable housing for those living in the streets or temporary shelters to facilitate their social inclusion. Indeed, the temporary accommodations available to the homeless people who are completely deprived of a basis for living activities do not allow them to stay for long enough to help them secure a sound foundation for self-support. In fact, in not a few cases, homeless persons, after having left the shelter, failed to get themselves permanent housing and began to move one facility to another or chose to go back to a street life.

VII. Health

1. The Publicity of the Healthcare System Weaken (242-249)

71. The Government asserts that it will retain the current medical care system which is

cantered around the NHI system. However, the policy orientation toward increasing the profitability through medical industrialization, without specific measures to reinforce the public interests of the health care system would likely aggravate the existing gap in the use of medical service and undermine utility of the NHI system.

72. In the healthcare system of Korea, the publicity and accessibility the medical care service have been successfully secured by operating the universal NHI system and allowing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to provide medical service. Nevertheless, because private hospitals account for 90% of all hospitals, the public expenditure for medical care is low as indicated in the fact that the NHI fund covers a mere 64.6% of the total medical expenses spent by the public, and even the medical benefit recipients of classes 1 and 2 are required to pay 5-13% of the medical costs incurred, the people with serious illness, as well as the marginalized and disadvantaged, are burdened with high medical costs, which leads to inequality in the use of medical service. Accordingly, in order to guarantee people's right to health, the Government should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y measures to maintain the non-profit nature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to increase the Government's accountability for the health care finance system.

73. The Government is rather speeding up its activities to facilitate industrialization of the medical service sector which was first initiated in 2008. Although the Government insists that for-profit hospitals will be permitted on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t is feared that the permission will be spread over to other regional areas or, at least, their existence will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medical care system of other areas. In particular, given that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introduce som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omote profit-seeking activities by non-profit hospitals and stimulate private health insurance business, it is not unlikely that medical service will funnel into some wealthier patients, the general medical costs will go up, the NHI system will be weakened and the disadvantaged group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a history of illness will be discriminated against.

74. While having taken no action to predict what impact the policies of medical industrialization would have on the publicity of the medical service, the Government is simply reiterating that there will be no discrimination in the access to medical service.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pecific measures to ensure that *ex post facto* impact assessments are conducted in an objective manner before related Government

policies are finalized.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various social standings is a must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policy measures.

2. Insufficient Measures for HIV/AIDS Prevention and Medical Assistance (256-264)

75. The Government has provided various education programs that focused on eliminating the spread of HIV/AIDS as well as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ose infected with HIV/AIDS. However, as such efforts of education and publicity are centralized on some “vulnerable groups,” it could give a misleading impression that HIV/AIDS is a disease with which only some particular groups of population are infected, and cau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groups.

76. The AIDS Prevention Act in force expressly provides non-discrimination and privacy,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ose infected with AIDS is not fully protected in the procedures for reporting after anonymized medical examination and for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for medical treatment and living costs.

77. The Government controls inflow of the foreigners infected with HIV/AIDS, by not only forbidding the HIV/AIDS-infected foreigners to arrive in this country but also deporting the foreigners who are reported to have been infected with HIV/AIDS. However, the Government has not established any institutional system to support medical care service for a large number of HIV/AIDS-infected foreigners staying in this country, excluding foreign spouses of Korean nationals, recognized refugees and naturalization applicants.

78. Th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target and contents of its publicity and education activities for prevention of the spread of HIV/AIDS and resolu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HIV/AIDS patients, while working out the system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f HIV/AIDS patients, whether national or foreign, and provide them with medical assistance.

79. The Government, in Nos.263 and 264, gives a brief description on the AIDS treatment drugs available in this country; on why some of them are not reimbursable (for example, due to supply rejection by the manufacturers); and on the limited budget for medical fee assistance.

80. As the new drugs manufactured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s are usually high-priced or sometimes are not available in this country, those living with HIV/AIDS in Korea have a limited access to those new drug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HI system in which patients can get a reimbursement for a drug only when it is included in the reimbursement list, it is not unusual that a drug manufacturer fails to reach agreement on sales prices in the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so gives up placing the drug on the reimbursement list or just refuses to supply the drug.

81. In particular, Roche had been withholding distribution of Fuzeon, an essential AIDS drug for the patients who have developed resistance to existing antivirus medicine, for four years on the ground that it couldn't settle for the sales price proposed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didn't anything to address this situation. Some raised a need to enforce the distribution of the Roche-patent drug and filed an application for forced supply of Fuzeon before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ut the application was dismissed. At present, Roche is distributing Fuzeon free of charge, but the HIV/AIDS patients' access to the drug is still very unstable.

82.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take proactive measures, including forced supply of drugs, to ensure that the drugs which have not been in distribution within the country by the reason of no agreement on sales prices are made available to the domestic HIV/AIDS patients. In addition, it needs to work out specific subsidy programs to ensure that essential medical substances are offered to the patients at affordable prices on a temporary basis when an agreement on sales prices is not negotiated.

3. Lack of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Artificial Abortion (268-272)

83. In Korea, as artificial abortion is prohibited by law, it is difficult to get a clear picture on the exact status and scale of artificial abortion operations. *The Research on and Comprehensive Setup of Countermeasure against Artificial Abortion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5 shows that approximately 350,000 artificial abortion operations were conducted in a year and unmarried women accounted for about 42%.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the actual number of artificial abortions would be much larger: for instance, a Gallop poll estimated about 1,500,000 cases a year.

84. The key reason of the artificial abortions among the women between the ages of 20-

24 is pre-marital pregnancies,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female age of marriage in Korea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is 28.3 as of 2008. The artificial abortions of this age group has a particularly close relation with the absence of the systematic social support for unmarried mothers and the lack of preventive services, including subsidized contraception. Indeed, given the large number of new unmarried mothers (2,000~3,500 a year,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high rate of artificial abortions among unmarried women, which is severely undermining the reproductive right of women, it is urgent to design and provide specialized servic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affairs, especially, for women in their early twenties.

85. The target groups of the Government's initiative to 'conduct research on the status of reproductive health and to develop and distribute assistance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a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married women, and the college students or the women within the labour market who are in their twenties are left outside the public system of sexual and reproductive services. As for the juvenile sex education, some progress has been made by local governments (the 'Resource Centre for Young Women' run by Seoul City and the 'Aha Sexuality Education & Counselling Centre for Youth') in developing sex education programs, training instructors of sex education and including requisite hours of sex education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ar. Still, the women in their twenties remain as a blind spot, not being in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juvenile sex education policy.

86. In the current campaigns to prevent artificial abortions, the focus is usually given to the respect for life, rather than women's reproductive rights (the rights to healthy and safe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mostl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religious community, resulting in a stronger sense of guilt on women's part. Accordingly, these campaigns need to be replaced with the ones about women's reproductive rights from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VIII. Migrants and Refugees

1. Human Rights of the Foreigners Living in Korea (91-92)

87.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is to facilitate

foreigners' adaptation to the Korean society and create a social environment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between Korean nationals and foreigners. This Act contains fundamental but abstract provisions, including the ones that obligate the Government to formulate policies about the foreigners living in Korea and endeavour to improve their treatment.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term 'foreigners living in Korea' in the Act, unlike its ordinary meaning, excludes undocumented foreigners, and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about the enjoyment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y "non-nationals". In this light, the Government's Replies need to clarify further on how the rights of 'non-nationals' are protected under individual laws and institutions.

2. Deportation of Migrant Workers and Poor Conditions in Detention Centres (183-186 and 239-241)

88.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force requires that when a responsible public official detects an offender of any immigration regulation while in performing his/her duties he/she should report it to the jurisdictional immigration office without delay. This requirement impedes the remedies for undocumented foreigners, including settlement of unpaid wages. In response, NHRCK recommended on the 20th of February 2003 that 'the reporting oblig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work of rights remedies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relaxed and the minimum procedures for rights remedies should be offered lawfully even to undocumented foreigners. Similar recommendations were made later on several occasions.

89. The Ministry of Labor established the 'guidelines on handling the complaints by foreigners' and had taken a 'remedies first, reports later' approach so that undocumented foreigners would be reported to the immigration office once their remedial procedures, including the one to settle unpaid wage, are completed. But these guidelines were repealed in June 2008, raising concerns that the Government is paying less attention to protection of the rights of undocumented foreigners.

90. When the deportation of the three executives of the Migrant Workers' Union on the 13th of December 2007, NHRCK was already conducting an investigation based on the complaint received on the 27th of November 2007. The Ministry of Justice deported the three union leaders at the same time, without giving any advance notice to NHRCK. In this regard, NHRCK immediately expressed regret at the act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disturbed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by NHRCK about the complaint

received.

91. There is a recent case which has raised concerns about the right to organize of migrant workers. Ninety one migrant workers submitted a stat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Union of Migrant Worker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for which the head of the Seoul Regional Labor Office (SRLO) required supplementary documents for the establishment. The applicants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 and the SRLO head turned down the statement on the 3rd of June 2006, on the ground that the Union is largely composed of "illegal" foreigners not qualified to work. Then, the Union filed a suit calling for cancellation of the turn-down decision bu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ismissed the Union's application, ruling that the decision of the SRLO was legitimate. In contrast, the Seoul High Court,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revoked the earlier ruling and invalidated the SRLO decision to turn down the establishment statement. Currently, this case is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92. The Government's Replies in this regard are simply about 'the hygien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food service facilities', 'overcrowding' and 'fire-fighting facilities', but do not contain any information on the restrictions of personal liberty ("threats to their physical security" in the Question) within the detention centre, which is one of the critical questions regarding "the conditions within the detention facilities.

93. Currently, a protection facility for foreigners has a "protection zone", mobility in and out of which is strictly controlled. The protection zone has a separate iron-barred "room" in which the foreigners accommodated should stay even when they have a meal. In 2007 when there was a fire in Yeosu Immigration Office that left 10 foreigners dead, it was criticized that a protection facility which should serve as a processing centre for the foreigners awaiting deportation was being operated in a similar way to a detention centre. However,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in terms of facilities and treatment. At this junctur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whether there is any legal foundation to justify the operation of protection facilities in a similar way to detention centres and on whether it has a plan to improve the operational mechanism.

94. Additio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accurate data on the status of the protection facilities for migrant workers throughout the country. In particular, it should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the protection facilities with no playground, on allocation of physicians within a protection facility and on the space occupied per

person within a room.

3. Low Rate of Refugee Recognition and Lack of Protections for Refugees (160-161)

95. On the 12th of June 2006, NHRCK made following recommendations on policy improvements for protection of refugees' human rights which calls on the Government: firstly, to make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more accessible to applicants for the refugee status; secondly,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refugee affairs to ensure that the ever-growing work involved refugee recognition is performed in a smooth and specialized manner; thirdly to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for refugee recognition agencies, guaranteeing operational independence for both the first-review and the second-review agencies; and fourthly and finally to secure the rights of refugee applicants to make a statement in the appeal process and inspect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dismissal of his/her application, giving details on the reason of such dismissal. The Government is advised to accept these recommendations.

96. As is specified in the recommendation above, the Government should take actions to ensure that recognized refugees are eligible for th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re covered by the National Pension Plan and are eligible for a lump-sum refund under the Plan; are eligible for medical benefits under the Medical Act; and are also eligible for welfare benefits under the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Act.

[Appendix]

Statistics on Non-regular Work

[Table 1] The size of non-regular workforce

	No. of workers (in 1000 persons)					Proportion (in %)					
	Mar. 2007	Aug. 2007	Mar. 2008	Aug. 2008	Mar. 2009	Mar. 2007	Aug. 2007	Mar. 2008	Aug. 2008	Mar. 2009	
Wage workers	15,731	15,882	15,994	16,104	16,076	100.0	100.0	100.0	100.0	100.0	
Regular	6,946	7,268	7,414	7,707	7,665	44.2	45.8	46.4	47.9	47.7	
Non-regular	8,785	8,614	8,580	8,397	8,411	55.8	54.2	53.6	52.1	52.3	
Contract-based	Casual	8,623	8,431	8,338	8,225	8,279	54.8	53.1	52.1	51.1	51.5
	Long-term casual	5,071	4,983	4,941	4,868	4,726	32.2	31.4	30.9	30.2	29.4
	Temporary	3,552	3,448	3,396	3,357	3,552	22.6	21.7	21.2	20.8	22.1
Hours of work	Part-time	1,231	1,202	1,301	1,229	1,317	7.8	7.6	8.1	7.6	8.2
Method of labor supply	On-call	914	846	940	818	854	5.8	5.3	5.9	5.1	5.3
	Special	643	635	602	595	632	4.1	4.0	3.8	3.7	3.9
	Dispatched	175	175	172	139	131	1.1	1.1	1.1	0.9	0.8
	Subcontracted	584	592	617	641	575	3.7	3.7	3.9	4.0	3.6
	Domestic	154	125	151	65	69	1.0	0.8	0.9	0.4	0.4

Source: Statistics Korea, Supplement to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Yu-Son Kim, The Scale and Status of Non-regular Work in 2009

[Table 2] Average monthly wages, by year and by employment status, and the wage gap (regular worker wage=100)

	Amount (in10,000 KRW)					Wage gap (in %)				
	Mar. 2007	Aug. 2007	Mar. 2008	Aug. 2008	Mar. 2009	Mar. 2007	Aug. 2007	Mar. 2008	Aug. 2008	Mar. 2009
Wage worker	172	175	181	185	185	72.4	72.9	73.4	73.9	73.2
Regular	238	239	247	250	253	100	100	100.0	100	100
Non-regular	120	120	124	125	124	50.5	50.1	50.3	49.9	48.9
Casual	120	119	123	124	123	50.4	49.9	50.0	49.7	48.7
Long-term casual	112	112	114	117	113	46.9	46.8	46.3	46.7	44.7
Temporary	132	130	137	135	136	55.2	54.4	55.3	54	53.9
Part-time	54	56	56	57	56	22.7	23.4	22.6	23	22
On-call	89	89	90	98	87	37.5	37.3	36.5	39.4	34.3
Special	136	142	162	155	146	57.2	59.4	65.7	62.2	57.5
Dispatched	133	134	148	147	143	55.6	56.1	60.0	59	56.6
Subcontracted	101	102	114	108	108	42.5	42.8	46.3	43.3	42.7
Domestic	60	57	73	49	55	25	23.8	29.6	19.5	21.9

Source: Statistics Korea, Supplement to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Yu-Son Kim, The Scale and Status of Non-regular Work in 2009

[Table 3] Coverage of social insurances and working conditions, by employment status
(as of March 2009, %)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Retirement pay	Bonus	Overtime pay	Paid leave	5-day workweek	Written contract of employee
Wage worker	64.9	66.6	57.9	62.2	57.8	43.1	54.1	48.3	48.1
Regular	98.1	98.7	82.2	99.3	97.4	75.0	90.1	68.3	61.2
Non-regular	34.7	37.5	35.7	28.4	21.7	14.1	21.3	30.2	36.1
Casual	33.8	36.5	34.8	27.2	20.6	13.2	20.3	29.7	35.5
Long-term casual	20.2	21.4	20.9	12.4	8.6	3.4	6.8	18.2	17.6
Temporary	51.8	56.5	53.2	47.0	36.5	26.4	38.2	45.1	59.3
Part-time	6.7	6.9	7.3	4.2	3.9	2.4	2.8	18.6	20.2
On-call	0.4	0.5	3.0	0.1	0.3	1.3	0.0	1.0	3.8
Special	6.7	7.6	7.8	4.2	3.5	1.5	3.1	46.7	36.7
Dispatched	72.5	75.0	74.1	71.8	52.4	43.8	59.8	57.8	74.1
Subcontracted	60.2	79.5	68.6	69.5	39.9	27.9	42.7	38.6	77.3
Domestic	5.3	6.4	4.4	5.3	4.8	1.6	3.8	2.4	6.3

Source: Statistics Korea, Supplement to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Yu-Son Kim, The Scale and Status of Non-regular Work in 2009

[Table 4] Actions on maturity of the employment contract (June-July 2009)

Classification ¹⁾	Workers with a matured contract		Converted to regular work ²⁾		Termination of the contract ³⁾		Others ⁴⁾	
	Count	%	Count	%	Count	%	Count	%
Jul-09	19,760	-100	7,276	-36.8	7,320	-37	5,164	-26.1
Jun-09	53,500	-100	20,735	-38.8	16,331	-30.5	16,434	-30.7

Source: A Survey by Ministry of Labor (July-Aug of 2009)

- 1) Those classed for 'June 2009' refers to the workers with a service period of 2 years or longer and whose contract expired in June 2009; and those classed for 'July 2009' refers to the workers with a service period of 2 years or longer starting after the Act took effect and whose contract expired in July 2009.
- 2) Includes both i) the persons who signed an indefinite-term contract with better conditions and more opportunities of job promotion and ii) the persons who signed an indefinite-term contract with no improvement in treatment.
- 3) Means the termination of the fixed-term contract.
- 4) Includes the cases when 'another fixed-term contract was made', 'the fixed-term job was retained irrespective of the law provisions' and 'no specific measure was taken'. Under the Act in force, the workers in these cases shall be all treated as becoming a regular worker.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3차 대한민국 최종견해 권고항목(제6항-제35항)
주제별 분류 및 요약**

이 성 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목차>

1. 법제도

[제6항]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제8항]국가인권위원회
[제9항]차별금지법

2. 여성, 아동청소년

[제11항]여성부
[제13항]여성차별관행
[제14항]여성 및 청소년 실업
[제17항]직장내 성희롱
[제24항]가정폭력
[제31항]청소년 성교육

3. 이주, 외국인

[제10항]난민신청 기간
[제12항]F2비자
[제21항]이주노동자 차별
[제25항]E6비자 및 인신매매

4. 노동

[제15항]비정규직
[제16항]최저임금
[제18항]산업재해
[제19항]공무원 노동3권
[제20항]업무방해죄와 파업권

5. 사회보장

[제22항]사회보장일반
[제23항]국민연금
[제26항]빈곤

6. 주거

[제27항]노숙인
[제28항]최저주거기준
[제29항]강제퇴거와 용산사건

7. 건강

[제30항]

8. 교육

[제33항]교육불평등
[제34항]극심한 학업 경쟁

9. 기타

[제7항]공적개발원조(ODA)
[제32항]식수
[제35항]대학의 자율권

1. 법제도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제6항 [우려사항]

헌법상 사회권이 규약보다 협소, 국내적용 판례 부재

권고

- ① 규약이 국내 법 체제 안에서 직접 인용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
- ② 규약의 권리들을 인용한 국내법원, 심판위원회, 행정청 판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국가인권위원회

제8항 <우려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제한, 과도한 조직축소 및 독립성 침해

권고

- ①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약의 모든 권리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 업무권한을 강화하고 확장시킬 것
-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절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 ③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차별금지법

제9항 <우려사항>

차별금지법 입법화 좌절, 당시 정부안의 차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

권고

일반논평 제20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일치하도록
규약 제2조 제2항에 실시된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명확히 적시한 포괄적인 차
별금지 법령을 즉각적으로 입법화할 것

2. 여성, 아동·청소년

여성부

제11항 <우려사항>

여성부 업무권한 변경

권고

- ①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입법과 정책에 지속적으로 성인지 관점을 적
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것
- ②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사실상의(de jure and de facto) 남녀간 성평등
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것
- ③ 이들 진전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할 것

여성차별 관행

제13항 <우려사항>

여전한 여성차별(남녀 임금격차, 낮은 고위직 여성 비율, 직업상 성별리,

여성의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율) 및 출산율 하락은 여성이 직업과 가족 생활 간에 조화시키고자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

권고

- ① 새로운 가족등록제도가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
- ② 감세와 사회보장 유인책과 같이 남녀로 하여금 직업과 가족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것
- ③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적 유인책을 통하여 남성이 가족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
- ④ 남녀 모두 유급 노동과 가족 책임을 결합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를 시행할 것
- ⑤ 학교급식이나 공공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

여성 및 청소년 실업

제14항 <우려사항>

여성과 청년층의 열악한 고용률 및 청년층 고용 정책 관련 정보 부족

권고

- ① 노동력이 과소대표된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을 더욱 증진시킬 것
- ② 2010년까지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참가율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재훈련을 제공할 것
- ③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

직장내 성희롱

제17항 <우려사항>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부족, 직장내 성희롱이 형사범죄화 되지 않은 점, 구제신청 부족, 조사과정에서 유야무야 되는 점.

권고

- ①작업장 내에서의 성희롱을 형사범죄화 하는 법령을 입법·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②작업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공적 기관이 벌칙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
- ③지속적으로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증진시킬 것

가정폭력

제24항 <우려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미흡. 매우 낮은 가정폭력 의무보고 비율. 가해자 처벌 부족

권고

- ①가정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입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 ②가정폭력이 형사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가해를 재판과 확정판결까지 이르게 하며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
- ③피해자 보호시설과 사회심리학적 지원 서비스를 늘릴 것

청소년 성교육

제31항 <우려사항>

성건강과 생식건강 교육 부족. 임신 청소년의 인공임신중절

권고

- ① 학교 내 의무 성교육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것, 성건강 및 생식건강과 피임법에 대한 정보를 이 교육에 포함시킬 것
- ② 미혼모들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미혼모에 대한 깊은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캠페인을 펼칠 것

3. 이주, 외국인

난민신청 기간

제10항 <우려사항>

난민이나 망명자 지위 신청기간의 장기화

권고

- ① 출입국관리 담당 인력 증원을 포함하여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을 집행하는데 적절한 자원을 지원할 것
- ② 망명 절차를 표준화 할 것
- ③ 난민과 망명신청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 ④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난민과 망명자 자격을 부여한 통계를 포함하여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F2비자

제12항 <우려사항>

외국인의 체류자격(F2) 획득시 배우자 의존

권고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남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

이주노동자 차별

제21항 <우려사항>

이주노동자 착취 및 차별

권고

- ①이주노동자가 노동법 상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 근로자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하여 심도있게 재검토할 것
- ①사업장 변경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

E6비자 및 인신매매

제25항 <우려사항>

E6비자 여성 근로자 성착취 문제 및 인신매매

권고

- ①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의 전쟁 노력을 강화하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래와 같이 할 것
- ②E6 사증 발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③인신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
- ④법집행 공무원, 검사, 판사들에게 인신매매 방지 입법에 대한 의무 교육을 제공할 것;
- ⑤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법적 지원을 늘릴 것
- ⑥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민원 접수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⑦인신매매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정의를 실현시킬 것

4. 노동

비정규직

제15항 <우려사항>

과도한 비정규직(특히 경제특구) 비율 및 증가추세, 비정규직의 과도한 여성비율, 비정규직차별(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해고위험)

권고

- ①비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즉각적으로 결론지을 것
- ②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아래 권리들을 부여할 것을 강하게 권고
 - (a)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한 임금
 - (b)적절한 사회보험 적용
 - (c)실직수당, 휴가 및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노동법 보호
 - (d)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최저임금

제16항 <우려사항>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증가, 새로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제한

권고

- ① 최저임금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규약 제7조 제(a)항 제(ii)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것
- ② 최저임금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까지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할 것과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금 등 여타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적 최저임금이 시행되도록 더한층 노력할 것
- ③ 당사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바,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변경이 이주노동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할 것

산업재해

제18항 <우려사항>

높은 산업재해 및 근로감독관 부족.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이나 근로조건보다는 근로자의 체류자격 조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

권고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이들 및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

공무원 노동3권

제19항 <우려사항>

일부 공무원 노동조합권 제한 및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노동조합이 법에 의해 금지되고 2001년 설립된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것

권고

결사의 권리 및 집회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가 2001년에 제출한 협약(제87호)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과 파업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무원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업무방해죄와 파업권

제20항 <우려사항>

파업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업무방해죄 남용.

권고

- ①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
- ② 공공질서유지에 절대적으로(absolutely) 필요한 수준을 넘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체계적인 수단으로서의 '업무방해죄' 조항의 적용을 억제함으로써 파업권을 보장할 것
- ③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결성의 자유 보장 협약'(1948)과 제98호 '집회와 단체협상의 권리 협약'(1949)을 비준할 것

5. 사회보장

사회보장 일반

제22항 <우려사항>

12위권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사회권 보장. 취약계층 보호 미흡

권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 의무 기준과 소득수준, 그리고 보편적 접근 등과 관련한 검토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노숙인, 비닐하우스 생활자, 보호시설 생활자를 포함한 '안정적 생활'의 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국민연금

제23항 <우려사항>

국민연금 사각지대

권고

노인들이 일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최저보증연금(universal minimum pension) 혹은 사회부조급여(social assistance benefits)와 같은 제도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혹은 보완으로 구상할 것

빈곤

제26항 <우려사항>

높은 GDP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정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권고

- ① 빈곤퇴치 전략을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것
- ②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빈곤퇴치 전략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 ③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동 전략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
- ④ 성, 연령, 가구당 아동 수, 편모·편부 가구수, 도·농 인구 및 인종집단 별로 세분된 빈곤생활자 인구비율에 대한 최신의 연간 통계를 포함하여 동 전략 하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6. 주거

노숙인

제27항 <우려사항>

노숙 및 노숙인 문제 해결 전략이 부재하다 점

권고

- ① 빈노숙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노숙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채택할 것
- ② 노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성, 연령, 도·농 인구별로 세분된 자료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최저주거기준

제28항 <우려사항>

최저주거기준 이하 생활자 2백 6만명. 공공임대주택 제도

권고

- ①주택 문제와 관련한 진정이나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정부 내에 설립할 것
- ②특히 취약·소의 계층의 주택 소유를 보장하고 이들에게 적정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 ③이 때 노숙인과 심각한 기준이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④성, 연령 및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

강제퇴거와 용산사건

제29항 <우려사항>

강제퇴거 문제

권고

- ①강제퇴거는 단지 최후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용산사건(Yongsan Incident)과 같이 폭력동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퇴거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임시 주거를 보장함이 없이는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 ②강제퇴거와 관련된 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에 부합되도록 우선적으로 다음을 촉구한다.
 - (a)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퇴거된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정착지 제공을 보장할 것
 - (b)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주자들과의 공개토론과 유의미한 협의를 보증할 것
 - (c)새 주거지에는 먹는물, 전기, 세탁 및 위생 시설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설비를 갖추고 학교, 의료시설 및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 (d)성, 연령,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는 강제퇴거 관련 정보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

7. 건강

제30항 <우려사항>

소의 계층의 낮은 민영병원 접근권, 높은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율

권고

- ①의료비 지출을 증대시킬 것과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할 것
- ②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4호(2000)에 관심을 기울일 것

8. 교육

교육불평등

제33항 <우려사항>

교육의 불평등 심화,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대학진학

권고

- ①교육이 금전이 아닌 능력을 기초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가능하며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
- ②“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가계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중산층의 삶의 질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교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보조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것

극심한 학업 경쟁

제34항 <우려사항>

극심한 경쟁과 학업 증압감으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 악화

권고

- ① 주입식 교육을 하는 사설 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할 것
- ② 시범적인 대안 학습 모델을 수립할 것
- ③ 아동의 과도한 학습 부담이 초래할 효과에 대하여 부모와 일반대중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 ④ 사설 야간 학원과 주입식 교육학원 운영을 억제할 것
- ⑤ 불필요한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의 중등교육에서의 학업 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제한하는 일제고사(Iljegosa) 제도를 재검토할 것

9. 기타

공적개발원조(ODA)

제7항 <우려사항>

2015년 ODA 목표치가 국제기준에 미달, 구속성 원조가 여전히 존재

권고

- ① 201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적개발원조 목표치인 국내총생산 대비 0.7% 수준까지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다할 것
- ② 최빈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증여율 상향과 관련하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권고사항들을 견지할 것

식수

제32항 <우려사항>

방사선물질에 의한 상수원 오염. 생수 내 발암물질

권고

- ①농사와 식수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지하수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
- ②발암물질이 발견된 생수와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지도록 보장할 것
- ③이미 채택한 먹는물 수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정보와 관련하여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를 참조할 것

대학의 자율권

제35항 <우려사항>

정부의 한국종합예술학교 교과과정 개입

권고

자신의 학술적 권위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그 교과과정과 교수 방식을 스스로 관리할 자유를 대학에 보장할 것

1. 제3차 최종견해의 주요특징

- ▶ 총 권고수가 20개(제1차)→30개(제2차)→83개(제3차)로 급증하였음.
- ▶ 전반적으로 이전 최종견해에 비하여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구체화됨. 특히, 여성, 노동, 이주 관련 권고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임(당장 정책권고 가능할 수준).
- ▶ 이주와 외국인 관련 권고가 대폭 증가함.
- ▶ 제2차 최종견해는 우려사항과 권고를 개별 문항으로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어서 우려사항에 언급된 모든 내용이 권고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최종견해는 우려사항과 권고를 동일한 문항에 배치함으로써 모든 우려사항이 권고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2. 제3차 최종견해에 처음으로 언급된 주제

- ▶ 차별금지법 ▶ 공격개발원조 ▶ 여성 및 청소년 실업 ▶ 노숙인 문제 ▶ 연례홍행비자 및 인신매매
- ▶ 외국인 배우자 ▶ 빈곤문제 ▶ 대학의 자율권 ▶ 청소년 성교육 및 미혼모 대책

3. 제1차 혹은 제2차 최종견해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제3차 최종견해에서 매우 구체화된 주제

- ▶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부 ▶ 여성차별 ▶ 성희롱 ▶ 가정폭력 ▶ 최저임금 ▶ 비정규직 차별
- ▶ 국민연금 ▶ 난민 신청 기간 ▶ 이주노동자 차별 ▶ 강제철거 시 원주민 보호
- ▶ 극심한 학업경쟁(일제고사)를 명시적으로 언급 ▶ 노동3권 보장(‘업무방해죄’를 명시적으로 언급)

4. 이전 최종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권고 된 주제

- ▶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 파업노동자 처벌
- ▶ 최저주거기준 ▶ 교육불평등 및 공교육 강화

1) 제2차 최종견해에서 우려사항은 총 21개 문항(제12항~제32항)인 반면, 권고는 12개 문항(제32항~제44항)에 불과함.

일러두기

- ▶ [1]인은 각 차수별 권고 연번으로서 한 개의 항목(문단)에 포함되고 상호 동일할 주제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권고로서 의미가 있다. 고 판단한 내용은 모두 개별 번호를 부여하였음 따라서, 각 차수 별 총 권고수는 20개(제1차), 30개(제2차), 88개(제3차)임.
- ▶ 빗금같은 해당 주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의미함.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최종권해(제1, 2, 3차) 비교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상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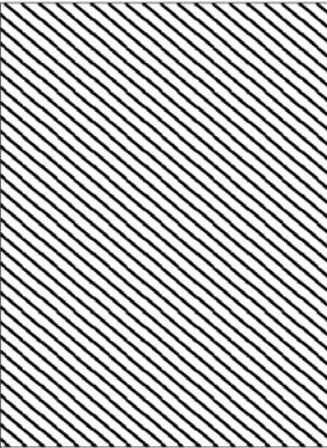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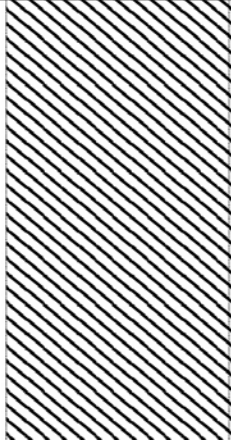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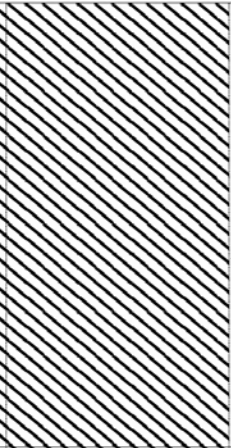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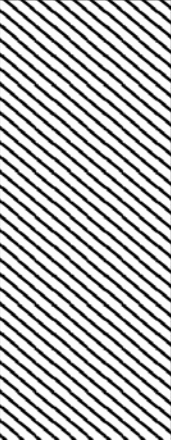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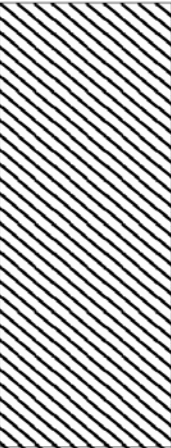
제3차 최종권해 (2009. 11. 20) <small>제16항</small>	제2차 최종권해 (2001. 5. 21) <small>제35항</small>	제1차 최종권해 (1995. 6. 7) <small>제16항</small>
<p>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1] 규약이 국내 법 체제 안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2] 규약의 권리들을 적용한 국내법원, 심판위원회, 행정청 판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p>	<p>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1]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2] 규약의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함 [3] 규약의 지위가 구법이든 신법이든, 혹은 특별법이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함. [우려사항] 1차 보고서 심의 이후에, 규약의 권리를 국내법에서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헌법에 따르면 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 이 경우 신법(新法) 또는 특별법이 규약의 일부 권리에 우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함. 또한, 규약상의 모든 권리가 국내법원에서 직접 인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점 그리고 그러한 관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함(제15항).</p>	<p>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영역에서 규약이 신구(新舊)를 막론한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한국 정부가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함. [2] 규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모든 국내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3] 한국사회에서 규약 규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4] 법 집행 기관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 뿐 아니라 사법 절차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확대할 것 [우려사항] 규약의 국내법 상 지위에 대해 우려함(제7항).</p>
<p>국가인권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약의 모든 권리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 업무권한을 강화하고 확장시킬 것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절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p>	<p>국가인권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주무하는 한편,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파견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에 대한 주의를 요청함.</p>	

비제도

<p>차별금지법 제98항</p> <p>[6] 일반노동법 제20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일치하도록 규약 제2조 제2항에 실시된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명확히 적시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령을 즉각적으로 입법화할 것</p>	<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제44항</p> <p>[4] 인권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준비할 것</p> <p>[5] 이에 대한 정보를 제3차 이행보고서에 담을 것</p>	<p>여성부 제37항</p> <p>[6]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p>	<p>여성차별 관행 제18항</p> <p>[5]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고함.</p> <p>[6] 여성차별에 대처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특히, 청소년 및 성인 교육, 고용 기회의 증진, 임금 및 사법행정의 개혁이 필요함.</p> <p>[7]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의 불명등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함.</p> <p>[우려사항]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현재 차지하는 지</p>
<p>차별금지법 제99항</p> <p>[6] 일반노동법 제20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일치하도록 규약 제2조 제2항에 실시된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명확히 적시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령을 즉각적으로 입법화할 것</p>	<p>여성부 제11항</p> <p>[7]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입법과 정책에 지속적으로 성인지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것</p> <p>[8]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사실상의(de jure and de facto) 남녀간 성평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것</p> <p>[9] 이를 진전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할 것</p>	<p>여성부 제37항</p> <p>[6]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p>	<p>여성차별 관행 제13항</p> <p>[10] 새로운 가족등록제도가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임법적·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p> <p>[11] 감제와 사회보장 유인제와 같이 남녀로 하여금 직업과 가족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했다</p> <p>[12]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적 유인책을 통하여 남성 이 가족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p> <p>[13] 남녀 모두 유급 노동과 가족 책임을 결합할 수</p>
<p>여성, 이 동성소년</p>	<p>여성부 제37항</p> <p>[6]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p>	<p>여성부 제37항</p> <p>[6]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p>	<p>여성차별 관행 제18항</p> <p>[5]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고함.</p> <p>[6] 여성차별에 대처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특히, 청소년 및 성인 교육, 고용 기회의 증진, 임금 및 사법행정의 개혁이 필요함.</p> <p>[7]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의 불명등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함.</p> <p>[우려사항]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현재 차지하는 지</p>

<p>있도록 탄력근무를 시행할 것</p>		<p>위가 매우 불만족스러움(제10항). [우려사항] 중등 및 고등교육에 드는 높은 비용과 접근의 어려움이 여성들의 교육 수혜 비율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함(제10항). [우려사항] 고용 시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높은 빈도의 성차별 행위 등의 작업장에서의 차별적인 관행에 특별한 유감을 포함(제10항). [우려사항] 남녀 간 임금격차에 대해서 각별한 유감을 포함(제10항). [우려사항] (국제결혼의 경우처럼) 여성들이 그녀의 국적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여성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는 시대착오적 규칙도 주목해야 함(제10항). [우려사항]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률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포함(제10항).</p>
<p>여성 및 청소년 실업^{제14항}</p> <p>[14] 노동력이 과소대표된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을 더욱 증진시킬 것</p> <p>[15] 2010년까지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참가를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재훈련을 제공할 것</p> <p>[16]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우려사항] 직장내 여성차별과 성희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제16항)</p>	<p style="text-align: center;">[우려사항] 직장내 여성차별과 성희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제16항)</p>
<p>직장내 성희롱^{제17항}</p> <p>[17] 작업장 내에서의 성희롱을 행사법외화 하는 법령</p>		

<p>을 입법 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p> <p>[18] 작업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공적 기관이 벌칙 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p> <p>[19] 지속적으로 성희롱이 범퍼라는 인식을 증진시킬 것</p>	<p>[우려사항]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여전히 높음(제16항)</p> <p>[우려사항] 가정 파괴로 인한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제21항).</p>	<p>을 입법 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p> <p>[18] 작업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공적 기관이 벌칙 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p> <p>[19] 지속적으로 성희롱이 범퍼라는 인식을 증진시킬 것</p>
<p>가정폭력^{제24항}</p> <p>[20] 가정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입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p> <p>[21] 가정폭력이 행사범퍼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가해를 재판과 확정판결까지 이르게 하며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p> <p>[22] 피해자 보호시설과 사회심리학적 지원 서비스를 늘릴 것</p>	<p>[우려사항]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여전히 높음(제16항)</p> <p>[우려사항] 가정 파괴로 인한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제21항).</p>	<p>청소년 성교육^{제31항}</p> <p>[23] 학교 내 의무 성교육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것, 성건강 및 생식건강과 피임법에 대한 정보를 이 교육에 포함시킬 것</p> <p>[24] 미혼모들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미혼모에 대한 깊은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캠페인을 펼칠 것</p>
<p>아동성매매와 아동노동^{제40B}</p> <p>[7] 아동 성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취할 것</p> <p>[8]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을 확대시킬 것</p> <p>[우려사항]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아동노동을 우려함.</p>	<p>[우려사항]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여전히 높음(제16항)</p> <p>[우려사항] 가정 파괴로 인한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제21항).</p>	<p>[우려사항] 가정폭력 발생비율이 여전히 높음(제16항)</p> <p>[우려사항] 가정 파괴로 인한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제21항).</p>

<p>이주, 외국인</p>	<p>난민신청 기간 제10항</p> <p>[25] 출입국관리 담당 인력 증원을 포함하여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을 집행하는데 적절한 자원을 지원할 것</p> <p>[26] 망명 절차를 표준화 할 것</p> <p>[27] 난민과 망명신청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p> <p>[28] 채택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난민과 망명자 자격을 부여한 통계를 포함하여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p>	<p>[우려사항] 오직 한 명의 난민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현재의 난민 지위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우려를 느낀(제30항)</p>	
<p>F2사동 제12항</p>	<p>[29]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남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p>		
<p>이주노동자 차별 제21항</p>	<p>[30] 이주노동자가 노동법 상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 근로자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재검토할 것</p> <p>[31] 사업장 변경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p>	<p>이주노동자 차별 제19항</p> <p>[8] 모든 노동조건인 개인은 한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차별 행위는 근절되어야 함.</p> <p>[우려사항] 작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작업조건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음(제12항).</p> <p>[우려사항]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에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범위의 법적 조치가 드러나지 않음(제12항).</p>	
<p>E6사동 및 인신매매 제25항</p>	<p>[32]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 의 전쟁 노력을 강화하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래와 같이 할 것</p>		

<p>[33] E6사중 발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p> <p>[34] 인신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p> <p>[35] 범검행 공무원 검사, 판사들에게 인신매매 방지 임법에 대한 의무 교육을 제공할 것</p> <p>[36]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법적 지원을 늘릴 것</p> <p>[37]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민원 접수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p> <p>[38] 인신매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정의를 실현시킬 것</p>	<p>비정규직 제138호</p> <p>[39] 비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즉각적으로 결론지을 것</p> <p>[40] 동일가치 근로에 대해 동일한 임금</p> <p>[41] 적절한 사회보험 적용</p> <p>[42] 실직수당, 휴가 및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노동법 보호</p> <p>[43]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p>	<p>비정규직 제138호</p> <p>[9]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제고(再考)하고 규약 하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p> <p>[10]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p> <p>[우려사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제17항). 독립적 기관의 정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비,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0% 가까이 되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우려를 포함(제17항)</p>	<p>외국인노동자 사회복지 제128호</p> <p>[9]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고려하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p>
---	--	--	---

노동

<p>최저임금 제16항</p> <p>[44] 최저임금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규약 제7조 제(a)항 제(ii)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것</p> <p>[45] 최저임금 범령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까지 해당 범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할 것과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범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금 등 여타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적 최저임금이 시행되도록 더한층 노력할 것</p> <p>[46] 당사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바,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변경이 이주노동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할 것</p>		<p>최저임금제 확대 제18항</p> <p>[10] 최저임금제를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p>
	<p>노동3권 일반 제39항</p> <p>[11] 규약 8조의 규정 즉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그리고 파업권을 상시권</p>	<p>노동3권 일반 제17항</p> <p>[12] 위원회는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파업권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본 규약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권고함.</p> <p>[우려사항] 파업권에 관한 규제는 지나치게 제약적임.</p>
<p>산업재해 제16항</p> <p>[47]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이들 및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p>	<p>[우려사항]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함. 이는 산업안전 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임(제18항).</p>	<p>산업안전 규제 확대 제19항</p> <p>[11]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를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함.</p> <p>[우려사항] 작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무척 놀람게 생각함. 정부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무척 놀람게 생각함(제12항)</p>

<p>공무원 노동3권 제19항</p> <p>[48] 결사의 권리 및 집회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전문기위원회가 2001년에 제출한 협약(제87호)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과 파업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무원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p>	<p>공무원 · 교사의 노동3권 제39항</p> <p>[12]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함</p> <p>[13]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p> <p>[우려사항] 교사들이 규약 8조의 권리(노동조합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함.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이 교사들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진통적으로 주어진 고결한 지위를 위원회가 인지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정부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진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제19항).</p>	<p>공무원 · 교사의 노동3권 제17항</p> <p>[13] 교사와 공무원 및 기타 집단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p> <p>[우려사항] 노동조합결성권과 관련된 제약들이 규약의 8조에 따른 한국정부의 의무에 배치된다고 생각함. 특히 방위산업체의 노동자 등의 집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뚜렷한 이유가 없음(제8항).</p>
<p>업무방해죄와 파업노동자 과도한 처벌 제20항</p> <p>[49]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p> <p>[50] 공공질서유지에 절대적으로(absolutely) 필요한 수 준을 넘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체계적인 수단으로서의 ‘업무 방해죄’ 조항의 적용을 억제함으로써 파업권을 보장할 것</p> <p>[51]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자유 보장 협약(1948)’과 제98호 ‘집회와 단체협상의 권리 협약을 비준할 것</p>	<p>파업노동자 과도한 처벌 제39항</p> <p>[14]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p> <p>[15]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p> <p>[우려사항]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우려함(제20항).</p> <p>[우려사항]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키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함(제20항).</p> <p>[우려사항]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p>	<p>[우려사항]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 되는 사례들이 늘라움(제10항).</p> <p>[우려사항]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게 생각함(제10항).</p> <p>[우려사항] 노동자를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 당국에게 거의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임(제10항)</p>

<p>사회복지 일반 제22항</p> <p>[5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 의무 기준과 소득수준, 그리고 보편적 접근 등과 관련한 검토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노숙인, 비닐하우스 생활자, 보호시설 생활자를 포함한 '인정적 생활'의 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 체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p>	<p>을 포함.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함(제20항).</p>	<p>사회복지 일반 제22항</p> <p>[4]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사회의 한계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하게 확대할 것.</p> <p>[5] 국민층과 무주택자 및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p>
<p>국민연금 제23항</p> <p>[53] 노인들이 일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최저보장연금(universal minimum pension)이나 사회부조금(social assistance benefits)과 같은 제도를 국민연금 체도에 대한 대안으로 혹은 보완으로 구성할 것</p>	<p>[우려사항] 국민연금체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나, 연금을 받을 나이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없었던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제23항).</p>	<p>[우려사항] 국민연금체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나, 연금을 받을 나이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없었던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제23항).</p>
<p>빈곤 제26항</p> <p>[54] 빈곤퇴치 전략을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것</p> <p>[55] 취약·소의계층에 대한 빈곤퇴치 전략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것</p> <p>[5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동 전략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p> <p>[57] 상, 연령, 가구당 이동 수, 편모·편부 가구수, 도·농 인구 및 인종집단 별로 세분된 빈곤생활자 인구비율에 대한 최신의 연간 통계를 포함하여 동 전략 하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p>	<p>[우려사항] 빈곤퇴치 전략을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것</p> <p>[55] 취약·소의계층에 대한 빈곤퇴치 전략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것</p> <p>[5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동 전략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p> <p>[57] 상, 연령, 가구당 이동 수, 편모·편부 가구수, 도·농 인구 및 인종집단 별로 세분된 빈곤생활자 인구비율에 대한 최신의 연간 통계를 포함하여 동 전략 하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p>	<p>[우려사항] 빈곤퇴치 전략을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것</p> <p>[55] 취약·소의계층에 대한 빈곤퇴치 전략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것</p> <p>[5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동 전략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p> <p>[57] 상, 연령, 가구당 이동 수, 편모·편부 가구수, 도·농 인구 및 인종집단 별로 세분된 빈곤생활자 인구비율에 대한 최신의 연간 통계를 포함하여 동 전략 하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p>

사회보장

<p>노숙인 제278</p> <p>[58] 노숙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노숙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채택할 것</p> <p>[59] 노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성, 연령, 도·농 인구별로 세분된 자료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p>	<p>취저주거기준 제228</p> <p>[60] 주택 문제와 관련한 긴장이나 민원을 처리할 부서들 내부 내에 설립할 것</p> <p>[61] 특히 취약·소의 계층의 주택 소유를 보장하고 이들에게 적정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p> <p>[62] 이 때 노숙인과 심각한 기증이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p> <p>[63] 성, 연령 및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p>	<p>취저주거기준 제418</p> <p>[16]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민원을 다루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부서 (focal point)를 설치할 것</p> <p>[17] 취약집단 또는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p> <p>[18] 노숙자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기준 이하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p> <p>[우려사항] 저소득층, 특히 취약집단, 한계계층들의 주거비 부담, 거주자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 노숙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느낌(제25항).</p>	<p>취저주거기준 제208</p> <p>[16] 주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p> <p>[17] 한국에서의 본 규약 11조의 적용에 관한 보증 정보, 특히 주거권에 관한 보증 정보를 얻기를 희망함.</p> <p>[우려사항] 한국내 주거상황에 대해 우려움(제14항).</p> <p>[우려사항] 부적합한 주거상황무주택자의 숫자 및 강제퇴거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음을 우려함(제14항).</p>
<p>노숙인 제278</p> <p>[58] 노숙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노숙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채택할 것</p> <p>[59] 노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성, 연령, 도·농 인구별로 세분된 자료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p>	<p>취저주거기준 제418</p> <p>[16]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민원을 다루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부서 (focal point)를 설치할 것</p> <p>[17] 취약집단 또는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p> <p>[18] 노숙자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기준 이하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p> <p>[우려사항] 저소득층, 특히 취약집단, 한계계층들의 주거비 부담, 거주자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 노숙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느낌(제25항).</p>	<p>강제퇴거 제208</p> <p>[18] 일반논평 제4호에 따라, 주거 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p>	<p>강제퇴거 제208</p> <p>[18] 일반논평 제4호에 따라, 주거 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p>
<p>노숙인 제278</p> <p>[58] 노숙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노숙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채택할 것</p> <p>[59] 노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성, 연령, 도·농 인구별로 세분된 자료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p>	<p>취저주거기준 제418</p> <p>[16]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민원을 다루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부서 (focal point)를 설치할 것</p> <p>[17] 취약집단 또는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p> <p>[18] 노숙자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기준 이하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p> <p>[우려사항] 저소득층, 특히 취약집단, 한계계층들의 주거비 부담, 거주자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 노숙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느낌(제25항).</p>	<p>강제퇴거 제208</p> <p>[18] 일반논평 제4호에 따라, 주거 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p>	<p>강제퇴거 제208</p> <p>[18] 일반논평 제4호에 따라, 주거 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p>

<p>[66]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주자들과의 공개토론과 유의미한 협의를 보증할 것</p> <p>[67] 세 주거지에는 먹는물, 전기, 세탁 및 위생 시설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설비를 갖추고 학교, 의료시설 및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p> <p>[68] 성, 연령, 기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는 강제퇴거 관련 정보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p>		
<p>건강 제308</p> <p>[69] 의료비 지출을 증대시킬 것과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할 것</p> <p>[70]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4호(2000)에 관심을 기울일 것</p>	<p>[우려사항] 보건 분야 예산의 비율이 (전체 정부예산 중) 1% 이하이며 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불안하게 느낌. 민간의료기관이 지배적-모든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곧 사회의 한계 계층들이 보건의료에 접근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함(제26항).</p>	
<p>교육 제338</p> <p>[71] 교육이 금전이 아닌 능력을 기초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가능하며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p> <p>[72]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가계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중산층의 삶의 질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교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보조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것</p>	<p>공교육 강화 제218</p> <p>규약 13조와 본 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 특히 아래 사항</p> <p>[21] 중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그 합리적 기한설정(timetable)</p> <p>[22] 사교육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교육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p> <p>[23]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p>	<p>취약계층 교육 접근권 제219</p> <p>[19]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불리한 계층의 중등 및 고등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과 고등교육부문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함.</p>

<p>[24]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p> <p>[25]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한국정부의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p> <p>[우려사항]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은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점을 우려함(제27항).</p> <p>[우려사항]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며, 이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려함(제28항).</p> <p>[우려사항] 초등교육 단계만이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사실에 주목함. 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수준에 걸맞지 않음(제29항).</p>	<p>[24]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p> <p>[25]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한국정부의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p> <p>[우려사항]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은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점을 우려함(제27항).</p> <p>[우려사항]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며, 이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려함(제28항).</p> <p>[우려사항] 초등교육 단계만이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사실에 주목함. 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수준에 걸맞지 않음(제29항).</p>	<p>극심한 학업 경쟁 제34항</p> <p>[73] 주입식 교육을 하는 사설 학원(privately run cram schools)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할 것</p> <p>[74] 시범적인 대안 학습 모델을 수립할 것</p> <p>[75] 아동의 과도한 학습 부담이 초래할 효과에 대하여 부모와 일반대중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p> <p>[76] 사설 야간 학원과 주입식 교육학원 운영을 억제할 것</p> <p>[77] 불필요한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의 중등교육에서의 학업 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제한하는 일제고사(Ijegosa) 제도를 재검토할 것</p>	<p>[우려사항] 경쟁적인 입시 요건을 낳는 고등 교육 기회의 공급 부족에 문계의 심각성이 있다고 구두로 인정하는 사실에 주목함(제13항).</p> <p>[우려사항] 이러한 결과의 하나로, 사설 학원들이 쉽게 학원비를 올리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이러한 제도 밖으로 강제로 배제되고 있음(제13항).</p>
	<p>인권교육 제438항</p> <p>[26] 전통적인 관행이 어떤 권리를 향유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거나 남아 선호 및 여자태아의 낙태 등 어떤 종류이든 차별을 존속시키는 한, 한국정부는</p>	<p>인권교육 제21항</p> <p>[20] 정규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함.</p>	

	<p>일반 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평범위한 대중 캠페인을 수행해야 함.</p> <p>[우려사항] 인권교육이 경제적으로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일에 가장 직접 연관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필수 과정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느낌(제31항).</p>	
	<p>농촌 및 식량 상황^{제45항}</p> <p>[27] 제3차 이행보고서에 농촌 부문의 상황과 농업 및 식량 생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것</p>	
	<p>공적개발원조(ODA)^{제78항}</p> <p>[78] 201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적개발원조 목표치인 국내총생산 대비 0.7% 수준까지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다할 것</p> <p>[79] 최빈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증여를 상황과 관련하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권고사항들을 견지할 것</p>	<p>식수^{제32항}</p> <p>[80] 농사와 식수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지하수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p> <p>[81] 발암물질이 발견된 생수와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지도록 보장할 것</p> <p>[82] 이미 채택한 먹는물 수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와 관련하여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를 참조할 것</p>
	<p>대학의 자율권^{제35항}</p> <p>[83] 자신의 학술적 권위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그 교과과정과 교수 방식을 스스로 관리할 자유를 대학에 보장할 것</p>	

기타

	<p>1차 보고서 이행 ^{제33항}</p> <p>[28]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답했던 개인과 권고를 다시 반복하고 확인하면서 그것들을 이행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p>	
	<p>인권력 정부정책의 기초 ^{제34항}</p> <p>[29] 정부 활동의 인권적 접근은, 각 권리와 관련된 실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가장 취약한 집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법,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p>	
	<p>통계데이터 수집 방법 ^{제34항}</p> <p>[30] 국가 통계기관들과 관련 부처들이 규약의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p> <p>[우려사항] 한국정부의 통계자료 확보방법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예를 들어 실업, 불안정고용(Unemployment), 주거, 빈곤과 이주 등에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그러하다. 몇몇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통계는 UN전문기구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타의 기관들이 제공한 통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의 요구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의 실효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통계들임(제14항).</p>	
	<p>[우려사항]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작품이 검열, 몰수 혹은 파괴될 뿐 아니라 지식인과 예술인들 자신이 행사 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음(제32항).</p>	
	<p>[우려사항] 기반시설교육·보건의료 및 기타 필수 시설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도시 지</p>	

	<p>역에 고도로 집중돼 있어 인구가 농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함.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했으며 많은 노인들은 농촌에서 가족농지를 돌보기 위해 남겨졌음. 위원회는 이번 심의 동안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상황이 충분히 다루이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제22항).</p>	
	<p>[우려사항]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최소 2%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 위원회는 또한 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데 우려를 느낌(제24항).</p>	
	<p>[우려사항]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쳐주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함. 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량 정리해고고용상태 악화·소득격차 심화·가정파탄 증가 많은 사람들의 주변화 등으로 나타났음(제12항).</p>	
	<p>[우려사항]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권리들 혹은 일부 집단의 권리들이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제13항).</p>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제43차회기

2009. 11. 2 ~ 20. 제네바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심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최종 견해
대한민국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9년 11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제42차, 제43차 및 제44차 전원회의(E/C.12/2009/SR.42, 43 and 44)를 갖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차 국가보고서(E/C.12/KOR/3)를 심의하고 2009년 11월 19일에 개최된 제55차 전원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문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3차 국가보고서 및 쟁점목록(List of Issues, E/C.12/KOR/Q/3/Add.1)에 대한 답변서를 통계자료와 함께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규약이 포괄하고 있는 각 주제와 관련된 여러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3. 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제출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한다.

B. 긍정적인 측면들

4.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킴에 있어서 당사국이 긍정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환영한다.

(i)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설립한 것

(ii) 호주제를 폐지한 것

(iii)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한 것

(iv) 산업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55호와 제187호를 비준한 것

(v)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인도주의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망명신청자들(asylum seekers)에게 취업사증 신청자격을 부여한 것

(vi) 2004년부터 중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 대상으로 확장한 것

(vii) 학교에서 처벌을 대신할 제도로서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

(viii) 저소득자 및 가족들의 문화활동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

C. 규약 이행의 장애요소

5. 위원회는 당사국에 규약이행을 방해할 심각한 장애요소는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D.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¹⁾

6. 위원회는 2001년 최종견해(E/C.12/1/Add.59)에도 불구하고 규약이 아직 국내법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 (a) 헌법 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포괄하는 범위가 규약보다 협소하다는 점
 - (b) 헌법이 시민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제3조)²⁾
 - (c) 규약의 권리들이 국내 법원, 심판위원회, 행정청에서 거의 언급된 바가 없거나 직접적으로 원용되지 않았다는 점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규약이 국내 법 체제 안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여기서 위원회가 참조하는 것은 규약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반논평 제9호(1998)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규약의 권리들을 원용한 국내법원, 심판위원회, 행정청 판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7. 위원회는 당사국의 2015년 공적개발원조(ODA) 목표치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인 국내총생산의 0.7%에 한참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며(제2조 제1항), 또한 비록 대한민국을 공여국의 지위에 오르게 한 그 경제발전 속도와 공적개발원조를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증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높이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원조는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구속적(tied)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1) 이번 권고안부터는 이전과 달리 ‘우려사항’과 ‘권고’를 절로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문단에 배치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2) 괄호안은 사회권규약 조항을 지칭함(이하 모두 같음). 여기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문제가므로 규약 제2조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향후 최종본에서 수정될 수 있을 듯함. -역주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201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적개발원조 목표치인 국내총생산 대비 0.7% 수준까지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을 대상으로 한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당사국 원조계획(aid portfolio)상 증여율(grant element) 상향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권고사항들을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

8. 위원회는 규약 권리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제한적인 법적권한(jurisdiction)과 조사권의 부족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타 부처의 경우 최대 2% 감축에 불과한데 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1%가 감축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당사국 내에서 심각한 압력에 처하게 된 최근의 상황변화를 특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나아가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한다.

- (a)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약의 모든 권리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 업무권한을 강화하고 확장시킬 것
- (b)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절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
- (c)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9. 위원회는 2007년 12월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이 아무런 논의 없이 폐기됨으로써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령이 여전히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태스크포스의 검토 하에 마련된 현재 법률안이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규정하기 보다는 대표적인 차별금지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는 점과 국적이나 성적지향과 같이 최초 입법안에 명시된 차별사유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일반논평 제20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일치하도록 규약 제2조 제2항에 실시된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명확히 적시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령을 즉각적으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10. 위원회는 신청서 처리가 장기화되는데 따른 난민이나 망명자 지위 신청자가 처한 어려움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난민이나 망명신청자 인정률이 극히 낮고, 지위 인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의 절차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난민과 망명신청자 지위 인정 기간을 단축시킬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 (a) 출입국관리 담당 인력 증원을 포함하여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을 집행하는데 적절한 자원을 지원할 것
- (b) 망명 절차를 표준화 할 것
- (c) 난민과 망명신청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난민과 망명자 자격을 부여한 통계를 포함하여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11. 위원회는 당사국의 긍정적인 행보를 인정하는 한편, 여성부의 권한과 배분 자원의 변경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평등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제2조).³⁾

3) 남녀평등 사안이므로 제2조뿐만 아니라 제3조도 해당되므로 향후 최종본에서 수정될 것으로

위원회는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입법과 정책에 지속적으로 성인지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난 심의 최종권고를 재차 반복한다. 위원회는 규약 제2조 제2항 및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 사실상의(de jure and de facto) 남녀간 성평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일반논평 제16호(2005)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남녀 간 평등한 권리에 주목할 것을 당부하며, 또한 당사국에게 이들 진전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12. 위원회는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체류자격(F-2)을 획득함에 있어서 여전히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남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13. 위원회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의 민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남녀간 지속적인 임금격차, 정치영역과 공공영역에서 고위직 여성의 낮은 비율, 직업상 성 분리(occupational sex segregation)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반복한다. 위원회는 또한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보다 낮은 여성의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율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이 직업과 가족생활 간에 조화시키고자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제3조).

로 보임. -역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새로운 가족등록제도가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
- (b) 감세와 사회보장 유인책과 같이 남녀로 하여금 직업과 가족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것
- (c) 특히 육아휴직(paternity and parental leaves)과 같은 정책적 유인책을 통하여 남성이 가족돌봄(family care)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
- (d) 남녀 모두 유급 노동과 가족 책임을 결합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를 시행할 것
- (e) 학교급식이나 공공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

14. 위원회는 여성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 고용기회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청년층 고용 정책 관련 정보가 충분히 상세하지 않다는 점이 유감스럽다(제6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노동력이 과소대표된(under-represented)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을 더욱 증진시킬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2010년까지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참가율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재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게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을 권고한다.

15. 위원회는 34.9%의 노동력이 비정규직이고 여성근로자의 44.1%가 비정규직, 그리고 특별경제구역 내 근로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을 우려한다.

- (a) 비정규직 근로자 월수입이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한 점
- (b) 비정규직과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이 부적절한 점
- (c)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들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2년의 근로계약이 종결되기 전에 즉각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음으로 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기가 불가능한 점
- (d) 비정규직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점(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비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즉각적으로 결론지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아래 권리들을 부여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 (a)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한 임금
- (b) 적절한 사회보험 적용
- (c) 실직수당, 휴가 및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노동법 보호
- (d)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16. 위원회는 점점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법적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최저임금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규약 제7조 제(a)항 제(ii)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게 최저임금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까지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할 것과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금 등 여타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적 최저임금이 시행되도록 더한층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바,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변경이 이주노동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17.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 (a) 직장내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 (b) 직장내 성희롱이 형사범죄화 되지 않은 점
- (c) 피해자들이 일자리나 입국 자격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제를 요구하지 않는 점
- (d) 성희롱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종종 유야무야 처리된다는 점

위원회는 당사국이 작업장 내에서의 성희롱을 형사범죄화 하는 법령을 입법·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작업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공적 기관이 벌칙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속적으로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증진시킬 것도 권고한다.

18. 위원회는 당사국의 높은 수치의 산업재해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이나 근로조건보다는 근로자의 체류 자격 조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이들 및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안전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19. 위원회는 헌법(제33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일부 공무원의 경우만 노동조합권을 향유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노동조합이 법에 의해 금지되고 2001년 설립된 전국교수노

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규약 제8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제8조).

위원회는 결사의 권리 및 집회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위원회가 2001년에 제출한 협약(제87호)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과 파업권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무원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 위원회는 형법 제341조 ‘업무방해죄’에 기대어 근로자에 대한 빈번한 기소 사례 및 파업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force) 사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조합의 권리들(trade union rights)을 적절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제8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공공 질서유지에 절대적으로(absolutely) 필요한 수준을 넘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체계적인 수단으로서의 ‘업무방해죄’ 조항의 적용을 억제함으로써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결성의 자유 보장 협약’(1948)과 제98호 ‘집회와 단체협상의 권리 협약’(1949)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21.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착취, 차별 및 임금 미지급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노동법 상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 근로자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하여 심도있게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위

위원회는 사업장 변경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단지 정규근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비선호 일자리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특히 그러하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 노동 조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을 1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아시아에서는 선례가 없는 급속한 경제발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취약·소외 계층(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groups)의 권리 향상을 성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불균형을 우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8.2%, 특히 일부 취약·소외계층이 사회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가장 취약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원칙적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불충분한 사회보장지출, 의료·교육·수도·전기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서비스의 높은 민간비율로 인해 취약·소외계층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 의무 기준과 소득수준, 그리고 보편적 접근 등과 관련하여 검토중이라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검토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노숙인, 비닐하우스 생활자, 보호시설 생활자를 포함한 ‘안정적 생활’의 최소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23. 위원회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분적으로만 혜택을 받는 노인들의 규모가 큰 데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 이러한 우려는 당사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7%에서 14%로 두 배로 증가하는데 겨우 22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제9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인들이 일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최저보증연금(universal minimum pension) 혹은 사회부조급여(social assistance benefits)와 같은 제도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혹은 보완으로 구상할 것을 권고한다.

24. 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의무보고 비율이 매우 낮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결된 많은 사건들도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점도 우려한다(제10조).

위원회는 가정폭력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입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가정폭력이 형사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가해를 재판과 확정판결까지 이르게 하며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피해자 보호시설과 사회심리학적 지원 서비스를 늘릴 것을 권고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매매나 성착취 뿐만 아니라 기타 이윤목적의 인신매매를 형사범죄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성과 아동, 특히 E6(연예홍행) 사증으로 입국한 여성 근로자들이 여전히 성착취와 강제노동의 목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당사국 내에서, 그리고 당사국을 통하여 인신매매를 당하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처벌과 기소 사례가 적은 점을 특히 우려한다(제10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의 전쟁 노력을 강화하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래와 같이 할 것을 권고한다.

- (a) E6 사증 발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b) 인신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

- (c) 법집행 공무원, 검사, 판사들에게 인신매매 방지 입법에 대한 의무 교육을 제공할 것;
- (d)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법적 지원을 늘릴 것
- (e)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민원 접수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f) 인신매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정의를 실현시킬 것

26. 위원회는 높은 국내총생산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정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제11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빈곤퇴치 전략을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빈곤선이 존재함을 확인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빈곤퇴치 전략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다. ‘빈곤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에 관한 성명(E/C.12/2001/1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동 전략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성, 연령, 가구당 아동 수, 편모·편부 가구 수, 도·농 인구 및 인종집단 별로 세분된 빈곤생활자 인구비율에 대한 최신의 연간 통계를 포함하여 동 전략 하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숙(homelessness)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노숙인들(the homeless)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노숙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점검하고 노숙인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한 후 노숙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다. 위원회는 당사국 내 노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성, 연령, 도·농 인구별로 세분된 자료를 차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당사국에게 요청한다.

28. 위원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백 6만 가구(조사대상 가구의 13%)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한다(제11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주택 문제와 관련한 진정이나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정부 내에 설립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적절한 주거에 관한 일반논평 제4호(1991)에 따라 특히 취약·소의 계층의 주택 소유를 보장하고 이들에게 적정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노숙인과 심각한 기준이하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하게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성, 연령 및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9. 위원회는 강제퇴거 될 사람들에게 대한 법적 보상이나 효과적인 협의가 결여되어 있고, 이미 퇴거된 사람들에게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적절한 재정착지 제공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 국가보고서에는 특히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결과와 관련하여 강제퇴거가 이루어진 범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11조).

위원회는 강제퇴거는 단지 최후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용산사건(Yongsan Incident)과 같이 폭력동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퇴거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임시 주거를 보장함이 없이는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제퇴거와 관련된 위원회 일반논평 제7호에 부합되도록 우선적으로 다음을 촉구한다.

- (a)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퇴거된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정착지 제공을 보장할 것
- (b)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주지들과의 공개토론과 유의미한 협의를 보증할 것
- (c) 새 주거지에는 먹는물, 전기, 세탁 및 위생 시설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설비를 갖추고 학교, 의료시설 및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 (d) 성, 연령, 가구별로 세분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는 강제퇴거 관련 정보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

30. 위원회는 의료급여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90%를 구성하는 민영 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취약·소외계층의 충분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의 65%정도만을 보장하고, 그 결과 개인의 직접지출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우려한다(제12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의료비 지출을 증대시킬 것과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할 것과,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4호(2000)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1. 위원회는 의무 성교육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의 성건강(sexual health) 및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수많은 임신 청소년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미혼모라는 낙인(stigma)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학교 내 의무 성교육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것, 성

건강 및 생식건강과 피임법에 대한 정보를 이 교육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미혼모들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미혼모에 대한 깊은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캠페인을 펼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32. 위원회는 먹는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선물질에 의한 마을상수도 오염 관련 보고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생수 회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농사와 식수용으로 필수적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생수에 포함된 발암물질의 존재를 공표하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농사와 식수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지하수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발암물질이 발견된 생수와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지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미 채택한 먹는물 수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과 차기보고서에서 제공할 정보와 관련하여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를 참조할 것을 권고한다(제11조).

33. 위원회는 부모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용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교육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정보와 우수 대학(top universities) 진학 기회가 종종 부모의 방과 후 교육이나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교육이 금전이 아닌 능력을 기초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가능하며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가계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중산층의 삶의 질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⁴⁾는 점을 인

정하면서, 당사국에게 교육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보조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제13조).

34. 위원회는 극심한 경쟁과 학업 중압감으로 인해 학생들 중에 임상적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제12조, 제13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a) 주입식 교육을 하는 사설 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할 것
- (b) 시범적인 대안 학습 모델을 수립할 것
- (c) 아동의 과도한 학습 부담이 초래할 효과에 대하여 부모와 일반대중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 (d) 사설 야간 학원과 주입식 교육학원 운영을 억제할 것
- (e) 불필요한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의 중등교육에서의 학업 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제도를 재검토할 것

35.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종합예술학교에게 “실용교육”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 결과로서 대학에서의 예술과 문화 교육에 있어서 자율성과 다양성의 부재를 우려한다.

위원회는 대학에 대한 일반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당사국이 제시한 정보를 주목하면서도 당사국에게 자신의 학술적 권위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그 교과과정과 교수 방식을 스스로 관리할 자유를 대학에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4) 제3차 정부보고서 제382항에 적시된 문장을 직접 인용하였음. 그러나 해당 보고서 국문본에서는 표현이 다소 다름. 이 번역문은 국문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문본을 번역한 것임. -역주

36.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서명과 비준을 고려하기를 권장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에 이 최종견해를 가능한 한 번역·출판하여 사회 전 영역, 특히 국가공무원, 사법부 및 시민사회단체에 널리 보급하고, 차기보고서에는 그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차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함에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및 여타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전국적 수준의 협의 과정을 밟을 것을 권장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주노동자협약)’ 서명과 비준을 고려하기를 권장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2008년에 채택된 수정된 보고서 제출 양식(E/C.12/2008/2)에 맞추어 2014년 6월 30일까지 제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C.12/KOR/CO/3
20 November 2009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orty-third session
Geneva, 2-20 November 2009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ed the thir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KOR/3) at its 42nd, 43rd, and 44th meetings, held on 10 and 11 November 2009 (E/C.12/2009/SR.42, 43 and 44), and adopted, at its 55th meeting held on 19 November 2009,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thir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ritten replies to its list of issues, including statistical data (E/C.12/KOR/Q/3/Add.1).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frank and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delegation of the State party that included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Ministries with expertise on the subjects covered by the Covenant.

3.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contribu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o the reporting process.

B. Positive aspects

4.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positive efforts made by the State party in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The Committee welcomes in particular:

- (i)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2007-2011, and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as a consultative body in charge of its implementation;
- (ii) the coming into effect of the abolition of the *Ho ju* system;
- (iii) the ratification by the State party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iv) the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s No. 187 and No. 155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v) the changes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at grant humanitarian status holders the right to work and provide asylum seekers with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or a work permit;
- (vi) the expansion of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to include secondary education in 2004;
- (vii) the introduction of a pilot green mileage system as an alternative to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 (viii) the use of cultural vouchers programmes to facilitate access to cultural performances for low income individuals and families

C. Factors and difficulties imp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5. The Committee notes the absence of any significant factors or difficulties prevent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in the State party.

D.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6.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Covenant is not yet fully incorporated into domestic law despite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in 2001 (E/C.12/1/Add.59). The Committee, however, remains concerned that:

- (a) the scop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s narrower than in the Covenant;
- (b) the Constitution only applies to citizens, (art 3) and ;
- (c) Covenant rights have seldom been invoked before, or directly enforced by, domestic courts, tribunals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 to the State party to accord the Covenant a legal status that would enable it to be invoked directly within the domestic legal system.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refers to its General Comment No. 9(1998) on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detailed information on decisions of national courts, tribunals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giving effect to Covenant rights in its next periodic report.

7.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ODA target of the State party for 2015 is well below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rget of 0.7% of GDP. (Art. 2.1) and that bilateral aid is still partially tied while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pace of economic development achieved in the State party that has enabled it to becoming an aid donor country and the information that the State party plans to continue the steady increase of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tep up its efforts to increase its ODA target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ly agreed commitment of 0.7% of GDP by 2015. In this respect,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on board the recommendations from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concerning the increase of the grant element of bilateral ODA commitments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in the State party's aid portfolio.

8.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imited jurisdiction of the NHRCK over Covenant rights, and the lack of its investigative power.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about downsizing of the NHRCK by 21%, whereas for all other Ministries it has been of 2% at the most. The Committee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ate party that have brought the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 under severe pressure.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of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NHRCK remain compliant with the Paris Principles.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 (a) **strengthening and expanding the mandate of the NHRCK in order to cover all the Covenant rights;**
- (b) **allocating adequat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human rights experts in accordance with the NHRCK Act; and**
- (c) **allowing individuals to file complaints on violations of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rights directly to the NHRCK.**

9.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has still not been adopted by the State party, due to the fact that the Anti-Discrimination Bill submitted to the seventeenth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07 was discarded without consideration.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present version under assessment by the task force “does not exclusively enumerate anti-discrimination grounds, but rather stipulates a list of typical anti-discrimination grounds as example” and that it only contains certain grounds for discrimination excluding others that had been indicated in the original Bill such as nationality and sexual orientation. (Art 2)

The Committee urges that the State party adopt expeditiously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which clearly spells out all the grounds for discrimination, as set out by Article 2.2 of the Covenant and in lin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0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 2, para. 2)).

10.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difficulties faced by applicants for refugee and asylum status due to long waiting periods for processing their application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extremely low rate of recognitio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by the State party, as well as by the still lengthy process to obtain the recognition of their statu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further efforts to shorten waiting periods for the recognition of refugee and asylum seeker status by:

- (a) providing the adequate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Immigration Control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including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tion officers;**
- (b) standardizing asylum procedures;**
- (c) systematically collecting data on refugee and asylum seekers**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formation on measures adopted in this regard, including statistics on the granting of refugee and asylum status, in its next periodic report.

11. The Committee, while recognizing the positive steps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is concerned that changes in the competences of, and resource allocation f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have negatively affected women’s substantive enjoyment of equality (art. 2)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concluding recommendation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the adequat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allocate the necessary resources to enabl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o function effectively and to consistently apply a gender perspective in legislation and programme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as a matter of priority, a comprehensive review of its legislation with a view to ensuring de jure and de facto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in all fields of life, as provided for in article 2, paragraph 2, and article 3 of the Covenant.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16 (2005) on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gress made in this respect.

12.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foreign spouses married to Korean nationals are still dependent on the latter for their residency status (F-2). (Art. 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further efforts to overcome the discrimination faced by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 nationals by empowering them to acquire residency status or naturalization without being dependent on their husbands.

13.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in spite of the amendments made to the Civil Law, in particular the abolition of the *hoju* system,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still present in many fields of life.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oncern over the persisting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the low percentage of women in high-ranking positions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nd the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by the low rate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State party, which i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despite high female enrolment in tertiary education. The Committee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the decreasing fertility rate of women in the State party may be a reflection of the difficulties they face when they wish to reconcile professional and family life. (art. 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under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alternative family registry system guarantees gender equality and individual dignity, as well as privacy;**
- (b) consider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ax reductions and social security incentives to allow men and women to reconcile professional and family life;**
- (c) encourage men to participate in family care through, inter alia, policy incentives like paternity and parental leaves;**
- (d) enable flexible work schedules that allow men and women to combine paid work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 (e) expand the network of social services including child care facilities such as public day-care centers and school lunches.**

14.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lack of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State party in particular for young persons as well as for women. The Committee regrets that information provided on national policies for youth employment was not sufficiently detailed. (art. 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mote greater employment of women and young persons, who are under-represented in the labour force. It further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fulfill the target of 55% for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labour market by 2010, stepping up its efforts to create sustainable jobs and to provide support and adequate training and re-training for women to re-enter the labour market after child rearing and career break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reat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young persons by strengthening vocational training activities that are adequate to market demand.

1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34.9% of the total workforce is made up of non-regular workers, that 44.1% of women workers are non-regular, and that most worker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are non-regular.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 (a) the monthly income of a non-regular worker is about half of a regular worker;
- (b)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insurance of non-regular and dispatched workers are inadequate;
- (c)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above mentioned workers; the fact that they run the risk of being summarily dismissed before ending their two year work contract, making it impossible for them to become regular workers; and
- (d) safeguards to protect non-regular workers from unfair dismissal are not effective.(Art. 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editiously conclude its assessment on the situation of non-regular and dispatched workers.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that non-regular workers be entitled to

- (a)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 (b) adequate social insurance coverage;
- (c) labour law protection, including severance pay, vacation and overtime; and
- (d) safeguards against unfair dismissal

16.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workers are excluded from receiving the minimum wage and that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does not apply to all sectors in spite of the amendment of the Minimum Wage Act in 2005, which expanded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minimum wage. (Art. 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minimum wage is effectively enforced, and that it provide workers and their families with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paragraph (a) (ii)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tend the applicability of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to those sectors where it still does not apply and intensify its efforts to enforce legal minimum wages through increased labour inspections and fines or other appropriate sanctions for employers who fail to comply with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changes in the calculation of the minimum wage to take into account deductions for meals and accommodation presently under consideration do not disproportionately affect migrant workers.

17.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 (a) there continues to be a lack of understanding on what constitutes sexual harassment at work;
 - (b) sexual harassment at work is not criminalized;
 - (c) victims rarely seek redress for fear of losing their job or their immigration status; and
 - (d) sexual harassment is often covered up during case proceedings.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nd implement legislation which criminalizes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set up mechanisms to monitor such implementation.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ive sufficient authority to the public organizations dealing with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o impose punitive measures, and compensate its victim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the criminal nature of sexual harassment.

18.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State party and the insufficient number of labour inspector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by allegations that labor inspections focus on the immigration status of workers rather than on occupational safety and working conditions. (art 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 the number of labour inspectors and provide adequate training on occupational safety and working conditions to labour inspectors, employers and employees.

19.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oncern that according to the National Constitution (art. 33), only certain public officials as designated by law can enjoy trade union rights.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measures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to ensure the rights of government workers and professors. However,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oncern that trade unions in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are prohibited by law and that the Korean Professor's Union formed in 2001 was not accepted, in direct contravention of article 8 of the Covenant. (Art 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legislation on civil service be amended with a view to lifting the restrictions imposed on civil servants' right to join trade unions and to strike in conformity with the comments made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mmittee of Experts in 2001 concerning the Right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No. 87).

20. The Committee is highly concerned about the frequent cases of prosecution of workers with regard to labour-management relations and excessive use of force demonstrated against striking workers, mainly based on Article 314 of the Penal Code regarding "Obstruction of Business".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oncern that trade union rights are not adequately guaranteed in the State party. (art. 8)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uarantee the right of all persons to freely form and join trade unions, the right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trade unions and the right to strike by refraining from the use of the "Obstruction of Business" clause as a systematic recourse to weaken the right to strike and from the use of force, beyond wha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ratifying ILO Conventions No. 87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98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1949).

21.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migrant workers are subject to exploitation, discrimination and unpaid wag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at has already recognized migrant workers as workers entitled to Labour Law protection be further reviewe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particular attention be paid to the fact that the three month period stipulated for a change in job is highly insufficient.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which migrant workers often have little choice but to accept jobs with unfavorable work conditions just to remain regular.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phold the High Court's decision to grant legal status to the Migrants' Trade Union.

22.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rapid pace of economic growth, of unprecedented proportions in Asia, that has turned the country into the 12th largest economy, has not been matched by increased fulfill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for 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groups.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8.2% of the total population, and in particular some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groups, are excluded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which in principle, guarantees 'national minimum' to people living in the most disadvantaged conditions, in the absence of an established national social safety net. The Committee is therefore concerned at the inadequate public social expenditure and the high level of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s including health care, education, water and electricity supply, has led to increased difficulties in the access and use of such services by 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groups.

The Committee, noting State party information tha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under review in relation to the “duty to support” standard or wealth standard and universal access to this System, urges that the State party conclude this review expeditiously and guarantee access to the System for persons that have not completed a minimum period of “stable living” including the homeless, vinyl house dwellers and those living in shelters.

2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oncern regarding the large number of older persons who only partially benefit from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is concern is enhanced by the fact that the State party has one of the highest levels of self-employment in the world and that it will take only 22 years for the share of the population aged over 60 to double from 7% to 14%. (art. 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visage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policies 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uch as a universal minimum pension or other social assistance benefits which would enable older persons to live a decent life.

24.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re is still inadequate protection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rate of mandatory reporting of domestic violence is very low, that legal action against perpetrators is seldom taken and that a number of settled cases have resulted in non-prosecution. (Art. 1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necessary measures, legislative or otherwise, to adequately address domestic violence. In particular,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criminal nature of domestic violence, bring perpetrators to trial and conviction, and strengthen counseling program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 shelters and psycho-social support services for the victims.

2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State party legislation penalizes trafficking not only for prostitution or sexual exploitation but for any profit purpose, a high number of women and children continue to be trafficked from, through and within the country for purposes of sexual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especially women workers originally arriving on an E6 visa (entertainment). The Committee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low number of prosecutions and convictions of traffickers. (Art. 1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tensify its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for any purpose, inter alia, by:

(a) strengthening monitoring of issuance of E6 visas

(b) supporting programmes and information campaigns to prevent trafficking

- (c) **providing mandatory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prosecutors and judges on anti-trafficking legislation**
- (d) **increasing the provision of medical, psychological and legal support to victims.**
- (e) **ensuring an effective complaint mechanism for migrant worker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and**
- (f) **fully investigating cases of human trafficking and ensuring justice**

26.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in spite of a high GDP growth rate, the extent and depth of poverty continue to increase. (art. 1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sufficient funds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its poverty eradication strategy. While noting the existence of a formal poverty line to determine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onitor effectively the impact of its poverty eradication strategy on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group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e full integ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strategy, as recommended in the Committee statement on “Poverty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0).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results of the measures adopted under the strategy, including updated statistical data, on an annual basis, on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living in poverty, disaggregated by gender, age, number of children per household, number of single parent households, rural/urban population, and ethnic group.

27.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has no strategy to address the problem of homelessness, to examine its extent and causes and to ensure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the homeles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dopt a strategy to address the problem of homelessness, after examining its extent and causes and ensuring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the homeless. The Committee invite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s disaggregated data by sex, age, and rural/urban populations on the extent of homelessness in the State party.

28.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that according to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5, 2.06 million households (13% of the surveyed households) were living below minimum housing standard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system of public leasing houses. (art. 11)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 for the State party to establish the focal point within the government for dealing with complaints or appeals for assistance on housing matter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sufficient funds for the realization of programmes aimed at providing security of tenure and affordable housing, particularly to 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groups, in line with its General Comment No. 4 (1991)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in this regard that priority be given to those who are homeless or living in exceptionally substandard condition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with disaggregated data on an annual basis by gender, age and households.

29.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at the lack of effective consultation of, and legal redress for, persons affected by or likely to be affected by forced removal or forced evictions and the lack of sufficient compensation or adequate relocation sites to individuals and families who have been forcibly removed. The Committee also regrets that the State party report did no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extent of forced evictions carried out in the State party,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the enormous scale of development projects. . (art. 1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forced eviction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that no project of development or urban renewal be carried out without prior notification and access to temporary housing for those affected so as to avoid recourse to violence as in the *Yongsan* incident.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as a matter of priority, and in line with General Comment 7 of the Committee on forced evictions, to:

- (a) ensure that persons forcibly evicted from their homes be provided with adequate compensation and/or offered relocation;**
- (b) undertake public debate and meaningful consultations with affected residents and communities prior to implementing development project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clearance plans;**
- (c) ensure that the new housing sites are provided with basic services and utilities such as drinking water, electricity, washing and sanitation facilities and easy access to schools, health care centres and transportation;**
- (d)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forced evictions with disaggregated data on an annual basis by gender, age and households in the next periodic report.**

30.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despite the Medical Benefit Program,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do not have adequate access to medical services in privately run hospitals which constitute 90% of all hospital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nly covers around 65% of the total medical expenses and that as a result, out-of-pocket payments are substantial. (Art 12)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increase expenditure for health care and adopt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universal access to health care, at prices that are affordable to everyone and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14 (2000) on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31.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despite mandatory sex education programmes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and accurate educ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 school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a number of pregnant teenagers dropout of the school system and turn to abortion due to stigma attached to unwed mother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mplement its mandatory sex education programme in schools in a systematic manner and to include inform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the use of contraceptive methods.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to unwed mothers and promote information campaigns to combat deep societal prejudice against unwed mothers.

32.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reports on contamination of village water works by radioactive agents surpassing safety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companies commercializing bottled water are using ground water resources that local communities need for farming and drinking.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t the non-disclosure of the existence of carcinogenic substances in bottled drinking wate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local communities are not deprived of ground water resources needed for farming and drinking purpose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adequate information on health hazards related to the bottled drinking water that was found to contain carcinogenic substances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ffectively implement the already adopted WHO standards on drinking water-quality and takes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14 on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General Comment 15 on the right to water, i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its next periodic report. (Art. 11)

33.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high associated costs of education required to be paid by parents. Furth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information regarding the deepening inequality in education and the fact that the chances of entering a top university for students are often determined by their parents' ability to afford after-school tutoring or private educ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accelerate its efforts to ensure that education is equally accessible to all and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capacity and not financial possibilitie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having recognized that "excessiv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imposes great burdens on

the household economy and has been the major cause of decline in quality of life for the middle class”, strengthe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low income families to cover the associated costs of education. (Art 13)

34.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increase of clinical depression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cases among students caused by extreme competition and academic stress. (arts 12, 1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implement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limitation of functioning hours of privately run cram schools;**
- (b) set up pilot alternative learning models;**
- (c) educate parents and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long-term effects of child overburdening with school work;**
- (d) curb the operation of private night schools and cram schools**
- (e) reassess the *Iljegosa* system that creates unnecessary competition between schools and limits the choice of study paths in higher education.**

35.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self-regulation and diversity in university education in arts and culture, following the reques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o solely concentrate on “practical education”.

The Committee, while noting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on the need for general audits, recommends that universities are guaranteed the freedom to fully exercise their academic authority and control their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36.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signing and ratifying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37.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disseminate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widely among all levels of society, in particular among State officials, the judiciary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translate and publicize them as far as possible, and to inform the Committee on the steps taken to implement them in its next periodic report.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engaging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 members of civil society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at the national level prior to the submission of its next periodic report.

38.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signing and ratifying 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igrant Workers Convention).

E/C.12/KOR/CO/3
page 14

39.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fourth periodic repor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reporting guidelines of the Committee, adopted in 2008 (E/C.12/2008/2), by 30 June 2014.

“한층 강화된 유엔 권고, 이제는 이행해야”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대한민국 제3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11월 20일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최종견해를 분석 평가하고 이행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월 3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1층 배움터에서 개최함.
- 이번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 수는 총 83개로서 이전(제1차 20개, 제2차 30개)에 비하여 급증하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권고이행을 위한 성실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더욱 절실함.
- 이번 권고는 우리나라가 세계 12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사회권 보장이 많이 뒤쳐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용산사건과 일제고사 등 현안을 직접 거론하는 등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11월 20일 대한민국 사회권 일반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는 2001년 제2차 심의 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이번 최종견해를 우려사항과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고 향후 이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최종견해의 내용과 포괄 범위를 고려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 제네바 출장단 대표를 맡아 핵심 역할을 하셨던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위원)의 진행 하에,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최종견해에 대한 전체 총평을, 그리고 이숙진 교수(여성, 아동청소년), 김현미 교수(이주, 외국인), 김인재 교수(노동), 그리고 윤홍식 교수(사회보장, 건강, 주거, 교육)가 4개 주제를 각각 맡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토론회 일정 및 발표내용

1. 일시 : 2010. 2. 3(수), 14:00~17:00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3. 사회 : 조국 인권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발표내용 및 진행순서

14:00~14:10 개회	개회 김형완(인권정책과장) 인사말 유남영(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10~15:30 발표 (사회: 조국 인권위원)	최종견해 분석 및 평가 (60분) 총평 박찬운(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 권고 주제별 분석 및 평가 [여성, 아동청소년] 이숙진(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이주, 외국인]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노동] 김인재(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사회보장, 건강, 주거, 교육]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권단체 총평(10분) 명숙(인권운동사랑방)
15:30~17:00 토론	휴식 후 전체토론

인권위도 설립 후 처음 맞는 유엔사회권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여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 3명을 초청하여 토론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등 1년여 동안 관련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2008년 11월과 2009년 10월에 인권위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심의가 개최되는 동안에도 스위스 제네바 현지로 출장단을 파견하여 직접 심의과정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권위 활동

2008. 3. 10~13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리델(Dr Eibe Riedel) 위원과 고메스(Ms Virginia Bras Gomes) 위원 초청 특별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2008. 11. 8.	회기전 실무그룹(Pre-session Working Group)에 의견서 제출
2009. 6.	고메즈 위원과 단단(Ms Virginia Boncoan-Dandan) 위원 초청사업
2009. 6. 26	<2009 사회권 심포지엄 : 경제위기와 사회권> 개최
2009. 10. 1	최종 종합 의견서 제출
2009. 11. 10~14	제네바 출장단 파견 및 홍보 활동

회기전 실무그룹 이란?

- ☞ 유엔사회권위원회도 여타 유엔조약기구(Treaty Bodies)처럼 본 심의를 하기 전에 일부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각국의 국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한 후 주요 질의 사항을 선정하여 해당국에 송부하고 답변을 받는 절차를 채택하고 있음.
- ☞ 인권위가 이 회기전 실무그룹에 제출한 의견서는 유엔사회권위원회가 최종 질의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질문항목을 제시한 것으로서 인권위는 총 97개 질의를 선정하였고 상당수가 최종 질의서에 포함되었음.
- ☞ 이번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심의전 실무그룹 회의 후 2009. 1. 8. 총 47개 질의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질의서를 우리 정부에 송부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009. 8. 14. 제출하였음.

1. 기본특징

- ▶ 총 권고수가 20개(제1차)→30개(제2차)→83개(제3차)로 급증하였음.
- ▶ 전반적으로 이전 최종견해에 비하여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구체화됨.
특히, 여성, 노동, 이주 관련 권고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임.
- ▶ 이주와 외국인 관련 권고가 대폭 증가함.
- ▶ 총 39개 항으로 구성됨.
 - 제1항 심의일정 확인
 - 제2~3항 서문(제3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높이 평가함)
 - 제4항 긍정적인 측면들(NAP 수립 등 총 6개)
 - 제5항 규약이행의 장애요소(장애요소가 없음을 강조함)
 - 제6~35항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총 30개 항)**
 - 제36~39항 일반권고(선택의정서 가입, 차기 보고서 제출기한 등)

2. 제3차 최종견해 권고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주제

- ▶ 차별금지법 ▶ 공적개발원조 ▶ 노숙인 문제 ▶ 외국인 배우자
- ▶ 빈곤문제 ▶ 대학의 자율권 ▶ 여성 및 청소년 실업
- ▶ 연예홍행비자 및 인신매매 ▶ 청소년 성교육 및 미혼모 대책

3. 제1차 또는 제2차 최종견해 우려사항이나 권고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제3차 최종견해 권고에서 매우 구체화된 주제

- ▶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부 ▶ 여성차별 ▶ 성희롱
- ▶ 가정폭력 ▶ 최저임금 ▶ 비정규직 차별 ▶ 국민연금
- ▶ 난민 신청 기간 ▶ 이주노동자 차별 ▶ 강제철거 시 원주민 보호
- ▶ 극심한 학업경쟁 ▶ 노동3권(‘업무방해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남용방지 권고)

4. 이전 최종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권고 된 주제

- ▶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 ▶ 최저주거기준
- ▶ 교육불평등 및 공교육 강화(일제교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재검토 권고)
- ▶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 ▶ 과도한 파업노동자 처벌

4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총평 발췌

민변을 비롯한 56개 인권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2001년에 이어 이번에도 유엔사회권위원회 심사에 참가해 변명과 불성실한 해명에 급급했다”며 “정부는 유엔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견해는 정반대였다.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해 사회권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위원회에 강력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 권고는 국제기구의 다른 권고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것은 국제법인 인권 조약에 따른 권고로서 다른 일반적 권고와는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하므로 권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도대체 정부가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그냥 단순 권고로 치부한다면 왜 인권조약에 가입하였는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인권조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것을 어떤 정부가 그냥 간과한다면 인권조약의 의미는 사라진다.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권고 이상의 강력한 성격을 갖는 국제인권기구의 요구이다.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우리 정부는 이 권고를 피할 수가 없다. 국제사회가 이것을 주시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더욱 심각한 정부의 문제는 최종견해가 나오고 난 뒤의 태도에 있었다. 사실 사회

권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는 대단히 신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할 말이 많았던 모양이다. 즉각적으로 법무부는 반박을 하였는데, 대부분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제도와 현실을 오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견해는 우리 정부의 답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미세한 부분만을 보면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태도는 크게 실망스럽다.

- 붙임 1. 제3차 최종견해 권고내용 주제별 분류 및 요약
- 2.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최종견해우려사항과 권고 주제별 비교분석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 쇄 | 2010년 2월

| 발 행 | 2010년 2월

| 발행인 | 현 병 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27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25-0